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자율 균형 미래

중등

2024
학교 업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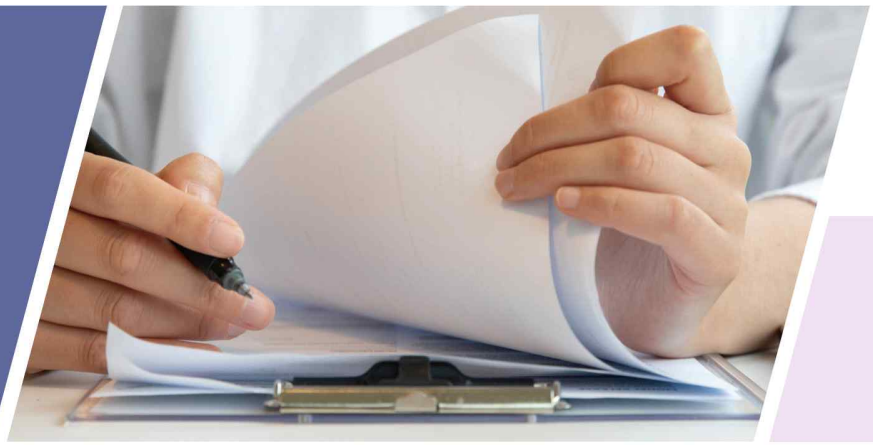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제1편 학칙 및 위원회

1. 학교규칙 제·개정 ····· 2
2. 학교운영위원회 ····· 4
3.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의 간소화 ····· 7

제2편 교육과정 운영

1.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9
2. 교육과정 편성·운영 ····· 11
3.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 12
4. 교내 대회 ····· 20
5. 자유학기제 운영 ····· 21
6. 고교학점제 운영 ····· 25
7. 결·보강 운영 계획 및 보결 수업 관리 ····· 30
8. 방학 계획 ····· 31
9. 입학식·졸업식 ····· 32
10. 진급 및 졸업 사정회 ····· 33

제3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1.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 35

제4편 교수·학습

1. 학생주도 맞춤형 수업 ····· 38
2. 기초학력 보장 ····· 41
3. 교과협의회 운영 ····· 44

제5편 미래교육

1. 학교자율과제 ····· 46
2. IB ····· 49
3. 에듀테크 활용 교육 ····· 52

제6편 학업성적관리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56
2. 평가계획 수립 ····· 57
3. 지필평가 운영 ····· 60
4. 수행평가 운영 ····· 64
5. 출결 ····· 66

제7편 체험학습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 70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 72

제8편 학적 관리

1. (중학교)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 76
2. (중학교)전입학 및 전출 ····· 77
3. (중학교)유예·면제·정원 외 관리 ····· 79
4. (중학교)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 81
5. (중학교)조기진급 및 졸업 ····· 84
6. (고등학교)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 87
7. (고등학교)신입생 선발 및 전형 ····· 93

제9편 교무행정

1. 교원 조직 관리 ····· 97
2. 학급 경영 ····· 98
3. 교과서 선정 및 운영 ····· 99
4.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 100
5.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 102
6. 나이스 업무 ····· 106
7.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 108
8.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 111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112
10. 학년부 운영(고3) ····· 114
11.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 116
12. 교육자원봉사 ····· 118

제10편 교육연구 및 평가

1. 연구학교 ····· 120
2. 학교평가 ····· 122

제11편 지역교육협력

1. 경기공유학교 ····· 125
2. 미래교육협력지구 ····· 127
3. 방과후학교 ····· 128

제12편 학교자치

1. 학생 자치 ····· 131
2. 학부모 참여 ····· 133

제13편 학생생활교육

1. 학생생활교육 ····· 137
2. 학교교육공동체 인권교육 ····· 142
3.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 144
4. 양성평등교육 ····· 146

제14편 교육활동 보호

1. 교권보호위원회 ····· 148
2. 교권활동 침해 사안처리 ····· 149

제15편 학교폭력 대책

1. 학교폭력 예방교육 ····· 152
2. 학교폭력 사안처리 ····· 155
3. 성폭력 사안처리 ····· 161

제16편 학생안전

1.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 166
2. 아동학대 예방교육 ····· 169
3. 폭력 예방교육 ····· 170
4. 학교안전공제회 ····· 172
5. 대기오염 대응・관리 ····· 177

제17편 학생위기지원

1. 위(Wee) 클래스 운영 ····· 182
2. 생명존중교육 ····· 188
3.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 189
4.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 ····· 196

제18편 진로・직업교육
1. 진로교육 ····· 207
2. 진학교육 ····· 210
3. 직업교육 ····· 213
제19편 학교독서인문교육 및 도서관 운영
1. 학교독서인문교육 ····· 216
2. 학교도서관 운영 ····· 220
제20편 인성시민교육
1. 인성교육 ····· 225
2. 디지털 시민교육 ····· 227
3. 세계시민교육 ····· 230
4. 계기교육 ····· 232
5. 다문화교육 ····· 233
6. 통일교육 ····· 236
제21편 융합교육
1. 융합교육 ····· 238
2. 환경교육 ····· 240
3. 발명메이커교육 ····· 241
4. 영재교육 ····· 242
제22편 정보
1. 개인정보보호 ····· 246
2. 정보통신윤리교육 ····· 252
3. 정보교육 ····· 254
4. 학교정보보안 ····· 255
5. 정보공시 ····· 259
제23편 체육교육
1. 학교스포츠클럽 ····· 262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 265
3. 학교운동부 및 개인학생선수 ····· 269
4.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 ····· 278
제24편 특수교육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 ····· 282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 284
3. 진로·직업교육 ····· 286
4.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 290

제25편 보건교육

1. 보건교육 ····· 295
2. 보건실 운영 ····· 302
3. 요양호 학생 관리 ····· 304
4. 학교 응급환자 관리 ····· 306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308
6. 학생 건강검사 ····· 313

제26편 학교급식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운영 ····· 317
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 320
3. NEIS 급식시스템 ····· 322
4.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 324
5. 학교급식 예산 운용 ····· 331
6. 학교급식 시설 관리 ····· 334

제27편 교원 인사

1. 교원 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 337
2. 계약제교원 운영 ····· 338
3. 보직교사 임용 ····· 341
4. 휴직 및 복직 ····· 342
5. 복무 일반 ····· 348
6. 겸임·직무대리·영리업무금지·외부강의 ····· 351
7. 휴가 ····· 354

제28편 교원역량개발

1. 교원능력개발평가 ····· 361
2. 교원 연수 ····· 363
3. 연구대회 ····· 365
4. 자율장학 ····· 366
5. 교사 연구년제 ····· 368
6. 수석교사제 ····· 370

제29편 기타

1. 교육행정조직 ····· 373
2. 교직단체의 이해 ····· 375
3. 교육 관련 법규 ····· 376
4. 청렴 업무 ····· 378

제1편 학칙 및 위원회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칙 및 위원회</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회의 소집과 개최, 안건 심의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
· 학교 교육 활동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으로 학교업무 정상화 및 운영 효율화</td></tr>
<tr><td rowspan="4">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규칙 제·개정</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2. 학교운영위원회</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3.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의 간소화</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교육과학기술부, 2012. 4.)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중등용)(교육과학기술부, 2012. 4.)
○ 학교규칙 표준안(경기도교육청, 2022. 10.)
○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협력지원과, 2024. 1.)
○ 2023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의회협력과, 2023. 4.)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협력지원과, 2024. 3.)(변경 예정)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학교업무개선담당관, 2023. 12.)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계획(학교업무개선담당관, 2023. 6.)</td></tr>
</table>

1 학교규칙 제·개정

학교 제반 업무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운영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규칙의 개념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주요내용

① 학교규칙의 구성

-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교과·수업 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조기 진급·조기 졸업
  -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Tip

■ 학교규칙

-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

세부업무명

2.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관련근거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중등용)

주요내용

①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
-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② 역할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 조사, 문헌 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등

세부업무명

3. 학교규칙 제·개정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중등용)
- 학교규칙 표준안

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내용(1호~10호)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주요내용

①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함
-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함

② 학교규칙 제·개정 개요

-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함
- 학칙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③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예시)

-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제정, 개정안 발의(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이 있는 경우)
  -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1차 시안 마련(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토론회 개최(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칙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학칙 공포·시행
  - 학교장 결재(학교장 학칙 승인)
  -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학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

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Tip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 학부모위원: 30~40%
- 교원위원: 20~30%
- 지역위원: 30~50%

※ 지역위원 중 1/2 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함

■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 학부모위원: 40~50%
- 교원위원: 20~40%
- 지역위원: 10~30%

Tip

■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간사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생 수 200명 미만: 5~8명
- 학생 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 학생 수 1,000명 이상: 13~15명

※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 2명 이상 별도 추가(학부모 1인, 교원 1인)

※ 운영위원 정수 산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하고,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 학부모위원: 40~50%
- 교원위원: 30~40%
- 지역위원: 10~30%

④ 소위원회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
- 종류: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결정할 수 없음(반드시 본회의를 개최)

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정관)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선거 결과 홍보

세부업무명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2023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변경 예정)

주요내용

① 운영위원 자격요건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함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3월 21일까지)
-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로 병행 가능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④ 지역위원 선출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3월 30일까지)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 선출
- 임기 개시일(4월 1일)부터 15일 이내

Tip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시 주의사항**

- 전체회의(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고자 할 경우, 병행 시행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선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의 방법 시 사전 세부 방법 및 절차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 시,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 위원 선출 시 학부모 전체회의(직접투표)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만 시행하여서는 안 됨

세부업무명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근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2023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변경 예정)

주요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 안건제안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
  -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 회의 소집
  - 기회와 임시회는 통합 산정, 회기번호는 누년으로 회의 차수 부여,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못함
- 회의개최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결과처리
  - 심의결과 홍보: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등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Tip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항

※ 구체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업부서의 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협의·판단함

Tip

■ 심의 없이 시행가능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3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의 간소화

학교 교육 활동에 관한 중요 내용을 협의·심의·의사 결정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며 학교 업무 정상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여 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각종 위원회 통합과 운영의 간소화

Tip

■ **'법정 위원회'의 의미**
- 개별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규칙)의 규정에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 **'비법정 위원회'의 의미**
-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 학교 자체 판단에 의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Tip

■ **각종 위원회 통합과 관련된 업무 효율화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52]번 자료 참고**

관련근거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 계획
◦ 2023 학교업무 개선 길라잡이

주요내용

① 각종 위원회 정비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관련 사항 숙지
- 각급 학교에서 구성해야 할 위원회 정비
  - 법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비법정 위원회 포함) 통합 운영
  - 신규사업 또는 사업변경으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에 성격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에 통합 운영
- 조직 및 운영
  - 법령 및 설치 근거에 의하여 조직(구성 인원 및 비율에 유의)·운영

② 위원회 운영 방법의 간소화
- 교육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한적 절차만 규정
- 간단하고 의례적인 회의는 개조식 회의록 작성 및 생략
  - 위원회 운영절차 및 회의록 작성 방법 등 간소화
    ※ 주요 내용, 발언 요지 등 개조식으로 작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 제1항)
  - 형식적인 각종 협의록 작성 지양
  - 회의록 개별 서명 생략 가능
    ※ 단,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정 근거 회의와 외부위원의 참석 회의록은 자필 서명 필요
  - 회의결과 공유 및 보고 간소화
    ※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처리 후 공람 처리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메모 보고 활용

제2편 교육과정 운영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교육과정 운영</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약칭: 자원봉사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교육 실천 계획의 수립 및 운영</td></tr>
<tr><td rowspan="11">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td><td></td></tr>
<tr><td>2. 교육과정 편성·운영</td><td></td></tr>
<tr><td>3.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td><td></td></tr>
<tr><td>4. 교내 대회</td><td></td></tr>
<tr><td>5. 자유학기제 운영</td><td></td></tr>
<tr><td>6. 고교학점제 운영</td><td>교과교실제->학교 공간 조성 사업</td></tr>
<tr><td>7. 결·보강 운영 계획 및 보결 수업 관리</td><td></td></tr>
<tr><td>8. 방학 계획</td><td></td></tr>
<tr><td>9. 입학식·졸업식</td><td></td></tr>
<tr><td>10. 진급 및 졸업 사정회</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기획관, 2023. 12.)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관, 2023. 12.)
○ 2024 교육활동중심 새학년 준비 지원 계획(학교정책과, 2023. 12.)
○ 2024 교육과정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4학년도 자율장학 운영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학교교육과정과, 2021. 1.)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2.)
○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안(학교교육과정과, 2022. 9.)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학교교육과정과, 2024. 1.)
○ 2023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교육부, 2023. 2.)
○ 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6.)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4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고등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워크북(학교교육과정과, 2023. 1.)
○ 2023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중심 학교 교육과정 도움자료[중학교편](학교교육과정과, 2023. 2.)</td></tr>
</table>

1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경영계획 및 교육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연간 주요 업무 협의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2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주요내용

① 실태 분석
- 전년도 교육활동 평가 및 환류
- 교사,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실태 조사 분석
- 전년도 학교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②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위원회 조직
- 차기년도 업무분장 및 연간 주요 업무 협의
- 각 부서별 주요업무 분석 및 실천 계획 수립

세부업무명

2. 학교교육계획 수립 및 활용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2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Tip

■ 참고자료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학년 준비 지원 계획
- 2024 자율장학 운영계획

주요내용

① 인사(복무)·역량 강화
- 새 학년 준비 기간 운영: 2024. 2. 19.(월)~2. 23.(금)
- 교원 인사 조기 발표
- 정책 및 기본계획·지침 조기 안내
- 신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② 학교자치·조직문화
- 학교 비전 공유 및 교육목표 설계: '새 학년 준비 기간', '전 직원 만나는 날' 등 자율 구상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 문화 조성
- 학교업무협의체 숙의 및 약속
- 교무행정업무팀 조직 및 활용
- 회의 운영 절차 및 의사결정 기법
- 학교통계분석: '유레카' 활용
- 새 학년 교육계획 수립

Tip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 문화 조성**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 운영 체제 구축
- 민주적 소통에 기반한 업무분석 및 업무분장 점검(학교업무협의체)
- 업무 분장시 학교 교직원 모두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 전시성 학교행사 축소 및 폐지, 획일적인 학교 행사 개선 및 간소화
- 내부결재 및 협의록 간소화
- 교육활동 중심의 '각종 주간', '00의 날' 운영 방법 개선
- 자체 학교 실정에 맞는 위임전결 규정 정비

Tip

■ **교육활동지원**

- 공문없는 날(달) 변경 시행: 3월→4월, 수요일→화·목요일
- 공문게시제 운영 협조(학교 공문 게시 활성화): [문서관리]-[샘플서식]-[안내_공문게시제]
-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학교자체 생산 가정통신문은 기존 절차대로 발송
- 상시 학교업무개선 확인 및 궁금증 해결: http://edasan.goe.go.kr
- 학급운영비 개산급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1단계(자체평가기간)		2단계(얼개작성기간)		3단계(집중운영기간)	
2023. 12월		2024. 1월~2월 중순		2023. 2. 19(월)~2. 23.(금)	
2023학년도 교육활동 평가		2024학년도 교육 방향 수립		2024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재직교직원		재직교직원		재직교직원+전입교직원	
학교자체평가 결과공유 ·학교문화 진단 ·교육활동 진단 ·생활교육 진단 ·학교업무분장 진단	전체	학교본전 계획 수립	전체	학교교육계획 기본방향 설정 (비전,목표)	전체
		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방안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교육과정 위원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서
		민주적 협의의 업무분장 - 구성원 모두의 의견 수렴	전체	교과·학년별 수업·평가계획	교과 학년
평가결과 환류 방안 모색	전체			교육활동 세부추진계획	자체 워크숍

③ **교육과정(정책·교육협력)**

-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교육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교육과정, 경기도교육과정 분석 및 학교 환경과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사항 파악
  - 학교 교육 비전과 연계한 교육공동체 배움 요구 진단을 통한 교육 목표 선정
- **학년·학급, 교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학년 초 수업 활동 준비**
  - 학년·학급에 맞는 최적화된 시수 편제 설정
  - 성취기준 분석을 통한 성취기준 재구조화, 개발
-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준비**
- **책임교육 운영 여건 조성 및 최소 성취수준 도달 지원 체계 마련**
- **정보공시 개정에 따른 교수학습·평가 계획서 연수 실시 및 지원**
- **2022개정 교과 교육과정 반영한 '깊이있는 수업' 안내 및 지원**
-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 운영
- 학교 자율장학 운영계획 수립
- 학교자율과제 운영 및 지원

④ **학생생활교육**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인성교육 계획 수립
- 교육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대상 학생생활규정 안내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및 책임규약, 학생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상담 및 위기학생 지원 계획 수립
- 학교구성원의 공존을 추구하는 양성평등교육계획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실시

⑤ **교육활동 지원**

세부업무명

3. 학교교육계획 평가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Tip

■ 관련 서식
- 교육활동 누가기록부
- 학교현황 카드
- 교육계획 평가 설문지 예시

주요내용

① 교육활동 평가 계획 수립

② 각 분기별 교육활동 결과 분석 및 평가

③ 부서별 활동 실적 수합, 반성

④ 평가 반성에 따른 차기 연도 교육계획서 보완, 수정

⑤ 교육계획에 대한 평가 설문지 작성
- 교육활동 평가 설문지 분석 결과, 예산 편성, 부서별 업무 편성 및 협의 내용을 차기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
- 교육시책 기본 계획을 기저로 하여 지역사회 및 학교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 단위의 교육목표 설정
- 경영 중점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야의 목표 수준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정
- 특색사업은 타교에 비해 우수하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선정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역사회 및 학교 특색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편성·운영의 계획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제2021-486호)

Tip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 2022 중등 교사교육과정 도움자료집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 학사일정표 서식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분석
- 교육과정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방향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경기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참고
-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② 학교실태 분석
- 국가·도·지역교육청·학교 교육중점·경영중점, 학교특색 선정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개최
- 학교 경영방침 수립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 수업일수, 행사일정, 방학기간, 휴업일 등
- 학생 희망, 교원 소요, 시설현황 파악·분석
- 전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결과 분석·반영

세부업무명

2. 편성 ·운영의 실제

Tip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2023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할 교육활동 기준 조정안
- 선택과목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
- 교육과정 업무처리과정
- 2023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
- 2023 경기도 공동교육과정 업무 매뉴얼
- 2023년 전입학생 미이수 중복 이수 문제 해소 계획
- 2024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
-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안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 2023 중등 학생주도 맞춤형 수업 기본 계획
-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및 편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및 편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신설승인(에듀넷티클리어)
- 2023년 중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교육과정)
- 2023년 고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교육과정)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제2021-486호)

주요내용

① **공통교육과정 편성·운영**
- 선택과목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교사, 학생, 학부모)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 학생의 과목 선택권 다양화 지원 확대

②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고등학교)**
-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과목, 고교학점제, 자유수강제, 교과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집중이수제, 증감운영, 블록타임제, 무학년제 등
- 학생선택과목 편성·운영: 수강 신청, 반 편성, 시간표 작성

③ **자유학기제(중학교, 특수학교)**

④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 수립**

⑤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입력**

⑥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및 결과 분석**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 편성·운영, 보충학습이수 대상자, 학교지정과목 및 학생선택과목 편성, 집중 이수제, 교과 시수 증감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
-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시행(교육청 공문에 따라 관할청 보고)

3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세부업무명

1. 영역과 활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2015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주요내용

① **영역 구성**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② 영역별 활동

영역	활동	
자율활동	• 자치·적응활동	• 창의주제활동 등
동아리활동	• 예술·체육활동 • 실습노작활동	• 학술문화활동 • 청소년단체활동 등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 캠페인활동 등	• 환경보호활동
진로활동	• 자기이해활동 • 진로설계활동 등	• 진로탐색활동

세부업무명

2.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지침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주요내용

①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공동지침

- 학교 급별, 학년(군)별 기준 시간(단위) 이상의 시수를 편성·운영
- 학교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음
- 학교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동 체계'에 제시된 영역별 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편성·운영
-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및 활동을 연계·통합하여 주제 중심으로 편성·운영 가능
-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을 진로활동 및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을 활용
- 의식행사, 발표회, 체육행사,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행사를 각 영역 또는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편성·운영하며 행사의 시수 배정은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으로 편성
-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과정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체험활동에 앞서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 교내 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 등을 이용 또는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인적 자원 활용
- 중학교의 자유학기에서는 자유학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 선정, 교육적 필요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간, 활동 간 그리고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전 영역에 걸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함. 특히,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들 스스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Tip

■ 편성시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 진도와 관련된 심화·보충형 학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
-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
-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는 것을 권장

세부업무명

3.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Tip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평가 계획 절차(예시)**

• 평가목표의 설정 → 평가기준의 선정 → 평가방법의 구체화 → 평가실시와 평가결과의 기록 → 평가결과의 해설과 활용

- **평가목표의 설정:**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적합하도록 평가관점을 명료화
- **평가기준의 선정:** 평가관점에 따라 평가 기준(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을 선정
- **평가방법의 구체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평가 방법을 구체화 (포트폴리오, 상호평가, 자기평가 등)
- **평가실시와 평가결과의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에 다음을 중심으로 기록(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 활동 내용, 학생의 행동변화와 발전의 정도, 학생의 개별특기사항 등)
- **평가결과의 해설과 활용:** 결과의 피드백 및 차기 지도 반영

Tip

■ **평가관점 작성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평가관점은 해당 학년에서 편성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활동별 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의 중점을 고려하여 상세화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실천과 관련하여 계획, 과정, 결과 등의 전 과정을 평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2015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주요내용

① 학생평가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 계획 수립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평가 계획 절차를 고려하여 수립

② 평가관점과 평정 척도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평가의 관점은 아래 <표>를 기반으로 하되, 학교에서 편성·운영한 활동별 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의 중점을 고려하여 상세화함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영역	평가관점
자율활동	•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였는가? •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가? • 성장 및 환경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 학교·학년·학급특색활동 및 주제선택활동에 참여하였는가?
동아리활동	•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동아리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였는가? •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에 도전하였는가? • 동아리활동에 기반하여 일상의 삶에서도 건전한 취미 생활을 구현하고 있는가?
봉사활동	•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을 실천하였는가? •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였는가? •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하였는가? • 봉사활동의 실천 시 계획, 과정,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진로활동	• 흥미와 소질, 적성 등을 포함하여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여 긍정적 자존감을 형성하였는가? • 학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직접 체험하는 등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활동에 적극적인가?

③ 학생평가 기록

• 학생평가를 위하여 활동 상황의 관찰(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법, 평정척도법),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의식·태도 조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학생의 작품과 기록(작품 평가, 활동의 기록 분석, 작문, 소감문 분석), 교사 간 의견 교환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 학년별로 편성한 각 영역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

•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의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④ 학생평가의 활용

•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 변화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의 계발을 돕는 자료로 활용

• 평가 결과는 학교급을 고려하여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⑤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

-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준비, 편성, 운영, 결과의 측면에서 평가
- 학교에서 수행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차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세부업무명

4. 동아리활동 운영

Tip

■ 동아리활동 영역별 활동내용(예시)

- **예술·체육활동**
  - **음악활동:** 성악, 합창, 뮤지컬, 오페라, 오케스트라, 국악, 사물놀이, 밴드, 난타 등
  - **미술활동:** 현대 미술, 전통 미술, 회화, 조각, 사진, 애니메이션, 공예, 만화, 벽화, 디자인, 미술관 탐방
  - **연극:** 영화활동, 연극, 영화 평론, 영화 제작, 방송 등
  - **체육활동:** 씨름, 태권도, 택견, 전통무술, 구기운동, 수영, 요가, 하이킹, 등산, 자전거, 댄스 등
  - **놀이활동:** 보드 게임, 공동체 놀이, 마술, 민속놀이 등
- **학술문화활동**
  - **인문소양활동:** 문예 창작, 독서, 토론, 우리말 탐구, 외국어 회화, 인문학 연구 등
  - **사회과학탐구활동:** 답사, 역사탐구, 지리 문화 탐구, 다문화 탐구, 인권 탐구 등
  - **자연과학탐구활동:** 발명, 재활용품 연구, 적정 기술 탐구, 농어촌 발전 연구, 생태 환경 탐구 등
  - **정보활동:**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신문 활용 등
- **실습노작활동**
  - **가사활동:** 요리, 수예 재봉, 꽃꽂이, 제과 제빵 등
  - **생산활동:** 배, 원예, 조경, 반려동물 키우기, 사육 등
  - **노작활동:** 목공, 공작, 설계, 제도, 로봇 제작, 조립, 모형 제작, 인테리어, 미용 등
  - **창업활동:** 창업 연구 등
- **청소년단체활동**
  -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 등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2015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주요내용

① 동아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예술·체육활동	자신의 삶을 폭넓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함양하고,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신체를 기름
학술문화활동	다양한 학술 분야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체험 위주의 활동을 통하여 지적 탐구력과 문화적 소양을 기름
실습노작활동	일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깨닫고 필요한 기본 기능을 익혀 일상생활에 적용함
청소년단체활동	신체를 단련하고 사회 구성원 및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함

② 편성·운영 지침

- 학생의 흥미,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리 부서를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의 잠재 능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아실현의 기초 형성
- 동아리 부서는 학생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설하되, 동아리 조직 형태는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 학년(군), 학교 단위로 구성 가능
- 동아리 부서별로 각 부서의 성격에 적합한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경연 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가능
-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동아리활동의 예술·체육활동 중 체육활동에서 편성·운영하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동아리활동으로 편성·운영되는 학기에는 체육 관련 동아리활동을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음
-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에 이루어지는 동아리와 연계·통합하여 편성·운영 권장

세부업무명

5.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운영

Tip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방향)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

Tip

■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 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

Tip

■ 교사·학생·학부모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내
- 학년 초 학교봉사활동 소양교육 시 학생 대상 안내
- 학부모총회 시 학부모 대상 안내
-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유의, 구체적이고 통일된 인정 기준안 안내

관련근거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자원봉사법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운영
- 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관(1365자원봉사포털, VMS 기초지역관리본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 기관 파악 후 적극 안내
-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의 진로,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전 생애 봉사활동의 기반 마련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계획서 승인 시 기관, 내용, 영역, 안전 등에 유의하여 검토한 후 승인

②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실시
-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권장
-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③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해당 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임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학생 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가능
- 위원의 정수는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운영

④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 학교: 학생 봉사활동 방향 및 계획 수립, 실행, 평가지원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 학생 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 불가

Tip

■ 참고자료

-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세부업무명

6.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관련근거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불가 기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Tip

■ 학생 봉사활동 기관 인정 조건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②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 평일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가능
- 휴업일(토요일 ·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 8시간 인정 가능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 가능

Tip

■ 참고자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 1365 자원봉사포털
  - VMS 자원봉사포털
  - DOVOL 자원봉사포털

세부업무명

7.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Tip

■ **참고자료 및 각종 서식**

- 개인 봉사활동계획서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개인형)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모둠형·융합형)
- 현혈 학부모동의서 · 사후 확인서
-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회의록(예시)

Tip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Tip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으로 미인정하며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 불가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 미인정,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

관련근거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 가능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10시간 이내 편성 권장)

②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
-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가능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
  (예시) A학생이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도서실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급식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등 지양
-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미인정하며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 불가

③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④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절차

학생	→	학생	→	학생	→	학교	→	학교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봉사활동 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전송**		교육정보 시스템(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Tip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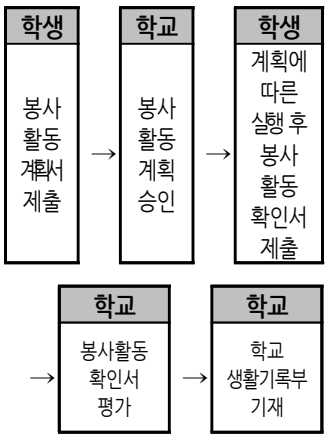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
- 헌혈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쳐본과 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생이 학년말(2월 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⑤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둠형: 진로나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고등학교 권장)
  - 융합형: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초등학교 권장)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계획서 및 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 기간은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장소: 교내에서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계획된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학생의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계획 단계	→	실행 단계	→	평가 및 활용 단계
주제선정 → 목표수립 → 자원탐색 → 활동 계획 수립 → 장소 및 대상 섭외 → 역량 계발		• 실행과 기록 • 반성과 점검 • 안전사고 유의		활동정리 → 포트폴리오 작성 → 결과 및 활용(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 연말(학기말)에 단위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봉사활동계획서, 실적(포트폴리오) 등을 검토

4 교내 대회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내 대회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우수 학생을 발굴하여 육성한다.

세부업무명

1. 교내 대회 운영

관련근거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내용

① 학교교육계획 수립(교내 대회 시행 계획 포함)

- 대회 규모 및 일정 협의. 타부서와 일정 협조
- 월간 계획에 추진 일정 반영

② 교내 대회 계획 수립

- 학년 초에 계획 수립: 목적, 방침, 세부추진계획(참가대상, 심사계획 등), 기대효과, 예산 사용 계획 등
  - 수상비율, 시행학기,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
  - 교내상 운영 계획 서식(예시)

연번	수상명	시행 (학기)	참가 대상	수상 비율	담당 부서	공개 방식

-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유의할 사항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3항제2화(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음
- 교내 대회 공개
  -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시기, 운영·심사방법, 수상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함
  - 1차 공고: 학년 초 학사일정 공개 시
  - 2차 공고: 실시 전 적정 시기에 상세안 공고
  - 공개 방법: 게시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SNS, 스마트폰 어플 등
  - 관련 교과 담당 교사에 의한 홍보 및 안내

③ 교내 대회 실시

- 공정한 대회 운영 및 심사

④ 대회 결과 발표 및 시상

- 수상인원은 대회(부문)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
  - 하위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하지 않음

Tip

■ **유의 사항**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 시상 계획을 변경(수정·삭제·추가)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 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 연간 시상 계획과 대회운영계획, 대회운영결과, 상장의 대회명이 모두 일치해야 함

■ **참고자료**

- 2024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 성적 반영지침

5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한 학기(1학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자유학기제 개요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다양화·특색화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 학기(1학년 1학기) 동안 지식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부터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 1학년 1학기 한 학기만 일제식 지필평가 없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② 자유학기 취지를 살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학기' 운영

- 전체 중학교 대상 1학년 2학기 운영
- 심층 탐구 수업,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험·실습, 프로젝트 활동 등의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하여 자기 생각을 만들고 사고의 힘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는 학기

④ 학생의 앎과 삶을 연계하는 교육과정 운영

- **연계자유학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2개 영역 이상 편성·운영(단, 주제선택 활동 학기별 필수 운영)

※ 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부터 2, 3학년 연계 자유학기는 미운영

- 자유학기-연계자유학기: 중학교 전(전) 과정의 연계성 고려
- 교과 간 연계: 융·복합 수업 및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활성화

세부업무명

2. 자유학기 활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주제선택활동

- 기본 취지: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체계적 심층적 프로그램을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적 학습 기회 제공
- 운영 중점
  -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학습 내용의 폭과 범위 확대를 위해 학기별 필수 운영
  - 교과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범교과 학습 주제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창의 주제활동과 연계 가능
  - 자유학년은 교과목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활용 교과 시수 조정), 연계 자유학년은 활용 교과에서 확장된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활용 교과 시간으로 인정)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교사 차원의 교육과정 창작 및 수업 운영
  - 자유학년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급 재편성을 실시하고, 연계자유학년은 학생 선택권 보장 방안은 학교가 자율 결정

② 진로탐색 활동

- 기본 취지: 다양한 체험을 균형있게 운영하여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 후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제공
- 운영 중점: 단순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과와 연계한 학습과정으로서 사전 > 체험 > 사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학습경험 제공

③ 예술·체육활동

- 기본 취지: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및 행복감을 제공하는 교육 실시
- 운영 중점
  -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 기회 제공
  -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개발 및 지속적 활성화
  - 음악, 미술, 체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용 시 관련 활동으로 운영

④ 동아리활동

- 기본 취지: 학생들 간 공통된 관심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
- 운영 중점: 학생주도의 기획 운영으로 관심 분야의 특기 적성 계발 및 학생 자치능력 및 문제해결력 함양
- 교과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교내 자율 동아리, 무학년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 가능

Tip

■ **범교과 학습 주제활동(예시)**

- 안전 ·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 · 지속발전 가능 교육(2015 개정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창의주제활동(예시)**

- 주제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자유연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된 활동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 · 지속발전 가능 교육(2015 개정 교육과정)

Tip

■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활동**

- 음악, 미술 교과 활용 → 예술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체육 교과 활용 → 체육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용 → 체육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 가능

세부업무명

3.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사항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Tip

■ 교과(군)별 배당된 시간

-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3년 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의미하며, 학교 여건에 따른 교과(군)별 증감과 '자유학기 활동'에 활용되는 시간을 합하여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주요내용

①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자유학기 활동 4개 영역'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편성·운영
-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되, 활동별 배당 시수는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
- 주제선택 활동은 반드시 운영되도록 편성
- 예술(음악/미술)과 체육 교과(군)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운영하되,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예술 활동으로 편성·운영하는 경우 음악과 미술을 통합한 예술 관련 활동 운영은 가능(단, 활용한 교과(군)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신설되는 정보 교과는 가급적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 단,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과협의회 등을 활용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개설·운영, 정보 교과를 자유학기 활동으로 일부 조정하더라도 정보 교과 순수 수업시수는 최소 34시간 확보하여 편성·운영

②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수 활용(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 시수는 감축 불가, 연계 가능)
- 교과협의회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 주제와 맥락에 맞는 학년별·교과별·주제별 성취기준 활용, 재구조화(통합/재조정) 및 개발
- 주제선택 활동과 연계한 깊이 있는 심화학습 및 교과융합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체인지 메이커 활동 등

Tip

■ **학교자율과정**

-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수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편성·운영(단,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 시수는 감축 불가)
-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Tip

■ **연계 자유학기**

- 중학교 2~3학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학기당 2개 영역 이상 중점 연계 운영(주제선택 활동은 학기별 필수)
- 학기별/영역별 운영 시수는 학교자율 결정하되, 유의미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수를 확보
- 주제선택 활동은 활용한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함

교육과정	자유학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활동	• 한 학기 170시간 이상 이상 • 4개 영역(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운영	미운영
유의사항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51시간(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	자유학기 취지를 살린 자유학기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수업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 심층 탐구 수업,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험·실습, 프로젝트 등 다양한 참여형 수업 • 진로탐색, 주제선택과 연계한 학생주도 참여형 수업 • 교과-자유학기 연계의 다양한 학습경험의 제공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 심층 탐구 수업,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험·실습, 프로젝트 등 다양한 참여형 수업 • 1학기 학습경험(자유학기 활동)과 교수학습 연계 융·복합 수업 활성화 • '자기 생각 기르기' 논술형평가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수업
평가	• 자유학기에만 일제식 지필평가 미실시 • 교과 성취도 미산출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	• 일제식 지필평가 실시 가능 • 교과서성취도 5단계(A-E) 또는 3단계(A-C) 산출 ※ 지필평가에서 학교가 정한 일정비율 논술형 평가 실시

③ 연계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2개 영역 이상 편성·운영(단, 주제선택 활동 학기별 필수 운영)
- 성장과 발달 등에 관한 사항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또는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학생 대상으로 기록 권장)

  ※ 학기별/영역별 운영 시수는 학교 자율 결정

  ※ 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부터 2, 3학년 연계 자유학기는 미운영하며,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한 주제 중심의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진로연계교육 등으로 운영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 학교급 전환기(3학년 2학기)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집중 편성·운영 가능

6 고교학점제 운영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잠재력을 이끄는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세부업무명

1. 고교학점제 개념 및 운영 체계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 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고교학점제 개념

-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선택과 책임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에 있음

②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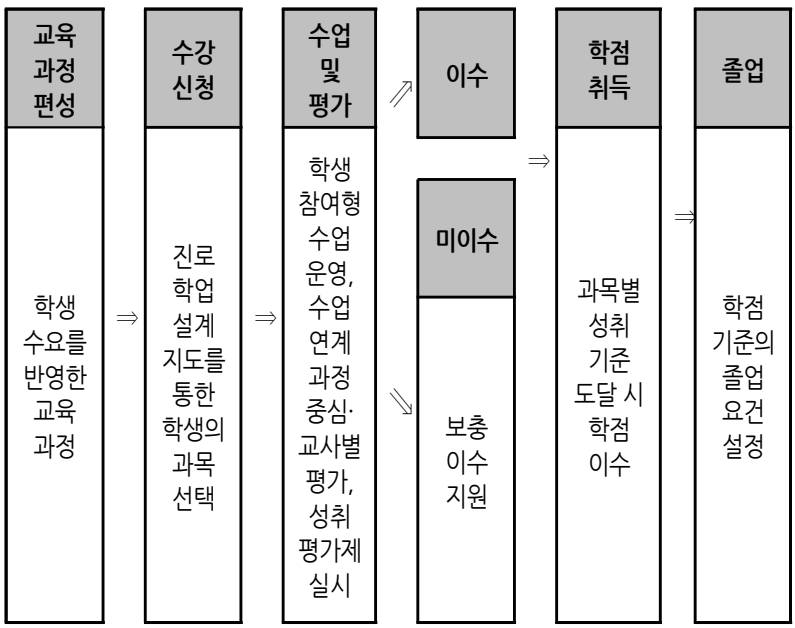

-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절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 체계화
-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

세부업무명

2. 경기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 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경기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 신청
- 각 학기별로 학생 선택 과목 안내 및 수요 조사 실시,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 학교가 편성한 교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수강 변경 기간을 두어 교과목으로 변경 기회 부여

• 교실 및 교사
- 선택 과목 수업반의 분반 기준 인원에 따른 과목별 교실 구성
- 담당 수업 조정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및 교실 배정
- 담임/비담임 구분 관행을 넘어서 모든 교사가 함께 학생 지도에 임한다는 원칙에 공감
- 학생에 대한 멘토링, 진로 상담, 생활 상담, 행정 업무 등 처리
- 복수 담임제 및 2~3년 담임 연임제, 멘토 담임제 등 다양한 방법 고려

• 공간
-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교과 교실 및 러닝센터, 공용 공간 배치
- 각 교과의 성격 및 수업 운영 방식에 맞게 공간 재구성
- 학교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이에 맞게 공간 구성

• 수업 및 학생평가
- 학생 수강 신청에 따른 수업 시간표 편성 및 과목별 수업반 편성·운영
-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정 중심의 성취평가제 시행
- 기존의 지식 습득 중심의 수업 운영 및 학생 간 서열을 중시하는 평가 제도에서 역량 중심 수업 운영, 수업의 과정에서 수시 평가를 통해 과정적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학점 취득 및 졸업
-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기준 충족 시 학점 부여 및 누적 학점이 기준 통과 시 졸업 인정

② 2024년 경기도 모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을 통한 학점제 단계적 이행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 연구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등에 대한 현안 문제, 제도 개선 사항 등 연구·개발·검증 실시

- 준비학교는 준비학교 운영 과제에 따라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준비학교 공통 과제 수행

• 중점 운영 과제

-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 신청 방법(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수업 방법 개선(미이수 최소화를 위한 과정적 처방 포함), 평가 방법 개선(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 등)

• 연구학교 중점 운영 내용

구분	운영 내용	특색 과제(예시)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2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진로집중학기제 운영
3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절대평가 체제 구현 융복합수업(교과 간, 기초교과 내 융복합 수업)
4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5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세부업무명

3. 학교 공간 조성 사업

관련근거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 2023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

주요내용

①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목적

• 고교학점제 연계 교과교실제 기준 개편

•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

• 학교환경 지원 내실화

②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의 추진 방향

• 학점제형 공간 조성 추진 방향

-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기반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지원함(교육부, 2021)

• AI·AR 및 IoT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습의 시·공간적 제한과 가상 공간과의 경계를 허무는 첨단 교수·학습 환경 구축

•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공간 설계에 참여하여 사용자 참여 중심의 설계에 따른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조화

•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구현과 학급 단위 수업 등 정형화된 틀을 깨기 위한 융·복합적 학습 공간 필요

• 학생 참여 중심의 개별 학습을 토대로 구성원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협력적 학습 공간 마련

Tip

■ **참고자료**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사업 추진 계획(양식)

•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세부업무명

4. 최소 성취수준 보장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최소 성취수준 의미

-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
-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해당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도달
40% 미만	**I**	**↓미도달**

②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필요성

-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필요
  -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하여 개별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고등학교의 경우 학습의 누적 결손을 시기적으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후의 진로·진학이 곧바로 사회생활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 필요
  - 교과학습에 대한 적절한 질 관리
- 해당 과목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교육 활동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필요
  - 학습 결과만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 피드백과 추후 지도

③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방향

-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지원
-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방 지도하는데 중점
- 해당 과목의 과목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교육활동 운영

Tip

■ **참고자료**

- 2024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
- 2023 고등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워크북

Tip

■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을 위한 활용 도구**

- 교과 교사가 개별적으로 개발한 평가 도구
- 학교 차원(교과협의회 등)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
- 교육(지원)청에서 개발·보급한 평가 도구
- 학기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평가 도구
- 국가 수준 평가(학업성취도 평가, 검정고시 등)의 기출 평가 도구 등

④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과정

- 학기 시작 전, 수업 및 평가를 계획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기본 운영계획 수립(학기 단위)
  - 교과협의회를 통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및 도달 기준 설정
  - 과목별 수업 및 평가(피드백) 계획 수립
  -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 학기 초,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조기 발견(진단평가, 형성평가 등)
  - 미도달 예상 학생 선제적 지도(학습 상담, 학습 코칭, 맞춤형 수업 지도 등)
- 학기 중, 미도달 예방을 위한 수업 설계 및 실천
  - 수업 과정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통해 과정 중심 피드백 강화
  - 지속적인 학업 상담 및 학습 이력 관리
  - 과목별 미도달 예방을 위한 보충 지도(과제, 온라인 보충학습, 학습 동아리 등)
- 학기 말, 미도달 학생 지도
  - 학기 말 평가 후 미도달 학생 파악
  -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진행

⑤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평가 계획 수립

-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하여 최소 성취수준 설정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교과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대하여 최소 성취수준 설정
-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도달 기준(과목별 학업성취율 40%) 기재
- 단원/영역/핵심 개념별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개발 및 작성
-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지도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⑥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피드백) 설계 과정

- 교과 영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및 성취수준(단원/영역별) 설정
  - 단원/영역별 성취기준 분석
  -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의 재구성
- 교과 영역(단원)별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 교과 영역(단원)별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분석 및 재진술
- 교과 영역(단원)별 평가 내용 파악
  - 교과 영역(단원)별 세부 평가내용 파악(최소 성취수준 내용 영역, 평가요소 등)
- 교수·학습 활동 전개 및 과정 중심 피드백
  - 각 차시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속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통한 단계별 과정 중심 피드백
-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결과 피드백
  - 단원별 평가내용에 맞는 총괄평가를 통해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최종 피드백

7 결·보강 운영 계획 및 보결 수업 관리

교사들의 출장, 휴가, 공가, 결근, 병가, 조퇴 등으로 인한 결강 시간을 사전계획에 의해 보강 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

세부업무명

1. 결·보강 운영 계획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주요내용

① 전년도 결·보강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② 결·보강 계획 수립

- 교직원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 교사들의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보강 기준을 정하여 실시 방안 모색
- 계획 수립(목적, 방침, 세부 추진계획 등)

③ 학교규정집에 결·보강 계획 수록

④ 교직원협의회 시 전체 내용 연수

Tip

■ 결·보강 계획(예시)

세부업무명

2. 결강에 따른 수업 교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주요내용

① 결·보강 사유가 발생하면 결·보강 업무담당자에게 알림

② 공적 업무일 경우에는 결·보강 업무담당자에 의해 교환수업 실시

③ 사적인 경우 결강 교사가 개인적으로 교환하여 결·보강 업무담당자에게 알림

④ 학생의 학습권, 교과별 연간기준수업시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환수업을 실시하되 교환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보강 순위에 따라 보강수업 실시

⑤ 교환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환교사의 서명을 받아 관리자 결재 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⑥ 업무담당자는 하루 전에 해당 학급에 공지하여 수업 준비를 하게 함

⑦ 교환수업이 불가능하여 교과별 법정수업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여 수업시수를 확보

⑧ 나이스 [교육과정-시간표관리]에서 입력 및 처리

※ 보결수업을 한 교원에게는 '공립 중등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Tip

■ 교환수업계획서(예시)

Tip

■ 공립 중등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

8 방학 계획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교원들의 현지 연수를 통하여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세부업무명

1. 방학 계획 수립 및 방학식

Tip

■ **참고자료 및 각종 서식**

- 여름방학 계획서(예시)
- 겨울방학 계획서(예시)
- 방학식 기안문(예시)
- 사계절방학
- 공무외의 국외여행 지침
- 국외자율연수 계획

Tip

■ **유의사항**

- 각 부서별 각종 장부 및 열쇠를 근무조에서 관리하여 업무 공백 발생 예방
- 방학 기간 중 처리 예정 공문은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작성
- 시설물 관리 철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주요내용

① 방학 계획 수립

- 학교 방학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일수를 파악하고 각종 국경일, 공휴일, 현충일, 기념일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 설정
  - 사계절 방학 운영 권장
  - 학교행사 계획 수립
  - 부서별 업무 반영
  - 근무조 편성
  - 교직원 연수 허가원 제출
  - 교원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할 경우,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소집학급 편성 및 관리계획
  - 방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교외 생활지도 계획 수립
- 학년 방학 세부 계획 수립
  - 개학일 안내, 과제 안내, 도서관시설 개방 시간 안내, 안전생활지도, 기타 행사 알림
- 근무조 운영계획 수립
  - 업무처리 요령 및 공문서 처리(교무업무시스템 관리, 학교알지, 학부모 서비스 승인 등)
  - 학생 생활지도 계획(방학 중 등교 아동 생활안전 지도 및 외부인 단속)
  - 비상 연락망 보완·정비
  - 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 또는 수준별 보충학습 계획

② 방학식 준비

- 식장 및 식순 준비
- 상장 및 상품 준비
- 방송시설 점검
-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

③ 방학식 진행 순서(예시)

- 개식사 → 국민의례 → 상장 및 상품 수여 → 학교장 훈화 → 방학 중 유의사항 전달 → 교가 제창 → 폐식사

9 입학식·졸업식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졸업식을 통해 졸업생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입학식

Tip

■ **참고자료 및 각종 서식**
- 입학준비계획
- 안내장(예시)
- 현수막(예시)
- 입학허가서(예시)
- 신입생선언문(예시)
- 학교장 환영사
- 사회자 시나리오

Tip

■ **입학식 진행 순서(예시)**
- 개식사 → 국민의례 → 학교장 소개(교감) → 입학 허가 선언(학교장) → 신입생 선서(신입생 대표) → 신입생, 재학생 상견례 → 교감, 보직교사 소개(학교장) → 전입교사 및 학급담임, 부담임 소개(교감) → 환영사(학교장) → 축사 → 교가 제창(방송, 지휘) → 폐식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주요내용

① 입학식 진행 계획 수립
- 입학 준비 계획
- 물품구입 신청
- 안내장 제작
- 현수막 제작
- 학교 홈페이지 안내

② 입학식 준비
- 안내장 발송(10일 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관내 유관기관, 동창회 임원
- 입학식순 작성 및 게시
- 방송시설 점검, 사진촬영 및 비디오 녹화 준비
- 식장 준비 확인 및 주차, 내빈안내 점검
- 입학 허가서, 신입생 선서문
- 학교장 환영사 및 내빈축사
- 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 전입교사 소개자료 및 업무분장 준비
-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
- 당일 일정 안내문 준비

세부업무명

2. 졸업식

Tip

■ **참고자료 및 각종 서식**
- 졸업식 업무 분장
- 생활지도계획
- 초청장
- 송사
- 답사
- 회고사
- 축사
- 학사보고
- 사회자 시나리오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주요내용

① 졸업식 계획 수립
- 졸업식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 졸업식 전후 생활지도 계획

② 졸업식 준비
- 초청장 발송
- 졸업대장 작성, 졸업장·상장·표창장 인쇄
- 현수막, 입간판, 졸업식순 게시

Tip

■ 졸업식 진행 순서(예시)
- 개식사 → 국민의례 → 학사보고(교감) → 졸업장 수여 → 표창장 및 상장 수여 → 회고사(학교장) → 축사(내빈) → 송사(재학생 대표) → 답사(졸업생 대표) → 졸업가 제창 → 교가 제창 및 폐식사

- 방송시설 점검 및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준비
- 식장 준비 확인 및 주차, 내빈안내 점검
- 송사, 답사 준비(배경음악, 음량조절)
- 학교장 회고사 준비 및 내빈축사 확인
- 학사보고 작성 및 감사패 준비
-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
- 상장, 상품 포장
- 졸업식 노래 지도
- 내빈 참석 여부, 상장 전수방법 확인

10 진급 및 졸업 사정회

진급 및 졸업 사정 규정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사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세부업무명

1. 진급 및 졸업 사정회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Tip

■ 참고자료 및 각종 서식
- 사정회 시나리오
- 사정회 규정(예시)
- 사정안(학년용)

Tip

■ 유의사항
- 사정안 작성 전에 사정규정 및 포상규정 연수와 개정 절차를 안내
- 유급대상자는 학교의 학칙에 의하여 결정
- 포상대상자는 학생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 후 사정회를 개최하여 결정

■ 사정회 진행 순서
- 사정규정 낭독 및 확인 → 학급별 사정안 및 학년별 사정안 발표 → 사정안 심의 → 진급 및 졸업여부 심의 → 학교장 사정결과 발표

주요내용

① 사정회 준비(진급 및 졸업 사정안 작성)
- 진급 및 졸업 사정 규정 안내
- 학년·학급별 보조자료 준비
  - 성적 현황
  - 교내상 및 대외상 대상자 추천
  -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미달 학생 및 전·편입생 포함 여부 확인
- 학급 사정안 및 학년별 사정안 작성
- 학생 포상계획 수립(상품, 예산 확보)

② 사정회의 후속 업무처리
- 사정회 결과 결재
- 유급 대상자 선별
- 진급 및 졸업 대상자 선별
  - 교무업무시스템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 진급대상자: 신학년 반편성(선택과목, 성적 등 고려)
  - 진로 상황 파악 및 추수 지도
- 종업식 및 시업식 준비
- 학생자료 인계·인수(다음 학년도 부장) 및 서류 이관(행정실)

제3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교생활기록의 처리요령, 자료입력, 자료점검, 자료보존, 자료정정</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3학년도 중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5.)
○ 2023학년도 고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5.)</td></tr>
</table>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활동 내용을 바르게 작성 · 보존함으로써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Tip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도움자료
- 2024 학생부 기재요령(중학교)주요개정사항
- 2024 학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주요개정사항
- 2023 중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 2023 고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Tip

■ 학생이 전편입학, 재취학할 경우 처리요령
-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

Tip

■ 학교생활기록의 각 호의 자료
- 인적사항
- 학적사항
- 출결상황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교과학습 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81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내용

① 처리 요령
- 입력 및 정정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이 원칙
-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 입력
-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 보조부는 전산입력·관리(학생상담보조부는 제외)

② 자료 입력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 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③ 자료 점검
- 학교별로 연수운영계획을 정하여 연 2시간 이상 교직원 연수 실시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작업은 당해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
- 학교생활기록부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

④ 자료 보존
- 학교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준영구 보존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

Tip

■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 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은 경우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가된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Tip

■ **정정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

Tip

■ **정정대장 제공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에 의한 제외 제공 사항**

-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Tip

■ **유의사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입력은 2024학년도 1학년 학생만 적용하며, 2·3학년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입력함
- 202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재·편입학·복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며, 학업 중단 이전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절차를 통해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옮겨 적음(유급으로 인하여 2024학년도 1학년인 경우 포함).

- 학교폭력 신고일자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 기준)		
		2024. 3. 1. 이후	2023. 3. 1~2024. 2. 29.	2023. 2. 28. 이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⑤ 자료 정정

- 학교의 학년도는 「초 · 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하며 동일 학년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하나의 정정대장을 사용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
-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미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은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제적, 자퇴, 퇴학 등 재학 중이 아닌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정정 가능하며, 현재 학년도 수정은 학적반영을 취소하여 수정하고, 이전 학년도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이용하여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는 처리 불가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 제공 가능

제4편 교수·학습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교수·학습</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기초학력 보장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질문과 탐구로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유하는 학생, 깊이있는 수업 설계
·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결손 해소
· 교과협의회를 통한 학업성적관리</td></tr>
<tr><td rowspan="4">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생주도 맞춤형 수업</td><td></td></tr>
<tr><td>2. 기초학력 보장</td><td></td></tr>
<tr><td>3. 교과협의회 운영</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2024. 1.)
○ 2024 교육과정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4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4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td></tr>
</table>

1 학생주도 맞춤형 수업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고려해 교수·학습 연간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맞춤형 성장과 책임교육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교수·학습계획 수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4학년도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경기미래교육 교수·학습 목표: '사유하는 학생, 깊이있는 수업'

• 사유하는 학생

> 개인의 경험, 지식, 문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학생

• 깊이있는 수업

> 학생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으로서,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어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 등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수업

② 사유하는 학생, 깊이있는 수업 설계

•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

- 사유하는 학생,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설계
-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나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수업 설계

≪ 핵심아이디어 중심 수업설계 구성 모식도 ≫

• 탐구-실행-성찰 과정으로 '깊이있는 수업'

-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
- 질문 기반 탐구-실행-성찰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수업·평가 프레임워크 적용

≪탐구-실행-성찰에 기반한 깊이있는 수업 설계(예시) ≫

Tip

■ **핵심 아이디어**
영역을 아우르면서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학습의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

■ **탐구질문**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나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지적 호기심으로 연결시키는 질문
(사실질문→개념질문→토론질문)

■ **정보공시개정에 따른 중등 교수·학습 평가계획서 작성 도움자료**
(깊이있는 수업 반영)

• **삶의 확장으로 역량을 키우는 수업**
- 개인에서 공동체, 세계로 확장 가능한 수업설계 맥락 유형화
- 삶의 맥락을 중심으로 교과 간, 학년 간,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수업 활성화

구분	수업 설계에서 '삶의 맥락' 구현 내용
삶의 맥락* (경기도교육청)	개인과 사회의 행복 / 정체성과 주도성 / 책임있는 민주시민 / 공감과 상호협력 / 포용력과 이해력 / 보편적 사회복지 / 생태전환과 기후변화 / 디지털과 AI 구현

③ 자율과 책임 중심 학생 맞춤형 수업

•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수업**
-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현하는 맞춤형 수업
- 학생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최소 성취수준 및 기초소양 함양
-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맞춤형 수업 설계
-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실천으로 수업 속 기초·기본학력 보장

≪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깊이있는 수업 설계(안) ≫

• **상호작용이 강화된 맞춤형 수업 설계**
- 에듀테크와 인간다움이 공존하는 관계중심 맞춤형 수업 설계
- AI 코스웨어 및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으로 학생 학습 동기 제고
- 하이러닝 활용 AI 진단과 통합학습창 기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④ 학생 이해를 지원하는 피드백 및 피드포워드 강화

-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협력적 과정중심 피드백 강화
-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주기적인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
- 학생별 학습성취 상황에 맞는 개별 맞춤형 피드백 및 촘촘한 학습 이력 관리 강화
- 수업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진단-학습-피드백

⑤ 교사 교육과정 설계 시 중점사항

- 교사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동료 교사 및 다양한 교육 주체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운영·개선한다.
- 교사는 학생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과 평가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설계하고 운영한다.
- 학생이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현상을 다각도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다.

Tip

■ **하이러닝**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 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 **협력적 과정 중심 피드백**
수업 과정 속 상호작용으로 학생의 현재 학습 수준과 학습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여 성공적 학습에 이르도록 돕는 전략

■ **피드포워드**
피드백이 과정의 결과에 대한 도움이라면, 피드포워드는 미래에 대한 계획 및 구조화에 대한 도움을 의미함

■ **교사 교육과정**
학생 삶을 중심으로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도록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 **교사 교육과정 도움자료**

⑥ 교수·학습 운영 시 중점사항

- 학생들이 심층 탐구를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상호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교육 공간과 환경을 마련한다.

⑦ 도-지역-학교 연계 깊이있는 수업 지원

- 경기 탐구수업공동체 기반 교원 역량 강화

'탐구수업공동체'란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수업·평가를 연구하는 교사공동체 학습, 기존의 교사학습공동체를 수업중심으로 초점화 및 재구조화하여 깊이있는 학습과 삶과 연계된 수업·평가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수업사례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는 교사 학습공동체

- 실습중심 질문과 탐구기반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 경기 수업·평가 현장지원단과 함께 실습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상시화
- 학교 안과 밖의 탐구수업공동체를 통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깊이있는 수업 모델 확산을 위한 학교 내, 연구 학교 간 수업 공개 및 나눔활성화, 우수수업사례 네트워크 구축
- 경기교사온TV 수업 동영상 및 수업 나눔 공개

⑧ 공동체성 기반의 일상적 수업 나눔과 협력적 성찰

- **(단위학교) 공동체 기반의 깊이있는 수업공개-나눔-성찰 활성화**
  - 수업 고민이 존중되고 수업대화가 일상화되는 수업나눔 문화조성
  - 탐구-실행-성찰의 과정이 있는 '깊이있는 수업 관점표' 수업보기 확대
  - 동료장학 연계 수업 공개 후 수업나눔 및 성찰의 장 '수업톡톡'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별 일상적 수업 나눔을 통한 협력적 문화조성**
  - 지역 탐구수업공동체, 지역교육연구회, 지역수석교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중심 수업 나눔 활성화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교수·학습 사례나눔 및 역량 지원
  - 실습중심 수업평가 현장지원단 연계 컨설팅 및 연수 활성화
- **(단위학교) 공동체 기반의 깊이있는 수업공개-나눔-성찰 활성화**
  -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연계 지역별 특색있는'수업나눔 한마당'(학기별 1회)
  - 25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공유하는'경기 좋은수업 나눔주간'운영(연중 1회)
  - 경기 도단위, 지역단위 탐구수업공동체 연계'수업나눔 페스티벌'운영 (연중)
  - 경기 교수.학습 채널'경기교사온TV'기반 실시간 스트리밍 연수(연중)
  - 경기도교육연수원 연계 수업 전문성 강화 시즌3 수업전문성 강화 직무연수

Tip

■ **교수학습 설계 도움 자료**

- 경기교육모아
- 경기교사온TV
- 쌍방향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 '지식샘터'
-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잇다'

2 기초학력 보장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진단·보정·관리하며, 학습 부진 요인을 제거하여 발달 수준에 적합한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기초학력 보장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기초학력 보장법」
-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주요내용

①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학교장)·부위원장(1인) 포함 8인 내외, 간사(학습지원 담당교원)
- 학기별 1회(학년 초, 학년 말) 이상 개최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 역할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
  - 체계적인 진단도구 선정 및 결과 관리 등의 사항 현의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② 기초학력 진단검사

- 학습 수준 진단검사

진단영역	3R's 진단	교과학습진단
진단내용	읽기, 쓰기, 셈하기	(초) 국어, 수학 필수 (중고) 국어, 수학, 영어 필수
진단대상	초1~고2	초4~고2
진단도구 (예시)	-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시스템 - 교사 관찰, 면접, 학습 상담 - 배·이·스 캠프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 학교 자체 개발 문항 등 - 한글 또박또박

- 정서·심리·특수요인 진단

대상	진단도구	지원
초	학습저해요인진단, 사회·정서역량검사, 학교생활적응도검사, 사회학습동기검사, 수학학습동기검사 등	진단-보정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초·중	학습역량검사, 학습유형검사, 정서행동환경검사(EBEQ) 등	
초·중·고	읽기·쓰기 검사 도구, 한글또박또박, 정서행동특성 검사도구 등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③ 책임교육학년(초3, 중1) 대상 기초학력 진단검사 강화

- 목적: 학업성취 수준 진단과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진단 정교화
- 내용: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 연계하여 다중적·심층적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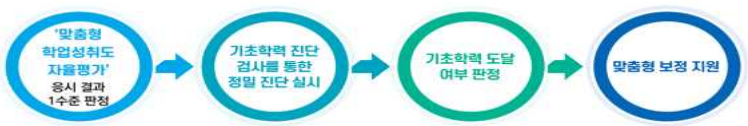

Tip

■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충족하는 학력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 제1항)

■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 중등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사용법 영상

Tip

■ 경기도교육청 「최소한의 성취기준」 해당 영역 및 범위

대상		3R's
초	1~2학년	한글해득, 읽기 유창성, 기초연산
	3학년	초등학교용 3R's
	4~6학년	초등학교용 3R's
중	1~3학년	중학교용 3R's
고	1~2학년	고등학교용 3R's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가이드북

Tip

■ **더(T·H·E) 자람 프로젝트**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학습지원(Teaching), 신체 건강(Health), 사회성 및 심리·정서(Emotion)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책임교육학년(군) 제로 운영

■**학교맞춤선택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튜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중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배정, 정산, 결과보고 간소화를 통해 업무경감을 지원하는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기존의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강화한 센터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단체

④ 학생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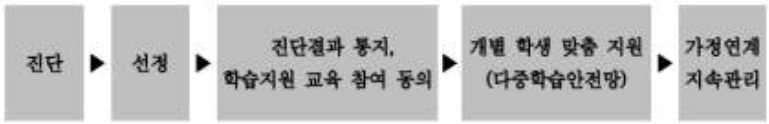

⑤ 경기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영역	다중학습안전망	기초학력보장 사업명
기초학력보장지원	수업내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학교 안	두드림학교
더 자람 프로젝트 책임교육학년지원 초3학년, 중1학년	수업 내, 학교 안	학습지원튜터
	학교 안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교 밖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⑥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 목적: 기초학력보장 사업 통합을 통한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
- 내용

영역	선택 사업명	내용
기초학력보장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 지원 및 통합 지원 체계
	두드림학교	
더 자람 프로젝트 (책임교육학년지원) 초3학년, 중1학년	학습지원튜터	전체 학교급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책임교육학년은 반드시 포함하여 집중지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⑦ 향상도 검사

- 목적: 데이터 기반 기초학력 진단·보정을 통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
- 시기: 1차(6월), 2차(10월), 3차(12월)
- 대상: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습지원대상학생
- 방법: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⑧ 지역 기반 기초학습지원 시스템 강화

- 목적: 다양한 특수요인으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교별 학생 상황, 특성, 수준 등에 맞는 통합지원
- 추진절차

계획 수립	운영		지원
도교육청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1-2월	3월	4-12월	연중
· 운영계획 수립 · 예산 배정 · 학습상담사 위촉 및 연수	· 대상 학생 신청 · 난독 바우처 기관 공고 및 계약	·1:1 맞춤 학습상담 ·방학 중 한글 해득 프로그램 ·전문기관 연계 지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만족도조사(12월)	·담임(교과)교사 연수 ·기초학력 성과 관리 및 정책 연구 ·워크숍 및 컨설팅 ·성과공유회 운영 ·도움 자료 개발 및 보급

⑨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 목적: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사업 성과 관리
- 역할: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 지정 사항

⑩ **유의사항**: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세부업무명

2. 기초학력보장사업

관련근거

◦ 2024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수업 내]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 지원 인력: 교당 1명 이상 강사 채용
- 협력 시수: 주당 15시간 미만(1시간 협의 시간 포함)
- 협력 교과: (초등학교) 국어, 수학 / (중학교) 국어, 수학, 영어
-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진단 실시
- 기초학력 협력수업 운영 및 타 사업과 연계한 통합 지원

② [학교 안] 두드림 학교

- 3R's와 교과학습 진단검사 결과, 학생 관찰, 학생.학부모 상담 등 담임교사의 종합적 판단 및 공동체 협의를 통한 선정
-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에게 교감,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두드림 팀을 중심으로 지도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교과보충 지도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유의

※ 기초학력 부족 원인에 따른 맞춤형 학습코칭.상담, 학력향상 지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 구입 등

③ 더(T·H·E) 자람 프로젝트 학습 지원

- **[학교 안] 학습지원튜터**
  -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진단 결과 집중지원 필요 학생
  - 책임교육학년(초3, 중1) 집중지원을 위해 초·중학교 우선 지원
  - 책임교육학년 지원으로 우선 지원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타 학년 지원 가능

※ 에듀테크 활용 학습부진 수준 및 요인 진단, 학습지도, 학습상담, 학습코칭,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개인별 맞춤형 지도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대일** 또는 **소그룹 운영** 지원

- **[학교 안]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중·하위수준 학생
  - 학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보충 지도 및 학습컨설팅(학습, 진로·진학 상담 등), 방학 중 학습도약기간 운영
  - 책임교육학년 지원으로 우선 지원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타 학년 지원 가능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향상도를 진단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피드백 활성화

※ 기초학력과 연관된 교과보충 지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학습컨설팅 운영 가능

Tip

■ 중등 기초학력 보장 도움자료 웹진

■ 기초학력보장 사업계획서
-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 두드림 학교
- 학습지원튜터

3 교과협의회 운영

동 교과 또는 유사 교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과협의회 조직 · 운영을 통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 정보 공유, 학습자료 개발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세부업무명

1. 교과협의회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Tip

■ 교과협의회 협의록 양식(예시)

주요내용

①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단위학교 동교과 협의회 및 지역 교과 협의회
- 각 교과부장 선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개발 등에 관한 계획수립

② 단위학교 교과협의회 활동

- 학년 초 협의
  - 교과서 선정, 시수 배당 및 교과 업무분장
  -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연간지도 계획 수립
  - 기초학력 보장 및 최소 학업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예방 및 지도방안
  - 교육과정 개설·운영·평가
- 수행평가를 위한 협의
  - 교과별, 학년별 반영비율 및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세부기준 설정
  - 수행평가 성적처리방법, 결과의 활용
  - 기 결재된 수행평가 기준 변경 시 동 교과교사 간 협의
- 지필평가를 위한 협의
  - **[평가 전]** 출제방향, 출제범위, 평가목표, 문항 수, 문항의 유형 및 형태, 문항의 배점, 출제 및 편집 방법, 예상 평균, 출제상의 유의점,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확인, 이의 신청 및 이의에 대한 처리방안
  - **[평가 후]** 정정사항: 교과협의(처리방안)→협의록 작성→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정→오류수정→문항분석 및 피드백 계획
- 학기 말 협의
  - 전입생 수행평가, 지필평가 성취도 분석 및 피드백
- 수업 연구 협의
  - 교과별 또는 유사 과목군
  - 자율장학계획에 반영

③ 지역교과협의회 활동

- 연수활동: 자체연수회, 세미나 개최, 공개수업 및 참관
- 제작활동: 회보 및 소식지 발간, 수업보조자료 제작
- 행사주관: 학생 관련 각종 행사 주관

제5편 미래교육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미래교육</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운영 체제 수립 및 학교자율과제 운영
· IB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운영 목적, 학교 운영 과제, 중점 추진 내용, 중장기 계획
· 에듀테크 활용 교육 추진 배경 및 목표, 세부 추진 계획</td></tr>
<tr><td rowspan="4">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자율과제</td><td></td></tr>
<tr><td>2. IB</td><td></td></tr>
<tr><td>3. 에듀테크 활용 교육</td><td></td></tr>
<tr><td>참고 자료</td><td colspan="2">◦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2023학년도 경기미래교육 운영 계획(학교정책과, 2022. 12.)
◦ 2024 학교자율과제 운영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3. 12.)
◦ 2024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3. 12.)
◦ 2024 에듀테크활용교육 기본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3. 12.)</td></tr>
</table>

1 학교자율과제

학교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여 교육공동체의 숙의를 통해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과제를 계획 · 실행 · 평가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자율과제의 이해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학교자율과제 운영계획

주요내용

① 추진 목적

-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의 본질 회복
- 교육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
-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을 통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② 추진 방침

-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작동 기제로 모든 학교의 균형 있는 지원
- 학교 스스로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 발휘
- 모든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의 선순환

③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운영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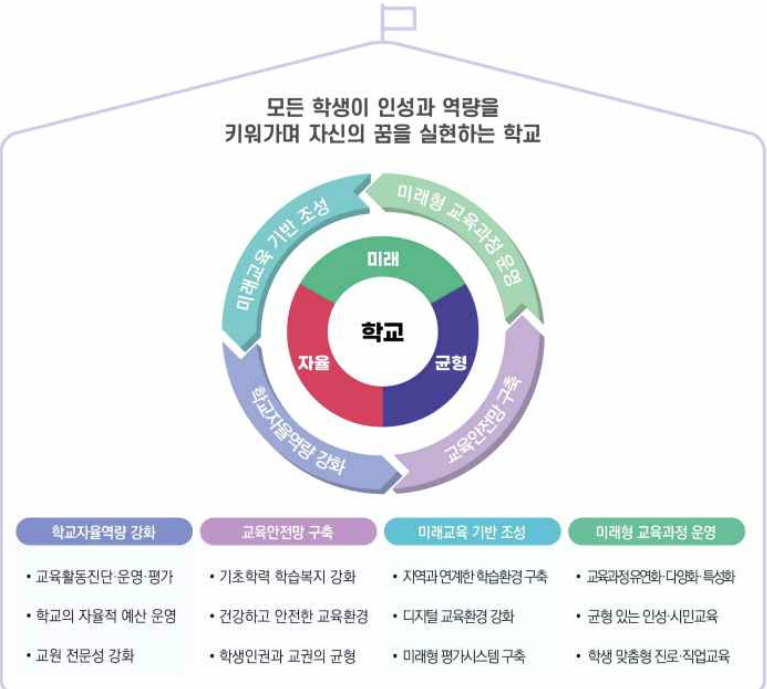

④ 기대 효과

- 학교자율역량을 기반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학생 성장 지원
- 모든 학교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 확보
-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효능감 확대

Tip

■ **학교 운영 체제의 선순환 구조**

- 학교 운영 체제의 4대 영역(학교 자율역량 강화,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기반 조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줍니다.

세부업무명

2. 학교자율과제 세부 운영계획

Tip

■ 학교자율과제
-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

Tip

■ 학교자율과정
- 학생이 주체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경험의 질과 폭을 심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개발하는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설계의 틀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학교자율과제 운영계획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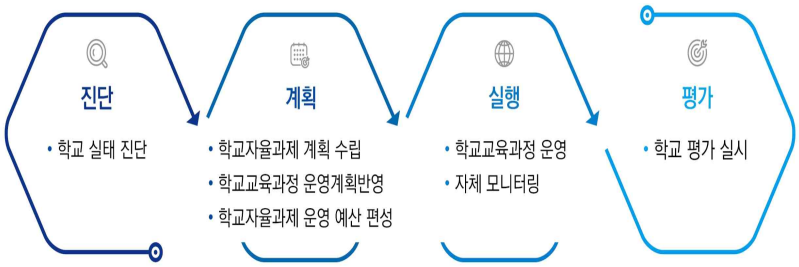

① [진단] 학교의 현안 들여다보기

-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 확인
- 학교비전 및 교육목표에 기반한 실천전략 점검, 현안 도출
- 경기미래교육 학교 운영 체제에 따른 학교 실태 진단

② [계획] 학교자율과제 발굴하기

- 학교자율과제 설계 및 계획 수립
  - 학교 구성원의 숙의를 거쳐 학교가 집중해서 실행할 과제 도출
  -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의 성장을 위한 과제 선정
- 학교자율과제 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 학교자율과제 운영 예산 편성
  - 교육공동체 협력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편성 (『학교기본운영비 중 규모별 표준교육비』 총액의 5% 이상 편성)

③ [실행] 학교자율과제 구현하기

- 학교자율과제를 중점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과제 계획 공유
  -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및 학교자율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학교자율과제]	☑ [학교자율과정]	☑ [학교자율시간]
- 경기교육정책 - 학교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	- 경기도교육과정 -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별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 국가교육과정(2022 개정) -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시간

- 학교자율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협의회 및 연수 실시
-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하여 예산 사용

• 중간 점검을 위한 자체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 실시
- 학교 안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기존 계획 유연하게 보완 운영
- 희망교, 교육지원청 학교자율과제 실행 과정 컨설팅 참여

④ [평가]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나아가기

• 학교평가 연계 자율과제 실행과정 운영 평가 일원화
- 2024학년도 학교평가계획에 따라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진행

• 평가 결과는 차년도 학교자율과제 실행계획 내실화에 반영

2 IB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평생학습자를 길러주는 교육을 제공한다.

세부업무명

1. IB

Tip

■ IB 수업-평가
- 탐구-실행-성찰 중심 수업
- 질문을 통한 문제 발견
- 토의·토론 프로젝트
- 협력적 문제 해결
- 지속적 교사 피드백
- 공정한 논술형 평가시스템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배경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세계적 동향을 읽어내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서 자기주도 역량을 갖춘 글로컬 인재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단편적 지식 암기와 출제자 의도에 맞는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미래형 학습체제로의 전환 필요
-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대학 입시 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② 목적
- 탐구-실행-성찰 중심 수업 설계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 제고
-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공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역량을 키우는 수업-평가 확산으로 경기형 IB 운영 기반 마련

③ 방침
-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반한 지역별 초-중-고 연계 IB 학교 운영
-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기본-심화 과정의 체계적 연수 운영
- 도·지역·학교 단위 IB 리더십팀 조직 및 지역 간,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공동체의 IB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해자료 제작 및 설명회 개최

세부업무명

2. IB 세부 추진 계획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추진 체계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

목표
- **교사**: IB 수업 · 평가 전문가로 성장
- **학생**: 배움을 즐기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로 성장

주요 추진 과제

IB 프로그램 운영 확산 (2024년)	경기형 IB 기반 구축 (2025년)	경기형 IB 운영 (2026년)
▸관심·후보·인증학교 131교	▸관심·후보·인증학교 231교	▸관심·후보·인증학교 331교
▸국제공인 전문강사 누적 110명	▸국제공인 전문강사 누적 150명	▸국제공인 전문강사 누적 190명
▸대학 연계 IB 전문가 누적 180명	▸대학 연계 IB 전문가 누적 260명	▸대학 연계 IB 전문가 누적 340명
▸IBEN 및 채점관 양성 과정 도입	▸IBEN 및 채점관 양성 확대	▸IBEN 및 채점관 인력풀 구축
▸IB 논술형 평가 표집학교 시행	▸경기형 바칼로레아 시범도입	▸경기형 바칼로레아 시범운영

추진 전략
- ◆ 학교구성원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운영
- ◆ 생각을 꺼내는 IB 수업·평가의 적용 및 안정적 초-중-고 연계 교육
- ◆ 교원 실천 역량 강화(국제공인 전문강사 연수, 대학 연계 IB 전문가 과정 등)
- ◆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도교육청]
- 후보·인증학교 운영
-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
- IB 교육 전문가 양성
- IB 연계 진로·진학 설명회
- IB 학교 행·재정 지원
- IB 논술형 평가 표집 시행

[교육지원청]
- 관내 관심학교 운영 지원
- 지역 IB 리더십팀 조직·운영
- 관내 IB 이해 연수 운영 및 IB 학교 운영 사례 나눔
- 경기 IB 공유학교 운영(선택)
- 지역 협력 체제 구축

[학교]
- **IB 학교 단계별 운영**
  - -관심학교: IB 탐색
  - -후보학교: IB 교수학습 적용
  - -인증학교: IB 교수학습 안착
- **교원 실천 역량 강화 노력**
  - -IB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IB 워크숍 및 연수 참여
- **IB 교육환경 구축**
  - -IB 리더십팀 조직
  - -IB 학습 환경 구축
  - -IB 학교 문화 정착

[지역사회]
- 지역특성 반영 IB 학교 지원
- 지역 협력을 통한 경기형 IB 운영 기반 구축 지원
- 경기 IB 공유학교 운영 협력

[전문기관, 직속기관]
- IB 교육 전문가 양성
- IB 교수학습자료 한국어화
- IB 직무·원격 연수 운영
- IB 프로그램 효과성 정책연구

② IB 학교 단계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월드스쿨)
IB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학교	IB 교육활동을 도입하는 학교	IB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학교
• 관심학교에서 할 일 - IB 프로그램 탐색 - 교장 코디네이터 워크숍 참가 - IB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IB 본부와 학교정보 공유 - IB 리더십팀 조직	• 후보학교에서 할 일 - IB 수업·평가 적용 - 전교원 IB 워크숍 참여 - IB 수업 공개의 날 운영 - IB 운영 컨설팅 결과 반영 - IB 학교 운영 과제 실천	• 인증학교에서 할 일 - IB 수업·평가 운영 -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 - IB 학교 공개의 날 운영 - 안정적 IB 학교 시스템 운영 - IB 학교 운영 과제 실천
• 후보학교 신청	• 인증학교 신청	• 5년 주기 재인증 심사
	(평균 3개월~6개월 소요)	(평균 12개월~24개월 소요)

③ IB 학교 운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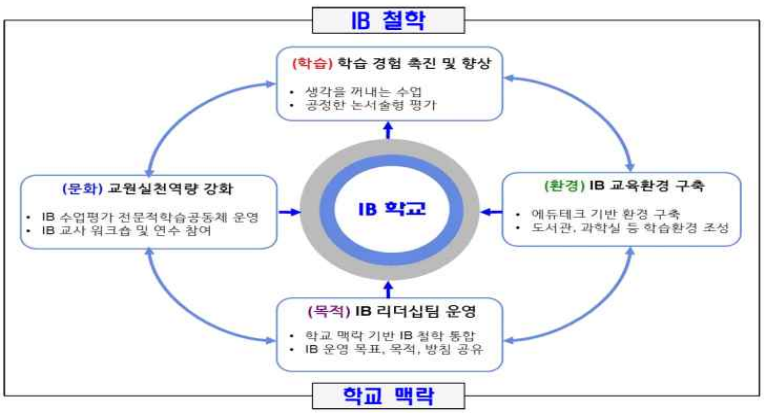

④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도교육청	○IB 학교 행 · 재정 지원 ○초·중·고 연계 및 지역별 균형 고려 후보학교 선정 ○후보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도단위 IB 리더십팀 구성 및 후보학교 수업·평가 컨설팅 지원 ○IB 전문가 지속 양성 및 전문가(채점관, 평가관) 인력풀 구축 ○IB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설명회 운영 ○IB DP 이수자 대입 연계 방안 모색 ○IB 안정적 운영을 위한 IB 본부 및 타시도 협업
교육지원청	○지역별 초·중·고 연계 관심학교 선정 심사 및 추천 ○지역단위 IB 리더십팀 구성 및 운영 ○관심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관심학교 지원 및 연수 운영 ○후보학교 IB 수업·평가 공개수업 운영 지원 ○IB 학교 운영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IB 전문가 과정 이수자 IB 학교 우선 배치 협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기 IB 공유학교 운영 지원 ○IB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체제 구축
IB 학교	○IB 학교 단계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관심학교: IB 탐색 및 철학 공유, 학교장 및 코디네이터 IB 워크숍 참석, 리더십팀 구성, IB 탐색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후보학교: 리더십팀 구성, 교육공동체 합의를 통한 학교 사명선언문 작성, IB 수업평가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IB 정책(언어정책, 평가정책, 포용성 정책, 학문적 진실성 정책) 수립 - 인증학교: 안정적 IB 학교 시스템 운영 및 5년 주기 재인증 ○IB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계획 및 운영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대상 IB 안내 및 홍보 ○학교급별, IB 학교 단계별 네트워크 활동 적극 참여 ○에듀테크, 도서관, 전시실, 과학실, 다목적실 등 교육환경 조성
직속기관	○IB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및 결과 환류 - 학교급별 IB 프로그램 이해 및 수업·평가 설계 연수 - 교육대상자별 IB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연수

⑤ 기대 효과

-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공감대 형성으로 IB 학교 운영 지속성 확보
- 경기형 IB 수업 설계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 신장 촉진

3 에듀테크 활용 교육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변화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한다.

세부업무명

1. 에듀테크 활용 교육 추진 목표 및 개요

Tip

■ 에듀테크 활용 교육
- AI 기반 코스웨어 및 교수·학습 플랫폼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을 구현하는 모든 교육활동

관련근거

◦ 2024 에듀테크 활용 교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추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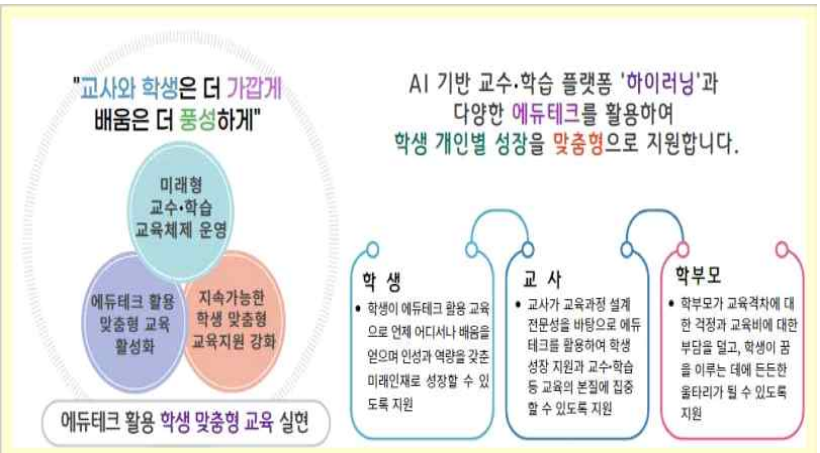

② 추진 목표

-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
  -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현장 중심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체제 강화, 정책연구와 사례 개발 및 확산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지역,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운영
  - 교원 역량강화 연수 확대를 통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지역별 연구네트워크 활성화와 현장 기반 자문체제 운영
  -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운영

세부업무명

2. 에듀테크 활용 교육 세부추진계획

관련근거

◦ 2024 에듀테크 활용 교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추진 배경

-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변화 필요성 증가
- 스마트기기의 보급, 디지털교과서의 보급,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요구 증대
- 디지털 활용의 격차 발생 등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교육 상황에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지원할 기반 마련 필요
- 기후환경의 변화, 학령 인구의 감소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의 필요성 대두
-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경쟁보다는 학생 맞춤형 성장으로,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 확대
- AI(인공지능)의 발달,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과 앎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미래형 교육과정 안착 필요
-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등 AI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른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활성화 토대 마련
- 코로나19 이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활동 확대

② 추진목표

③ 세부 추진 계획

목표 1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

-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

※ 하이러닝 이란?

○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교사의 수업설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 **추진방향**

- Hi Learning(참여학습)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배움에 참여**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나눈다.
- High Learning(성장학습)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한다.
- Hybrid Learning(융합학습)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경험을 확장하고, 기회를 확대**한다.

- 학교 현장 중심, 미래형 교수·학습 연구 및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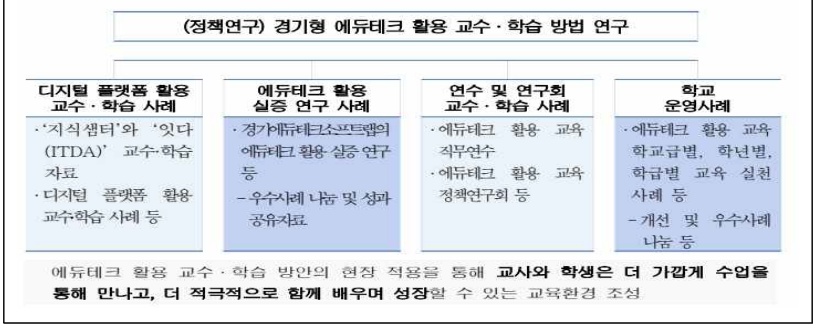

- 디지털교과서 및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목표 2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실천 및 적용
- 에듀테크 활용 교육 교원 역량 강화
- 에듀테크 활용 교육사례 발굴 및 확산

목표 3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네트워크 강화
-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 현장지원

④ 기대효과

-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학생이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 지원
-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를 운영
-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공교육의 신뢰도는 증가하고,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의 본질 회복 기반 마련

제6편 학업성적관리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업성적관리</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1호, 시행 2024.1.15.)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1-486호, 시행 2021.3.1.)</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교과별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제고
·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계획 수립
·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 교육평가의 신뢰성 확보</td></tr>
<tr><td rowspan="6">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td><td></td></tr>
<tr><td>2. 평가계획 수립</td><td></td></tr>
<tr><td>3. 지필평가 운영</td><td></td></tr>
<tr><td>4. 수행평가 운영</td><td></td></tr>
<tr><td>5. 출결</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4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교육과정정책과, 2024. 2.)</td></tr>
</table>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학년도 중학교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내용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
-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의견 수렴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 가능
  (평가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안건은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제한)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회의록)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기준 및 방법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 조치(이의제기, 재시험, 부정행위 여부 결정 등)
-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범위, 평가목표, 문항의 유형 및 형태, 시험시간, 출제 및 편집 방법 등) 및 지필평가 시험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
- 지필평가 평가 문항 오류 처리 방법, 수행평가의 결과물 보관기관
- 결시생 성적 산출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자유학기 및 연계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평가 기준 및 방법(중)
- 교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방식 등에 대한 사항(고)
- 기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2 평가계획 수립

교과별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제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업무명

1. 과목별 성취기준 확인

Tip

■ 학생평가지원포털
- 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인(성취평가제)
-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교 및 학생 특성에 맞게 학기단위 성취수준 및 교육과정 재구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② 교과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따라 평소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

세부업무명

2. 평가계획 수립

Tip

■ 2024 수업·평가 정보공시 지침
- **개정**:정보공시 내용을 수업평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학년별·학기별·교과별 교수학습 계획(수업방법 등), 평가 계획(지필·수행평가등)을 연계하여 작성

- **교수학습평가 방법**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 시기, 성취기준, 단원명, 수업 방법, 수업 평가 연계의 주안점, 평가영역·요소·방법·횟수·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공시 시기**: 4월, 9월

- **정보공시개정 교수학습평가 계획 도움자료**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평가의 목표 및 방침
- 교수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 교수·학습의 질 개선
-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여 학생의 성장 지원
  -학생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음
- 지필평가 학기당 2회 이내 실시하되, 지필평가의 횟수, 성적 반영비율 등은 학업 성적 평가 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 관련 보안 규정과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문제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
- 부정행위 예방대책,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② 평가계획 수립
-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수립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최종 결정한다.

Tip

■ **참고자료**

- 2024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 이해하기
- 2024 성취평가 적용을 위한 평가계획 길라잡이
- 성취평가제 자료(학생평가지원포털)

• **평가계획을 학기별 · 교과목별로 수립하되 아래 내용 포함**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그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방식, 성취도
-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 (중)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고) 단원/영역별 성취수준, 최소 성취수준(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전문교과II 실무과목)
- (고)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그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방식, 성취도
-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 정의적 능력 평가 방안
-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기준
-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등

•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므로 교육과정별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 자유학기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교과별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음
- 2학년 및 연계 자유학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 반영비율의 확대를 권장하며, 교과별 성취도를 산출함
- 자유학기 및 연계 자유학년의 자유학기활동(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한 평가는 자유학기 및 연계 자유학년의 취지에 맞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단, 연계 자유학년의 주제선택활동의 평가(지필평가·수행평가) 반영 여부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함)
-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자유학기 운영의 취지를 확장하는 학기로서, 1학년 2학기에 운영함. 토의·토론, 프로젝트활동 등의 다양한 학생참여형 수업과 연계하여 지식과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만들고 사고의 힘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는 학기임
-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교과별 성취도를 산출하며, 지필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교가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논술형 문항을 반드시 포함

- **확정된 평가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
- **모든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
  -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와 수행평가 합산점수, 수행평가 100% 실시 과목 점수)의 중학교 40%, 고등학교 35% 이상
  - 단, 다음 교과는 20% 이상: 중학교 체육·예술(음악, 미술), 고등학교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I 의 체육·예술(계열) 교과(군), 전문교과 II,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전문 교과 I 의 체육·예술(계열) 교과(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전문교과 II
  - 교과목 특성 및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술형 평가를 구술평가로 대체 가능
-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 과목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타당도 높은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 **정의적 능력 평가는 교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의적 요인을 추출한 후 수업과 연계하여 시행**
  - 학교와 교과 실정에 맞게 적용 방법 및 시기, 결과 활용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

3 지필평가 운영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지켜 교육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교육과정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세부업무명

1. 고사 시행 계획 수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숙지
- 시행 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 개정

② 고사 시행 계획 수립
- 고사 7일 전까지는 출제 원안지 수합이 이루어지도록 일정 계획

③ 고사 일정 발표
- 교과의 난이도 및 학습 분량을 고려하여 고사 시간표 작성
- 최소 고사 3주 전까지는 고사 시간표 발표

세부업무명

2. 고사 시행 연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3항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평가계획 연수
- 일정 고시(원안지 제출일, 고사시행일, 채점 일정, 정오표 확인 일정, 이의신청 일정, 성적 확인 결재 일정, 성적표 발송일 등)
- 성적처리 절차 및 유의점

② 문항 제작원리 연수
- 원안지 및 문항정보표 양식 공유
- 문항 제작원리, 출제상의 유의사항, 편집요령 등 연수

③ 신입생에 대한 답안 카드 작성 요령 지도

④ 평가계획 및 일정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Tip

■ 문항제작 관련 양식(예시)
- 원안지
- 문항정보표
- 논술형채점기준표

세부업무명

3.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Tip

■ 유의사항

-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노력
- 동일교과 공동출제, 공동편집
- 학급 간 성적 편차 최소화

주요내용

① 출제 전 교과협의회
- 출제 방향, 출제 범위, 평가목표, 문항 수, 문항의 유형 및 형태, 문항의 배점, 출제 및 편집 방법, 예상 평균, 출제상의 유의점 등 협의(교과협의록에 기록), 선다형 일변도의 객관식 평가 지양

② 출제 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사항을 심의 후 학교장 결재

세부업무명

4. 원안지 수합 및 결재, 인쇄보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Tip

■ 유의사항

- 지필평가 보안 관리 강화
- 원안지 오류 검토 시스템 마련
- 출제, 인쇄 장소 보안 관리 철저

주요내용

① 문항정보표, 원안지 수합 및 검토 확인 결재
- 고사 후 교과별 문항 정보표, 고사원안지, 인쇄본 시험지를 1건으로 하여 정리 후 확인 및 결재

② 교과별 학년별 교차 검토

③ 인쇄가 완료되면 분철 보관

세부업무명

5. 고사 실시

관련근거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고사 실시 계획에 의해 시행
- 고사 감독, 카드 리딩, 채점, 이의신청, 성적합산,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② 부정행위 방지
- 부정행위 방지교육 실시, 1~2명의 감독교사 배치, 분반, 학년 간 혼반
-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제
- 무선기기 휴대 등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 사전 지도·차단

세부업무명

6. 고사 후 정정사항 처리

Tip

■ 2024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

관련근거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문항 오류 시 조치

- 교과협의회 협의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하여 처리

② 문항 오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해당 평가 문항의 성취기준과 평가요소 확인
- 해당 평가 문항 이외의 문항이 해당 지필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성취기준의 평가요소 포함 여부 확인
- 해당 과목과 관련된 현행 교육과정 평가기준, 학문적 동향, 추세, 수정 보완된 내용 확인
- 문항 성립 가능성 확인(출제 시 의도하지 않은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모두정답 등 확인)

③ 성적 처리와 산출의 공정성 확보

- 재시험, 과목 만점 조정 등의 여러 대안 모색(단, 오류 문항에 대한 모두 정답 처리는 불가)
- 재시험, 과목 만점 조정 등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 학생 확인
- 재시험, 과목 만점 조정 등의 선택에 따른 정당성과 타당성 확보 여부 확인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학생의 발생 여부 확인
-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안 처리의 투명성, 신뢰성, 객관성 확보 여부 확인

세부업무명

7. 성적처리 및 확인

Tip

■ 유의사항

- 서술형, 논술형 평가 채점기준표(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작성 활용

■ 나이스 연수자료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자료 (중학교용)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자료 (일반고 및 특목고용)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자료 (특성화고)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자료 (특수학교)

■ 2023 4세대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 중학교 Ⅰ, 중학교 Ⅱ
- 고등학교 Ⅰ, 고등학교 Ⅱ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채점 및 결과 확인

- 논술형 문항 채점(반드시 재검 및 공동채점) → 교무업무시스템에 정답과 배점 입력 후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문항정보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 평가부서에 제출
- 과목별 OMR카드 리딩 답안 파일(CSV)을 나이스에 업로드 > 나이스에 정답과 배점 입력 > 교과담당교사가 채점 완료 > 검증 기능으로 무표기 답안 확인 > 결시 명칭과 학적 변동 등록
- 개인별 정오표를 출력하여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킴

②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이 있을 시 교과 담당교사 및 성적처리 담당자, 성적 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③ **성적보정 후에 자료를 확정하고 성적전표를 출력하여 학생에게 최종 확인시킨 후 학교장 결재 > 성적표 발송 > 문자메시지 전송 > 학부모 서비스 반영**

- 결시자 등의 성적보정(학기 말 처리)
- 성적보정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실시
- 규정이 없을 시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세부업무명

8. 고사 후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시험 후 교과협의회

- 문항분석 및 성적분석 · 재투입 계획 · 학력향상계획

② 시험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성적분석 및 재투입 계획
- 학력향상계획 등 수립 시행

4 수행평가 운영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행평가 관리를 통해 교육 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세부업무명

1. 교과협의회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2024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 사전 보완

② 수행평가 관련 교사 연수 실시

- 수행평가 기준안 작성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 일제식 지필평가로 실시할 수 없으며 수행한 과제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③ 수행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교과협의회

- 수행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의 시기·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구체적인 방법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수행평가의 취지와 평가의 타당도, 변별도, 신뢰도 및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평가의 각 영역별 비율 및 등급 간격 등을 신중하게 결정

Tip

■ 교과별 지필 및 수행평가 비율 및 영역(예시)

■ 2024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중등 논술형 평가 길라잡이

■ 유의사항

•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음

세부업무명

2. 수행평가계획 및 평가 기준안 작성

관련근거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교과별, 학년별 수행평가계획 작성 제출
- 교과별, 학년별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계획 작성 제출(협의록 작성)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후 시행

③ 과제 및 업무의 적정화를 위한 조정
- 단원별 또는 월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주무부서에서는 수행평가 및 과제물 제출 시기 등 개인별 학습량이 적정하도록 분산 조정

④ 학교교육과정계획 교과별 평가계획 수록
- 수행평가 실시 시기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적정화
- 체육·예술 교과는 실기, 태도, 감상, 미적 체험, 이론,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 평가 척도안의 공정성 강화, 수업시간 내의 활동 과정 중심으로 평가
- 모둠 활동 등을 평가할 때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유의
-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 기본점수 부여 여부 및 범위 결정 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함
- 결시자 처리기준은 교과협의회를 거쳐 평가계획 반영

Tip

■ 유의사항
- 수행평가는 논술형으로만 실시할 수 없으며 각 교과목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활동을 통해 교과 역량 및 학생 성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
- 다양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공정 시비 예방

세부업무명

3. 수행평가의 운영 및 성적 산출·확인

관련근거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기준 마련
-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

② 학교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의 수업 상황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

③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성적 산출(누가 기록에 의해 산출)

④ 미응시자, 미제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철저 및 적정 처리

⑤ 성적 산출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확인시키고 이의 제기 기회 부여

⑥ 평가 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

⑦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를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

⑧ 평가기준, 반영비율, 평가의 내용과 방법, 평가시기 등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피드백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

Tip

■ 교과별 평가 가정통신문 양식(예시)

■ 유의사항
- 수행평가의 결과물은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관기간을 결정하며, 이의신청, 접수, 처리, 확인과정 등 적절한 보관조치가 완료된 후 결정된 보관기간에 따라 조치

5 출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수업일수, 결석, 지각·조퇴·결과 등을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세부업무명

1. 출석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내용

① 학적변동 시 수업일수 처리

-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의 경우,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
-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
- 재취학·전입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일 경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이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전입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

② 출석일수 산정

- 개별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해당 학년도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조퇴·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
- 당해연도 재취학 학생은 유예·면제 등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재취학 등)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

세부업무명

2. 결석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

주요내용

①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시·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②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Tip

■ 주요 지침
-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결석계 및 지각·조퇴·결과 확인서 (예시)

Tip

■ 인정결석(경조사로 인한 경우)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1일
- 입양
  - 학생 본인-20일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Tip

■ **결석계 제출 시 증빙서류 관련**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세부업무명

3. 지각·조퇴·결과 등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

주요내용

① 지각·조퇴·결과 횟수 산정

-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
  ※ 학교규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등교시각, 하교시각, 결과처리 시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적용
  ※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처리
  ※ 소속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Tip

■ **용어의 해설**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제7편 체험학습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체험학습</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과 시행 절차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지침과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td><td>- 연간 20일 이내(국가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만 가정학습 포함)</td></tr>
<tr><td>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2024. 2.)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2023. 2.)
◦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융합교육정책과, 2024. 2.)</td></tr>
</table>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학교장은 학생들이 개인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Tip

■ 유의사항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Tip

■ 유의사항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 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 반일 처리 가능

Tip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신청서 및 보고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출석 인정 기간
-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국내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20일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 가능
  ※ 초, 중, 고, 특수학교: 20일 이내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②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1일 단위 운영 원칙(단, 학교 수업 참여로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운영 허가 가능)
-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름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5년간 원본 보관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③ 시행 절차
- 보호자의 신청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승인 → 허가 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와 학교의 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 서류 보관

세부업무명

2.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관련 서식(신청서 및 의뢰서, 결과 통지서)

관련근거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

-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 실시
-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
- 국내에 한함
-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
- 위탁 받은 학교장은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 학교에 송부
- 체험학습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 지양

② 시행 절차

- 보호자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K-에듀파인 시스템)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 송부 →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세부업무명

1.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 방향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 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 수련활동 및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세부계획 및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컨설팅 대상인 경우 세부 일정을 협의함
- 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 인솔자와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 학생·인솔자 여행자보험은 숙박형 또는 고위험 활동 포함 시 의무로 가입
- 현장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1회 이상 실시
-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함
- 미참가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사전 인솔자 안전 연수 및 학생 안전교육 철저히 실시
-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생 수송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인솔자는 임장 지도를 의무로 함
-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정산함
- 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 모색
-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자제
- 부득이하게 체험학습을 변경·취소하게 될 경우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학부모(학생)에게 알림

Tip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 단위로 운영
  예) 5학급 98명-소규모,
  3학급 112명-소규모,
  4학급 110명-대규모

Tip

■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운영 안내

세부업무명

2.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Tip

-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예시
-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 자료 (각종 안전점검 자료 및 서식)
-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주요내용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예시)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체험학습 기본 계획 포함사항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계획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 지역 지양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음(단,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필요)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 수련활동 및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세부계획 및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 제출 (컨설팅 대상의 경우 세부일정 협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계약 시행

• 현장답사 및 사전업무처리

현장답사

숙박형	1회 이상 의무 실시, 활성화위원회 학부모 위원 필수 참가
1일형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략 가능(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 학생 안전교육 및 인솔자 안전 연수

• 운영

• 정산 및 자체 평가

• 사전/사후 정보방 입력(숙박형 체험학습만 해당)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https://more.goe.go.kr/exp8/index.do)

Tip

-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 정산 및 공개**
  -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학부모 공개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

세부업무명

3.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Tip

■ **활성화위원회 개최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

관련근거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구성
-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함
  (단,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② 역할
- 숙박형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본계획 검토 및 자문
  ※ 대상이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율 결정 및 동의율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답사단 구성 및 시행
  - 학부모 위원 불참 시 활성화위원회의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답사를 생략할 경우에만 안전대책 여부를 심의함

세부업무명

4. 현장체험학습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Tip

■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
- 인사사고, 식중독, 감염병 등

관련근거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 현지 응급구조기관(119,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 요청
- 학교 · 교사 · 학생 ·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즉시 연락
- 보고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후에 사안보고서를 제출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언론 보도 발생 시, 언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여 일관된 답변체제 유지
  - 언론 대응 창구: 교장, 교감, 학년 부장 등 인솔 책임자 중 한 명
- 천재지변 또는 사안(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생 안전 등 체험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함
-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시, 학교에서 병원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권장
  - 당일 치료, 당일 퇴원의 경우에만 해당
  - 병원비 선지급 후 보험회사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병원비 청구 → 학교 회계에 병원비 반납

제8편 학적 관리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적 관리</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적 관리로 교육행정 신뢰성 제고</td></tr>
<tr><td rowspan="8">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중학교)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td><td></td></tr>
<tr><td>2. (중학교)전입학 및 전출</td><td></td></tr>
<tr><td>3. (중학교)유예·면제·정원 외 관리</td><td></td></tr>
<tr><td>4. (중학교)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td><td></td></tr>
<tr><td>5. (중학교)조기진급 및 졸업</td><td></td></tr>
<tr><td>6. (고등학교)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td><td></td></tr>
<tr><td>7. (고등학교)신입생 선발 및 전형</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중학교)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안) (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고등학교) 고등학교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준(안) (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학교교육과정과, 2022. 5.)
◦ 2022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4.)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3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진로직업교육과, 2023. 2.)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진로직업교육과, 2023. 3.)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진로직업교육과, 2023. 3)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1.)</td></tr>
</table>

1 (중학교)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중학교 입학 등록 업무를 숙지하여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정확히 수행한다.

세부업무명

1. 입학예정자 배정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위탁시의 협의)
- (중학교)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안)

주요내용

①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초등학교, 교육지원청)

- 초등학교의 장: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교육장은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
- 초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학생에 교부

② 중학교 입학등록일 결정

- 입학등록일은 본 입학등록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 입학등록일을 정함

③ 중학교 입학 등록 실시

- 중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을 확인, 출석 현황을 교육장에 보고
- 학교의 장은 추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을 확인하고, 출석 현황을 교육장에 보고
- 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주소지, 실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④ 학적 생성

- 배정된 학생('배정포기' 학생 제외) 모두를 대상으로 학적 생성

⑤ 다문화학생의 입학 대상 확인

-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 국적 학생: 학교군 지역(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학구 지역(거주지 인근 중학교)에서 입교 신청
  - 확인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출생 자녀 등 한국국적 학생: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학적처리 적용

Tip

-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 2022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배정포기서(예시)

Tip

- **중학교 배정 관련 '배정포기'의 의미**
  - 최초 배정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졸업한 초등학교와 최초 배정된 중학교에 확인하는 것임
  - 사유: 거주지 이전
  - 미인정유학, 미안가대안교육시설 입학, 홈스쿨링 등의 사유로는 '배정 포기' 불가

2 (중학교)전입학 및 전출

중학교 학생의 전입학 및 전출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세부업무명

1. 전입학 및 전출 업무의 절차 등 업무 처리

Tip

■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 경기도교육청 메뉴 링크

• 교육지원청별 전입학 안내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주요내용

① 전입학 관리 업무

• 중학교 전입학 관리 업무는 교육장에게 위임된 업무(조례 제6조)
• 반드시 교육지원청별 지침에 따르며, 전입학 안내 사이트 활용
• 민원인이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② 전입학 절차(민원인)

• 전 가족(부, 모, 자녀) 거주 이전
•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
• 해당 학교군 확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확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
• 해당학교 방문하여 신청

③ 전입학 순서

• 전 가족 이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부, 모, 학생 모두 등재되어야 함)
• 전출교(거주지 이전 확인)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 발급
• 전입 희망교에서 전입학 등 배정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배정(즉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 시 배정에 관련된 서류 보관
• 배정교에 중학교 배정통지서 제출(민원인 지참)
• 거주지 실사 확인(배정교)
• 전입교에서 전입학 등록
•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입학 등 학적서류 송부 요청
• 전출교에서 전입교에 전입학 등 학적서류 일체 송부

④ 구비 서류

•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민원인 작성-서식 각 학교에 비치) 1통
•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전출교 발행)
• 부, 모, 학생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단,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친권자 전학 업무동의서 첨부)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직장(사업) 등으로 인하여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고유번호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 관계로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 계약 만료되지 않아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 상기 외의 사유는 전입학 업무담당자(교육지원청)와 상의 후 관계 증빙서류 제출

⑤ 배정 기간

•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
• 중학교 3학년은 1학기까지만 배정하되, 고등학교 입시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중학교 전입학 관리 업무는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름

⑥ 유의사항

•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
예)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 전출, 화요일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
• 방학 이후 개학일이 다른 경우는 방학 중이라도 전입학을 처리하여 전학으로 인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함
예) (개학일이 다른 경우) 전출교 8월 25일 개학, 전입교 9월 1일 개학, 전출일이 8월 24일인 경우, 사전에 전입학교에 요청하여 전입일이 전출일 하루 다음 날이 되도록 8월 25일로 전입학 처리
예) (재량휴업일이 다른 경우) 전출교의 전출일 다음날이 전입교의 재량휴업일인 경우, 재량휴업일을 전입일로 처리
•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인 경우 출입국과 전출·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3 (중학교)유예·면제·정원 외 관리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합리적이고 원활한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투명한 관리로 의무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세부업무명

1.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중학교)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안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Tip

■ **교육감이 고지한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질병**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
-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

Tip

■ 각종 관련 서식

Tip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유예·면제**

-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주요내용

①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유예(학적 용어는 '유예')

- **유예의 신청**
  - 신청: 취학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 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유예를 승인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
  - 유예 기간: 1년 이내
  -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
  - 학교의 장은 학칙에 의해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 **유예의 연장**
  -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예 절차'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Tip

■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Tip

■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일 이전 면제 신청자**

• 중학교에서 면제 처리

• 면제일은 중학교 입학일로 하고, 면제일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출석인정결석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함)

Tip

■ **정원외 학적 관리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1/3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Tip

■ (서식) 재취학통지서

② **취학의무의 면제(학적 용어는 '면제')**

• **면제의 신청**

- 신청 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하려는 학생(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포함)

※ 취학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신청인: 취학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법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면제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면제 결정 심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

③ **정원외 학적 관리**

•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즉시 교육장에 보고

④ **취학 독촉 및 독려**

• 대상: 정원외 학적 관리 학생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조회 가능(영 제28조의2)

• 재취학 통지 기일

-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 장기결석 학생: 학년도가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 입학기일 등 향후 취학 일정 등 통지·안내

4 (중학교)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유학, 이민, 어학연수 등으로 학적이 면제, 유예, 정원 외 관리된 학생이 다시 우리나라 학교에 재취학·편입학 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세부업무명

1. 출국 시 학적 관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주요내용

①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학적 관리

- 학적 처리: 해외 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학적 처리 절차

정당한 해외 출국 → 상담 → 면제 신청 → 서류 확인 → 학교장 결재 → 학적 처리 및 결과 통보

- 면제 처리 방법
  -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해외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해외 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나이스에서 면제 학적처리 당일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취학 의무 면제'의 경우, 면제 결정 후 그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

②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학적 관리

- 학적 처리 절차

미인정 유학 출국 → 미인정 결석 처리 →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예: 수업일수 190~192일인 경우 64일 수업일수 193일인 경우 65일 → 나이스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장기 결석: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학적 관리

③ 정당한 해외 출국 시 학부모 안내 사항

- 외국학력 인정 범위, 미인정 유학 시 출결.진급 등 불이익 관련 사항 안내
- 학적(면제.유예) 처리 절차,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
- 귀국자 재취학 시기,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기준 등 안내
- 출국 후에는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귀국 시 외국학교 전체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국내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은 후 귀국해야 함을 안내

세부업무명

2. 귀국 시 학적 관리

Tip

■ 귀국학생 관련 서식(예시)

-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 재취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공문 서식
- 재취학 허가 기안문 서식
- 귀국학생 (취학, 재취학, 편입학) 신청서
- 귀국학생 학부모 사실 확인서

① 정당한 해외 출국자의 귀국 시 학적 처리

귀국 → 상담 → 재취학 신청 → 거주지 확인 → 서류 확인 → 학교장 결재 → 학적 처리

-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
-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된 경우, 거주지 타 학교에 재취학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원적교에 귀국학생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 요청
-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성적증명서
  - 재취학(취학, 편입학) 신청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
- 학년 배정
  -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는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

※ 참고사항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 배정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

② 미인정 유학자 귀국 시 학적 처리

귀국 → 상담 → 재취학 신청 → 거주지 확인 → 서류 확인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 학교장 결재 → 학적 처리

-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
-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된 경우 타 학교에 재취학 가능
- 제출 서류: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준하나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과 같이 해당될 경우 제출
- 학년 배정
  -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
  - 재취학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27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6월 첫 주 이전)까지 수시로 입급 가능

③ 아포스티유 협약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구분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국내학교로 재취학((편입학) 할 때
발급 및 상담기관	외교부 별관 영사민원실(발급)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상담) http://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 - 영사 서비스 - 아포스티유」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발급방법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 확인 (Apostille 부착) ⇒ 해당 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 (Apostille 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제출서류 심사 시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5 (중학교)조기진급 및 졸업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시행한다.

세부업무명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Tip

■ 용어의 정의

- 조기진급: 동일 학교급 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음
- 조기졸업: 동일 학교급 내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 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조기입학: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호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교: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 학업성취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단, 학업성취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고등학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 포함), 과학교과와 전문교과, 심화 과목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단 과학고는 10% 이내인 자)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교과(군)와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10% 이내인 자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세부업무명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대상자 신청

-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함. 단, 신입생의 경우 2개월 이내

② 대상자 선정

- 교육감이 정한 선정 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음

③ 평가

-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조기진급·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④ 조기졸업

-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

Tip

■ 유의사항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함

■ 주요 자료

-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업무명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관련근거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주요내용

① 중학교: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② 고등학교: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 포함), 과학 교과와 전문교과, 심화 과목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와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의 총 단위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을 충족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세부업무명

4.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관련근거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Tip

■ **학교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주요내용

①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
  ※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

②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 이내)
-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③ **상급학교 입학전형 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이 응시

④ **상급학교 합격**: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

6 (고등학교)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세부업무명

1.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Tip

■ 참고자료
-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현황

Tip

■ (서식) 전입학 배정원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주요내용

① 적용 대상

• 평준화 지역인 수원시, 성남시,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 포함)

② 전학 대상자

•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명시된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다른 학교의 전학)에 의거한 제주국제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Branksome Hall Asia(브랭크섬홀 아시아), SJA jeju(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관할 교육장이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다른 학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한 자
• 체육특기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전학 대상자

세부업무명

2.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실시하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2조(입학전형 방법) 및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주요내용

① 재입학

-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학을 허가
- 퇴학(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까지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② 퇴학(자퇴)생의 편입학

- 퇴학(자퇴)자가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 인정 각종학교 포함) 간의 편입학을 허가 가능(단, 평준화지역 동일학군 내에서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지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편입학이 불가)
- 퇴학(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까지 편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귀국학생 전·편입학

- 외국의 학교(외국 소재 한국학교 포함)를 재학·수료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용(단, 외국 소재 한국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편입학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육부훈령 제365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적처리를 전입학으로 처리)
- 평준화 지역 동일학군 내에서 귀국학생은 원재적교에 전·편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 가능
- 귀국학생 전·편입학의 시기는 수시(입학 전, 학기 중 등)로 가능하며, 특정 시기를 정하여 모집 불가
-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함
-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이수과목 차이로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음

Tip

■ 재입학시 구비서류

- (서식) 재입학원서

Tip

■ 귀국학생 전·편입학 구비 서류

- 외국학교 전(全)입)학년 성적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외
- 국내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해당자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Tip

■ 귀국학생 학년 결정 시 유의사항

- 국내에서 재학한 학기 수와 외국에서 수학한 학기 수를 합하여 편입할 해당 학년을 정함
-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 차이(외국 가을학기 시작)로 인한 1학기(6개월)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학교의 수학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미인정

Tip

■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 전 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
-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
-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하여 처리

Tip

■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 전학**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계획에 따름.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계획'에 따름
-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 전학 배정 계획

④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의 편입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은 국내 고등학교에 전·편입학 가능

  ※ 외국교육기관(학력인정):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은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학 가능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청라달튼외국인학교

⑤ 학년 결정 입학

-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4 및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하여 입학 가능
- 대상: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미인가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⑥ 기타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특례대상자 전·편입) 및 제89조의2(귀국학생 전·편입) 등 학교장이 실시하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항상 공개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의해 학생에 대한 전·편입 접수 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없으며, 편입학 접수 시 외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음
-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는 '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를 따름
-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편입학의 경우 희망자는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로 전·편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 부족, 통학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다른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편입학을 허가 가능

  ※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가까운 학교

세부업무명

3.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Tip

■ 주요 서식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접수대장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신청서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통보서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장 의견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2조(입학전형 방법) 및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주요내용

① 적용 대상

•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비평준화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교·특수지고등학교)

※ 단,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는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름

② 재입학

•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학을 허가

•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 시점 전(前) 일까지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③ 퇴학(자퇴)생의 편입학

• 퇴학(자퇴)생은 원재적교에 재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학교에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편입학 가능

•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 시점 전(前) 일까지 편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④ 전·편입학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등)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

- 정원 외 결원(3%):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학생 허용(당초부터 거주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에도 허용 가능)
- 정원 내 결원: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학생 허용(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해당 지역 및 타 시·군 거주 학생에 대해서도 허용 가능)

• 전·편입학의 시기는 수시(입학 전, 학기 중 등)로 가능하며, 모집 시기를 정하여 특정 시기에만 전·편입학 전형 실시 불가

• 전·편입학 희망자는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로 전·편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 부족, 통학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다른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편입학 허가 가능

Tip

■ **전·편입학 허가 시 '유의사항'**

-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전 재적교와의 이수과목 차이 및 학교의 구분(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음
- 인원은 학년별 전체 정원 및 정원외 인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남·여별 정원 적용 또는 계열별(문·이과 등) 정원 부족 사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음

Tip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타 시·군으로 강제전학 조치가 된 후, 다시 해당지역으로 전·편입학 불가
  단, 타 학교에서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 신청 시, 전학 신청한 가해자의 피해자가 없는 고등학교의 장은 전·편입학 허용 가능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

-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계획'에 따름

Tip

■ **비밀전학 시 '객관적인 자료'**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오전 9:00 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변동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 및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사이트(SATP)'에 공개(교직원 및 민원인 요구 시 항시 공개)
-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
  -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 해당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순위 확인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의해 학생에 대한 전·편입 접수 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없음
  -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 편입학 접수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요구 가능
-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
    ※ 특수목적고(예술·체육·산업수요 맞춤형), 특성화고에 한하여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 가능
    ※ 다수의 학생을 일정기간 동안 접수 받아 학생을 선발하는 행위 금지
  - 전·편입학의 허가(불허) 통보는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해외귀국학생 5일)에 민원인에게 문서(인편·우편·이메일·팩스)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허 시 불허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통보
- 해당 지역 중학교 출신자 또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가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전·편입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전·편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1학년 2학기부터는 제한할 수 없음)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의 전·편입학 허용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3학년 1학기까지 전·편입학 허용)
- 타 학교로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음(학칙을 통하여 전학을 불허하는 행위 금지)
- 체육특기자가 타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경우에는 체육특기자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내로 인정(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
- 야간부 고교 재학생이 야간부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주간부 고교에 전·편입학을 허용

⑤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비밀전학

- 고등학교장은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능)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장에게 전·편입학을 신청하고 교육장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Tip

■ 학교장 의견 제출 시 구비 서류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장 의견서
- 필요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임을 입증할 증빙자료

- 학교 지정 시 동일 계열(일반고→일반고, 특성화고→특성화고)로의 전학을 우선하되,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열을 변경하여 배정 가능
-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성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⑥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배정희망교, 전학 사유 및 필요성을 명시한 의견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
- 관할 교육장은 학교장 의견서 검토 후, 전학 배정

⑦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에 의한 전학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를 통하여 전학시키고, 대상자 전원을 정원 외 전입학 처리할 수 있음(학교장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전학이 어려울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전학 배정)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 집단 따돌림, 가정폭력 등으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 기타 교육환경 변경 사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세부업무명

4.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 과학고 재입학 · 전학 및 편입학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2조(입학전형 방법) 및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주요내용

① 허용 기준
-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허용
-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출석일수 등)에 한하여 허용 가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입학 허용
- 전·편입학 시 1개 고등학교만 지원 가능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 불가
-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중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 불가
- 영 제51조에 의거, 인정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허용 가능

Tip

■ 주요 사항(링크)
- 재입학·전학·편입학 허용 기준
-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처리원칙, 전형시기·전형관리
- 전형절차 및 전형 방법

7 (고등학교)신입생 선발 및 전형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공정성 · 합리성 · 타당성 · 다양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인다.

세부업무명

1. 신입생 전형요항 작성 및 입학관리 시 공통 유의사항

Tip

■ 주요 지침(링크)
-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2022 외국국적학생을 위한 학적 관리 매뉴얼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 모든 학교는 학교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역할
  - 입학 관련 특이사항 및 합격사정에 대해 심의
  - 전형 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의

②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전체 모집 정원의 2%,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
- 특례입학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
- 특례전형으로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이중지원 금지

③ 일반귀국학생 전형
- 국내 재학기간과 외국에서 수학한 기간을 합산해 9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지 않은 자): 학교별 전·편입학 허용인원(정원 외 3%)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가능('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시행 지침' 참고)

④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전형
- 학교장 전형교: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
-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 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
-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학군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

⑤ 체육특기자 전형
-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해 정원 내로 선발(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학군별 3%, 학교장 전형교: 학교별 5%)

⑥ 타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 학교장전형교: 타 시·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입학 안내 철저
- 타 시·도 졸업(예정)자에게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 안내 철저
- 타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용 원서를 제공
-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2024학년도 경기도 고입 내신성적 반영지침'의 산출식에 따름

⑦ 특기·적성 영역 전형(평준화지역 후기고 제외)

- 학교별로 특기·적성 영역을 별도로 선발하기 위해 도교육청 승인이 필요
  ※ 학교별 특기·적성은 체육특기자(5%)를 합해 모집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⑧ 사회통합 전형(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교에 해당)

-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 ~ 2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
  -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음
  -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

⑨ 불합격자에 대한 추가 합격

- 학교별 합격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포기자 수만큼 차순위자 추가 합격 가능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조치사항' 명시
- 등록 후 해외 유학, 타 시·도 전출, 기타 등으로 입학을 포기한 자로 인해 발생한 결원에 대해 반드시 추가 합격시킬 필요 없음
- 전형 시 모집 정원에 미달된 학교장 전형교는 타 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하여 결원을 충원

⑩ 고등학교 이중 지원 금지

전기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의 특성화학과
후기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의 보통과

- 전기학교는 1개교만 지원 가능(마이스터고 간 이중지원 금지)
- 후기학교는 1개교만 지원 가능(전기학교 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 불가능)

⑪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 전학 포털시스템(SATP) 활용

⑫ 신입학 전형 시 관련 법령, 지침, 규정을 철저히 준수

세부업무명

2. 영역별 전형 관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2024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 평준화지역[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학군]

-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모집 정원만큼 선발
- 학생 배정: 선(先) 복수 지원 후(後) 추첨 배정방식에 의거 실시
- 평준화지역 비적용학교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름

②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정시모집 시기에 학교별로 전형

③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추천입학제], [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일반 특성화고 및 일반고 특성화학과 추천입학제는 학교별로 실시

④ 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 지정]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항에 의함

⑥ 특수목적고등학교

-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 **과학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Tip

■ 주요 지침(링크)

- 2024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 2024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

Tip

■ 관련 서식(링크)

- 2024 평준화지역 후기고 응시원서
- 2024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 응시원서
- 2024 일반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응시원서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특례 입학 신청 관련

제9편 교무행정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교무행정</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 교육공무원 임용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약칭: 교과용도서규정)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효율적인 교무 행정 관리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무학사 업무 지원</td></tr>
<tr><td rowspan="13">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교원 조직 관리</td><td></td></tr>
<tr><td>2. 학급 경영</td><td></td></tr>
<tr><td>3. 교과서 선정 및 운영</td><td></td></tr>
<tr><td>4. 원어민보조교사 운영</td><td></td></tr>
<tr><td>5.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td><td></td></tr>
<tr><td>6. 나이스 업무</td><td></td></tr>
<tr><td>7.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td><td></td></tr>
<tr><td>8. 나이스 학부모서비스</td><td></td></tr>
<tr><td>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td><td></td></tr>
<tr><td>10. 학년부 운영(고3)</td><td></td></tr>
<tr><td>11.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td><td></td></tr>
<tr><td>12. 교육자원봉사</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관, 2024. 1.)
◦ 2024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교육부, 2023. 8.)
◦ 2024 EPIK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EPIK 위탁채용](융합교육정책과)
◦ 2023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학교장 자체채용](융합교육정책과)
◦ (중)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Ⅰ(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고)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Ⅰ(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중)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Ⅱ(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고)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Ⅱ(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2024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계획(학교정책과, 2023. 2.)
◦ 202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통합지원 계획(교육복지과, 2023.12.)
◦ 교육자원봉사 운영지침 및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td></tr>
</table>

1 교원 조직 관리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한 원칙 있는 교원조직 관리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업무에 기여하게 한다.

세부업무명

1. 교원 조직 관리

Tip

■ 2023 공립 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Tip

■ 급별 보직교사 배치기준

- 중학교: 보직교사 수
  - 3~5학급 : 3 / 6~8학급 : 4
  - 9~11학급 : 5 / 12~17학급 : 8
  - 18학급이상 : 11
  - 2학급이하 분교장 : 1
  - 체육중학교, 교감 미배치교, 43학급이상 복수교감 미배치교 : +1
- 고등학교: 보직교사 수
  - 3~5학급 : 3 / 6~8학급 : 4
  - 9~17학급 : 8 / 18학급이상 : 11
  - 실업(전문)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교감 미배치교, 43학급 이상 복수교감 미배치교 : +1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주요내용

① 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

- 근무 희망 보직, 부서 및 학년 희망서 제출
-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고려
- 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
  - 업무수행 능력, 본인의 희망, 학교경영, 학년 편성, 원로교사, 성별 고려
  - 임용 후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재(NEIS 입력)

② 교무 분장 조직

-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업무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신학년도 업무 분장안 기획
- 업무분장 희망서를 받아 분장 원칙에 따라 업무 배정
  (학교의 규모, 업무 내용, 교사의 특기를 고려하여 조직)
-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조직함
  (교내 인사내규 및 본인의 희망 고려)
- 업무 관련 서류 및 비품 인계인수
  - 관련 서류, 비품, 인계인수서 작성

③ 갈등 관리

-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조정
  - 담임 배정 및 분장업무, 부서별 부장 임용, 학교 예산 집행, 근무평정의 처리, 의사 결정, 업무 추진상의 의견차 등으로 인한 갈등 조정
- 교사와 교사 간 갈등 조정
  - 교사 간 교육관의 차이, 승진에 따른 부가점 여부, 부장 교사와 일반 교사 간의 업무 추진, 원로교사와 젊은 교사 간의 세대 차에서 오는 갈등 조정
-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조정
  - 교과 지도관의 차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갈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인한 갈등, 학생차별 등으로 인한 갈등 조정
-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조정
  - 학습지도 방법, 학생차별, 생활지도 등으로 인한 갈등 조정
- 교사와 행정실 직원, 교육공무직원 간의 갈등 조정
  - 업무, 예산 집행상의 비협조, 업무 분장 등에 대한 갈등 조정 등

2 학급 경영

학급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비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급을 바르게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한다.

세부업무명

1. 학급 경영의 원칙, 내용, 경영계획 수립, 평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3조(교육과정 등)

주요내용

① 학급 경영의 원칙

- 교육적 학급 경영: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 성장·발전한다는 신념 아래 학생 개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과 창의성을 최대로 개발하여 자아 실현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
- 학생 이해의 학급 경영: 학생의 심리적 욕구 충족, 학습 동기의 유발, 부적절한 행동의 수정, 과업 수행을 극대화하는 집단 운영 등의 경영 과업은 학생의 심리적 이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민주적 학급 경영: 인간 존중, 자유, 평등 및 참여와 합의 등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급을 경영
- 효율적 학급 경영: 학급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학급의 목표를 달성함과 아울러 학급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학급 운영

② 학급 경영의 내용

- 학생 파악: 성장과정, 가정환경, 취미, 특기, 신체적 특징(병력 등), 성적, 인생관, 장래 희망, 친구관계, 고민사항, 희망사항, 건의사항 등
- 학급 조직: 민주적 절차,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격려
- 출결 관리

③ 학급 경영 계획 수립

- 교사 자신에 대한 점검, 교육철학 성찰, 실천하는 교사
- 학급실태 조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 학급 경영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립
-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학급 풍토 조성, 역할 분담, 교실 환경 구성, 급훈 정하기 등
  - 학급 경영 연간계획 수립, 학부모 상담
  -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등

④ 학급 경영 평가 및 반성

- 교사 자기 평가
- 학생 설문 조사 및 피드백

3 교과서 선정 및 운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세부업무명

1.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시 절차 및 평가 기준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주문)

주요내용

① 선정 절차

- **[추천] 1단계: 교원 의견수렴**
  - 교과협의회 등 교원 의견수렴
  - 검정(인정)도서의 선정기준표, 선정(안), 회의록 등 자료 기록, 보관
  - 선정 기준 항목별 점수 및 평가 방법 결정
- **[심의]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추천된 검·인정 도서의 선정기준, 선정 절차 등의 타당성·공정성 등을 심의
  -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협의회 등의 대표 교사 설명을 청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원안과 다를 경우 심의의견서를 별도 작성하여 회의록에 첨부
- **[확정] 3단계: 확정**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정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국·공·사립 동일)
- **4단계: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
  - 학교의 교과서 업무담당자는 NEIS를 통하여 차년도 사용 예정 교과서의 물량을 파악 후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

② 평가 기준 항목

- 교육과정: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
- 학습내용 선정: 내용 수준의 적정성, 정확성, 중립성, 학습동기 유발
- 학습내용 조직: 효과성, 단원, 학년 간 연계 및 계열성,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
- 교수학습활동: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의 유용성,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 학습평가: 다양한 평가활동, 종합적 사고력 평가
- 표현·표기 및 외형 체제: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Tip

- 202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 NEIS 교과용도서 신청 매뉴얼

4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소외지역 소재 및 소규모 학급 운영교 지원으로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세부업무명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EPIK 위탁채용)

Tip

▪ 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 링크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근로기준법
- 202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EPIK 위탁채용)

주요내용

① 채용 전 업무 절차

업무절차 및 기관		사업운영교
업무	담당 기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요기초조사 EPIK에 위탁채용 수요 요청	도교육청	[단위학교→도교육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요신청(**매년 9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예산 확정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추천	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사업예산 확정 및 사업운영교 확정(**12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추천서류 접수(**12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서류 검토 합격자 선정 및 통보	도교육청	[도교육청→EPIK]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결과 통보(**1월**)
계약체결 입국예정자 온라인 사전연수	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감 일괄채용 및 계약체결(**1월**) **온라인 사전 연수 실시(1월~2월초)**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근무교 배정 입국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주거지 준비	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입국 및 오리엔테이션 학교는 주거지 제공 및 집기 준비(**2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pick up 학교 및 현지 적응안내	학교	단위학교-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솔 협조(**2월말**) →사전연수 마지막날 직접 pick up (**공문안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기 정착 지원	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생활정착금 지급 (**30만원**) 입국지원비 30일 이내 지급(**180만원**) * **생활정착금, 입국지원비: 도착 후 한 달 이내 지급** 주거용 가구 및 비품 인수인계서 작성 및 보관

② 채용 후 업무 및 복무 관리 등

- 업무편람 참조

세부업무명

2.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학교장 자체 채용)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근로기준법
- 202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학교장 자체 채용)

주요내용

① 자체 채용 업무 절차

순서	점검사항 및 참고사항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구인공고 (학교 홈페이지)	업체정보 (원어민 고용업체선정 및 연락)
2.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심사 및 선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리위원회에서 3인 이상 후보군중 1인 선정
3. 합격자 선정 및 통보, 필요서류 요청	각종 서류 확인 및 비치 (거주자 증명서, 비자발급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
4. 사증발급 인정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각종 증명서, 계약서 제출
5.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비자신청, 주거 및 집기 구비	계약서 상 명시된 집기확인 그 외의 것은 생활정착금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본인이 해결
6.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픽업 및 학교 및 현지 적응안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도착 후 한 달 이내 생활정착금 지급 (30만원) 주거용 가구 및 비품 인수인계서
7.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계획서 수립	입국 지원비 30일 이내 지급 (130만원)

②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복무 관리 등 세부 내용

- 업무편람 참조

※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관련 업무

Tip

- 202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학교장자체채용)

Tip

- 2024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업무편람(학교장자체채용)
- 2024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 양식

5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업무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세부업무명

1. K-에듀파인 '문서(재정) 기안'

Tip

- '문서관리(학교용)' 매뉴얼
- '자료집계' 매뉴얼

Tip

- **'수신자 지정' 참고 사항**
  - '행안부유통' 탭을 클릭 시, 전자문서 유통 가능한 정보 기관 조직도가 나타나고 수신자에 추가 가능 (타 교육청 포함)
  - '수기입력' 탭 클릭 시, 수신자명 및 정보 직접 입력하여 추가 가능
  - '문서24' 탭 클릭 시, 문서24에 등록된 일반 법인 발송 가능

관련근거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내용

① 전자문서 기안 방법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공용서식]에서 서식 선택
  - 결재정보 탭: 제목 작성 → 과제카드 선택 → 업무유형 선택 → 대국민 공개여부, 열람제한 설정
  - 본문 탭: 내용 작성
  - 결재경로 탭: 결재경로 지정 → 수신자 지정 → 파일 첨부 → 결재 상신
  - 수신자 지정: 조직도 또는 공용그룹에서 지정

② 재정 기안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 재정기안]에서 재정업무에서 결재 요청한 문서 조회 및 반송 처리
- '재정기안'에서 '기안대기중'인 문서 제목 클릭 → 재정문서 내용이 나타나며 필요 시 '본문보기' 체크박스 선택 → 본문 내용 확인 및 수정 가능
- 재정업무에서 결재요청 후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송 처리 후, 재정업무에서 내용 수정 후 결재요청

③ 자료집계 기안(연계기안)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 자료집계기안]에서 자료집계 메뉴에 등록한 집계대기자료와 제출대기자료 기안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 자료집계/연계기안]에서 K-에듀파인 재정업무 외 타 시스템(나이스, 자료집계, 국민신문고 등)에서 연계 처리되어 넘어온 문서 조회, 반송 처리(단, 국민신문고는 반송 처리 불가)

세부업무명

2. K-에듀파인 '문서 처리'

관련근거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내용

① 결재 및 공람

• 결재: 결재 메뉴에서 본인에게 도착한 문서 결재 가능
- 권한과 문서의 처리 상태에 따라 재작성, 회수, 삭제, 공람 처리
• 공람: 문서담당자 또는 기안자가 문서접수 및 기안 시 공람자 지정
- 공람은 교장, 교감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지정
- 공람을 회수할 사용자 선택 후 '회수' 버튼으로 회수 가능

Tip

■ '문서관리(학교용)' 매뉴얼

② 문서 발송

• 업무담당자(기안자)
-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대기]에서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 발송 처리
• 처리과 문서담당자
-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처리]에서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 발송 처리

Tip

■ 문서의 처리 상태
• 반려 : 내용 보완, 혹은 재검토로 기안자에게 반려
• 보류 : 현재 문서 잠시 보류 처리
• 중단 :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중단 시 '문서함-중단한 문서' 저장)

③ 전자문서 접수 방법

•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에서 문서제목 클릭 → 결재정보 내용 확인 → 접수 → 결재경로 지정 → 문서 처리

④ 비전자문서 접수(등록) 방법

※ 원본 문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 보관

• 처리과문서담당자: 접수대기 메뉴에서 등록
-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에서 비전자문서 등록 → [문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내용입력, 원본 스캔파일 첨부(선택)] → 저장(결재경로 및 공람지정 방법은 전자문서 처리방법과 동일)
• 업무담당자: 문서등록대장 비전자문서 등록에서 등록 (문서번호 채번)
- [문서관리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에서 비전자문서 등록 → 문서정보, 경로 정보, 시행정보, 관리정보 입력 → 저장

세부업무명

3. K-에듀파인 '메모관리 및 내부메일'

관련근거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내용

① 메모 관리

• 메모 작성: [메모관리 > 메모작성]
- [메모작성]창에 제목, 과제카드 및 관련정보 선택, 수신자지정, 본문작성

• 메모 관리
- 처리할 메모: [메모관리 > 메모관리 > 처리할메모]
- 보고받은 메모: [메모관리 > 메모관리 > 보고받은메모]
- 보고한 메모: [메모관리 > 메모관리 > 보고한메모]

※ 의견이 등록된 메모는 회수 불가, 미열람자에 한해 부분회수 가능

Tip
■ '메모관리' 매뉴얼

② 내부메일

• 메일 작성: [내부메일 > 메일작성] 진행 후 제목, 수신자 선택, 본문작성 후 [발신] 버튼 클릭하여 메일 발신
※ 제목, 내용에 금칙어 포함 또는 용량 초과 시 발신 불가

• 메일 관리
- 발신메일 관리: [내부메일 >메일함 > 발신메일함]
·'수신확인' 항목을 클릭 시, 수신자의 열람 확인 및 회수처리 확인, [이동]버튼으로 개인메일함 이동
- 수신메일 관리: [내부메일 > 메일함 > 수신메일함] 진행 후 '메일제목' 항목을 클릭 후 내용 확인
- 개인환경 설정: [내부메일 > 메일관리 > 내부메일설정] 진행 후 발신메일, 수신메일함, 휴지통 보관일수, 서명자동포함, 발신메일저장 등 지정 가능

Tip
■ '내부메일' 매뉴얼

세부업무명

4. K-에듀파인 '업무인계인수'

관련근거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내용

① 인계 신청

- [업무관리 > 업무인계인수 > 업무인계인수 > 인계함] → '인계신청' 선택 → 인계인수사유와 적용일자 필수 입력, 인수자선택 클릭, 입회자 선택 → 내용입력 → 인수요청(인수요청 후, 인계자 내용 수정 불가)

② 인수함 확인 및 처리

- [업무관리 > 업무인계인수 > 업무인계인수 > 인수함] → '담당업무' 선택 → 팝업 호출 → 내용 확인 후 '인수확인', 출력 가능

Tip

- '과제관리' 매뉴얼(44쪽 5.업무인계인수)

세부업무명

5. K-에듀파인 '업무지원'

관련근거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주요내용

① 업무 지원 기능

- 공문게시판: [업무지원 > 알림판 > 공문게시판] → 주제영역 기준으로 조회 → 공문게시물 체크 후 '자주보는 게시물' 등록 가능
- 일정 작성(개인/학교): [업무지원 > 일정현황] → [등록] → 일정작성 팝업화면 호출 → 일정등록구분, 제목, 일정종류, 일정설정, 내용, 공개범위 등 정보 입력

②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신청

- [나이스 > 나의메뉴 >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 [신규]버튼 클릭 → 승인요청사항(기간, 패스워드 등)입력 → 승인 요청

Tip

- K-에듀파인매뉴얼 업무지원
- 원격업무지원 사이트
-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서비스

6 나이스 업무

'나이스(NEIS)'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처리)를 근거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미하며,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인 나이스를 사용한다.

세부업무명

1. 일반 업무

관련근거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Tip

■ 4세대 나이스 주요 업무
- 학교업무분장
- 학교정보
- 교육과정
- 학적
- 학생생활
- 성적
- 학생부
- 개별화교육계획
- 보건
- 입학

주요내용

①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 GPKI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
  - GPKI 인증서 신청서 제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담당자) →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접수 후 담당자가 발급 → 전자서명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인증서 발급|재발급" 선택 → '개인용 인증서 발급'의 [참조번호/인가 코드 조회] 클릭 → '인증서발급(개인용)'창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시비밀번호(신청서에 작성한 숫자 8자리) 입력 후 확인 → 참조번호와 인가 코드 확인 후 발급 클릭 → 인증서저장
- 인증서 사용자 등록
  - 업무포털 접속 후 첫 화면 하단의 '사용자 등록'을 클릭
  - '사용자 등록' 창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선택]으로 발급받은 GPKI 인증서를 선택 후 아이디 입력하여 등록

②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
- 자격취득/연수/포상서훈/연구실적의 자료는 [기본메뉴>인사>인사기록>개인정보변경신청]메뉴를 통해 수정

③ 근무상황 신청
- 개인근무상황 신청
  - 개인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연수, 결근, 기타 등을 신청할 때 사용
- 출장 신청
  - [나이스>기본메뉴>개인출장관리]에서 국내출장(관내), 국내출장(관외), 국외 출장, 연수로 신청

2. 나이스 교무학사 업무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5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주요내용

<중학교>

1. 학교업무분장, 학교정보, 교육과정
2. 학적, 학생생활
3. 성적, 학생부
4. 입학, 보건, 개별화교육계획

<고등학교>

1. 학교업무분장, 학교정보, 교육과정
2. 학적, 학생생활
3. 성적, 학생부
4. 입학, 개별화교육계획

※ 4세대 나이스 업무 처리 도움 동영상

• 4세대 나이스 안내사항, 학교업무분장관리, 학기말업무처리 연수 영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oeia)

※ 문의

• 전화문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600-8400)
  - 경기도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1599-2578)
  ※ 교무업무, 권한관리, 공통업무, 업무포털 접속(EVPN포함), 대국민 서비스, 나이스플러스
• 온라인 문의: 나이스 사용자 지원 [https://help.neis.go.kr/]
  ※ 오류 및 개선요청 사항은 온라인 질의 게시판 이용

7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 문화 조성에 대한 지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참여 중심의 공문서 질적 개선 노력을 확대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세부업무명

1.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운영 체제 구축 및 문화 조성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 계획

주요내용

①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협의체 운영

- 학교 구성원 직종 및 구성 비율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조직
- 학교 규모, 학교급, 교직원 수, 학년 및 부서 등 여건과 상황을 고려
- 소통과 숙의의 협의 정례화 및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및 효율화 추진

② 교육활동 전념의 교무행정업무팀 운영

-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별로 구성 및 운영하되 학교 여건에 맞게 재구성
- 교감이 총괄하며 학교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교감, 보직교사, 교과전담(비담임) 교무행정 업무 담당 실무사 등으로 구성
- 학교업무협의체와 학교구성원의 합의 등을 통해 명확한 업무분장 체제 구축

③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교업무 재구조화 추진

- 학교 자체 업무 분석을 통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추출
  - 업무분석 절차(예시): 학교업무 분석을 위한 기준 설정 → 교직원 개인별 업무 분석 → 부서별, 학년별, 직종별 협의 → 학교업무협의체 조정 협의 → 개선 업무 추출(폐지, 간소화, 전자화, 통합, 새로운 업무 등)
  - 학교업무 분석 자료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하여 업무분장 (업무분장 시 학교 교육공동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④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조성

-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교육지원 현장 협업 모니터링(인터러뱅) 운영
  - 현장의견 통해 학교업무 개선과제 발굴, 본청 부서 대상으로 개선과제 추진 협의 및 지속 중점이력관리
- (학교) 학교업무 효율화 정책을 담은 학교업무 개선 안내자료 활용
  -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월 1회 발간자료 활용(2023.6월 창간호~)
  - ※ 경기도교육청 메신저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퀵메뉴 바로가기 참고
  - '학교업무개선 길라잡이'를 통한 상시 학교업무 개선 문화 조성

Tip

- **학교업무협의체:**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규모, 학교급, 교직원 수, 학년 및 부서 등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업무 분석 및 분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협의체

- **교무행정업무팀:** 단위학교 조직을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조직하여 교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

2. 공문서 기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2024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계획

주요내용

① 공문없는 날(달) 개편에 따른 학교 자율 기반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

- 특정 요일 제한 없는 학교 자율 기반의 협의하고 연구하는 문화 조성
- 공문없는 주간 새 학년 교육과정 운영 전념*
  * 학부모총회, 학교운영위원회, 수업공개, 상담주간 등 운영

② 공문서 감축을 통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추진

- 공문게시제 중점 추진에 따른 주제영역 준수 및 영역별 공문 확인
  - 학교의 단순 안내 및 홍보사항은 학교공문 탭에 공문 게시
  - 교직원 공문게시판 1일 1회 이상 확인
- 학교별 K-에듀파인 외부공문관리기능 적용으로 외부공문 접수(처리)업무 경감
  - (기능) 홍보성 외부공문 자동 게시와 동시에 문서등록대장 문서 자동 등록
  - 학교가 직접 외부공문담당자 설정(단, 공문 접수(처리) 등 행정업무 일체 없음)
- 학교 자율 기반의 공문생산(내부결재) 등 행정업무 경감 노력
  - 학교급별 위임전결규정 현행화 및 준수
  - 공문서대시보드* 활용 학교별 공문서 분석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단위 학교 발생 공문서 종합 분석 웹 서비스(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탑재)

③ 공문서 질적개선을 통한 교육활동 전념 지원

- (공문생산기관) 현장 중심 공문생산으로 교육활동 전념 지원
  - 공문생산 이행사항 13개 항목 준수
  - 공문(핵심용어·학교실행)표시제 추진
- (학교) 간소화·표준화된 공문서 기반 신속·정확한 이해 및 업무 처리

④ 공문서 기반 효율적 교육행정을 위한 공문(수신)생산 역량 강화

- 공문생산 역량강화 상시 지원시스템 활용
  ※ K-에듀파인 문서관리 샘플서식,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활용
- 신규(전입), 부장교사 등 대상별 공문(수신)생산 역량 강화
  ※ K-에듀파인(자료집계시스템) 기능의 이해와 활용 등

⑤ 현장 참여 공문서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

- 공문서불편신고제 상시 참여(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문서불편신고센터)
  - (신고자) 학교 교직원 누구나
  - (신고 항목) 공문생산 이행사항 13개 항목 미준수 공문서 신고
  - (결과 처리) 담당부서 및 모니터링단 검토 후 개선 의견 탑재

3. 학교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지원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 계획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업무 간소화 운영

- (학교)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학교업무 발굴 및 개선
  - 학교업무 간소화 전략 수립 기간 운영
    ※ 업무 분석을 통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학교업무 발굴 개선
  - 학교 내 위원회 통합 운영 및 학교 비치장부 현행화
- (교육지원청) 일괄 집행 지원 분야 모색으로 학교 자체 업무 감축 지원
- (도교육청)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 지침 고려 학교업무개선과제 발굴

②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 (학교) 학교업무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및 교직원 역량 강화
  -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위임·전결규정 통합 운영
  -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교업무 개선 방안 상시 소통
  - 교직원 학교업무 효율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 (도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학교업무 추진 체계 지원
  - '현장의견수렴/과제발굴-프로그램/장학자료개발-현장컨설팅'으로 연결되는 학교업무 처리 간소화·전산화·효율화 적시 지원 사업 추진
  - K-에듀파인 기능개선 및 도교육청 누리집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운영
    ※ K-에듀파인 '학교업무지원' 게시판 생성 및 샘플서식(정책공문서작성법 등 안내) 개발 지원

③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교) 학교 자율 기반으로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
  -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세부 일정 수립
  -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세부 계획 수립과 편성
- (교육(지원)청) 학교의 새 학년 준비 전념 문화 적극 지원
  - 학교 대상 공문 발송 및 출장 자제 협조
  - 각종 정책과 사업의 사전 안내로 학교 교육과정 반영 적시 지원
  -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행정 지원
    ※ 교원 인사(조기 발표), 역량 강화(신규교원 직무연수 등), 교육활동(과정) 준비, 기타 학교업무 효율화 방안 안내 등

Tip

■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경기도도교육청에서 발간하여 학교업무 개선 문화 조성 강화 및 적시적인 학교업무 간소화·효율화 추진 사항 등을 안내하는 정기(상시) 안내 자료

학교는 '먼저 확인하고, 고민하며, 방안을 찾는' 학교업무 개선 협의·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바로가기>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경기도교육청 메신저 퀵메뉴 링크로 접근 개선

8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열람 및 소통공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과 학교가 자녀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가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부업무명

1. 학부모서비스 주요 내역 및 이용

관련근거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① 확인 가능 내용

- 학교정보: 학교정보, 주간식단, 월간식단, 교과용도서, 교육비 납입현황, 과목 및 담당교사
- 학생 수업정보
- 학생생활: 학교생활기록, 시간표, 출결정보, 학교스포츠클럽, 대입전형자료
- 학생평가: 성적표, 고사별정오답표, 고사별점수, 성적향상도, 학습진단, 성적변화표
- 학생건강: 건강기록, PASS 활동처방 PASS 평가결과, PASS 평가결과 이력, PASS 통계, PASS 지수
- 학생지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교육활동신청

② 학부모서비스 이용 방법

- 4세대 학부모서비스접속
- 회원가입 및 약관 동의
  - 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본인확인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 완료
  -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학부모 회원정보 연동 → 본인확인 → 완료
    ※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자녀 등록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 로그인 → 자녀등록 → 자녀정보 조회 → 자녀등록(승인요청)

③ 기타 서비스

- 캘린더, 공지사항, 예비입학생 방과후학교, 설문 서비스 등

Tip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 학부모서비스 시작하기
- 학부모서비스 학교생활 살펴보기

Tip

■ 이용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자녀 등록) 후 학생(자녀)의 나이스플러스를 통한 승인이 필요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생정보 조회시 인증서 등록 필요
- 이전 학부모 서비스 등록 회원은 신규 회원가입 후 자녀등록을 통하여 자동으로 검증 후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학부모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로그인 수단별 정보열람 항목에 제한이 있으며, 성적 및 건강 등 개인 관련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으로 접속 필요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중심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우선적으로 교육·복지·문화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한다.

세부업무명

1. 중점 추진 과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실천

- 학생 교육복지 개입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다학제적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모형 개발
-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다중안전망' 모형 확립
  ※ 교육복지우선지원 다중안전망: 1단계 경기 희망교실 → 2단계 경기 희망(연계)학교 → 3단계 사업학교

② 교육복지 우선지원 행정의 합리적 역할 재구성

- 도교육청 정책기능 강화
-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

③ 교육복지우선지원 실현을 위한 제반 여건 강화

- 사업담당자 및 사업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 교육행정기관 교육복지 유관사업 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

Tip

- 경기도교육청-함께 해 봄
- 교육지원 한눈에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지원 안내

세부업무명

2.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사업학교 장의 책무)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학생)

주요내용

① 프로그램 기획

-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 철학과 비전을 반영, 우선 지원학생의 발굴·사례 관리 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소위원회 심의 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확정
- 사전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서 검토 필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지원청 확정 통보

③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 우선지원학생 발굴·선정: (1차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학생 결과 자료 확보 → (2차 학생) 학교장추천서 취합 → 교육복지소위원회 심사 및 선정 → 보호자 신청서 및 동의서 징구
- 선정 기준
  - 1차: 법정(법정수급자,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비법정(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선정
  - 2차: 학교장 추천자, 특별한 사유로 인한 담임추천자 등

세부업무명

3. 교육복지네트워크, 희망(연계)학교 및 경기희망교실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협력학교 지정·운영), 제12조(연계학교 지정·운영)

주요내용

① 교육복지 네트워크
- 정의: 학생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의 소통·연계망을 체계적 구축·운영하는 방법
- 특색있는 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 운영

② 희망(연계)학교
- 정의: 선생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 학교
- 사업 영역: 필수 프로그램(사제동행), 선택 프로그램(교육과정 연계), 학생성장지원(협의회, 위기학생 긴급지원 등)

③ 경기희망교실(교실형 연계학교)
- 정의: 선생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 교실
- 운영 형태: 담임형, 비담임형
- 운영 내용: 교원 1인이 우선지원학생 1명 이상 포함한 4~10명 내외 학생과 결연하여 사제동행으로 관계 증진과 학생 욕구에 맞춰 지속적 성장 지원

10 학년부 운영(고3)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세부업무명

1. 운영계획 수립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주요내용

① 운영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학교 교육목표 및 학교 교육계획 확인
- 학생, 학교시설, 학부모 등 교육환경 파악

② 운영 계획에 포함될 내용
- 교육과정 및 교과 담당교사, 학급담임 및 학년 업무 배정, 학력향상 계획
- 개인별 학력향상카드 활용, 진로 및 진학지도 계획, 자기주도학습 실시 계획,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생활지도 계획
- 정기고사 및 학력평가 실시 계획, 졸업여행 계획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③ 학력 향상 계획
- 방과후수업: 3학년 특성에 맞는 방과후수업 계획 수립
- 자기주도학습: 희망자에 한해 실시
  - 자기주도학습의 정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 배치 등

Tip

- 3학년 운영계획(예시)
- 학력향상 계획(예시)
- 개인별 학력향상카드(예시)
-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예시)

세부업무명

2. 진로 및 진학지도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주요내용

① 진로상담
- 시기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상담(3월: 학생실태조사, 4월: 진로상담 1차, 8월: 진로상담 2차, 12월: 정시상담 3차)

② 진학지도
- 진학상담실 및 사이버 진학정보란 운영
- 생활기록부 성적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 진학 관련 사이트 활용
- 대입 복수 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일간지 및 각종 진학 관련 정기간행물 구독
-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설명회 개최(3월, 5월, 8월, 12월)

Tip

- 진로 관련 자료
  - 경기학부모지원센터-진로진학지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진학사
  - 유웨이
  - 김영일컨설팅
  - 경기도교육청교수학습포털

③ 구술 및 면접이론(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
④ 대학입학 원서접수 과정
- 유웨이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 가입
- 접수하려는 대학 이름을 찾아서 클릭
- 원서 작성 및 원서 결제
- 결제 후 뜨는 출력화면에서 수험표와 원서, 봉투 표지 출력
- 서류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접수

세부업무명

3. 수시모집 입학확정자 지도

관련근거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주요내용

①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 파악
② 입학 확정자 대상 프로그램
-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학교계획 프로그램, 학생 자체 프로그램

③ 생활 지도: 학교와 학부모가 연계하여 실시
④ 출결 관리: 생활기록부 출결 관리 규정 준수

세부업무명

4.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학생 지도

관련근거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Tip

- 수능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 현장체험학습정보방
- 수능후 프로그램1(예시)
- 수능후 프로그램2(예시)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학교 여건 및 진로지도 상황에 따라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수능 후 교내·외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사회연계프로그램 등 활용
- 체험학습 실시 전 현장 체험학습 정보방에 등록

②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유도

세부업무명

5. 졸업앨범 제작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Tip

- 졸업앨범 사양서(예시)

주요내용

① 앨범제작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예시)
- 교감, 3학년 부장, 담당 교사,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부모 2명, 학생대표 2명

② 절차
- 계획 수립 → 학년협의회 → 운영위원회 심의 → 앨범 구입 희망원 발송 → 제작업체 선정(선정위원회) → 촬영 · 편집

11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교복 학교주관구매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사 ·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이다.

세부업무명

1.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추진 요령

Tip

■ **규정 현행화 관련 유의사항**

• 한번 정해진 교복 디자인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자인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예전 규격 그대로 입찰공고문에 올리는 경우, 업체와 학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실제 학교구성원의 동의하에 정해진 규격이 학교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일치시켜야 함

Tip

■ 교복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
■ 각종서식(예시)
■ 교복 업무매뉴얼 동영상(링크)
■ 교복선정위원회 확인서(양식)

관련근거

◦ 202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통합지원 계획

주요내용

① 교복 디자인 선정(변경) 및 규정 정비

• 기존 교복 검토: 디자인(소재, 형태, 색상 등), 품목, 생활복 도입 여부 등
• 실제 착용하는 교복의 규격(소재, 혼용률, 색상, 디자인 등)이 학교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교복의 착용 여부, 교복 디자인 선정(변경) 등은 학교공동체(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 회의 등)의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
• 교복 디자인, 소재, 색상, 혼용률, 부속품, 제작 시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격서로 명문화(내부결재 포함)
• 교복 규격서를 학교 규정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교복 디자인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 공고문 게시 전까지 즉시 공개

② 교복 구매 계획 수립

•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8명 이상으로 구성
  - 교복선정 활동 중 교복입찰업체(향후 참가업체) 개입 없이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에게 확인서 징구
• 교복지원 품목, 규격서, 착용 시기, 구매 일정, 구매 절차, 계약 방법, 계약 특수조건, 납품장소 지정, 비용납부 방법, 품질기준, A/S방안 등에 관한 사항, 상한 가격, 전년도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교복 구매 계획 수립
• 유의사항: 상한가격은 학교에서 입찰공고 시에 작성하는 기초금액이 아니므로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시 교육청 권고 상한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교복 규격(디자인, 원단 등)을 고려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출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국·공·사립학교 모두 포함)는 교복구매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반드시 거침.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함

④ 입찰 공고

• 기초금액 산출: 교육청 권고 상한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교복 규격(디자인, 원단 등)을 고려한 거래실례가격(물가기관 공표, 직접조사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출

-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수

• 계약방법 결정: 계약법령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2단계 입찰(규격 · 가격분리동시입찰) 등 계약방법 결정
• 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문 작성 및 게시

⑤ 교복 납품사업자 선정/계약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 마감
• 업체선정평가
-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명확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만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심사 의무실시
- 가격경쟁: 공 · 사립학교별로 적용되는 입찰 관련 법령 준수
• 계약체결
- 학교에서 결정된 계약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사업자로 선정
- 낙찰 업체가 결정되면 계약체결을 위한 검토사항을 확인 후 학교장은 낙찰업체에 통지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 단가계약 체결

⑥ 제작과정 관리(수시)

•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검사,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교복 대량 생산 직전 샘플 검사
• 교복 제작 중에도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교복 제작 상태 확인
•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대량생산) 시작

⑦ 학교주관구매 안내

• 신입생 학교 배정 및 합격자 통지 시 교복 구매 방법 안내

⑧ 구매 인원 최종 확정 및 치수 측정

• 학생의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의 측정시기를 달리하여 측정
• 치수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확보
•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치수 측정(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⑨ 교복 지원 예산 편성

• 교육청·시군에서 교복 지원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면 학교예산에 편성

⑩ 교복 구매·납품: 납품 완료 시 업체에 최종납품확인서 요청하여 확인

⑪ 검사·검수: 수량 및 규격서 등 계약 사항 확인, 검사검수 체크리스트 활용

⑫ 대금 지급

• 가상계좌, CMS, 스쿨뱅킹 등 활용,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 지급
• 세금계산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청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조회

⑬ 평가 및 환류(납품 완료 후):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 · 환류

Tip

■ 각종서식(예시)
■ 검사검수 체크리스트(예시)
■ 만족도조사(양식)

Tip

■ **유의사항**
•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시 교복 지원 불가

12 교육자원봉사

지역 주민, 대학생, 퇴직자 등 학교 밖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자원봉사 활용으로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한다.

세부업무명

1. 교육자원봉사 활용

관련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 교육자원봉사 운영 지침
-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교육자원봉사 활용

-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서 교육자원봉사 활동 가능
- 교육과정 외 학교환경 관리, 학교행사 지원 등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
- 활용 절차: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 활용 학교 수요조사 → (학교) 학교에 필요한 교육자원 봉사활동 내용 제출 → (교육지원청) 학교 수요조사 결과와 봉사 활동이 가능한 봉사자 매칭

② 교육자원봉사 활용 분야(예시)

- 학습(교과): 기초학습, 독서 논술, 외국어 등
- 미술 · 공예: 캘리그래피, 종이접기, 규방공예 등
- 상담 · 심리: 심리상담, 멘토링, 미술치료 등
- 진로 · 직업: MBTI, 진로상담, 컬러테라피 등
- 놀이: 보드게임, 전래놀이, 책놀이 등
- 인권 · 시민 교육: 다도, 회복적생활교육, 다문화체험, 생태교육 등
- 문화 · 공연: 악기(칼림바, 우쿠렐레 등), 사물놀이 등
- 안전 · 보건· 돌봄: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원, 대학생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행사 및 행정 지원 : 도서관 지원, 학교 환경관리 등

※ 위 활용 분야는 예시이며, 교육지원청 및 봉사자 인력풀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교육자원봉사 실제 활동 사례

- 교과과정에서 회복적 정의 인권 시민교육
- 방과 후 과정에서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돌봄교실에서 놀이교육 프로그램(단체놀이, 전래놀이 등) 운영

④ 봉사자 실비 지급

- 1일 4시간 이상(사전 준비 및 교육 시간 포함) 봉사자에 한하여 15,000원 (교통비 및 식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Tip

■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자원봉사활성화
-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력
-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역량을 키워 학교에 연결

제10편 교육연구 및 평가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교육연구 및 평가</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교육공무원승진규정</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연구학교의 지정, 운영, 평가 및 질 관리
. 학교평가 계획 수립, 평가지표 설정 방안, 평가 시행 및 환류</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연구학교</td><td>- 2024학년도 자료 반영 예정</td></tr>
<tr><td>2. 학교평가</td><td>- 2024학년도 자료 반영 예정</td></tr>
<tr><td>참고 자료</td><td colspan="2">◦ 2023 연구학교 운영 기본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2.) (2024 계획으로 변경 예정)
◦ 2024 교육과정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3학년도 학교평가 운영계획(학교정책과, 2023. 2.) (2024 계획으로 변경 예정)
◦ 2023 학교평가 편람(교육과정정책과, 2023. 4.)</td></tr>
</table>

1 연구학교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현안문제 연구를 통한 교원 및 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성과 일반화로 경기혁신교육 발전 동력 확보 및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을 구현한다.

세부업무명

1. 연구학교 운영

Tip

- 연구학교 유공 교원 가산점 인정 범위
- 연구학교 운영 관련 서식

관련근거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 2023 연구학교 운영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추진 방침

- 경기도교육청 자체 연구학교는 지정하지 않으며 교육부 요청에 의한 지정
- 희망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공모 지정 원칙(연속 재지정 불가)

※ 단, 연구학교 종합평가 결과 우수교(90점 이상)는 연속 재지정 가능

-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직 교원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지정
-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은 부서의 수요 조사 후 연구학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괄부서에서 최종 결정
- 연구학교의 운영 계획은 연구과제 관련한 경기교육 기본정책 방향 반영 및 학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고 연구 실천 과정에서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 연구학교 운영결과에 따라 차등성과관리제를 적용하여 유공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 연구 과정·결과를 공유하는 개방형 연구학교로서 연구학교 보고회는 공개보고를 원칙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 연구내용 확산과 일반화 도모

② 연구학교 지정

- 대상: 희망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 지정 기간: 연구 과제를 고려하여 6개월 이상 3년 이내
- 지정 주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연구학교 운영 총괄부서)
- 지정 협조: 도교육청 연구학교 과제운영 담당부서
- 지정 방침
  - 교육부 요청에 의한 지정과 훈령에 의한 자체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처 요청 지정은 과제운영 담당부서 요청에 대해 연구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 결정
  -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직 교원의 80% 이상이 동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지정
  - 공모계획서 심사 시 총점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학교는 선정하지 않음
  - 연구학교 운영 기간 종료 후 차년도에 연속하여 연구학교 재지정 불가

※ 단, 연구학교 종합평가 결과 우수교(90점 이상) 및 교육시책에 따른 임의 지정교는 연속지정 금지 예외(경기도교육청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8항)

> 제4조 (지정 등) ⑧ 도지정 이상 연구학교 운영교는 종료후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시책에 의한 임의 지정교나 연구학교 평가결과 우수교는 예외로 한다.

- 불법 찬조금 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지정 청탁 등 공정성을 위배한 경우 연구학교 지정 제외
- 기관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학교는 경고 조치 후 1년간 연구학교 지정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 및 타부처 요청과 과제운영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연구학교 최종 선정 및 지정 학교 수 등은 연구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③ 연구학교 운영

- 연구학교 운영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내부결재 후 시행
-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과제별 특성에 맞게 운영(학년별, 교과군 운영 권장)
- 연구학교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제출기한 엄수

④ 연구학교 운영 보고

- 공개 보고 원칙, 주제·영역별로 합동 보고회 가능
- 연구학교 보고회 일정-방법은 연구학교 과제운영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실시
- 연구 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 성과 일반화가 가능한 창의적 방법으로 보고
- 중간년차-성장, 발전, 문제해결/ 최종년차-성과공유, 일반화
- 전시성 요소 배제, 실질적인 연구 내용과 성과의 성찰적 나눔

⑤ 연구학교 평가 및 질 관리

- 연구학교 자체평가
  - 학기별 1회 연구학교 자체평가 실시,
  - 연구학교 참여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성찰적 평가
  -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 연구학교 교원 차등성과관리제 평가 실시
  - 연구학교 운영에 실제로 참여 및 기여한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인센티브에 차등 반영
- 개방형 연구학교 운영
  - 연구 내용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해 연구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공유
- 연구학교 최종년차 주무 표창(추천 시기 및 방법은 2024 유공 표창 계획에 따름)
  - 최종년차 연구학교 담당 주무를 교육감 표창, 기관 표창은 하지 않음

※ 연구학교 참여 신청서 제출시 모든 교원에게 미제출로 인한 유의사항 안내: 유공교원 명부 작성시 학기초 참여 신청서 미제출 교원 반영 불가

⑥ 연구학교 유공교원 명부 작성

- 기간: 2024.12.~2025.2.
- 절차: 연구학교 참여신청서 작성·제출(업무관리시스템) → 연구학교 유공교원 예정자 명단 제출(업무관리시스템) → 전입교사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정보고(업무관리시스템) → 유공교원 명부 작성시 반영 제출
- 유공 제외 기간을 반영하고 유공 교원 가산점 인정 범위를 참고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
- 유공교원 명단 정정 및 처리 기한
  - 절차: 정정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신청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과제운영 담당부서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신청교 및 해당기관 알림
  - 처리기한: 유공교원 명부 발행 후 1년 이내

Tip

- 연구학교 외부-내부평가 실시
- 연구학교 최종년차 보고서 심사
- 연구학교 종합평가

2 학교평가

학교는 해마다 학교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교육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에 환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세부업무명

1. 성장중심 학교평가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13조
- 2023 학교평가 운영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 교육력 제고 위한 학교평가 운영 내실화

- 2024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편람 수정·보급
  - 학교평가 계획 2월 중 안내로 2024학년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
  - 학교별 2024 학교자체평가 계획 수립
- 지역별 1/3 평가 대상교 3년 주기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 학교별 정성평가 보고서 심사 및 개별 피드백 제공
  - 학교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점, 발전 방안 차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장학 활동 강화

② 데이터 기반의 학교평가 운영 지원

-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교평가 평가지표 수정·보완
  - 학교평가 설명회 및 컨설팅 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수정·보완 추진
- 학교평가 결과 데이터 관리를 통한 맞춤형 학교 지원
  -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데이터 누적 관리를 통한 학교 맞춤형 집중 지원 방안 모색
- 학교자율과제 운영(미래교육담당관)
  -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로 모든 학교가 주체가 되어 실행 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운영
  - 2023학년도 학교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실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의 실태 진단 후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

세부업무명

2. 수업과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자율장학

■ 정책추진 지원

- 학교평가 편람 보완·보급(2024.2월),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2024.12월)
- 교육지원청 학교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2024.3월/9월)
-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2024.3월/9월)
- 자율장학 리더교원 및 최고관리자 과정 연수(2024.6월~9월)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주요내용

① 교사와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자율장학

- 학교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계획 수립
  - 자율장학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인력풀 제공 및 연수 지원
- 교육과정·수업·평가 중심의 자율장학 운영
  - 수업장학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컨퍼런스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수업장학 이해자료 제작·보급(2024. 6월)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원 연구문화 조성
  -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른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이해 자료 제작·보급

② 교원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간 자율장학

-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내실화
  -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지구대표 워크숍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장학 네트워크 활성화
  - 교육지원청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2024. 12월)

③ 학교별 맞춤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 학교평가 결과를 활용한 학교 맞춤형 담임장학
  - 학교평가와 자율장학 연계 방안에 대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2024. 3월/9월)
-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협력장학
  - 교육지원청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2024. 12월)

제11편 지역교육협력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지역교육협력</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경기공유학교 운영
·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td></tr>
<tr><td rowspan="4">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경기공유학교</td><td>- 2024학년도 현행화
- 2024학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td></tr>
<tr><td>2. 미래교육협력지구</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3. 방과후학교</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3 미래학교기획과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미래학교기획과, 2022.12.)
○ 2023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지역교육협력과, 2023. 5.)
○ 2024 경기공유학교 운영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학교 시행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대학 시행 계획 (변경 예정)
○ 2023 방과후교육과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방과후교육과, 2022.12.)
○ 2024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기본계획(지역교육협력과, 2024. 1.)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지역교육협력과, 2024. 1.)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지역교육협력과, 2024. 1.)</td></tr>
</table>

1 경기공유학교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교 밖 학습터를 지원한다.

세부업무명

1.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Tip

■ 학교밖 학습터 재구조화

- 학교 밖에서 교육청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밖 학습터'를 공유학교로 재구조화
-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경기학교미디어센터, 제2학교(제2캠퍼스) 등

Tip

■ 경기공유학교컨퍼런스 자료집

관련근거

- 2023 미래학교기획과 주요 업무 추진 기본계획
- 2023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핵심 가치

- 협력 파트너십, 학습터의 공유, 온·오프라인 연결, 학습경계 확장, 공교육 책무성 강화, 지역의 자율과 균형

② 추진 과제

- 공유학교 추진의 다각화 및 지역플랫폼으로의 일원화: 추진 내용과 주체는 다양하지만 지역단위 공유학교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
- 지역 맞춤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지역별 교육자원지도 제작, 오프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통합 누리집)
- 지역특성에 따른 공유학교 시범지구 운영: 인구감소 지역형(농촌형, 원도심형), 중소도시 지역형, 대도시 과밀 지역형, 다문화 밀집 지역형
- 공유학교 운영 관련 규정 개선
  - 공유학교 인력 배치 및 자격, 행·재정 지원, 법률 및 지침 개선 등
  - 공유학교 추진동력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등

③ 운영 기본 모델

구분	내용
참여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희망자 • 학교밖 청소년 등 희망자
운영 장소	• 현재 운영 중인 학교밖 학습터(경기이룸학교 지역캠퍼스,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등) • 지역 유관기관 시설,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폐교 시설 및 학생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 공간
운영 주체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기관 등
운영 형태	• (개설 형태) 일일형, 집중기간형, 학기형, 위탁형, 온·오프라인 병행 • (개설 시간) 일과중, 방과후, 주말, 방학 등 • (참여 단위) 개인, 학급, 학년, 교과, 동아리, 학교 단위로 참여
학교 교육 연계 방안	• 학습 지원 영역 - 학생 개인별 맞춤 기초학력 학습, 교과 심화학습 - 인문·과학·IT·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진로 맞춤 학습 • 학점(시수) 반영: 인정과 미인정 프로그램 병행 - 인정프로그램: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에 반영 - 미인정 프로그램: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반영

세부업무명

2. 경기공유학교 운영

관련근거

- 2024 경기공유학교 운영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학교 시행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대학 시행 계획 (변경 예정)

주요내용

①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강화
- 학생의 주도적 성장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개척 및 전문 학습 역량 신장

② 개요

-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 학생주도 프로젝트 기반하에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탐색 기회 제공
- 대학·전문 기관과 연계한 단계별 지역 학생 맞춤 강좌 개설·운영
- 지역 위탁형 프로그램(분리교육 공유학교 등),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시범 운영

③ 내용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
- 경기이룸학교: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경기이룸대학: 지역의 대학과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학습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지역 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관(단체)이 지역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교육자원을 기부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
-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 지역위탁형 프로그램: 심리적, 환경적, 언어적 요인으로 소속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돕는 인성교육 기반의 단기 위탁프로그램

④ 학교 추진 내용

- 경기공유학교 운영 안내
  - 학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
    ※ 학생·학부모 안내(가정통신문, e-알리미), 교직원 안내(워크숍 등)
  - 경기공유학교 참여 학생 소속교 내부 결재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경기공유학교 운영시간의 80% 이상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

2 미래교육협력지구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세부업무명

1. 미래교육협력지구

관련근거

◦ 2024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미래교육협력지구 비전

•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의 중심, 새로운 미래교육생태계 실현

② (자율)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역교육협의체 활성화
  - 지역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교육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자율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교육자치 지원
  -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및 지역의 교육주체 교육 참여 확대
  -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맞춤 지원시스템 운영
  - 원클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가칭) 운영 활성화

③ (균형)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지역사회 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학교, 학교-지역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질관리 및 컨설팅 강화
• 특색있는 지역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확산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색 교육활동 지원
• 조화로운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강화
  - 지역으로 확장하는 배움터 조성

④ (미래)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

•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역량강화 및 미래 인프라 구축
• 지역 연계 창의융합교육 강화
  - 지역 연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학교와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 지역특색 프로그램 확장을 통한 공유학교 모델 개발
  - 지역맞춤 공유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3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에 기여한다.

세부업무명

1. 프로그램 다양화

관련근거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주요내용

① 추진 목적

•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 강화

②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

•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 에듀테크 연계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수익자 부담 특기 적성 참여 학생 대상 에듀테크 방과후 프로그램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콘텐츠)
• 학생 수요를 반영한 신수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안팎에서 지역과 협력하여 주말·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 소외지역(계층) 초·중·고 학생 대상 운영
• 소규모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강사모집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 대상 운영비 지원
  - 소인수 강좌 강사료 보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 체육관, 댄스실, 조리실, 목공실, 메이커실 등 인기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 지역의 환경, 역사 특색을 반영한 지역 특화 방과후 공유학교 운영

③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로 학교 업무 경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 확대
  - 4세대 나이스를 활용하여 수강 신청, 강좌 관리, 회계 관리 등 개인 위탁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업체위탁 범위 확대를 통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신수요 프로그램 도입

④ 소외 계층(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세부업무명

2. 운영 절차 및 취약 계층 지원

Tip

■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시
-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

Tip

■ 업체위탁 업무 처리 절차
- 프로그램 편성 계획, 수강료 산출 내역, 업체 선정 계획(방법, 절차, 심사계획, 제안요청서 등 심의)
- 소위원회 구성시 위 사항을 조사,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 위탁업체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Tip

■ 자유수강권 운영 업무 절차
- 학생별 자유수강권 현황 관리 및 분기별 집행 실적 제출
- 자유수강권 소요액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잔액 발생 시 전액 반납 처리

Tip

■ 참고사이트
-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
- 교육부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관련근거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주요내용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학생, 학부모)
- 업체위탁 운영 여부 조사(필요 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명, 운영 예정 횟수 등)
- 강사 선발 계획(자격 기준, 선정 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홍보 계획 및 평가 계획, 학생 관리 계획(안전관리 포함) 등
-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회계 관리 등

③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심의 · 자문(학교운영위원회)

④ 강사모집

⑤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⑥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⑦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대상자: 초 · 중 · 고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1순위: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학생 수의 10% 이내로 소수점 이하 버림)
- 기 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⑧ 프로그램 운영 평가(질 관리)
- 프로그램 운영 공개,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등 실시

⑨ 결과 공개 및 환류

제12편 학교자치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교자치</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교육기본법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자치회 조직 운영
· 학부모회 구성·운영, 학부모교육</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생 자치</td><td></td></tr>
<tr><td>2. 학부모 참여</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3 학생자치활동 추진계획((구)미래인성교육과, 2023. 2.)
○ 학생자치 길라잡이 2.0((구)미래인성교육과, 2020. 2.)
○ 2024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추진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협력지원과, 2024. 2.)
○ 학부모회 핸드북((구)학부모시민협력과, 2022. 4.)</td></tr>
</table>

1 학생 자치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학생자치회 선거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학생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주요내용

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고(선거 3주 전)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을 필요시 제·개정
- 선거의 모든 관리는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함

② 선거일정 공고(선거 15일 전)

- 후보를 파악하기도 전(3월 초)에 치르지 않도록 유의

③ 후보자 등록 신청

(선출내규, 후보등록서, 추천장, 후보자등록공고, 후보자사퇴신고서, 후보자사퇴공고,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 후보자 자격 요건에 인권 침해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선거인 명부(투표자명단) 작성

④ 선거운동(선거 벽보 부착, 소견 발표)

⑤ 후보자 토론회

-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문화 조성
-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최소 1회 실시

⑥ 투표(투표용지, 투표장 설치, 선거인명부 확인, 기표소 설치, 투표함 등)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설치·운영
- 온라인 투표시스템 사용 지양(단,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 가능)

⑦ 개표(선거 관리위원회, 참관인 신고서)

⑧ 개표 결과 공고(개표 결과, 선거록)

⑨ 당선자 공고

⑩ 당선증 수여(당선증, 이의신청서)

- 당선증 발급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활용

Tip

■ 학생자치활동 추진 계획

세부업무명

2. 학생자치회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학생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주요내용

① 학생자치회 부서 조직 방법

-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자치회 운영 사업들을 나열하여 비슷한 업무끼리 유목화하고 부서 조직 후 부서명을 작성
- 필요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융통성 있게 개정할 수 있음

② 학생자치활동 여건 조성

- 학생자치회실 구축
-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학교기본운영비에서 200만원 이상 편성)
- 학생자치활동 시간 보장: 교육과정 내 월 1회 이상의 학급회의 시간 편성 및 운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담당교사의 독립된 업무 부여(권장)
- 학생자치 역량 함양 및 리더십 캠프 실시

③ 학교 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 모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생자치회 운영
- 민주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 참여 및 발언 기회 부여(학기당 1회 이상)
- 교복선정, 현장체험학습, 물품선정위원회 등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의견 적극 반영
- 학생대토론회 운영 및 참가

④ 민주적 학급(교)생활협약 제정·운영

- 학급 목표: 1년 동안 학급 운영의 철학과 방향을 만드는 것
- 학급생활협약: 학급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 학생들 스스로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학급생활협약을 바탕으로 학년생활협약과 학교생활협약을 제정하고 운영함

⑤ 학급자치회의 및 대의원회의 개최

⑥ 학생자치회 홍보활동

⑦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적극 권장

- 입학식, 졸업식, 봉사활동, 학교 축제 등

Tip

■ **학생자치 관련 참고 자료**

- 학생자치 길라잡이 2.0
- 학생자치활동 추진 계획

2 학부모 참여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학부모 역량 강화,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자치 실현에 기여한다.

세부업무명

1. 학부모회 구성·운영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3조 2항, 제5조(학부모회)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024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추진 기본계획
-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주요내용

① 구성

- 총회, 임원,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등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② 학부모회 총회

- 정의: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의미
- 추진절차: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총회 공고·홍보 → 총회 개최 → 총회결과 안내
  - 총회준비위원회(12~3월 초):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가 협력하여 구성, 총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 임원선출관리위원회(2~3월):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에 따라 학부모 ○명으로 구성,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선출, 선출 사무 총괄
  - 총회 공고·홍보(총회 개최 7~13일 전): 학부모회 회원 자격 및 투표권 안내, 총회 개최 일시·장소·안건 안내,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가정통신문·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회원의 1/10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총회개최(총회 당일): 학부모회 총회준비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진행
  - 총회결과안내(총회 후 7일 이내): 임원 선출 결과 및 총회 결과를 가정통신문·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③ 학부모회 회의 운영

- 대의원회의 운영
  -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장이 겸임,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회의소집 안건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Tip

■ **학부모회 규정 제정·개정 절차 (예시)**

- 학부모회 규정 점검 → 학부모, 학교 등 의견 수렴 → 학부모회 규정 제정(안)·개정(안) 마련 → 학부모회 총회 의결 → 학부모회 규정 홍보

Tip

■ 학부모회 운영 관련 참고 서식

- 총회준비위원회 관련 서식
-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관련 서식
- 총회개최 관련 서식
- 총회결과안내 관련 서식

-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 학부모 임원회의 운영

-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이 필요시 수시 소집,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전 논의

• 학년 학부모회의 운영

- 학년 학부모대표 및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 학급 학부모회의 운영

- 학급 학부모 대표 및 학급 학부모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 기능별 학부모회의 운영

- 학교교육 발전 등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활동을 위해 필요시 기능별 대표가 소집

④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시기: 학부모회활동 계획 수립 후 3월 정기총회에서 의결 > 정기총회 의결 후 대의원회에서 세부적인 사업구체화 논의 및 의결

※ 다음 해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 학부모회 활동 계획 논의 및 소요 예산편성 요구(11~12월 준비)

• 방법: 학교교육과정 사전 검토 및 참고, 학부모회 예산 반영, 학부모 의견 수렴, 학부모회 자발적 계획 수립 권장

⑤ 학부모회 활동

•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부모교육

⑥ 학부모회 활동 결과

• 활동 결과 평가: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평가하고 의결

• 활동 결과 보고, 예산 및 결산 보고, 감사 결과 보고

⑦ 학부모회 운영 예산

• 예산 확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부모회 운영비 편성

• 예산 관리: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집행

⑧ 학부모회 홍보

• 가능한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⑨ 학부모회 인수인계

• 학부모회 정기총회(3월) 후 1주일 내 인수인계 권장(전년도 임원, 당해연도 임원 참석)

• 인수인계 목록: 경기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부모회 규정, 활동계획서, 회의록, 사업별 활동자료, 활동 결과 보고서(활동 및 회계자료 등), 감사 결과 보고서, 기타 자료(매뉴얼, 책자 등)

Tip

■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부모회 의견 반영 필수

• 학부모회 운영비 전년 대비 점진적 확대 편성 권장

• 학부모회 활동 출장비 편성: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필수

Tip

■ **예산 사용 절차(예시)**

• 예산 편성 세부 내역 확인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사업 시행 2주전 권장) → 내부 결재 → 집행 → 학부모회 예산 집행 세부 내역 확인

세부업무명

2. 학부모 교육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2024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추진 기본계획
◦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주요내용

① 학부모교육 재구조화

• 학부모교육 정책 진단·개발·발굴
- 학부모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의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수요자 특성 및 역할을 고려한 통합적인 학부모교육 정책 개발·발굴
• 지역 단위 학부모교육 개편 및 단위학교 학부모교육 체계화

② 신입생 학부모교육 제도 도입

• 모두를 위한 협력적인 교육문화 조성
- 학부모(보호자) 역할과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의 약속' 제안
- 교권 존중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인식 전환 캠페인으로 활용 가능
• 신입생 학부모 대상 집중교육 운영
- 학교급 간 전환기(1~4월)에 집중 운영하며, 신입생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대면, 비대면) 및 참여 시간(주간, 야간, 주말 등)의 다양화
- 신입생 학부모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풀 활용

③ 가족 심리회복 및 학부모 상담 내실화

• 지역 특색을 살린 가족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전문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학부모 상담 지원
•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 운영
-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④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연수 운영
•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⑤ 현장 중심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체계화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체제 강화
•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⑥ 학부모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 학부모교육 통합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학부모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⑦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도적 기반 조성

• 학부모 교육참여 여건 개선
•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추진

제13편 학생생활교육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생생활교육</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교육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균형 잡힌 생활 교육으로 미래인재의 성장 지원
· 학교교육공동체의 인권 교육 활성화
· 단위학교 내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학생인권 및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에 대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 및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
· 참여형 양성평등을 통해 학교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td></tr>
<tr><td rowspan="5">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생생활교육</td><td></td></tr>
<tr><td>2. 학교교육공동체 인권교육</td><td>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3.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td><td>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4. 양성평등교육</td><td>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기본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학생생활교육과, 2024. 1.)
○ 2024 학생인권교육 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
○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생활인성교육과, 2024. 2.)
○ 2024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학교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운영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기반 구축 사업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td></tr>
</table>

1 학생생활교육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균형 잡힌 생활교육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미래 인재의 성장을 지원한다.

세부업무명

1.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제32조(보호자 교육)
- 2024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기본 계획

주요내용

①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및 지침 보급
- 권역별 생활교육협의체,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활성화

② 교육과정 연계 학생생활교육 활성화
- 학생생활교육 학생 주도 실천 프로젝트 웹콘텐츠 공모전 실시
- 학생생활교육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③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료 개발
-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학생생활교육 우수사례집 제작

④ 학생생활교육 지원 정책 활성화
- 사회봉사 의뢰기관 운영 현황 안내 및 발굴 활성화
- 학생생활교육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세부업무명

2. 학생생활규정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주요내용

① 학생생활규정 구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교의 역사, 교육 가치, 문화적 특수성 등

②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전문가로 구성(8~12인 내외)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
- 제·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정안 발의 절차 마련
  - 관련 법령 또는 교육청 지침 변경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관련 사항 개정 요청
  - 학년 말 학생생활규정 운영 결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 검토
  - 교육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개정의견 또는 개정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제출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개정안 검토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 학교규칙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내 합리적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
  - 의견 수렴
- 제·개정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보고
  -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며, 내용은 알기 쉽게 별도의 창으로 공지
- 제·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Tip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시 유의사항**

-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설문지 설문 구성, 방법 등에 유의
-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할 경우 이는 형식적 측면의 절차적 정당성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지 못한 규정이 될 수 있음에 유의

Tip

■ **개정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

- 학생 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기구의 명칭 등을 단순히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상위 법령(조례, 지침 포함)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Tip

■ **전문가 위원의 범위**

-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함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학생 · 보호자 · 교원 ·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
  - 학생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
  - 교원위원의 수는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 개정안 심의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심의
  - 심의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심의 예외 사유
  - 법령, 조례, 지침의 제 · 개정 사항의 반영
  - 학생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 또는 기구의 명칭 변경의 경우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 ·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에 관하여 설명
  -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 개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
- 유의사항
  - 그 밖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 보장

⑤ 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 · 공포 · 시행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확정
  - 학교 구성원이 제 · 개정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정보공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제 ·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를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제출
- 유의사항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름
  - 공포문에 시행 시기 명시
  - 제 · 개정 사항에 관하여 학생 및 교원에게 충분한 안내 · 교육 실시
  - 교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한 학생생활교육 실시

세부업무명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기본 방침

-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회복·복귀가 목표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아니함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임무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위촉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 부장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업무 대행
  - 위원의 수는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 업무와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
  - 필요 시 외부 위원을 위촉 가능
  -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어야 함
- 운영
  - 서면으로 개최 통지 원칙
  -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 진술 기회 및 방법 마련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학교장의 결재를 통한 심의 결과 시행
  - 서면으로 결과 통지
  - 징계 조치 결과 통지 시, 불복방법 등 안내
  - 학교 내 재심의 운영

Tip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Tip

■ **운영에 관한 학교장 조치**

- 학교장의 결재를 통한 심의 결과 시행
-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단,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징계 조치 별 내용 및 유의사항

• 구성 및 임무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
-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 학교 외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
- 특별교육이수
  · 총 30시간 이내
  ·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기관 및 프로그램 실시
-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보호자와 협의하여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퇴학
  · 적법절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결정
  ·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 조치를 하기 전에 가정학습을 부과 가능
  ·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

④ 학생 선도 절차

• 사안 발생 → 관찰면담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 위원회 준비 → 위원회 개최·진행 → 심의 결과 확정 →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조치 이행

⑤ 불복방법

• 재심의

• 재심청구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 학교교육공동체 인권교육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공동체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근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2024 학생인권교육 운영계획

주요내용

① 학생인권증진기구 운영을 통한 학생·도민 의견 수렴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학기별 1회)
  - 전문가·도민·당연직·학생참여위원 20명 이내 구성
  -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사항,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심의 및 검토
-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명 이내 구성
  -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등 학생관련 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②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 구제 내실화

- 권역별(3개 권역) 담당 학생인권옹호관 지정 운영
-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한 상담·구제 신청
- 학생인권 사안의 조사, 시정·개선 권고를 통한 권리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 조사, 권고, 제도 개선 활동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지역·학교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학생인권 침해 사안 처리 지원 및 현장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 발굴
  - 지역·학교 대상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에 관한 연수
  - 지역·학교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권 사안의 해결방향에 대해 사례회의 및 컨설팅 지원

④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인권규정 마련 지원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 연구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매뉴얼 제작·보급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생 선도 절차 운영 지원

⑤ (가칭)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TF 운영을 통한 조례 제정(안) 마련
  -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현장 소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 교육부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및 유사 조례 검토 반영

세부업무명

2. 학생인권교육

관련근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 · 연수)

◦ 2024 학생인권교육 운영계획

주요내용

① 학생인권교육 운영을 통한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 학생의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학생자치회 · 인권동아리 등 학생 스스로 행하는 인권학습활동 보장 및 지원
- 교과과정 연계 학생인권교육 운영시수도 인정

※ 단, 학년별 운영 총합시간을 학기당 2차시 이상으로 계획 수립

-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 연 2회 이상 실시
- 집합연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격연수로 대체가능하나, 연간계획으로 수립 · 운영

※ 예: 교원 전원의 15차시 연수 이수증을 근거로 연 2회 실시를 인정

-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 지원

② 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자료 안내 및 홍보

-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 탑재
- 수업자료 자문 및 수업 교실수업 모델 적용 콘텐츠 홍보

③ 인권 존중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교원 학생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안 인권감수성 함양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경기도교육연수원)
- 학생이해 및 생활교육 자격연수를 통한 인권교육(율곡연수원)
- '놀이로 배우는 인권' 놀이활동 운영 사례 공유(국가인권위원회 제작)

④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점검

- 제4차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안내
- 기관별 제4차 학생인권 실천계획 단위계획 실천
- 제4차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점검
- 교육적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

Tip

■ **교육청 개발자료 활용**

- 유엔아동권리협약·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연계 교육자료(2021)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2020)
- 「학생인권조례 이해를 위한 초·중등 수업자료」(2020)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 생활인성교육과) 탑재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관련 동영상

※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 탑재

Tip

■ **학생인권 사례집 활용**

-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침해 공동사례집(2021.2.)
- 학생인권 상담사례집 핸드북(2015)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사례집(2013)

※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3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단위학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내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학생인권 및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에 대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기능 강화

Tip

■ 화해중재단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8조(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3조(교육지원청별 상담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 2024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교육적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

- 학교 현장의 중재를 통한 화해의 과정 필요성 증대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심화로 학교의 교육력 약화
  - 화해, 관계 회복보다 처벌 중심의 사안 처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건수가 증가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짐
- 교육지원청의 화해 중재 기능 강화
  -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합리적·전문적 해결 지원
    ※ 학교 내 갈등 사안: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 갈등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효율적인 사안 처리
  -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해 중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제고
  - 학교 내 갈등에 조기 개입하여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② 화해중재 기능 일원화

- 화해중재단 전담인력 지원
  - 화해중재 업무담당 장학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주무관 등이 행정업무 지원
  - 도교육청 변호사(교권·학폭) 및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법률 지원

• 시범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를 위한 역할
- 사안 발생 초기 및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당사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직접 상담을 통한 중재 및 교육적 해결 지원
- 학교 내 갈등 사안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 화해중재단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전문적 밀착 지원
- 갈등의 심각성 및 유형에 따라 필요 시 화해중재 전문기관과 연계
- 화해를 통한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 운영 및 홍보

• 경기형 화해중재 모델 보급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학생관련 갈등의 화해중재 매뉴얼 보급
- 화해중재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 제도 개선

③ 학교 내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

• 화해중재단 구성 및 운영
- 화해중재단: 학교폭력, 학생인권 및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한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
- 화해중재단 구성
· 대상: 25개 교육지원청
· 화해중재전문위원 구성: 학교 내 갈등 화해중재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 위촉 구성, 갈등중재전문가, 변호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전·현직교원, 전·현직경찰관, 화해중재에 적합한 지역 인사 등

※ 교육지원청 규모와 여건에 따라 20~40명 내외로 구성

- 화해중재단 운영
· 지원 시기: 학교가 갈등당사자의 요구 또는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신청
· 운영 방법

1) 갈등 사안 발생 시, 학교 요청 및 갈등 당사자 간 동의를 받아 화해중재단이 갈등 당사자와 중재 진행

2) 반기별 혹은 각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화해중재단 전체 모임을 진행하여 화해중재단 활동의 현황 공유, 화해중재 업무에 관한 평가, 화해중재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진행

· 화해중재단의 화해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화해중재 절차(예시)

신청·접수	예비중재	본중재	사후 관리
-학교의 화해중재 신청 -화해중재 사안 접수 -지원사항 협의	-갈등당사자별 상담 -갈등 원인 파악 -본중재 실시 여부 결정 -중재방법 마련 및 법률 자문	-본중재 진행 ※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합의(합의문)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중재결과 보고 -중재결과 학교 안내 -추후 모니터링

4 양성평등교육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참여형 양성평등을 통해 학교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 해소로 학생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세부업무명

1.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2024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기반 구축 사업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 학교 내 양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지정
-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교육
- (학부모) 상담주간, 총회, 원격연수 수강 안내 등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양성평등교육 영상 콘텐츠 등의 자료 공유 및 교직원 대상 연수
- 학교 실정 고려 '양성평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영역별 세부지표 이행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
- 학교 여건 고려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을 양성평등교육 전·후 학생 상담 사전진단검사,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학생 인식 변화척도, 영역별 양성평등 교육과정 개발 등 활용하도록 노력

② 자체점검 실시

-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학교별 양성평등교육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후 자체 보관(내부결재 10월 말까지)

③ 학교 양성평등 실천주간 운영

-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및 활동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 개선 및 성차별적 의식·관행 해소로 양성평등 의식 제고
- 학교 자율적으로 '양성평등 실천주간'(1주)을 지정하여 학교별 학습자료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행사 실시
- 토론, 캠페인, 공모전, 학교 내 혐오표현·성차별 표현 문구 및 시설물 찾기 등
-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 활용 학생의 성차별의식 등 인식 변화 진단 및 교육 등

④ 양성평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영역별 세부지표 이행여부 자체점검

-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의 구체적 실천방안 이행 노력 확인 및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감대 형성 토대 마련

⑤ 결과 반영

- 자체점검 결과를 근거로 다음 년도 양성평등 교육 개선 계획 등 반영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Tip

-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안내서

Tip

- 우리학교 성차별적 규정 개선 및 양성평등 규정 제정
-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및 학교 시설(환경) 구축 여부 점검
- 토론, 캠페인, 공모전 등 학생 참여 중심 다양한 교육방법 운영

제14편 교육활동 보호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교육활동 보호</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 도모</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교권보호위원회</td><td>- 단위업무명 변경</td></tr>
<tr><td>2. 교권활동 침해 사안처리</td><td>- 단위업무명 변경</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교원역량개발과, 2023. 2.)
○2024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
○202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육부, 2023. 8.)</td></tr>
</table>

1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Tip

■ 관련 자료
-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 한눈에 보는 2024년 바뀌는 교권제도

관련근거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 2024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위원 정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장: 위원 중 선출
- 위원의 자격
  -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단, 가)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 불가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 회의 소집 사유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족수:
  - 개의(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에 소집, 필요시 7일 연장
- 제척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기피
  -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 회피
  -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2024.3.28. 시행)

※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 예정(2024.3.20.이후)

2 교권활동 침해 사안처리

교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한다.

세부업무명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근거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제2023-12호)

주요내용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 상해와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및 모욕
- 손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
-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 업무방해(사립학교)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Tip

■ 관련 자료

-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 2024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
- 202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계획

Tip

■ 참고자료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 OX퀴즈로 알아보는 교육활동보호 (중등 학생용, 중등 학부모용)

세부업무명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관련근거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 교육활동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Tip

■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관련 각종 서식

- 사안신고서
- 피신청인 (학생, 보호자등) 의견서
- 사실확인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안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 등 이하생략

주요내용

① 사안 발생

- 학교장: 범죄 상황인 경우 112 경찰 신고, 인지 즉시 개입,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경우 즉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보호조치
- 피해교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작성
- 교권보호업무담당자: 접수 취합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
- 유의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은폐되지 않도록 학교장 의무부여

② 조사 및 사실 확인

- 교권보호업무담당자: 신고서 접수, 침해 학생에게 확인, 침해학생 진술(의견)서 취합,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접수 및 취합
- 유의점: 소속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절차 문의, 법률상담 및 현장지원 요청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절차

- 신고서에 분쟁조정 절차 진행 여부 표시
- 관련 당사자 모두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 절차 진행
- 조정 성립 시: 사안 완전히 종결
  조정 불성립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조치
- 유의점: 조정 성립 시에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하지 않고 사안 종결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함
- 심의 의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학교교원보호위원회 불참시 서면으로 진술),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 심의 및 결정, 피해교원에 대해 보호조치 심의 및 권고
- 의결 사항은 학교장에게 통보

⑤ 학교장 조치 및 불복 절차 진행

- 학교장 조치→조치 통보
- 불복 절차
  ※ 전학 및 퇴학: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그 외 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⑥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5일 이내 보고
- 사안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보고

⑦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2024.3.28. 시행)

※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 예정(2024.3.20.이후)

Tip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제15편 학교폭력 대책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교폭력 대책</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인성교육진흥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복지법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td></tr>
<tr><td rowspan="4">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폭력 예방교육</td><td>- 2024학년도 현행화
(추후 발행될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 있음)</td></tr>
<tr><td>2. 학교폭력 사안처리</td><td>- 2024학년도 현행화
(추후 발행될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 있음)</td></tr>
<tr><td>3. 성폭력 사안처리</td><td>- 2024학년도 현행화
(추후 발행될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 있음)</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3. 3.)
○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2023. 12.)</td></tr>
</table>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존중과 배려, 나눔과 실천을 기반으로 학생과 교사간의 자율성과 책임 의식을 신장시키고,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학교 문화 형성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인성교육진흥법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제6조(홍보 및 행사)

주요내용

① 예방교육 운영방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
-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 가능
-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대상	교육 내용
학생	학기별 1회 이상(연간 2시간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학부모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으로 간주

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시수 인정 관련

-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창체시간 및 정규교과시간에 예방교육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율 필요
- 각종 예방교육 중 내용과 성격이 비슷하여 통합교육의 효과적 측면이 높은 영역은 병행교육을 하여 수업시수 충족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음(중복시수 인정 가능, 예: 학교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 7대 안전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등 정규교과 시간에 관련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수업 운영 권장

Tip

■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유의점**

-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고자료**

- 교직원에게 힘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이야기 별별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별별 - 교직원용: 학교교직원이 말하는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예방

Tip

■ **어울림 프로그램**

-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 제고, 학생을 학교폭력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육성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단위학교 중심의 예방 문화 조성에 기여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http://stopbullying.re.kr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홈페이지: https://doran.edunet.net
- 학교별 담당자가 사이트 접속 후,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
- 학교마다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음

③ 학교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연간 11차시(사이버폭력예방교육 3시간 이상 포함) 이상 편성·운영 권장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 예방' 영역에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영역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교과연계형' 및 '주제선택형' 어울림프로그램 활용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 정보 윤리 시간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 교육공동체(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언어순화운동 운영
-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3, 9월),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주간(6월 3주),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운영

④ 어울림 프로그램

-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체계적 강화, 대상별 역량 또는 문제유형별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학생용 프로그램	자유학기 프로그램	학부모용 프로그램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기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심층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교과연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주제선택 프로그램 교과연계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학부모 원격 콘텐츠

⑤ 어깨동무 활동

- 학교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집단따돌림·언어폭력·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 특색활동, 특별교육주간 운영 등 실시
- 특별교육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3월, 9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3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세부업무명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주요내용

①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개요

구 분	1차	2차
시 기	매년 4월경	매년 9월경
대 상	초등학교4~6학년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방 법	전수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표집교: 온라인 설문조사 미표집교: 학교자체 설문조사 (서면 또는 온라인)

- 유의점
  -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학생의 솔직한 응답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개별 참여 우선
  - 가정에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조사기간 중 학교 시설 이용 가능
-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적현행화 작업(나이스)
  - 학적입력(교육청 공문발송 후 기일 내)
  - 담당교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권한 받기
  -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실태조사(학교)를 부여받음
  -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실태조사(담임)를 부여받음
  - 학생 인증번호 발급 받기(일괄발급 및 선택발급)
  - 설문조사 대상학생 생성 기준일 이후 학적변동자 발생시: 학적현행화 작업을 실시하면 설문조사 대상학생 생성 기준일 이후 학적 변경된 학생을 조회하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

※ 단, 이전 학교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면 현재학교에서 참여 못함

② 후속업무 처리 지침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활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용
- 서술형 신고문항에 대한 후속조치
  - 필터링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조치
  - 실태조사 결과로 새로 파악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Tip

■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방법

-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 접속 후 조사 참여
  - 홈페이지: https://survey.eduro.go.kr
  -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인증번호 확인 후 참여(학교명, 학년·성명·인증번호 입력으로 본인 확인)
-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 영상
  -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시 학교급별(초등용, 중·고등용) 동영상 자동 재생되므로 시청
  -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에도 활용 가능: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www.stopbullying.re.kr)에서 재생하여 활용 가능

※ 7개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제공

- 2021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모바일 참여 가능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철저한 사안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가해학생의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폭력 전담기구

Tip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 유의점**
-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인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신고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 운영기간: 2024. 3. 1.~2025. 2. 28.
- 역할: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결과 보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 운영기간: 2024. 3. 1.~2025. 2. 28.
- 지원범위: 300교(교당 1명), 주당 5시간 이내 시간 강사비 지원

Tip

■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배포 예정)**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주요내용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구성
  -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 교원: 학교장 위촉
  -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 학교장 위촉,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추천 관련 증빙 필수(회의록 등)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학부모 위원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적극 협조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 학교폭력 사실 확인
-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심의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 실태조사

세부업무명

2.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 조사

Tip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각종 양식

Tip

■ **사안처리 절차 및 방법 중 유의점**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는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안처리 절차 및 방법 중 유의점**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오인신고)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처리
  - 학교장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함)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주요내용

① 사안의 발생(학교)

-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 후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 1차 확인서 접수, 보호자 통보(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 피·가해학생 분리(24시간 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 인지시 피해학생 의사 확인하여 가해자(교사 포함)와 분리 보호,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보호자 통보(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내): 사안접수보고서 작성
- (필요시) 긴급조치: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 분리해야 함
- 학교폭력 사안 인지(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된 날): 피해학생에게 반대 의사 확인 → 분리방법 결정(24시간 이내 처리,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 가능) → 가해자 분리(최대 7일 초과하지 않음)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② 조사관 배정(학교폭력제로센터)

- 조사관 배정: 학교방문일 확인,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2인 배정

③ 사안조사(학교폭력제로센터)

- 학교 방문: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2차 확인서 접수,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보고서 작성: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조사 과정 및 결과를 기록
- 조사결과 보고: 학교장, 학교폭력제로센터

세부업무명

3.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요내용

① 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네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진단서는 제출 시 회수 가능하나 자체해결이 불가능함을 반드시 사전 안내
- 재산상 피해(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비용)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지속성은 전담기구에서 보편 기준으로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1)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학교장은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 절차: 사안조사(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체해결 방식 강요하지 않음) → 전담기구심의(가해학생 여러명: 모두 요건 해당되어야 자체해결 가능)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서면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K-에듀파인) →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유선, 서면, 문자 등)
•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고려사항
-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다만, 필요시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 개최 이전까지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

Tip

■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유의점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함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음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②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 관계회복: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
- 사전 개별면담: 양측 학생을 개별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
- 관계회복 프로그램: 양측 학생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 조력,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 가능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
- 피해학생에 대하여 모든 단계 시작 시 현재 마음과 생각, 2차 피해(재발 및 보복 등),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학생 의사 우선 고려하여 진행됨을 확인
- 가급적 사전에 보호자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취지 이해시킴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가 아님

• 분쟁조정

-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 당사자가 신청 → 신청 후 5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이 경우, 서면통보 해야 함):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 혹은 피해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 고소·고발/민사소송 제기
- 합의서 작성: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 날인
-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보고: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Tip

■ **관계회복프로그램**

-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
-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 영상

■ **분쟁조정 관련 참고사항**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 [☏ 02) 598-1640]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 제4호)에 고려될 수 있음

세부업무명

4. 조치결정 및 이행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주요내용

①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이행

- 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전담기구 심의 결과 내부결재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교육지원청에 **보안**에 유의하여 공문 발송)
  - 학교장 조치이행 결과 보고: 가해학생이 조치결정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치 이행한 후 교육(지원)청 결과 보고

②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적극 시행, 피해학생이 출결, 성적 등 학사 운영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조치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교육장 통보 후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조치 미이수 시 해당 보호자 명단을 도교육감에게 통보

③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 행정심판 및 소송 청구 경우 기재된 조치사항 삭제하지 않고 향후 조치 변경,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 미입력
-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후 학적 처리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 미기재
- 제1호~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함

○ **~2023. 2. 28.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삭제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2023. 3. 1.~2024. 2. 29.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2024. 3. 1.~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조치결정 통보 공문 접수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타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발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Tip

■ **가해학생 선도조치**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경기도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이수기관: 경기도교육청(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소속-생활인성교육과)
- 제6호: 출석정지(미인정결석처리)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 우선적 배정
  - 교육장으로부터 전학(제8호)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 요청
- 제9호: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고 양식(학교용)

④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

- 교육장이 내린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국립, 공립, 사립 모두 가능)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교육장 명의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함. 위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음
- 피·가해학생 측은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한 경우(집행정지 신청한 경우 포함)에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에 '불복사실'과 '심판·소송참가'를 통한 의견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

3 성폭력 사안처리

성과 관련된 학생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피해는 최소화하고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Tip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안내

- 젠더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콘텐츠
  - 양성평등을 위한 카드뉴스 '클릭하지 마세요'
  - '불법 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이유(김남훈)' 세바시 910회
  - 그 외 #불법촬영, #SNS성희롱 #디지털성범죄로 컨텐츠 검색 및 활용 가능
- 디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상별 맞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 에듀넷 티클리어
  - 교육정책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교육 〉 예방교육 동영상에서 관련 동영상 활용
  - 성폭력 의식개선 동영상 '허락'
  - '당신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겠습니까?(이선희)'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초등, 중등)

- 유튜브 채널 GOE 경기도교육청
- 우리 몸과 마음의 경계에 대한 이해 외 6종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내용

① 성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신체적·심리적·경제적)을 포괄

② 관련 개념

- 성희롱: 타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성폭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포함

③ 성폭력의 유형

- 행위 유형별 분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희롱, 아동 성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 대상별 분류
  - 아동성폭력: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청소년성폭력과의 차이점: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 청소년성폭력: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 피해자와 19세 이상 가해자: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 장애인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④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초등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실시(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
- 중·고등학생: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
-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기별 1회)
- 교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

세부업무명

2. 성폭력 사안의 신고 및 사안조사와 조치

관련근거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과태료)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주요내용

① 성폭력 사안 신고

- 성범죄 신고 의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만 19세 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②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교직원의 유의사항

- 성폭력 사안 인지, 신고 받은 경우 학교장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교직원 포함)과의 즉시 분리 제도 이행(단, 피해자가 원할 시)
-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음
- 다른 교직원, 학생들에게 비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 침착 대응
- 성폭력 사안 목격, 인지한 주변학생 비밀유지 주지시키고 만약 비밀을 유출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 가능성 및 법적 처벌 가능함 알림
-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 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 철저히 하여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함

③ 비밀누설 금지

- 비밀 준수 의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음

④ 성폭력 사안 조치 과정

- 성폭력 피해 의심(전담기구 사안 조사 후 피해 사실 확인)/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즉시 신고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 상담 치료 후속지원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 전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Tip

■ **성폭력 사안 신고시 참고 기관**

- 117 신고센터
- 경기도 해바라기센터(1899-3075)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
- 경기도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가능

■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신고**

- 112(발견 즉시 신고)

■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사례**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 관련 자료 외부 유출
-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된 학생과 피해자라고 찾아온 피해학생들에게 비밀 보장되도록 개별상담하지 않고 집단 상담 실시

Tip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신고, 발견, 확인 등)한 경우에는 가해자(가해학생 및 교직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최대 7일간 즉시 분리
• 피·가해학생 긴급 조치
  - 피해, 가해 학생 분리,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배제
  - 응급 및 안전 조치: 학교 내외 상담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지지, 친족 성폭력 등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또는 여성 긴급전화(1366) 연계
  - 관련 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통보
•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학교: 상담, 사건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성고충심의위원회 지원 및 모니터링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 경기도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교장 자체해결(학생 간 사안만 해당)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⑤ 사안조사

•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사안조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하여 확인
• 사안조사 결과보고: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보고 및 필요 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안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협조 요청 및 장애학생 포함된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권장

⑥ 심의위원회 개최

•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함

Tip

■ 학교 내 사안처리 관련 서식

■ **사안 조사 시 유의점**

•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대면하는 일 없어야 함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위원회 참석 원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함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로 대신할 수 없음
-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도 해야함

⑦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 피해학생 보호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 긴급조치 범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 받아 7일 이내 해당조치 실시
  - 피해학생 치료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 인정
  - 학생의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 대상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또는 상담과정 이수 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 인정
  - 학교장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수(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
- 성폭력 가해학생 교육 선도조치
  -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 긴급조치 범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 긴급조치는 가해학생에게 먼저 부과한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Tip

■ **긴급 출석정지 사유**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
-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 행사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문화공연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 안내자료

제16편 학생안전

업무명	학생안전	
관련 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 교육환경법 ○ 교육환경법 시행령 ○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 학교보건법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업무 개요	· 단위학교의 학생 안전에 관한 활동	
주요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 2024년 자료 현행화
	2. 아동학대 예방교육	- 2024년 자료 현행화
	3. 폭력 예방교육	- 2024년 자료 현행화
	4. 학교안전공제회	
	5. 대기오염 대응 · 관리	
참고자료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학교안전과, 2023. 12.)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교육환경개선과, 2021. 9.)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2021. 11.) ○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2024. 1.)	

1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정착한다.

세부업무명

1. 안전교육 계획

Tip

■ 유의사항
- 학교 안전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까지 수립 ⇒ 학교홈페이지 게시, 교육지원청 제출
- 평가: 자체평가(3월 말까지)
  - 전년도 추진실적, 당해연도 계획 수립의 적절성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매 학년 초 학교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 교내·외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2월 말까지) 및 평가(3월 말까지)

② 모든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관리계획 연수 실시(3월 중)
- 구체적 업무 및 담당자 지정, 사전 교육을 강화

③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
- 계단, 화장실, 실험 실습실 등 위험 장소에 안전표지판 부착

세부업무명

2. 안전교육 실시

Tip

■ 7대 안전교육 영역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가이드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연계 학생 7대 안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및 교육활동 전·후 안전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생안전교육 시수(51차시)와 횟수를 반영

②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봉사활동), 기초 질서 지키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③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지도 강화
- 등하교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학교별 안전 통학로 선정 및 교통안전 봉사 도우미를 활용하여 활동함

④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
- 월별 집중 점검 주제 선정, 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세부업무명

3. 학교안전교육계획 세부 내용 체계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학교안전계획 내실화
  - 학교안전계획 수립·평가 환류
- 학교안전조직 운영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학교안전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 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②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
  - 교육시설 안전점검
  - 학교 건설공사 시공단계 지도·강화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해소 및 강화
  - 재난대비 학교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
  -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식중독 발생 시 대응절차: 발생인지→발생보고→원인·역학조사 준비 및 실시→조사 후 조치→모니터링)
  -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 학교 출입관리 강화
  - 학교 산업재해 예방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사고 대비 비상장비·비상배낭 확충

③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안전교육과정 운영
  - 학생 7대 안전교육 운영
- 방과후학교 및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 방과후학교 및 돌봄 안전관리
  - 대학연계교육 참여 학생 안전관리
  - 지역연계교육 참여 학생 안전관리
  -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Tip

■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평가**

- 학교안전계획 수립: 2월 말까지
- 학교안전계획 평가: 3월 말까지

Tip

■ **교육시설 안전점검**

- 학교자체: 연 2회 이상 실시
- 전문기관: 제2종·3종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Tip

■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교육**

- 학기당 3회 이상 실시
- 유치원: 연령별 10시간 실시
- 초등: 학년별 11시간 교통안전 교육 실시

Tip

■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정 운영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교육
- 3D프린터 안전관리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 교육공동체의 안전 대응 역량 신장
  - 학교 체육 전문가 과정 이수
  -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모든 교직원 3주기) 동안 안전교육 의무 이수
  - 교직원 · 학부모 응급처치교육 - 교직원 대상 응급처지 교육 실시(연간 4시간 중 2시간 이상은 실습)
  - 아동학대 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안전관리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④ 학교 안전문화 확산

- 학교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
  -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 행사,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 콘텐츠 지원(나침반 5분 안전교육 권장)
- 학교 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실시)
  - 학교 안전주간 운영(연 1회, 학교안전계획에 반영)
  - 각종 평가 및 감사 시 안전 분야 반영
- 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 체험중심 재난대응 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 훈련)
  -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운영

⑤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 상담 및 치료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관심군 학생관리 강화 (초1 · 4학년, 중 · 고 각 1학년)
  - 위(Wee) 프로젝트 운영
-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 활용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 교육시설공제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안전사고 재발 방지
  - 학교안전사고 통계 자료 체계적 관리
  -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운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개선

Tip

■ **학교 안전점검의 날**

-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 지역·학교별 취약요소를 고려한 시설 안전점검

Tip

■ **학교 안전주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는 주, 신학기 등교 첫 주 등을 지정하여 운영

Tip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및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실시
- 학생 자율참여 안전주제 토론 (안전행동매뉴얼, 포스터 등)

Tip

■ **화재대피 훈련**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2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아동 발견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알고 실천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세부업무명

1.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Tip

■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① 신고(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
③ 응급의료조치 및 긴급격리 조치
④ 학대 혐의 판단 후 조치 결정
※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기관이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관찰, 상담, 지속적인 관심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

②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 즉시 신고해야 함

③ 아동학대 사안보고
- 학교장은 신고 사안, 중대·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공문으로 사안보고서 제출해야 함

세부업무명

2.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고 및 지원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Tip

■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을 금지해야 함

주요내용

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 엄수

② 피해학생 취학지원 및 학적 관리
- 비밀전학: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등교학습: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보호시설 등 근교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해야 함
- 학적처리(출석인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세부업무명

3.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② 학생 교육
- 교육과정연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연 4시간 이상)

③ 학부모 교육
- 학부모 대상 학교행사(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동영상 상영 및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Tip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함**

※ 미실시 시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3 폭력 예방교육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세부업무명

1. 폭력 예방교육 계획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주요내용

① **교육대상**
-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직원
- 성폭력 예방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 성매매 예방교육: 중·고등학교 학생
-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② **교육기간**: 당해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③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학교 특성에 맞게 실시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을 권장함

④ **실적제출**: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당해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

⑤ **공개**: 일반 국민 누구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Tip

■ **기본방침**
- 각 학교장의 책임 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Tip

■ **공개항목**
- 교육별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여부 및 기관장 교육 참여여부
- 고위직 참여율
- 직원 참여율
-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
- 교육방법 등

세부업무명

2. 폭력 예방교육 내용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주요내용

①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성매매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Tip

■ **성폭력 예방교육 유의사항**

- 교육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포함

Tip

■ **가정폭력 예방교육 유의사항**

-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포함

4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공제료의 납부)

Tip

■ 가입 대상
- 공사립유치원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주요내용

① 운영기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② 가입방법 및 대상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의무가입)
- 대상: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③ 공제회비(공제료) 납부
- 2024년부터 매년 4월 1일 학교별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대납)함 ※ 일부 일괄납부 제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개별 납부)

세부업무명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Tip

■ 교육활동참여자란?
-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Tip

■ 공제급여 지급 제한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 지병 또는 신체적인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주요내용

① 보상 범위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② 보상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③ 보상 대상 교육활동
-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또는 체육활동 등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대회) 참가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현장실습, 기숙사 생활,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

④ 보상 대상 질병
- 학교급식, 가스 중독,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질병),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세부업무명

3. 공제급여의 종류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주요내용

① **요양급여**
-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는 제외

②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

③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④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⑤ **장의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⑥ **위로금**: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Tip

■ '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세부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항목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음

세부업무명

4. 청구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주요내용

①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학교) 또는 공제회에 제출**

절차	방법	비고
사고통지 (의무)	공제급여청구 시스템	학교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제출		학교 또는 학부모
구비서류 제출	공제급여청구 시스템 우편 모두 가능	학교 또는 학부모
심사 및 결정	-	학교안전공제회 14일(14일 연장 가능)

② **치료비 발생 직후 보상금 청구**
-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신청권리 소멸

Tip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 사용자 매뉴얼

Tip

■ **공제급여청구서**
- 청구금액 300만 원 미만
  - 학교장 직인 날인 또는 학부모 서명 중 택1
- 청구금액 300만 원 이상
  - 학교장 직인 및 학부모 서명

세부업무명

5.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

Tip

■ (재)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 가능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주요내용

① 심사청구(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 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② 재심청구(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세부업무명

6. 학교폭력 피해지원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18조(공제회의 사업)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Tip

■ 참고자료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피해지원

Tip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일시보호
  - 심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 증명서
  -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공통서류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 청구인 통장사본

주요내용

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절차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상담결과를 보고받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우선 배상(가해자 부담 원칙)
-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피해금액 신청
-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

② 학교폭력피해 청구 절차

절차	방법	비고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및 공제회 통보	공제급여청구 시스템	학교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작성		학교 또는 학부모
구비서류 공제회 제출	우편	학교 또는 학부모

③ 학교폭력피해 보상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2년)
-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30일)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2년)
-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

세부업무명

7.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Tip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상담지원

■ 구비서류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서
- 학교장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본인이 아닌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 진단서, 의무기록지
- 심리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 심리검사결과 보고서, 상담기록지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주요내용

① 지원 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학교폭력 대상 아님)
- 지정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1년 연장 가능)

② 청구 절차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학교안전과 제출(K-에듀파인)
- 대상자 지정 결정: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자문위원회)
- 통보(학교 및 신청인)
- 공제회에 치료비 신청(우편)

세부업무명

8. 학교배상책임공제

Tip

■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으로 학교 별도 가입 불필요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주요내용

① 운영기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② 가입 방법 및 대상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
-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③ 공제료 납부

- 매년 4월 1일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공제료 납부(학교별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

※ 학교별 가상계좌 정보는 매년 3월경 공문으로 통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폰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④ 사고발생 통지 및 보상 신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사고발생통지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 휴대폰 분실: 분실사고발생신고서 및 보상신청서 제출

세부업무명

9. 여행자안심공제사업

■ **목적**

-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 학교현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제가입신청(기관)
■ 치료비 신청(기관 또는 학부모)
■ 구비서류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주요내용

① 여행자안심공제 가입 방법

- 공제가입신청(학교) → 자동계약 완료 → 공제료 납부

※ 여행일 이후 인원 변동 시 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5일 이내(주말포함) 명단 수정 가능

② 치료비 신청 방법

- 학교안전사고통지(학교,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치료비 신청(학교 또는 학부모) → 담당자 검토 → 지급 완료

③ 구비서류

- 치료비 신청: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카드 영수증 처리 불가),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진단서(또는 질병명 확인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재물손해 신청: 사고경위서(학교 작성), 수리비 영수증(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피해물 수리 전·후 사진, 재물 소유관련 확인서
- 배상손해 신청: 사고경위서(기관 작성), 합의금 지급 사실 확인서, 대인사고(치료비 신청서류 동일), 대물사고(소유자 확인서류, 수리비 영수증)

5 대기오염 대응·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행동요령 및 미세먼지 위해성에 대한 계기교육을 통해서 건강취약계층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한다.

세부업무명

1. 미세먼지 대응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미세먼지, 오존)

주요내용

① 기상특보 발표 기준

• 미세먼지 예보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제를 시행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PM_{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PM_{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구분	발령 기준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예측된 경우 •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상 저감조치 (D-1일 발령)	•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_{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_{2.5}$) 50㎍/㎥ 초과 예상 •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_{2.5}$)가 50㎍/㎥ 초과 예상 •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_{2.5}$) 75㎍/㎥ 초과 예상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Tip

■ 미세먼지의 개념

•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뜻함

•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Tip

■ 미세먼지 경보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

세부업무명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 미세먼지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미세먼지, 오존)

주요내용

① 1단계- 사전 대응·대비

- 학생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홍보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초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인공눈물, 소양감 감소를 위한 냉찜질 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 등) 구비하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파악된 학생에게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 안내
  - 마스크 착용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호흡기질환자: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 어린이: 의사와 상의한 후 외출 시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천식: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 악화 시 행동 요령 숙지하고, 의사와 상의한 후 보건용 마스크 사용
-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점검
  - 학기 초에 차량 2부제 예외차량 리스트 작성·보관
  - 학기 초에 통학차량의 노후 경유 차량 조회를 실시: 통학버스 임대 시 관련 차량 교체 요구, 보유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 공기정화장치 주기적 점검 등 유지·관리 및 사용기준 숙지
  - 공기정화장치 관리계획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청소 등
  -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세부 사용기준 숙지(외기 공기질 수준에 따라 가동)

②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 실외수업 대체방안 검토 및 준비(실내수업 등)

Tip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에 근거

Tip

■ 2단계 상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36㎍/㎥ 이상으로 예상될 때

Tip

■ 3단계 상황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2.5 36㎍/㎥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③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담당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도달할 경우,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학사운영조정 절차를 사전점검
- 학교 실외수업 자제
- 학생 대상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외부 노출 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호자 비상연락망, 홈페이지를 통한 조치상황 공지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닫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 가급적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이 아닌 방향의 창문으로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Tip

■ 4단계 상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④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학생 대상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건강 체크
  - 실내공기질 관리: 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 조정을 검토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 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 함께 결정(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기 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적(복도측 창문을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으로 환기 실시

⑤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 상황: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수업 및 학교 운영 결정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등 학사운영조정을 적극 검토
  - 경보 조치 결과 보고(경보 발령일 다음 날까지→교육지원청)
- 학생 건강관리 조치
  - 외출 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복귀시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과일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 실천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 학교 내 시설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⑥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상황: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보 발령 해제 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 경보 발령 해제 시
  - 주의보 전환 시: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및 조치 결과를 교육지원청 보고(발령일 다음 날까지)

⑦ 7단계- 조치 결과 등 보고

-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발령일 다음 날까지 보고
- 보고내용
  - 학교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보고
  - 조치 결과: 경보 발령 현황 및 조치 결과 등
  -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업,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실적 종합보고

※ 임시휴업의 경우, 관할청에 즉시 보고해야 함

Tip

■ 주의보, 경보 해지 후

- 학교별 실내외 방역 및 청소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
- 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휴식 등 적정 조치
-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교육 등 조치사항 보고(발령일 다음 날까지)

제17편 학생위기지원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생위기지원</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초·중등교육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위(Wee) 클래스 운영, 생명 존중 교육, 학생 상담 활동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지원, 학업중단학생 지원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청 위기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기 지원 내용 및 절차, 아동학대 대처, 실종·유괴 사안 보고, 자살 위기관리</td></tr>
<tr><td rowspan="5">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위(Wee) 클래스 운영</td><td></td></tr>
<tr><td>2. 생명존중교육</td><td></td></tr>
<tr><td>3.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td><td></td></tr>
<tr><td>4.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학교상담 실무 길잡이(학생생활인권과, 2020. 1.)
◦ 2023 위(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운영 및 지원 계획(학생생활교육과, 2023. 1.)
◦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생활인성교육과, 2024. 2.)
◦ 2024 생활인성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3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학생생활교육과, 2023. 2.)
◦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교육복지과, 2023. 3.)
◦ 202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학생생활교육과, 2023. 2.)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3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계획 (생활인성교육과, 2023. 5.)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교육부, 2023. 3.)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2024. 1.)</td></tr>
</table>

1 위(Wee) 클래스 운영

종합적인 다중 안전망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평가-상담-치유' 서비스 제공하고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업무명

1. 개요

Tip

- 2023 위(Wee) 프로젝트 학생 상담 운영 및 지원 계획

관련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5조(상담실 설치)

주요내용

① 위(Wee) 프로젝트 개념

위(Wee) = 'We(우리들) + education(교육)',
'We(우리들) + emotion(감성)'의 이니셜

- 위(Wee)의 뜻: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 공간에서 자기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 내포
- 위(Wee) 프로젝트 대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주 대상은 위기학생
- 위(Wee) 프로젝트 내용: 단위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
- 위(Wee) 프로젝트 전략: 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② '위(Wee) 프로젝트' 체계

- 국정과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위(Wee) 프로젝트'로 명명
  - '위(Wee) 프로젝트'는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등 위기학생에 대한 촘촘한 3단계 safe-net 구축 사업을 일컬음
- 1차 안전망으로 단위학교 내 위(Wee) 클래스의 운영
- 2차 안전망으로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 설치 · 운영
- 3차 안전망으로 위(Wee) 스쿨 설치 . 운영

1차 안전망 (학교)		2차 안전망 (교육지원청)		3차 안전망 (도교육청)
위(Wee) 클래스	⇒	위(Wee) 센터	⇒	위(Wee) 스쿨 (경기새울학교) 가정형·병원형 위(Wee) 센터
잠재적 위기학생의 조기진단 및 대처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 지원		고위기학생의 위탁 교육

② 위(Wee) 클래스 직무 및 업무영역

영역	직무	세부업무
상담	개인상담	•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집단상담	•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 • 학생 욕구에 따른 집단상담 주제
	심리검사	• 성격 및 대인관계 영역 • 학업 및 자기 관리 영역 • 심리 및 정서 관련 영역
	상담지원	•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상담 지원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후속 상담 지원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지원
	자문	•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
교육	교육 및 연수	• 학생 교육(예: 특별교육) • 상담 관련 보호자와 교사 연수
	상담행사	• 학생 성장과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상담 행사 기획 및 운영
연계	연계협력	• 학생, 보호자, 교직원 협력 •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연계 및 활용
행정	상담환경 조성	• 위(Wee) 클래스 시설관리 • 위(Wee) 클래스 비품 구입 및 관리 • 상담·심리검사 자료 구입 및 관리
	연간계획수립	• 학생, 보호자, 교직원 상담 관련 요구조사 • 위(Wee) 클래스 운영 연간계획 수립
	홍보	• 연중 위(Wee) 클래스 운영 홍보 • 각종 프로그램 소개
	사례관리 및 평가	• 상담기록 및 관리 • 상담 활동 결과 보고 및 평가 • 위(Wee) 클래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세부업무명

2. 시설

관련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주요내용

① 위(Wee) 클래스 시설관리

• 목적
- 더욱 효율적인 상담 활동을 위한 시설 구축 및 관리
- 내담자의 흥미 유발 및 상담 촉진을 위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유지

• 방침
-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유지
-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

• 유의 사항
- 위(Wee) 클래스 시설을 구축할 때는 안정성, 심미성, 융통성, 연계성, 이용성, 관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함
- 상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함

세부업무명

3. 행정

관련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주요내용

① 운영계획 수립

•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위(Wee) 클래스 운영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 제고
-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토대로 위(Wee) 클래스의 학교 현장 안착
- 학생, 보호자, 교사의 요구 및 학교 실태분석
- 위(Wee) 클래스 직무분석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수행
- 교내·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상담의 효율성과 질 제고

• 수립 절차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절차

1단계(기획)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2단계(자료조사 및 분석)
요구조사 및 전년도 운영 결과 또는 인근 학교의 자료수집을 통한 분석

↓

3단계(연간 운영계획 초안 작성)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운영계획서 작성

↓

4단계(연간 운영계획 초안 검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계획서 검토

↓

5단계(연간 운영계획 확정)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최종 운영계획서 내부결재

• 유의사항

- 학교 내 타 부서 및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
- 연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상황에 따라 타 부서와 사전 조율

② 상담 행정

- 목적: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자문 그리고 각종 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 방침
  - 학생상담, 보호자와 교사에 대한 자문 그리고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에 중점
  -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실적관리에 중점
- 상담기록 및 관리 필요성과 목적
  - 상담기록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내담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
  - 학교 상담은 공적인 활동 영역이므로 모든 상담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고, 상담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 보호 및 관리
  - 상담 과정과 개입을 기록함으로써 상담 활동을 객관화하고 정보를 축적하여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상담자가 자신이 했던 결정과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법적인 상황에서 상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기록을 바탕으로 사례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시행
- 방침
  - 상담기록 관리는 상담자 개인별로 수기 및 개인 컴퓨터 상담기록을 결정하여 관리
  - 나이스(NEIS) 상담 현황 월 단위로 관리 필수
  - 수기로 작성된 상담기록물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시설에 별도로 보관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상담기록의 경우 정기적인 백업을 통해 비상시 복원할 수 있도록 대비
- 보고서 작성
  - 목적: 위(Wee) 클래스 연간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효과성 평가, 차기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
  - 방침: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 작성, 홍보와 평가 그리고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차기 연도 위(Wee) 클래스 운영계획 수립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
  - 보관자료

문서	협의록, 회의록, 등록부 등
실적	상담 신청 접수 대장, 개인 상담 일지, 집단상담 일지, 타 기관 연계일지, 심리검사일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자료	홍보용품, 안내서, 소책자, 학생 활동 작품, 활동사진 등

  - 결과물 보관: 위(Wee) 클래스 내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누적될 실적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학생 개인별 상담 기록지는 외부로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에 철저

세부업무명

4. 예산

관련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주요내용

① 예산 운용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위(Wee) 클래스 운영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

② 예산확보 수립 절차

• 예산 편성 절차

학교 자체 예산 편성 절차

1단계(전년도 운영평가)
전년도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점에 대한 평가 실시

↓

2단계(운영계획안 작성)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안을 영역별, 시기별로 작성

↓

3단계(소요 예산 항목 선정)
전년도 운영 예산 개선 및 예산 추가 항목 선정

↓

4단계(예산 조정 및 협의)
담당부서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산(안) 조정

↓

5단계(예산 확정)

※ 위(Wee) 클래스 예산은 연간 200만 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함

• 예산 수립 시 유의 사항

- 교육청에서 시달된 예산 편성 기본지침 및 법규 준수
-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위(Wee) 클래스의 연간계획에 맞추어 예산 수립
- 운영목표, 중점사업 등에 따라 융통성 있는 예산 편성

③ 예산 집행

• 연초에 세워진 운영계획과 예산 수립에 따라 집행

•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수립된 예산을 참고하여 기안문(지출 품의서 등)을 성한 다음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

④ 결산 및 평가

• 해당 학년도에 배정된 위(Wee) 클래스 예산을 다음 해 1~2월 중 정산

※ 위(Wee) 클래스 운영보고서 작성 시 예산 지출내용 등을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예산 사용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관리하였으므로, 결산 역시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세부업무명

5. 평가

관련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주요내용

①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위(Wee) 클래스 운영에 대한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이용 만족도 확인
-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위(Wee) 클래스 컨설팅 및 차기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
- 업무담당자의 변동(신규 채용 또는 인사이동 등)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위(Wee) 클래스 운영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상담 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

② 방침

-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활용
- 실적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③ 세부 내용

- 영역별 평가 지표

영역	평가지표
상담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 지원, 자문
교육	교육 및 연수, 상담 행사
연계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행정	상담환경 조성, 연간 운영계획 수립, 사례관리 및 평가, 홍보

- 평가 자료 활용
  -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단자료로 활용
  - 위(Wee) 클래스 컨설팅 및 평가, 자기 실적 평가의 제출 자료로 활용
-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활동이 끝난 후 작성
  - 만족도 조사 시행
- 위(Wee) 클래스 운영평가
  - 프로그램별 결과 보고 또는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의 작성 시 이용 학생들의 상담 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함께 포함하면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평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평가는 평정척도를 통한 방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나 위(Wee) 클래스 상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개인 활동지나 소감문 등을 평가 자료로 활용

2 생명존중교육

체계적인 학생 생명 존중 교육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 윤리 의식을 고취 시키고 자살을 예방하며, 부적응 및 우울증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하고 관계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받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인다.

세부업무명

1. 예방활동 및 고위험군 관리

관련근거

- 자살예방법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주요내용

① 매 학기 초 생명 존중 교육 관련 자체 추진 계획 수립

- 학생자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 존중 교육 시행(연간 6시간 이상 실시)
-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 발견
- 자살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② 청소년 자살의 특징 및 징후

- 특징
  -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
  -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임
  - 동반자살 및 모방 자살의 가능성이 있음
- 징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SNS 등 자살, 죽음에 대한 표현
  - 식사와 수면, 체중의 변화

③ 가정에서의 예방 대책

- 학부모 대상 자녀 이해 및 생명 존중 교육 시행
- 자녀와의 대화 시간 확보, 친밀한 관계 형성
-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줌

④ 학교에서의 예방 대책

- 교직원(연 1회 이상 의무 교육 실시) 및 학부모 자살 예방 연수
- 생명 존중 문화 조성
- 청소년 전문 상담 인력 강화,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및 건전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 학생 생명지킴이 양성

Tip

■ 2024 위기학생 지원계획

3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전문적 상담 능력을 갖추어 학생과 집단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문제 상황에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자기 발견 및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사회성을 증진하고 평화적 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세부업무명

1. 학생상담

Tip

- 담임교사를 위한 학생 상담 가이드
-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학교상담 실무 길잡이
- 폭력 예방 상담지도서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순회상담교사의 배치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주요내용

① 학생 이해자료 확보
- 표준화 검사 결과표 확인
- 학급 담임과 연계 지도 및 정보 공유
  - 학생 이해 기초 조사, 특수 학생 환경 및 지도자료

② 상담실 협조
- 상담실 운영(Wee 클래스)
  - 학생 감성에 맞는 상담실 환경 조성, 상담실 프로그램 홍보, 상담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상담 신청함 설치
- 사이버 상담실 운영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실 운영
  - 사이버 전문 상담자 역량 강화

③ 상담 실시
-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학생 위기 지원 종합계획 등 참고)
  - 정서적 지원 및 상담역량 강화, 상담기록 보안관리 철저, 상담내용 비밀 유지
-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기법
  - 경청,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 열린 질문, 간접 질문, 나를 표현하기(I-Message), 평화적 갈등 해결 대화법(사실-느낌-부탁)

세부업무명

2. 집단상담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순회상담교사의 배치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주요내용

① 계획 수립
- 전년도 심성 수련 반성 결과 반영
- 계획 수립(심성 수련 프로그램)
  - 연간 추진 계획, 심성 수련 일정, 심성 수련 세부 계획

② 준비
- 심성 수련 준비(교외 혹은 교내)

- 심성 수련 장소 사전 답사, 심성 수련 비품 준비, 필요시 전문 강사 섭외, 심성 수련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연수

• 심성 수련을 위한 참고사항

- 3월 초 적응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수련 활동과 연계하여 편성, 자기를 표현하고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진행(예시)

• 심성 수련 프로그램

- 별칭 짓기, 최근에 있었던 일, 나는 누구인가?, 사물과의 대화,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가치관 경매

• 유의사항

- 적정 인원을 6~12명으로 편성
-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 개방적인 분위기 유도 및 진행 순서 준수

④ 결과분석

• 소감문 쓰기 및 분석
• 평가 설문지 투입 및 결과분석
•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

Tip

■ 심성수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집단상담 교사지도서
■ 코로나19 이후 학교적응을 위한 학생상담 프로그램

세부 업무명

3.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근거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 2023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 구성 시기: 매년 3월 이내
•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 내 업무담당자를 기본 구성원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필요시 지역사회 전문가 및 관련 학부모를 포함 가능)

② 내용

• 학생 정신건강, 가정 및 학교부적응 문제 등으로 학교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

③ 운영

•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협의체를 활용 혹은 통합 관리 운영 권장

④ 역할

•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피해 사안 확인, 피해학생 긴급 지원
• 위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및 세부적 대응방안 수립(협의록 작성)
• 사안 발생 시 1~2명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체 협의
• 필요 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위기관리 지원 요청

세부 업무명

4. 교육청 위기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근거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주요내용

① (도 교육청) 학생 위기 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학생 위기 예방 및 지원 협의회 운영
- 인원: 총 15명 내외
  - 기관별 아동학대 피해 학생 등 위기 학생 지원 업무 공유
  - 교육청과 관계기관 간 효과적인 협업 방안 모색
  - 빈틈없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방향 협의 및 추진

② (교육지원청) 학생 위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지원단 구성: 총 15명 내외(교육지원청과 지역 관계기관의 학생 위기 지원 업무담당자, 전문성 있는 교원(교감 등)으로 구성)
- 운영 내용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기능 포함 운영
  - 학생 위기 사안별로 해당 학생에게 직접적·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
  - 학생 위기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학생 위기지원협의체에서 학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소규모 지원단(3~6명)을 구성하여 학교 위기관리 위원회 참여
  - 위급한 사안(학생자살 등)이나 교육지원청 요청 시·도 교육청 학생 위기지원단 담당자 참여·지원
- 지원 과정
  - 교육지원청과 외부기관 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학교) 발생
  - 소속 교육지원청에 지원 요청
  - 교육지원청에서 위기 상황에 따른 학교 방문단 구성(3~6명)
  - 해당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위기 학생(학교) 지원방안 마련
  - 교육지원청 및 지역 연계 자원을 활용한 위기 지원
  - 지속적 관리

세부업무명

5. 위기 지원 내용 및 절차

관련근거

◦ 아동학대처벌법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주요내용

① 위기학생 발생교 긴급 심리 지원

• **(교육지원청 연계)** 특별상담실 운영, 학교 안정화 프로그램 및 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
  - 담임, 담당교사, 전문상담인력 위기 대응 컨설팅
• **(심리회복 지원)** 자살(시도) 발생교 담임, 담당교사, 전문상담인력 컨설팅 및 심리 회복(소진예방)을 위한 상담 치료 지원
  - 자살(시도) 학생 추수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②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부 자살시도 학생 치료비 지원
• 병원형 위(Wee)센터 치료비 지원
• 위기 사안 발생교 교직원 심리 치료비 지원
• 위(Wee)센터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 절차

지원 대상자(학교)		지원기관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치료기관 (상담센터 등)
- 심리 정서적 위기로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신청**	-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 치료 지원

③ 위기학생지원 협력체계 구축

• **(내부 협조)** 위기 발생 사안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학생 지원 협조
  - 자살(시도) 발생교 관리자, 학교 업무 담당자 및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위(Wee)센터 실장 등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
• **(유관기관 협력)**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 협의체에 지역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병원형 위(Wee)센터, 학교방문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협의를 통한 고위기 학생 특성 및 치료 과정, 학부모의 자녀 이해 등 공유
• **(동향 분석)** 자살(시도) 및 자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 종단연구, 위기학생 심리·정서적 원인 파악을 위한 교육부 학생자살예방정책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방안 진단 및 개선

세부업무명

6.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주요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활성화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별표6 교육기준]

- 교직원 대상 신고 의무자 교육: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입학설명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 행사 시 실시
- 직원과 학생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

②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기 발견
- 아동학대 의심학생 신고 시 유의사항
  -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
  -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하고, 경찰 및 전담공무원 현장조사 전에 캐묻거나 유도 질문하지 말 것
- 각 기관별 아동학대 피해 학생 지원 업무 공유

③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사안보고

- 수사기관(☎112) 신고, 시군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 교직원은 법령상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인지 또는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각급 학교→소속교육지원청 보고
  - 아동학대(의심) 사안 보고서
  - 중대.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 사안보고서 양식은 '2024 위기학생 지원계획' 참조

④ 학대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 방안

- 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 결손을 해소·완화하여 일상으로의 복귀 및 전인적 성장 지원

⑤ 피해 학생 및 가족 심리치료 지원

- 위(Wee)클래스, 위(Wee)센터와 연계한 학생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요청 시 경기도교육청 가족상담 협약 기관 가족 치료 지원
  - 위(Wee)센터, 경기도교육청 상담 심리치료비 지원을 통한 일상 회복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운영 프로그램 참여 지원

세부업무명

7. 학생실종·유괴 사안 보고

관련근거

- 실종아동법 제6조(신고의무 등)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 2023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보고 대상: 학생 실종(유괴) 사안

- 실종 아동(학생):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학생)
- 사안과 관련된 발생 피해, 언론보도, 경찰 조사 내용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② 처리 절차

- 학교는 보호자의 실종신고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에 반드시 확인
-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실종신고가 안 된 경우 학교(담당 교사)에서 실종 신고(☎ 112)
  ※ 실종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담당(임) 교사의 실종 신고도 경찰에서 접수하여 수사
- 사고 발생(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화 보고(학생지원센터 등)
- 사고 경위, 피해 현황, 관련자 현황, 조치사항 등 사고 관련 사항을 사안보고 서식에 작성하여 사고인지 48시간 이내 담당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고(업무관리시스템)
  ※ 유아 또는 특수 학생이면 유아교육과 또는 특수교육과에 동시 보고
- 최초 보고 이후 상황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추가 보고(유선 및 공문 보고)
- 실종(유괴) 학생 사안 종결 시(학생 찾음, 사망 등), 즉시 전화 보고 및 결과보고서 공문 보고

※ 경찰에서 학교 측에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실종 아동 친구와 그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경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 제공 가능

※ 중대 사안 또는 언론보도 사안일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 유의 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생활인성교육과로 동시 보고(업무관리시스템)

세부업무명

8. 자살 위기 학생 관리

관련근거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 2023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주요내용

① 자살징후 조기 발견 강화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 발견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 면담지 조사 및 2차 연계 시행

• 학기 초 학부모 상담주간 활성화

• 담임이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한 자살 생각 및 위험성 평가
※ 담임교사가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문항지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의뢰

※ 청소년 자살의 위험 징후

- 언어적 신호, 상황적 신호, 행동적 신호

※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살 고민 상담 전화 운영

- 학교폭력 신고 전화(☎112), 청소년 상담 전화(☎1388),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1393)와 연계한 자살 고민 상담
- 상담 전화-전문기관(자살예방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 개입 지원

• 자살 고위험군 및 자해 학생 지원

-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체계 내실화, 위기 학생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② 자살 사안 발생 시 대처 (단위학교)

• 학생자살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 최초발견자는 112, 119 신고 및 사고 현장 보존
- 보호자에게 연락 및 담임교사 또는 위기관리위원회 교원에게 연락
- (단위학교→교육지원청) 유선 보고(24시간 이내) 및 10일 이내 공문 보고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소집(긴급)
- 관련 정보 수집, 구체적 상황 파악(사고 경위, 목격자 파악 등)
- 구체적 대응책 마련 및 역할 분담

• 유가족 위문 및 공식 입장 결정
- 가족 방문을 통한 깊은 애도 표현(가족들의 정서 상태 파악)
- 학생, 학부모, 언론보도: 공개할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 사실적 정보만을 제공함
-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 공지에 있어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학생위기지원단 긴급 심리지원
- 교육지원청 Wee센터, 도교육청 위기지원단 학교 지원
- 학교 내 특별상담실 운영 가능(Wee센터 협조)
(자살 목격 학생 및 심리적 충격이 큰 취약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심층 심리상담 지원 또는 외부기관 연계)

• 위기 극복을 위한 교내 지원
-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사후 계획 수립: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위기관리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필요 시)
-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 논의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교원 등에 대한 추수 관리 논의
- 2개월 이후 위원회 활동 평가 후 결과 보고(도교육청)

4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

학업 중단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학업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대안교육 참여 기회 제공, 학업 중단 학생 지원 등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한다.

세부업무명

1.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5조(예방사업)
- 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

주요내용

① 개념

-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매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② 대상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학업 중단 사유(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및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이동 등)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 학생
  -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③ 기간

- 숙려 기간: 최소 1주(7일)~최대 7주(49일)까지 주 단위로만 운영
  - 주 단위 운영: 시작일로부터 7일째가 되는 날까지를 1주로 함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단, 지필평가 기간 제외)
  - 지필평가 기간과 숙려 기간이 겹칠 경우, 지필평가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를 1회로 처리
- 숙려 횟수: 당해 학년도의 숙려 기간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④ 운영 기관

- 단위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 위(Wee) 센터: 25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협약을 맺은 기관 연계 가능)
- 시·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학교 내 구성된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과 협의)

⑤ 운영 방법

- 대상 학생(보호자)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반드시 안내해야 함
-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 작성 및 내부 계획에 의해 시행
- 상담(최대 2주)과 매일 프로그램(최대 5주)으로 학업 중단숙려제 운영-학업 중단 위기 원인 파악과 원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매일 프로그램 시행 전 상담 권장
- 상담
  - 주 단위 운영(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 최대 2주(14일간), 학생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1주 상담도 가능
  - 1주 2회 이상의 상담 참여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담임교사의 수시 상담은 해당하지 않음
- 매일 프로그램
  - 주 단위 운영(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 최대 5주(35일간)
  - 1일 1회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운영 프로그램 예시: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성 수련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멘토링(꿈 키움 멘토단 활용 등), 사제동행 프로그램, 진로체험, 예체능 활동 등

⑥ 출결 처리

- 상담 기간(1주~2주 이하)
  - 1주 2회 이상 상담, 총 2주 참여: 상담 기간 전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1주 1회만 상담, 총 2주 참여: 상담 당일만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숙려 상담 기간 상담 모두 불참: 숙려 상담 기간 전체 결석 처리
- 유의사항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외의 결석 처리는 사유에 따라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학교 복귀 가능
    ※ 복귀 시 출석 처리를 위해 학교장 결재 필요
    ※ 출결 처리 관련 근거: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⑦ 성적 처리

- 학업중단숙려제로 인한 결시생 성적은 관련 근거에 따라 처리
- 지필평가 기간에는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양)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결시생 성적 처리는 관련 근거에 따라 처리
  ※ 성적 처리 관련 근거: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

Tip

■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서식

⑧ 운영 절차

단계	학업 중단 위기 징후 포착 또는 학생의 자퇴원(유예신청서) 제출		
1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학교장 의무 사항)		
2	참여 동의		참여 미동의
3	신청서 작성, 제출		미신청서 작성, 제출
4	운영계획 결재		
5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6	상담 및 매일 프로그램 운영		
7	학업중단숙려제 종료		
8	학생 나이스(NEIS) 등록		
9	학업 복귀	학업 중단	학적 처리 및 수업료 반환
1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안내 (※ 학교장 의무사항)
11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12			개인정보 동의 (초중학교 미동의자 포함) / 개인정보 미동의 (고등학교 미동의자)
13			학업중단학생 나이스 등록 / 학업중단학생 나이스 등록 불필요
14			교육청 보고, 제출
15			종료

• **행정 사항(학교)**

- 학업 중단 예방 계획 수립
-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 구성·운영
- 학업 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을 나이스 등록 관리
- 학업 중단숙려제 참여 현황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연 1회)

세부업무명

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5조(예방사업)

◦ 2023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주요내용

① 운영 개요

• 개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 학급

• 목적: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역량 제고
• 운영 대상교: 초·중·고

② 운영 방법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실행
- 운영팀 구성: 교감, 부장교사,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3~5인 이상 교직원으로 구성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팀'에서 전담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강사를 둘 수 있음
• 운영계획은 예산 편성 및 운용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자체 내부 결재 시행
• 학부모 동의를 얻어 학업 부적응 학생, 위기 학생(학교폭력, 학습 부진, 가정 문제, 교우관계, 대안적 교육 희망 여부, 기타 등)을 우선 선발
• 담임교사가 대상자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팀'에 추천
•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예시)

주제	세부 영역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치유	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예술 치유	전문가 초빙 운영 또는 학교 내 교과교사 협조
공동체 체험	또래 관계	모듬북, 난타, 전통북 배우기, 텃밭 가꾸기, 휴양림 탐방
	교사 관계	뒤뜰 야영, 둘레길 또는 산책길 외 사제동행 산행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소통법 강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캠프
	봉사	무의탁 노인, 장애우 돕기, 복지관 방문 봉사
학습·자기계발	멘토링	교사 또는 선·후배 간 멘토링, 또래 멘토링
	수준별 수업	독서교육, 기초 학력 증진 수업, 다양한 교재와 방법을 활용한 수업
	스포츠	스케이팅, 당구, 검토, 축구, 헬스 등 체육시설 이용
	문화예술 체험활동	밴드, 방송댄스, 사진 활영, 영화·연극·스포츠 관람, 음식 만들기, 박물관 및 체험관 방문, 다문화이해 교육
	제작 체험	팝아트, 포크아트, 캔들 크래프트, 천연비누, 펠트 공예
진로·직업개발		진로상담, 미래 직업 탐구 방문 활동, 명사 특강, 직업체험

• 유의사항

- 교육과정 일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 학급을 편성하여 일반학급과 병행
- 운영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 내로 편성(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의 시기 지양)
-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학교 내 대안교실 공간 마련
- 학교 내 대안교실의 출결 상황 및 재적 학급의 교과 시간을 그대로 인정
- 학교 내 대안교실은 Wee 클래스 운영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 학급 및 학년 전체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
- 별도 교원 증원, 기간제교사 배치, 시간강사 채용, 학급 증설 등은 실시하지 않음

세부업무명

3. 대안교육 지원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제7조(학습지원교육)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2024. 1.)
-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

Tip

■ 대안교육기관 현황

주요내용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 개념: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규칙 위반 등)의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운영 기간: 해당연도 4월 1일~12월 31일
- 위탁교육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
  - 학교 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처분 등이 결정되었으나, 학교장이 이를 승인하기 전, 학생과 그 보호자가 위탁교육을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이 경우 학생 및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 중에 있는 학생은 위탁교육 신청 불가
  - 학업중단 중인 학생이 재입학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을 신청한 경우(단, 초등학생의 위탁교육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자유학기제 운영시기의 위탁교육은 지양함

② 위탁교육 절차 및 방법

- 위탁 상담: 재적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상담)
- 위탁 결정: 재적학교
- 절차: 학생과 보호자 위탁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반드시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위탁 여부 협의(협의록 작성) → 내부결재로 학교장 승인 → 위탁교육 추천

Tip

■ **위탁신청 준비서류**

- 대안교육 위탁 신청서, 위탁학생 이해자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재적학교에서 보관)

Tip

■ **적응 교육**

- 통지서를 재적학교로 발송
- 수탁 전 1주일 이내로 운영(연장 가능), 일정은 상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음
- 수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학교에 통보하고 학생을 재적학교로 복귀 조치
- 위탁교육기관은 적응교육기간, 교육내용, 상담내용, 출결 상황 등 위탁교육 결과를 재적학교에 송부, 재적학교는 학생 지도에 활용, 출결 상황은 그대로 인정(출결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반드시 내부 결재 처리)

- 위탁신청: 재적학교
  K-에듀파인으로 처리함이 원칙, 단, 위탁교육기관이 K-에듀파인이 되지 않는 경우 K-에듀파인에서 공문 작성 후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편 제출 가능,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 학적 변동 이력과 장기 결석의 사유 등을 위탁교육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보
- 위탁 상담: 위탁교육기관(학생, 보호자 상담)
- 적응 교육: 위탁교육기관
- 수탁 결정·통지: 위탁교육기관
  수탁 통지서(적응 교육 기간 출결사항 및 수탁 여부 기재)를 재적학교에 발송. 수탁일은 적응 교육을 마친 다음 날로 함. 재적학교는 출결 상황을 확인 후 나이스 출석 일수에 반영 처리. 위탁학생을 나이스(NEIS)-[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 등록]에 등록
- 위탁교육 확정: 재적학교
  상담 자료 등 학생 이해자료가 있을 시 함께 발송 지필·수행평가 시행일 출석 일정을 알리는 공문을 위탁교육기관에 발송
-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
  - 개인별 출결 통지서를 매월(5일) 받아 나이스에 담임교사가 매월 입력
    ※ 출석일은 위탁교육기관 출석일과 재적학교 출석일을 합산하여 처리
    위탁학생 나이스(NEIS) 출결 관리 세부사항은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학교용)' 참조
    ※ 위탁교육기관의 출결 상황을 그대로 인정
  - 학기 말,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받아 학기별로 입력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경조 확인서가 있으면 함께 발송
  - 평가일에 위탁학생 결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
  - 위탁학생이 중3, 고2, 고3인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누락이 없도록 위탁교육기관과 협력 처리
  - 중도 수탁 해제 시 -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수탁 해제 사유 확인 → 학생 및 보호자 상담 → 복교 안내 → 수탁 해제통지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공문 접수 및 입력 → 복교 후 적응을 위한 상담 실시
    ※ 위탁학생은 수탁 해제 시 다음날부터 재적학교로 등교하도록 지도
    ※ 재적학교나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적학교로 정상 복교하는 경우는 중도 수탁 해제가 아닌, 정상 위탁종료로 간주
  - 학생위탁 기간: 4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 단, 국립 및 청소년 한부모(미혼모·부) 위탁교육 기간은 예외 적용
  - 재적학교 담임(담당)교사는 위탁 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위탁교육기관 방문으로 학생 교육의 연계성 유지(위탁학생의 출결,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점검, 격려, 담당자와 제반 사항 협의)
  - 재적학교에서는 위탁 학생들이 참여(등교)해야 하는 재적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등) 및 평가 일정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위탁교육기관에는 공문 발송, 위탁 학생에게는 직접 안내

- 평가를 시행하는 위탁교육 기관은 매 학기 성적 처리 직후 교과 학습 발달상황(성적)을 재적학교에 통보

• 위탁종료: 위탁교육 기관

- 재적학교의 동계방학 이전에 위탁교육 종료 예고 통지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재적학교로 송부

※ 위탁교육 종료일(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은 재적학교와 위탁교육 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 위탁교육이 종료되면 위탁학생이 재적학교로 복교하도록 지도
- 위탁교육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결, 성적 등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자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력 마감

※ **재위탁 절차**(재위탁은 원칙적으로 지양)

- 재적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반드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교육 기관에 송부
- 위탁교육 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협의 결과에 근거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송부
-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여부 최종 결정

※ 행정 사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11월)

※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적·성적 처리, 학생 생활교육, 수업료 납부, 위탁 교육비, 급식비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학교용)' 참조

③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운영 지원

• 대안학교(각종학교)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의 3(대안학교)

•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 특성화 중학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대안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한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 중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세부업무명

4. 학업중단학생 지원

관련근거

-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4조(학교장의 책무)
- 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

Tip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주요내용

① 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의 개념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유예, 자퇴, 제적, 퇴학, 미취학·미입학 등)한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지원, 상담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받아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음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업 중단 학생 발생 시 학교에서 할 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내 센터 안내(학교장 의무사항)
  - 학업 중단 학생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 나이스(NEIS) 등록 및 교육청 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운영 기관: 각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등
    ※ (경기도 홈페이지) www.gdream.or.kr
    ※ (전국 홈페이지) www.kdream.or.kr

③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

• 개요: 의무교육단계(초등학교, 중학교)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중,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학력(초졸·중졸)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④ 운영과정

• 학습자 등록
  - 대상: 의무교육단계 학습자로서 학습자 등록 시 만 24세 이하인 자
  - 방법: 홈페이지(www.educerti.or.kr)를 통한 학습자 등록 신청 → 학습자 등록 자격 확인 및 승인(한국교육개발원)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 오프라인 프로그램: 직접 참여를 통한 학습
    ※ 교육감 직접 개설 및 위탁지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습 프로그램 70% 이상 출석한 자에게만 이수증 발급
  - 온라인 프로그램: 홈페이지(www.educerti.or.kr)를 통한 학습
    ※ 초등학교 단계 온라인 프로그램: 2020년 개발 예정(교육부)

Tip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졸업 연령을 초과한 자**

- 초등학교 졸업 연령 초과 기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
- 중학교 졸업 연령 초과 기준: 만 1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

■ **학력 인정을 위한 필수 이수 기간을 충족한 자**

-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위한 학업·학습 기간 4년 이상
- 중학교 학력 인정을 위한 학업·학습 기간 2년 이상

⑤ 학력 인정 심의 신청

- 신청 자격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습 중단 학생으로 학습자 등록한 자
  - 학력 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한 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졸업 연령을 초과한 자
  - 학력 인정을 위한 필수 이수 기간을 충족한 자
    (이수 기간은 이미 이수한 정규교육과정 이수 기간과 본 사업의 학습 과정 이수 기간 합산)

⑥ 학력 인정 기준 시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필수 이수	국어	632시 수	221시 수
	사회*/도덕 *중학교 과정은 역사포함	272시 수	255시 수
	인성(봉사활동 포함)	30시 수	30시 수
선택 이수		3,758시 수	2,146시 수
학력 인정 기준(총) 시수		4,692시 수	2,652시 수

※ 학력 인정 신청은 학교급별로 정해진 기준 학습 시간 모두 이수해야 함
※ (초·중 중단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80% 인정

- 학력 인정평가: 학습자 → 한국교육개발원 → 학력 인정 평가위원회의 학력 인정평가
- 학력 인정 심의: 학력 인정평가 완료된 학습자 → 도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 학력 인정 확정 및 통보
- 학습지원 프로그램 예시(관련 문의: 031) 820-0641)

구분	운영기관(2022 기준)	운영 프로그램
교육감직접개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수원) 성남교육지원청Wee센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코딩, 연극, 문학, 마술, 드론, 상담, 예술창작 등
교육감위탁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안산, 의정부, 성남, 여주, 광주, 남양주, 안양, 파주, 고양)	검정고시, 인턴십, 직업체험, 드론, 공연 등
온라인학습지원	www.educerti.or.kr 한국교육개발원	교과(필수 및 선택)프로그램

※ 참고

- 검정고시: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사람에게 학력 인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험(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534)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교 밖에서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535)
- 내일이룸학교: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후, 자격 제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 취업 가능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관련 문의: 각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행정 사항

- 반드시 학업 중단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센터 안내(학교장 의무)
- 학업 중단 학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나이스 즉시 등록 및 도 교육청 제출(미동의서는 학교 자체 보관, 반드시 나이스에서 양식 내려받아 활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 학업 중단 학생 사유별 현황 나이스 마감 및 제출(연 1회)

제18편 진로·직업교육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진로 · 직업교육</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진로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진로교육: 다양한 진로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
· 진학교육: 학생 성장 중심 진학교육 체계 구축, 입시체제 안정적 시행 관리
· 직업교육: 산학연계 직업계고 운영,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td></tr>
<tr><td rowspan="4">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진로교육</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2. 진학교육</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3. 직업교육</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교육부, 2023. 4.)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진로직업교육과, 2023. 12.)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로드맵
◦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진로직업교육과, 2024. 3.)
◦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3. 10.)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7.)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교육부, 2022. 8.)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관, 2023. 12.)
◦ 경기도교육청 취업전문교사 운영 지침(진로직업정책과, 2023. 2.)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교육부, 2023. 5.)</td></tr>
</table>

1 진로교육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세부업무명

1.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관련근거

-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Tip

■ **초등 진로교육 강화**

- 학년(군)별 교과 및 창체 성취기준을 토대로 제시된 진로교육 연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학교 진로교육과정 편성
- 진로교육 내실화
  - 권역별 '우수 진로교사'가 참여하는 컨설팅단이나 진로교육 연구모임, 진로관련 연수 등을 통해 초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도모
  - 주니어 커리어넷 등을 활용한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직업정보 제공
  - 늘봄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진로체험프로그램 실시
- 진로교육 계획·운영, 진로교육 예산 편성 등에 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자체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참고자료**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로드맵

주요내용

① 진로교육 비전 및 목표 수립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요구 및 여건 분석
- 교육공동체와 함께 진로교육 목표가 포함된 학교 비전 수립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목표 및 방향 수립
  - 상위 지침 분석 및 진로교육 운영 방향 제시
  - 학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로드맵 수립
  - 초, 중, 고 간 연계성 있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초등학교: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 함양
  - 중학교: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 탐색 통한 중학교 이후의 진로 디자인
  -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

② 진로교육 기반 조성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 진로교육 관련 부서 조직
  - 진로전담교사 배치, 인원 배정 및 업무분장(초등)
  - 진로진학상담 관련 부서 설치, 인원 배정 및 업무분장(중등)
- 진로활동실(공통), 진로상담실(중·고) 환경 구축
- 진로교육 역량 강화 교사 연수
  - 신학기 준비 연수시 진로교육 연수 실시
  - 진로교육 중심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학부모 연수 및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계 인적·물적 자원 기반 구축
  - 학부모 진로코치, 진로멘토링, 진로체험처(진로체험지원센터 등) 확보

③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권장)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및 연계 자유학기, 고등학교 1학년
- '진로와 직업'선택교과(중·고) 3년간 2단위 이상 편성·운영(권장)
- 미래역량에 기반한 학생주도의 문제해결 진로교육 실시

-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 진로교육 중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진로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통합 운영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된 진로연계 교과 수업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주도형 진로수업 활성화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연구, 공동실천
  -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 사전활동(교과)-진로체험활동-사후활동(교과)
  - 진로연계 교과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권장)
- 학생 사이버 진로교육 참여 확대(초·중학교)
  - 학생진로교육
- 꿈·끼 탐색주간 운영(권장)
-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운영(권장)

④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택적 운영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독서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기업가정신 창업프로그램(YEEP) 등
- 진로체험활동 계획 수립·운영
  -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진로 발달 단계별 직업체험, 진로특강, 견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학생 진로체험활동 포트폴리오 및 보고서 작성 지도
  -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및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운영
  - 상급학교 방문의 날 운영(중학교 자유학년제 안내 등)(초6)
  - 진로집중 상담주간 운영(학기별 1회, 학부모 상담주간 연계 가능)
- 진로체험 안전교육계획 수립·운영
  - 실시 전 체험처 답사 및 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 점검
  - 활동단계(사전교육-체험활동-사후활동)별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 현장체험활동 안전 지침 활용
- 진로상담 협력체제 구축 및 내실화 운영
  - 담임교사(기초)-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심화)간 협력적 진로 상담체제 구축
  -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
  - 흥미·적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권장)
  -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담임교사 연수 포함)

⑤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 과정 평가 및 환류

- 진로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주도형 진로수업
  - 진로상담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자가진단지표를 활용한 평가 및 환류

세부업무명

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관련근거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Tip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이란?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양식이며, 학생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 신산업분야의 예시

•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반도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팜 등

주요내용

①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콘텐츠 개발
  - 범교과 수업 주제와 교과 학습 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콘텐츠 개발
  - 창업교육 운영모델을 발굴하여 창업가정신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과 학습 내용과 범교과(진로) 학습 주제를 융합한 수업 실시
• 교원 역량 강화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창업체험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동아리 활성화
  - 창업동아리 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동아리 간 공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동 프로젝트 운영, 동아리 미션활동 공동 수행, 청소년 창업경진 대회 공동 참여 등 지원하기
• 수업·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창업체험 교육·활동 이력을 마일리지 형태로 기록·관리하는 '창업체험 마일리지제' 운영

②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강화

• 미래 사회에서 강조하는 신산업분야 직업 및 진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수업활동 교안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산업분야 역량 강화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수요가 많은 신산업분야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생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창업가정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활동 운영
  -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 활용하여 창업교육 실시
  - 창업체험교육콘텐츠 및 실제 창업 사례 동영상 활용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산업분야 창업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의 창업체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2 진학교육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직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진학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세부업무명

1. 진로진학상담

관련근거

- 진로교육법 제11조(진로상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경기도교육청 경기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Tip

■ 참고자료

-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변경사항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

주요내용

① 고입 진학 지도

- 고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을 위한 자세한 고교 입학 정보 제공
- 일반계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전형 방법 안내
  - 202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 참조

구분	지역명	비고
평준화 지역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학군	
비평준화 지역	남양주(구리), 동두천(양주), 평택, 여주, 화성(오산), 파주, 광주(하남),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안성, 김포, 시흥	

- 일반특성화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신입생 전형 안내

Tip

■ 경기진학정보센터 (https://more.goe.go.kr/jinhak/)

- 진학 1:1 상담 확대 운영
- 교육지원청, 지자체, 대학이 함께하는 대입 박람회 운영
- 진학 정보 제공(경기도형 진학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 제공
- 지자체 연계 1:1 진학컨설팅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운영

② 대학 진학 지도

- 교사 진학상담 역량 강화
  - 교사용 진학지도 자료 참고(각 학교 배부)
    - 3월 배부: 고3 담임 한해살이 로드맵, 학생부종합전형사례집, 면접후기사례집
    - 6월 배부: 음악·미술·체육계열 진학지도 자료집
    - 하반기 배부: 대학입학전형 분석자료집, 정시분석자료집
  - 진학관련 사이트 활용(경기진학정보센터, 대입정보포털(어디가))
  - 경기도교육청 유튜브TV, 어디가TV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연수 동영상 시청
  -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대입진학자료실' 탑재 자료 활용
  - 교사대상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서류평가 연수 신청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
  - 경기진학정보센터를 활용한 상담 플랫폼 운영
  - 대면, 비대면 개인진학상담 활성화 및 다양한 진학정보 제공
  - 대학별 모집요강, 대입레터 '꿈진' 등 학급 게시를 통한 입학정보 안내

-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학생, 학부모 1:1 컨설팅 운영
- 대교협 대입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한 내신산출 및 정시 모의 지원 시뮬레이션 활용 상담

• 대학입학 원서접수 과정 안내
- 수시, 정시 원서접수 기간 및 유의사항 안내
- 지역균형선발(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추천 시 담임교사협의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추천 대상자 선발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규정에 따름)
- 면접, 충원합격, 추가모집 일정 안내

③ 진로진학상담 내실화

• 진로상담 협력체제 구축 및 내실화 운영
-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기초 진로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시 학생 진로에 관한 상담 실시 권장

• 진로상담 협력체제 구축 및 내실화 운영
- 담임교사(기초)-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심화)간 협력적 진로 상담체제 구축
-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
- 흥미 · 적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권장)
-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담임교사 연수 포함)

세부업무명

2. 입시체제 안정적 시행관리

관련근거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Tip

■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험 시행일: 2024.11.14.(목)
• 성적 통지일: 2024.12.6.(금)
• 응시원서 작성, 변경 및 접수
: 2024년 8월 말 ~ 9월 초
(자세한 사항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발표 이후 확인 가능, 2024년 7월 중 공지 예정)

주요내용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정적 시행 · 운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9월 모의평가 운영
- 응시 신청 접수, 시험 감독 및 문답지 배부, 답안지 회수 관리, 성적표 배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담당자 역량 강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4월, 9월) 참여
-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연수(7월) 참여
- 시험장 설치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10월)를 통한 업무지침의 정확한 숙지
• 수능원서 접수 담당자의 업무처리 사항
- 수능원서 접수 업무처리 지침 숙지
- 졸업생이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재학생은 조·종례 시간을 활용하여 안내(8월)
-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학생들에게 안내
- 응시원서 접수내역 최종 확인 및 자료 송부
-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영수증 제출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및 관리
- 시험장 배치, 예산 업무, 시행 등을 통하여 원활한 시험 운영 및 관리
- 감독관 배치 및 감독관 역량 강화 연수 실시(11월)
- 시험장 배치 점검 및 방송시설 점검 철저

② 전국연합학력평가 안정적 시행·관리

• 5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0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감독 및 문답지 배부, 답안지 회수 관리, 성적표 배부
- 학력 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해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

3 직업교육

직업 세계를 탐색하여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능·태도·이해 및 판단력과 습관 등을 개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세부업무명

1.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Tip

■ **경기도형 도제학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 일학습병행교육)의 지원영역을 확대하여, 학교의 재량과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초 이론과 기업실무 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학과 단위 사업

■ **경기도형 취업지원센터의 업무**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4.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6.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달.고.나. 채용박람회란?**

- '달콤한 고졸취업 나도 할래'의 줄임말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고교 인재 채용 및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주도의 채용박람회

관련근거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 계획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산학연계 직업계고 활성화

- 산학연계 특성화고 운영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경기도형 도제학교,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경쟁력 강화 도모
-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각종 기능대회, 상업교육페스티벌, 영농학생축제 등의 참가학생 지도를 통한 직업계고 학생 기능역량 향상 지원
- 학생 선택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확대 운영(가이드라인 제작)
  - 직업기초능력평가 운영(고3 학생 대상, 7월 연 1회)

②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취업지원센터 운영
  - 남/북부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 AI기반 취업지원 기반 마련
  - AI기반 직무역량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취업 지도 및 지원
  - 달.고.나. 채용박람회 운영(4월, 9월)
- 지역기반 협력 강화
  - 직업교육협의회 운영(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 지역직업교육협의회)
  - 유관기관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경기콘텐츠 창의학교 20교, 농생명 직업직로체험 학습장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보급)

세부업무명

2.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Tip

■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유형**
- ①학과개편 ②학급 증·감축 ③남녀공학 개편 ④학교 명칭 변경

■ **특성화고 계약학과란?**
- 국가핵심전략산업 및 지역육성산업 분야에 대한 특성화고-연구원/대학/기업 연계하여 우수 고졸 인력양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교육, 교원연수, 취업, 선취업 후학습을 지원하는 사업

Tip

■ **취업전문교사란?**
-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일(FUTURE, MY JOB)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현장실습생 모니터링, 노동인권 보호 등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사

■ **취업전문교사의 주요 업무**
- 취업처 발굴 및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취업희망자 및 취업처 DB 관리
- 직업계고 취업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관련 업무
- 일학습 병행 관련 업무
- 기타 학교장이 정한 취업지원 관련 업무

■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취업전문교사 운영지침
- 2023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관련근거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 계획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 미래형 직업계고 유형전환 및 직업계고 통폐합 추진
-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개편)를 추진
-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설립 추진
-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 신산업분야(반도체) 특성화고 신설
  -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 직업교육 직속기관 운영(농/공업계 공동실습소 운영)
- 개방적인 직업계고 운영
  - 직업계고 국제교류 및 국외체험 계획 및 운영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장학금 지원(사립 2교)
  - 직업계고 연구학교 운영(마이스터고 연구학교 운영)

② 하이테크 실습환경 조성
- 하이테크 실험실습실 구축 및 환경개선
  -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 지원
  - 농업계고 실습농장 인력관리 운영
  - 특성화고 읍·면단위 기숙사 신축 지원
- 실습기자재 및 실험 실습 지원
  - NCS기반 실습기자재비 및 수리비 지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 실험·실습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
- 하이테크 교원 실무역량 강화
  - 산업 맞춤형 신기술연수 운영
  -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
  - 취업전문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운영

제19편 학교독서인문교육 및 도서관 운영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교독서인문교육 및 도서관 운영</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독서문화진흥법
○ 학교도서관진흥법(약칭: 학교도서관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도서관법
○ 도서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세상과 통하며, 미래로 함께 가는 학교독서교육과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운영</td></tr>
<tr><td rowspan="3">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독서인문교육</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2. 학교도서관 운영</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융합교육정책과 기본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3. 12.)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학교도서관 업무편람(도서관정책과, 2019. 12.)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평생교육과, 2024. 1.)
○ 2023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2.)</td></tr>
</table>

1 학교독서인문교육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독서로 세상을 읽어내고 꿈을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通하며, 미래路 함께 가는 학생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독서인문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관련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0조(독서교육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

Tip

■ **'한 학기 한 권 읽기' 및 독서기반 프로젝트 교과수업 자료**

• 자료위치: 경기교육모아 교직원/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맞춤형수업(중)/독서교육콘텐츠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전반 학생독서습관 정착

• 책읽는 학교 운영
- 독서문화조성, 독서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공동체 독서역량 강화 통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독서가 이루어지는 학교

•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 교과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자율과정 시간을 활용한 독서프로젝트 수업

• 독서 동기 강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전교생 대상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담임교사에 의한 교실독서 등
- 독서동아리 및 도서부,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

② 학교 독서인문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재구성 통한 독서기반 프로젝트 수업, 평가, 기록 활성화
- 교과·진로·융합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과·사서교사 협력수업 확대로 교육과정센터로서 학교도서관 역할 강화

• 학교 독서문화 정착
- 학교 특색 반영한 독서인문교육의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자율성 강화
-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의 일상화 및 독서습관 정착
- 학교와 지역 특색 반영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 지역 독서교육 협력 강화
- 지역 독서교육자원 분석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유관기관, 경기공유학교 등)
- 지역 독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서교육 활성화 사례 발굴 및 성과 나눔 확산

③ 학교 독서인문교육 운영계획 수립(학교용)

- 시기: 2024. 3. 1. 이전
- 담당: 독서교육담당 부장, 교사, 사서교사(사서 협조)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과 독서인문교육 운영 계획 통합 수립 시 교사-사서교사(사서) 협조하여 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의점
  - 학교에서 학교 독서교육·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의 3영역을 기반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함
  - 학생들의 책 읽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독서가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학생들의 일상의 독서를 위한 독서공간과 학교도서관의 공간 및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영역 및 내용

교육과정 전반 학생 독서 습관 정착	- 학교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독서인문 교육 운영 계획을 반영하였는가? - 독서기반 프로젝트 교과수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학교도서관 기반 활용 및 협력수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가? - 학생주도 독서인문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하는가? - 일상적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학교도서관 운영 기반 강화	- 학생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독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 방안이 있는가?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한 정보자원을 체계화하고 있는가? -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성장지원을 계획하였는가?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역량 강화	- 학교 독서교육·도서관이 함께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 학교 독서교육·도서관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가? - 지역의 독서자원과 연계된 독서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하는가?

세부업무명

2. 교육과정 전반 학생 독서습관 정착

Tip

■ 학교 독서교육 자료
- 2023 독서가 답이다
- 학교도서관, 교육과정과 만나다
- 2019 독서기반 프로젝트 수업 사례집
- 명작[화]와 함께하는 책이야기
- 경기교육모아
  교직원/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맞춤형수업(중)/독서교육콘텐츠

■ '경기 솔솔~독서바람' 자료
- 자료위치: 경기교육 e-book 정기간행물/경기 솔솔~독서바람
- 자료위치: 경기교육모아 교직원/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맞춤형수업(중)/독서교육콘텐츠/경기솔솔~독서바람

관련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0조(독서교육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운영

- 교과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 학년협의회 또는 교과협의회 통해 도서관 활용 수업 안내
  -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서·사서교사의 역할 확대
  -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 다양한 독후활동지원 영역
- 독서프로젝트 수업
  - 운영시간: 교과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학교 자율과정 시간 등
  - 운영 방법: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 실시
  - '한 학기 한 권 읽기' 전·중·후 독서수업 프로젝트로 심화 확장
- 학교 인문학 교육 내실화
  - 사고력·토론 능력 강화 위한 교육과정 연계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 인문학 기반 인성·진로 교육 강화 및 예술 융합 인문학교육 활성화

② 독서 동기 강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전교생 대상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담임교사에 의한 교실독서 등
  - 독서동아리 및 학생자치회 연계 도서부,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
- 현장 제안 웹진 '경기 솔솔~독서바람' 활용
  - 현장이 제안하는 독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학생주도 참여 설계 독서·도서관 공간 구성 사례 발굴 등

③ 창의·융합 글쓰기 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창의·융합 글쓰기 교육 운영(독서, 토론, 글쓰기 연계)
- 학생주도 글쓰기 활동 확대
  - 교육과정 연계 학생 책쓰기-책출간(디지털 기반 전자책 포함) 활동
  -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책쓰기 프로젝트 운영 등

세부업무명

3. 학교독서인문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 역량 강화

관련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0조(독서교육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교사 독서교육 역량 강화

-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시 독서 관련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교사 학습 동아리 구성 시 독서관련 교사 동아리 조직·운영
- 학년말 교육과정 평가회 시 독서교육·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 신학기 연수(전입교사 포함) 시 독서교육·도서관 운영 안내
- 지역 및 도단위 독서연구회 참여 권장
  - 지역별 구성되는 교사독서교육연구회 확대
  - 학교독서인문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 운영

②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의 교육과정 이해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한 교과교육과정 연구 및 연수
  - 학교도서관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권장
- 사서·사서교사의 학교교육과정 이해 및 워크숍 참여
  - 학교교육과정 워크숍 및 교육과정 평가 시 참여
  -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하는 교사연구회 조직 운영 확대
  - 권역별, 지역별 개별 또는 그룹 간 멘토링 활성화

③ 독서동아리 및 도서부 운영

- 학생이 주도하는 독서동아리와 도서부 운영
- 가정과 연계한 독서문화
  - 가정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자원봉사자 독서동아리 운영 권장

2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정보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도서관 시설 및 공간

Tip

- 2023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관련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1조(시설·자료 등)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

-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
- 도서관의 효과적 공간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실 등 연계성을 확보하되, 컴퓨터실과는 통합 공간이 아닌 별도 관리 운영되도록 설계
-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시설 기준을 반영·운영

경기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		12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24학급 미만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면적	초등	2실 이상	3실 이상	3.5실 이상	4실 이상	5실 이상
	중·고등	2.5실 이상	3.5실 이상	4실 이상	4.5실 이상	5실 이상
수용학생수(명)		36	41	57	84	90

- 창문 설계 시 2벽 이상을 전면창으로 하지 않음
- 표준 온·습도의 범위(온도 20±3℃, 습도 50±10%)를 유지
- 천장: 높이 최소 2.5m 이상, 방음 효과 있는 무채색 계통 밝은색 제품 사용
- 출입문: 실내 보이는 강화 유리문(여닫이 양문) 설치
- 서가의 높이: 초등 3~5단, 중등 5~7단 사용 권장
- 열람책상, 의자: 국가기술표준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KS) 고려

② 학교도서관 자료 기준

- 학교도서관 자료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모든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 포함, 최신성 유지 노력
- 기본 1,000종 이상 자료 갖추고, 최소 연간 100종 이상 자료 추가 확보하되, 학급수에 따른 연간 장서수 확보 권장

학급 수	12학급 미만	12~18학급 미만	18~24학급 미만	24~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연간 장서 확보량(권)	360	480	720	950	1,190

-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1% 이상 도서관운영비 편성 권장
- 폐기: 이용가치 상실, 훼손 정도의 심함 등 사유로 폐기 가능.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7/100 초과 폐기 불가(단,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한 경우 전체 장서의 7/100 초과 폐기 및 제적 가능)

세부업무명

2.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도서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도서관 운영 기본 방침과 주요 사업 결정
  - 별도 운영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역할 대신 가능
  - 위원장 1인 및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위원(독서교육 전문가 등) 포함하여 10인 이내 학교 여건 맞춰 조정 구성 가능
  - 교육과정 적합성, 중립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과 간행물 유해성 심의기준에 기초한 기관별 자체 기준 마련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학교도서관 지원 및 독서교육 계획 등의 심의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 정기회의 연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운영 계획: 학교 교육목표와 학사일정 등 고려하여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 학교도서관 목적 및 방침, 주요 사업과 사업 추진 시기,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명시하고 세부추진사업에는 자료수집 및 관리,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 활용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포함

② 학교도서관 예산

- 학교기본운영비의 3%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운영비 1% 편성 권장
- 학교도서관 세출예산 항목: 독서활동

③ 자료수집과 정리

- 자료수집: 구입(학기별 1회 이상, 가장 보편적인 방법,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확보 집행) 외 기증, 교환의 방법 등
  - 자료구입절차: 구입계획수립(학교도서관운영계획서 포함가능) → 자료선정 → 학교홈페이지게시(1주일 이상 게시)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회의록 작성) → 구입자료 확정, 주문목록 작성 검수
  - ※ 도서 구입 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어려울 시 사유에 대한 서면보고 후 차후 운영위원회 회의 시 사후보고 가능
  - 계약관련 법규를 준수하되 수의계약 시 지역 서점에서 구입 권장
  - 도서구입에 따른 용역(마크데이터구축비 및 장비용역비 등)은 별도 계약하며 운영비에서 집행(자료구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 자료분류: 우리나라 유일의 표준 분류 한국십진분류법(KDC) 활용
  - 분류절차: 복본본사(기능없다면 검색에서 확인) → 주제파악(서명, 서문, 목차, 본문 순) → 분류기호적용(KDC 최신판 6판) → 저자기호적용(학교별 사용하는 저자기호표활용) → 권책번호 및 복본표시(시리즈 : V.1, 2, 3 표기, 복본표시: C.2 또는 =2 표시)
  - 분류 유의점: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곳에 분류, 판단기준 명확하여 항상 객관성 유지, 분류절차는 일관적이어야 함 등

Tip

- 학교도서관 운영규정(예시)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예시1)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예시2)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예시3)

• 자료목록: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조직하는 것으로 국내 표준목록규칙은 2003년 '한국목록규칙' 제4판임
• 자료배가: 정리가 끝난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료의 주제에 따라 배가
- 배열순서: 서가의 상단에서 하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류번호→저자기호→권책번호→복본기호 순 배열
- 각 선반은 장차 수입될 자료를 고려하여 1/3정도 여유
- 하나의 주제에 관한 자료 배열 끝나고 새로운 주제 자료를 이어서 배가할 경우 서가의 단을 바꾸거나 서가를 바꾸어서 배열
- 정기간행물은 신착자료부터 앞면이 보이게 비치하되 1년 이상 된 간행물은 별도 보관
- 서가마다 그 서가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와 주제항목 부착
- 비도서자료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종류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가
- 딸림자료의 경우 자료등록 시 딸림자료 여부 표시(딸림자료 등록은 DLS상의 전문가 모드에서 가능)
- 외부업체 의뢰하여 도서등록(도서정보입력 및 라벨부착 등)시 업체가 시스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후 끝나면 IP주소 등 업체 정보 삭제

④ 장서점검 및 폐기

• 장서점검: 실제 소장자료와 자료등록원부 및 시스템상 등록된 자료 일치 여부 파악, 방학기간 등 이용하여 정기적(연 1회 또는 격년 1회) 실시
- 장서점검 흐름도: 장서점검계획 수립→장서점검 준비(최소 1주일 전 휴관 공고, 자료 회수 및 대출 중지)→자료스캔→점검결과보고→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제적 대상 목록을 작성 후)→관련자료 정리
• 도서의 제적(자료 이용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 및 폐기(소장정보 삭제)
- 도서관의 시설, 예산, 이용률, 자료의 물리적 상태 및 내용 등에 따라 자체 폐기기준 수립(학교도서관 운영규정이나 연간계획에 포함)
- 정기점검 후에 학년말이나 학년초에 일괄적으로 제적 및 폐기 처리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따라 제적 대상 목록 및 폐기자료 실물사진 첨부하여 내부결재하고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상 소장자료 데이터에 제적·폐기하고, 제적도서 목록 출력 및 보관
- 제적된 도서는 라벨을 제거한 후 폐기
- 폐기도서의 처리방법: 폐지 매각 후 잡수입 처리 혹은 기증
- 분실도서는 동일 도서로 변상이 원칙(기존 등록번호 그대로 승계)
※ 절판 등의 이유로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현물 변상(기존 등록번호는 제적 후 새로운 번호 등록)

⑤ 학교도서관 업무 인수인계

• 인수인계 점검 사항: 도서관 운영장부, 운영계획(운영규정), 도서관 관련 통계, 학교도서관 주요 업무, 독서로_DLS(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자 계정(ID, PW), 학교도서관 기타 각종 인장류, 도서관내 각종 소모품 등
※ 경기교육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학교도서관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북(BOOK) 돋움(https://lib.goe.go.kr/school): DLS교육,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원, 교수학습자료 지원 등

세부업무명

3. 학교도서관 활용

관련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38조(업무)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

- 학생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 방법: 학년 초 신입생과 전입생을 대상으로 1~2차시 수업 진행
  - 내용: 도서관 이용 방법과 규칙, 예절, 도서관 프로그램 등
- 교직원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 방법: 교직원 회의 시 도서관 이용 교육 시간 확보 혹은 안내 자료 배부
  - 내용: 도서관 운영 기본사항, 연간 운영 계획, 교과연계 수업 지원 안내,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원 안내 등
-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 교육
  - 온라인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독서자료 교육 및 활용
  - 독후활동 메뉴 이용 교육 및 관리 등

② 학교도서관 활용수업과 운영

- 사전준비: 교직원 연수, 학생 학교도서관 이용지도,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활용, 도서관 수업 사전 예약
-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지원 실제
  - 수업자료 지원(교과 수업 전 자료 준비가 최우선)
  -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 밀접형 도서관 활용 수업(수업 전후 활동 모두 도서관에서 이루어짐) 지원
  -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정기도서구입 시기 외에도 '수시구입' 절차(방법) 결정
  - 학년 초 전체 교직원 연수 시 교과별, 학년별 도서관 활용 수업 모형과 사례 안내
  - 도서관 이용 일정을 미리 예약 및 수업 일정 조정
  - 자료는 학교에 따라 복본을 적절하게 책정하여 구입하고, 정리기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야 구입 가능함을 공지함

③ 독서동아리 및 독서 프로그램

- 독서동아리: 학생, 교사,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므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동아리별 특성 맞추어 운영 계획 수립 및 진행
- 독서프로그램: 상시 운영되는 연중 프로그램과 주제별 프로그램(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책의 날 프로그램, 독서의 달 프로그램, 계기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을 사정 및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

Tip

■ 오늘도 북돋우며

-학교도서관 '공간' '운영' 우수사례집

제20편 인성시민교육

업무명	인성시민교육	
관련 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헌법 ○ 교육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통일교육 지원법 ○ 인성교육진흥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업무 개요	· 인성, 디지털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계기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등 학생 대상 인성·시민교육 관련 업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인성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2. 디지털 시민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3. 세계시민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4. 계기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5. 다문화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6. 통일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1.)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3. 12.) ○ 2024 세계시민(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배포 예정) ○ 2024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4. 1.) ○ 2024 외국어교육 기본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경기도교육청 계기교육 지침(2017. 3.) ○ 2024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탈북학생교육 기본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1.)	

1 인성교육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균형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천한다.

세부업무명

1. 기본 인성교육 강화

관련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주요내용

①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별 특색을 살린 우리학교 인성 브랜드 만들기 운영
- 음악과 인성 메시지가 담긴 인성교육 학교종소리 활용
- 존중과 배려, 협력과 책임의 학교 문화 만들기

②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 단위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과정 연계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존중·배려·협력·책임이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 학교안 인성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교원 전문성 강화

③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

-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운영
-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캠페인 운영(부모님, 담임선생님 자랑하기)
- 가족 인성 힐링 캠프,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랜디(Friend+Daddy) 스쿨
-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확대 운영
- 학부모대상 인성교육 연수 자료 개발·보급(2월)

④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

- 인성교육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학교 인성교육 통합 지원체제 확대 운영
- 인성교육 전문교사 운영을 통한 권역별 네트워크 강화
- 지역단위 인성교육 특색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인성교육 현장 안착
- 경기도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운영
- 가정·학교·지역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확산
- 교육부 인성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세부업무명

2. 시민교육 실천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주요내용

① 경기형 교과서 개발

- 인성교육부터 시민교육까지 확장하는 경기형 교과서 개발
- 인성교육,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시민교육 내용 포함
- 초등 1~2학년,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교과서, 지도서 총6종 개발
-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지도서 총4종 개발
- 학습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해 교재로 개발

② 지역 기반의 시민교육 실천학교 2기 운영

- 지역 중심의 특색을 반영한 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 시민교육 실천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네트워크 사례나눔 컨퍼런스 운영

③ 균형적·일상적 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지원

- 시민교육 연구회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교원 대상 특강 등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사례 나눔 활동

2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디지털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디지털 시민역량과 디지털 창의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교육과정 중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Tip

■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과 실천 역량

■ 디지털 시민역량
-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이용하고 정보를 분별력 있게 수집, 분석, 이해, 평가하는 역량

■ 디지털 창의역량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 공유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 계획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주요내용

①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활성화
- 목적: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학교 문화 조성 및 디지털 안전·윤리·책임·소통 교육 강화
- 내용: 인성 기반의 디지털 시민교육 학교문화 조성,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운영
- 방법: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통한 학교 문화 확산, 디지털 시민교육 쇼폼 영상 공모전, 학교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한 예방교육 및 치료 지원

②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활성화
- 목적: AI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양성
- 내용: 전 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AI융합교육, AI윤리교육 추진
- 방법: 2022개정교육과정 전(全)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인식 제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100선 공모, 생성형 AI 윤리교육 인식 제고 및 실천 사례 확산

③ AI정보교육 내실화
- 목적: 모두에게 공평한 AI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 AI 기초 소양 함양
- 내용: 정보(실과) 교과 기반 AI교육 및 SW·AI 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방법: AI정보교육 중심학교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모델 확산, 학생 주도 SW·AI 교육 체험 캠프 및 디지털 새싹 캠프를 통한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세부업무명

2.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 계획

주요내용

① 디지털 시민교육 진단도구 활용

- 목적: 학생의 인성에 기반한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여 맞춤형 학습 제공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권장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 대상 운영 후 일반화 예정)
- 개발 내용: 초·중등용 사전·사후검사용, 총 4종
- 방법: 시나리오 기반 문항의 컴퓨터 기반 평가
- 절차: 사전검사, 프로그램 운영, 사후 검사, 환류
- 활용: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운영, 디지털 역량 성장 리포트 제공

②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 목적: 상호작용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디지털 역량 함양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 방법: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 활용: 시범 운영 후 일반화 예정

③ 디지털 시민교육 콘텐츠 보급 및 활용

- 목적: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지원
- 내용: 디지털 역량 신장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교수학습 운영
- 방법: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교육 및 AI융합교육 자료 개발 보급
- 활용: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수업 운영,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수업 운영, AI정보교육 운영

세부업무명

3. 현장 중심 디지털 시민 교육 확산 및 지원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 계획

주요내용

①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및 적용

•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

-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및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역량 신장(120교 내외)

•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 전 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및 AI융합교육 실천 확산(250교 내외)

• AI·정보교육 중심학교

- 2022개정교육과정 대비 정보 교과 기반 AI교육 내실화(90교 내외)

• 경기SW · AI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경기도미래과학교육원 주관 운영)

- 교육 주체별 SW · AI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운영

②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민교육 교원 연수 운영

• AIEDAP 사업 AI · 디지털 교육 교원 역량 강화

•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선발 및 지원

• 경기도디지털교육연구대회 운영

• 디지털 시민교육 학부모 프로그램 지원

③ 디지털 시민교육 지역 연계 및 확산

• 디지털 시민 One-team 교육 협력 활성화

•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디지털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공감 및 확산

•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및 콘퍼런스 운영을 통한 공동 성장

• 디지털 시민교육 성과 환류 및 질 관리 방안

- (단위학교)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및 운영 평가

- (교육지원청) 디지털 시민교육 사례 공유 및 운영 평가

- (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가

3 세계시민교육

지역 자원과 유관기관 활용으로 글로벌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내실화한다.

세부업무명

1. 세계시민교육 운영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 2024 외국어교육 기본계획
- 2024 세계시민(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배포 예정)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연계 시민·세계시민교육 운영

- 교과내·교과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형 수업, 학교 자율과정·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시민·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 편성 및 운영
- 동아리, 학생자치회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생주도 활동 운영(토의·토론활동, 사회참여, 캠페인 등)
- 지역 연계 프로젝트 활동(실태조사·문제해결·실천활동 등)
- 교원 수업역량 강화 및 실천 네트워크 운영(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동아리, 지역연구회,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등)

② 일상적 실천을 통한 시민·세계시민의식 제고

-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공동체가 시민으로 성정하는 행복한 학교 구현(시민교육 실천학교 2기)
- 학생중심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교육지원청별 1교 선정)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③ 지역사회 연계 시민·세계시민교육 운영

-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확산을 위한 실천사례 나눔 지역별 공유회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등 유관기관과 연계 교육 지원

세부업무명

2.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근거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외국어교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교육 확대

- 외국어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추진을 통한 외국어 의사소통역량 함양
- 해외 학교와의 온라인교류를 통한 글로벌 이슈 공동프로젝트 수업 지원
- 국제교류 교사 플랫폼 운영(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을 통한 콘텐츠 보급

② 학생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제2외국어 활성화를 위한 비영어권 국가(일본, 대만 등) 학교와의 국제교류 강화
- 국제기구, 주한 국외공관, 국제 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국 교사와 해외 교사와의 교육 협력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③ 국제교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새 학년 준비 연수 운영
-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희망교 대상)
- 기관 연계 국제교류 역량 강화 연수 단계별 직무 운영(기본과정~심화과정)
- 교육지원청별 국제교류 사례 나눔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계기교육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하며,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및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업무명

1. 계기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경기도교육청 계기교육 지침

Tip

■ 계기교육 자료(예시)

- 계기교육 자료 및 지원 사이트
- 독도교수학습자료
- 지진대비안전주간운영

주요내용

① 전년도 계기 교육 평가 및 반성

② 학생실태 기초조사 및 분석

- 계기교육 관련 설문조사(학생들이 관심 있는 기념일 조사 등)
- 학생들의 가치관 및 국가관 파악

③ 실태 분석에 따른 지도 방안 모색

- 계기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공유
- 연간 계기 교육 관련 기념일과 국경일 조사
- 가정과 연계한 지도 및 계기별 홍보 방안 모색

④ 교육 내용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계기 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반영
  - 학년 및 교과별 교육과정에 편성
- 계기 교육 내용 선정(예시)

교육 내용	
- 기본생활습관 교육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 교육
- 생명존중 및 평등 교육	- 인구교육
- 독도교육	- 선거교육
- 경술국치일 계기교육	- 사이버폭력예방·정보윤리교육
- 미세먼지 교육	- 안전교육(지진대비 등)

- 계기 교육 관련 행사 선정
-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선정(글짓기·그리기·표어·포스터 대회·기념식·축제 행사 등 각급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하게 행사)

⑤ 계기교육 실시

-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육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실시
- 학년(교과)협의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등을 통하여 내용 및 자료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실시
- 교과 및 비교과, 담임교사 지도 및 학급회의 시간 등 활용
- 다양한 대회, 기념식, 행사 등 운영

5 다문화교육

다문화학생의 성장단계별 교육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강점 기반 다문화교육 정책으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포함한 경기도 모든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세부업무명

1. 다문화 감수성 교육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계획

Tip

■ 다문화교육 자료

- 온라인 다문화교육 자료
- 다문화교육 연간 운영계획서(예시)

주요내용

① 실태조사 및 분석

- 다문화학생 현황 파악(교육통계 입력)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 다문화학생, 학부모 관련 교육 지원 필요 사항 파악
- 학생,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 실태 분석
- 지역사회의 다문화 지원 체계 분석

② 학생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 대상: 초·중·고·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시수: 초·중·고·각종학교 모든 학급 연간 2시간 이상 교육
- 교육 내용
  - 세계 공동체에 대한 관심, 문화적 다양성 인정, 인간 존엄성과 보편성 존중,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 새로운 문화 융합과 창조
- 교육 방법
  - 전문 강사 초빙 또는 교내 교원 활용하여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감수성 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 시수 확보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 또는 비교과활동에서 실시하여 지속적 인식 변화 모색
  - 교과 연계 수업지도안 및 다문화 교수·학습모형 지속 개발
  - 다양한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동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

③ 추진 절차

주관	학교	학교	본청	학교	본청
절차	다문화 교육 운영계획 자체수립 →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	실적 제출 알림 공문 →	실적 제출 →	평가지표 산출
내용	-학교 실적에 맞는 예산 편성 -모든 학급 연간 2시간 이상 교육시수 확보 (교과/비교과 활동) →	-모든 학급 -모든 학생 대상 실시 →	-교육부 서식으로 별도공문 안내예정 -실적 기간 (3월 ~ 다음해 2월) -자료집계 생성 →	-자료집계 제출 -실적기간 (3월~ 다음해 2월) -다음해 1,2월 교육 실시 예정인 경우, 계획수립시 실시로 보고 →	-다문화 활성화 노력 지표산출 -교육부에 지표보고
기간	3월 중	3월~익년2월	12월 중	12월 말	1월

④ 교원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연수 이수

- 근거
  - 연수 의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연수 이수 시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침(2024)
- 대상
  - 전체 교원 (유, 초, 중, 고, 특수)
  - 기간제 교원 및 비교과 교원 포함(진로진학상담, 전문상담, 영양, 보건교사 등)
  - 휴직 교원 제외
- 이수 기준 시간: 당해연도 포함 이전 3년 내 합산하여 15시간 이상
  - 2024년 조사: 2022. 1. 1. ~ 2024. 12. 31. 이수 교원
- 연수 인정 기준
  - '다문화', '상호문화', 'KSL',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육', '세계 문화의 이해', '문화다양성',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 '다꿈', '동아시아 시민교육'
  - 나이스 등재 이수 연수 기준

⑤ 학부모 다문화교육 지원

-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https://more.goe.go.kr/da)에 '학부모 안내' 코너 마련
- 교육지원청별 지역별 맞춤형 학부모 다문화교육 운영(25개청)
  -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한국 학교교육시스템, 다문화가정 심리정서 지원, 일반학생 학부모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학부모 어울림 교육 지원 등

세부업무명

2. 다문화학생 성장단계별 교육 지원

Tip

■ 다문화교육 운영 자료

- 2023년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서
-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
- 경기도 지역별 다문화교육 운영 사례집

Tip

■ 외국인가정 학생 입학 준비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전 거주 국가에서 이수한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방접종 확인 서류(권장)

Tip

■ (참고)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재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저학년(의사소통 1~4, 학습도구)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고학년(의사소통 1~4, 학습도구)
-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의사소통 1~4, 학습도구)

관련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다문화가족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202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진입형)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지원

- 경기한국어공유학교 운영으로 입국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2개월~1학기)
- 다문화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운영으로 다문화학생 교육권보장(최대 4학기)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으로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약240시간)

② (적응형)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안착 지원

- 한국어 집중 지도를 위한 에듀테크 활용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 및 보급
- 학교 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운영
- 다문화교육 온라인 아카이브 개발 및 가정통신문 다국어 통·번역 지원

③ (성장형) 다문화학생 강점 강화 및 진로·진학지도를 통한 성장 지원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운영 강화
- 다문화학생 대상 직업계고 학과 체험 및 진로 진학 부스 운영

※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신청 가능 사업

- 다문화언어강사(매년 1월경 신청)
  - 학생 생활 적응, 한국어교육, 학부모 상담지원, 통번역 지원
-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매년 4월, 8월경 신청)
  - 다문화학생이 중도에 입학하는 학교에서 한국어 집중교육 강사 운영
- 다문화 특별학급(한국어학급)(매년 11월경 신청)
  - 한국어교육 수요 반영,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 재학교 우선 선정
  - 급당 10명 이내로 한국어교육 시행, 정규교원(담임) 배정
-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매년 12월~1월경 신청)
  - 무학적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약 240시간), 학적부여
- 경기도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수시 신청)
  -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위기 다문화학생 학력 인정형 위탁 교육기관

※ 다문화학생의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6 통일교육

튼튼한 안보관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역량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세부업무명

1.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Tip

■ 통일교육 운영 자료
- 통일교육주간 참고자료

관련근거

-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 2024 통일교육·탈북학생교육 기본 계획

주요내용

① **전년도 통일교육 평가 및 반성**
- 학교 전년도 통일교육 실태 분석

② **연간계획 수립 추진 방향 및 방침**
- 화해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단위학교 주도의 통일교육
- 학생 통일 동아리 활성화 등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통일 체험교육

③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편성**
- 통일교육 수업 시수(시간) 정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연간 5시간 이상
  - 통일교육 주간과 연계 운영 가능(5월 넷째 주)
- 지역별 특색있는 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관련 교과(도덕, 사회, 역사 등)의 통일교육과정과 연계 활용
  - 자체 사업, 경기도청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등과 연계 활용

④ **지역별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방향 이해**
- 교육지원청별 특색 있는 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별 특색 있는 통일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통일 및 동북아평화교육 주제통합형 교육과정 재구성
    - '통일교육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학생 활동 중심 단위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 학교 내 통일학생동아리 운영 활성화
    -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 연계 단위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통일교육 주간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교원 통일교육 공감대 확산과 수업 전문성 역량강화
  - 지역 내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 워크숍 및 수업 나눔 개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 지역사회 내의 통일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 지역단위 통일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 지역별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 지자체, 통일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일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 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 연계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제21편 융합교육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융합교육</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재교육 진흥법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경기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
· 지역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실천 중심의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시민 양성
·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창작·협동, 공유와 나눔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
·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td></tr>
<tr><td rowspan="5">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융합교육</td><td>- 내용 신설</td></tr>
<tr><td>2. 환경교육</td><td>- 내용 신설</td></tr>
<tr><td>3. 발명메이커교육</td><td>- 내용 신설</td></tr>
<tr><td>4. 영재교육</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과학·영재·융합·발명·수학·환경교육 추진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융합교육정책과, 2018. 2.)
○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교육부, 2021. 2.)
○ 학교 화학 약품 안전관리 매뉴얼(교육부, 2016)
○ 2024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추진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2.)
○ 2024 경기영재교육 실무편람(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2024 융합교육정책과 기본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3. 12.)</td></tr>
</table>

1 융합교육

경기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미래형 융합교육을 실현한다.

세부업무명

1. 융합교육 정책 추진

관련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2024 과학·영재·융합·발명·수학·환경교육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비전
- 미래를 여는 학생주도 과학·영재교육

② 미래를 이끄는 탐구중심 과학교육
-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구축
  -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
  - 첨단과학 활용 학생주도 과학교육 구현
- 탐구중심 미래형 과학교육 활성화
  - 안전한 과학 탐구·실험 활성화
  - 탐구·체험 중심 과학문화 확산
-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③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는 영재교육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

④ STEM+A의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융합교육
- 학생주도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형 교육 다양화
-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 지역중심 융합교육 환경 구축

⑤ 상상과 협력으로 꿈과 미래를 열여가는 발명메이커교육
- 발명·IP교육 활성화
- 경기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 경기 메이커교육 내실화

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 AI활용 학생 맞춤형 기초 수학 내실화
- 공학도구 활용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 확대
- 학교 현장의 수학교육 전문성 향상

⑦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실천 환경교육
- 탄소중립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학교 현장의 공동실천 확대 지원
- 지역자원 연계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

세부업무명

2. 과학실 안전 관리 체계 강화

Tip

-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
- 학교 화학 약품 안전관리 매뉴얼
- 2023 과학실험 폐수·폐기물 처리 지침

Tip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순서**
  - 응급조치 →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 → 후속 조치
- **과학실 안전사고 주요 유의사항 안내**

관련근거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2024 과학·영재·융합·발명·수학·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3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주요내용

① 과학실험실 책임·관리 담당자 지정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담당자, 과학지원 행정실무사, 초등 과학 전담교사 배치 운영
- 과학담당 행정실무사가 교사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과학실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 지원 지양

② 과학실험 안전설비 및 장구 확충

- 안전설비 구비 및 확충
  - 환풍기, 눈세척기, 비상샤워기, 흄후드, 밀폐시약장, 폐수 폐시약 보관장 등
- 안전장구 구입 및 (착)용 지도
  -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장갑, 소화기, 소방포, 방화사, 내화학 실험복 등
- 초자류세척기
- 과학교재, 교구 및 안전설비, 장구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학교운영비 3%이상 권장)

③ 실험안전 게시물 비치 및 준수

- 실험안전수칙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과학실험실 안전 관련 매뉴얼 비치
-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피로 확보, 게시(눈에 잘 띄는 곳)

④ 실험 기자재 및 시약 분류, 위험물질 보관 철저

- 시약별 분류 보관 및 독극물 분류 보관, 잠금장치 철저
- 폐수·폐기물 처리 지침에 의거 보관 및 이중 시건 철저
- 액침표본(포르말린) 전량 폐기
- 수은 함유 제품(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등) 별도 보관 및 시건 철저

⑤ 유해화학물질,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
- 폐기물 발생, 배출, 처리 현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폐수·폐기물처리 지침 양식 활용]

⑥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강화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따른 대응
-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15분 이내)

⑦ 실험안전 관련 교직원과 학생 대상 교육 강화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과학실험안전 관련 내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생대상 과학실험 전'5분 안전교육'생활화
- 학교별 교직원 대상 자체 과학실험안전 교육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2 환경교육

지역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실천 중심의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시민을 양성한다.

세부업무명

1.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관련근거

- 2024 과학·영재·융합·발명·수학·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4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목적

-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와 생태·환경 감수성 증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시민 육성

②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지구지킴이 일일 프로젝트' 실시
  -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위한 학년별 2차시 이상 편성·운영(필수)
- 기후위기 대응 실천학교 운영

③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원역량 강화

-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 탄소중립 환경교육 학교안 학습공동체 운영
- 탄소중립 실천 사례 나눔 활성화

④ 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

- 기후행동1.5℃ 실천 운동 전개
- 학교 및 지역행사와 연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주간 운영 및 환경기념일 연계 계기 교육 실시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학교별 자체 계획 수립(교육, 홍보 계획 포함)
- 학생주도 생태환경 중심의 실천 프로젝트 운영

⑤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강화
  -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https://www.keep.go.kr/)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협력체제 구축

⑥ 유관기관 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연계 탄소중립학교 운영
- 경기도청 연계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Tip

■ 환경교육 운영 자료

- 환경 기념일 목록
-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콘텐츠 활용 안내 자료
- 2023 경기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과정 우수 자료집

3 발명메이커교육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창작·협동, 공유와 나눔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세부업무명

1. 발명메이커교육 운영

관련근거

◦ 2024 과학·영재·융합·발명·수학·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4 경기 메이커교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목적

•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및 제작, 권리화 활동 등 발명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신장

②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연계한 발명·메이커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권장

• 발명IP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 공유

• 발명교육센터 운영

- 기본교육과정 운영

- 지역이나 학교 여건,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한 특색있는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경기 메이커교육 활성화

• (메이커교육)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

- 메이커교육의 영역: 로봇/공학, 연극/뮤지컬, 정보/SW, 발명/목공, 방송/영상/광고, 공예/미술/디자인, 기타

• 경기 메이커학교, 학교내 무한 상상실 운영

- (경기 메이커학교)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상상·창작활동을 지원

- (학교내 무한 상상실)학교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4 영재교육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업무명

1. 영재교육기관 설치 절차

Tip

■ 2024 경기영재교육 실무편람

Tip

■ **영재교육 담당교원 선정**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은 자(임용 후 1년 내)

관련근거

- 영재교육 진흥법 제7조(영재학교의 설치·운영)
- 2024 과학·영재·융합·발명·수학·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4 융합교육정책과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영재학급 설치

- 성격: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으로 비정규 교과 교육활동(정규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의 형태로 운영
- 설치 대상: 초·중·고
- 설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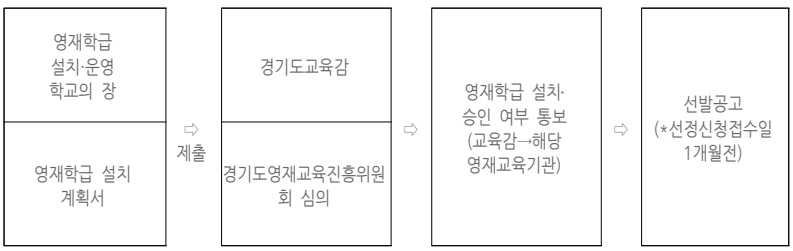

② 영재교육원 설치

- 성격: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으로 비정규교과교육활동(정규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의 형태로 운영
- 설치 대상: 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포함),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
- 설치 절차 (영재학급과 동일)

③ 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창의융합상상소 프로그램]

- 성격: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재능계발 탐색의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영재교육
- 내용: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계별 과정
- 시스템의 변화: 경기도 내 26개 영재교육원을 4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기회 제공

세부업무명

2. 영재학급 운영

Tip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홈페이지(https://ged.kedi.re.kr) - <영재교육종합자료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gise.kr/)

Tip

관련 온라인 직무연수 사이트

· 티처빌
· 사제동행
· 한국교원연수원
· 중앙교육연수원

주요내용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교과 교육과정 운영
- 지도영역: 교과(수학, 과학, 정보(SW), 예술(연극, 미술, 애니메이션), 인문사회, 발명, STEAM형 융합교육(수학·과학))
- 영재교육 프로그램 활용
- 지도교사 워크숍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

※ 영재교육과정 운영의 학생 선택권 반영
- 영재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인정 범위 및 승인 절차

• 교과외 교육과정 운영
-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
  · 개인(집단)별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을 하며 과제점검 및 산출물발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창의적 산출물 발표(1회, 2시간) 실시
- 기타 활동: 개강식, 현장체험 및 캠프활동, 봉사활동, 특강, 수료식

②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

③ 영재교육 지도강사 선정

• 영재교육 관련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1년 이내 이수 가능한 교사 중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외부 강사로 채용할 경우에는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선정함

④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 영재교육대상자 범위
- 관내 초3~중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각 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선발 과정 (교사 관찰·추천)

선발계획 수립 (영재학급) → 선정심사위원회 공고문 심의 (영재학급) → 선발공고 알림 (영재학급) → 관찰·추천 희망자 접수 (단위학교) →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 관찰평가 (단위학교) → 학교추천 위원회 (단위학교)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학급) → 선정심사위원회합격자 심의 (영재학급) → 합격자 통보 (영재학급)

• 선발 단계
- 1단계: 학교장 추천(학교추천위원회 추천)
  · 교사 관찰·추천제를 통한 평정을 통해 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추천
-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영재성 검사
  · 관내 단위 학교별 학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학생 중 지원서 제출자
- 3단계: 심층면접
  · 질문형, 토론형, 수행형 등 도교육청 개발 문항 활용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선발학생의 결원보충 방법: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단, 교과수업 진행시수가 10%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⑤ 영재교육 운영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영재학급 학칙에 수익자 징수 근거 마련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된 비용은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정산
- 영재학급의 교과수업 강사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정된 시간당 강사수당을 지급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등 영재교육기관 교과시간 외에 영재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함(단,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 가능)

⑥ 교구 및 준비물

- 영재학급에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현황 파악
- 강사 협의회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교구를 선정하고 영재학급 운영계획서에 구체적인 교구 확보 계획을 수립
- 교구구입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기 또는 학년도 단위로 구분하여 구입함

⑦ 개강식

- 학생, 학부모에게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 안내함
- 영재지도강사 소개 및 위촉장을 수여함
- 강사를 초청하여 학부모 및 학생 대상의 특강을 실시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 영재교육의 방향을 안내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양함

⑧ 평가 및 수료

- 평가
  - 매 프로젝트 종료 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적·학습 능력 특성, 창의적 특성, 정의적 특성 평가
- 평가 결과의 처리
  - 각종 평가기록부에 누가 기록
  - 학급별로 학년말에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영재성발달기록부(GED시스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통지
  - 영재학급에서 이수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 수료증 수여
  - 학칙에 의하여 영재학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 수여

⑨ 출결 관리

- 출결 관리를 위하여 출석부 및 결석사유서 활용

제22편 정보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정보</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구축,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 정보교육 내실화 및 학교정보보안 활동 및 관리, 정보공시 시행</td></tr>
<tr><td rowspan="6">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개인정보보호</td><td>- 2024년 현행화</td></tr>
<tr><td>2. 정보통신윤리교육</td><td>- 2024년 현행화</td></tr>
<tr><td>3. 정보교육</td><td>- 2024년 현행화</td></tr>
<tr><td>4. 학교정보보안</td><td>- 2024년 현행화</td></tr>
<tr><td>5. 정보공시</td><td>- 2024년 현행화</td></tr>
<tr><td>참고 자료</td><td colspan="2">◦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2024년 정보교육 추진 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202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2022. 12.)
◦ 2023 한눈에 보는 학교정보공시(2023. 3.)</td></tr>
</table>

1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에서 얻은 개인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개인정보보호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점검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내부결재 후 전 직원 공람)
- 업무 시기: 내용 변경 시(법령 및 지침 변경 시)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

②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업무 시기: 매년 3~4월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연간 추진 계획 수립(내부결재)

Tip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Tip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관련 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예시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내부결재) 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
- 업무시기: 내용 변경 시(법령·지침 변경 및 인사발령 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적 기재사항

• 제목 및 서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Tip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예시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 유·초·중·고·특·평교 : 교장(유치원은 원장)
- 업무시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교장) 인사발령 시
- 내부결재 후 전 직원 공람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Tip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안문 예시

⑤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내부결재) 및 결과 보고(등록부, 교육사진 포함)
- 업무시기: 연 1회 이상(학년도 초 권장), 신규 직원 채용 시, 교직원 전입 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 시
- 교육대상: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신규채용자, 전입자, 수탁업체 등
- 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교육목적 및 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일정 및 방법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이수(사이버 또는 집합)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된 교육 이수

Tip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관련 예시

Tip

■ 개인정보취급자란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

Tip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예시

Tip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관련 참고자료

Tip

■ 홈페이지 관련 예시

⑥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 업무시기: 학기 초(전 직원), 신규 직원 채용 시, 교직원 전입 시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고, 개인정보처리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취급자별 차등 부여
  - 인사이동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⑦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 개인정보파일 운용시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및 현행화
- 업무시기: 교육부 일제정비 추진 시,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시
- 개인정보파일 정비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변경 내역 반영

⑧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업무시기: 정기(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사안 발생 시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 및 게시판 담당자 지정
  - 권한부여 ·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구현 불가능 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 변경 · 말소 내역을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보관)
- 접근 통제: IP주소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 제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 수신 시 암호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 시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5만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시 2년 이상)
  - 월 1회 이상 점검(내부관리 계획 등에 명시된 기준 이상으로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확인)

Tip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 안내(가정통신문) 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적절한 예시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제작업체의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
- 물리적 안전조치
  - 정보통신실 보안 관리(정보보안업무와 관련)
  - 개인정보 포함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의 파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등

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업무시기: 학년도 초,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범위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1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⑩ 정보주체의 동의 받는 방법

-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 사항

구분	필수 고지 사항
수집·이용	① 목적 ② 항목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불이익 내용
제3자제공	① 제공받는 자 ② 목적 ③ 항목 ④ 보유 및 이용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불이익 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해야 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제공

Tip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⑪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접수: 제공 요청 공문 접수
- 검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 검토
- 제공: 승인 및 보호조치 요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내부결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
-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
- 조치결과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제공받은 자)는 그 조치 결과를 제공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Tip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관련 예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예시
- 수탁업체 교육 자료 예시

⑫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다시 위탁받은 제3자 포함)를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하는 업무 위탁 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고지
-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 교육 및 감독 철저

Tip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련 예시

⑬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⑭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 개인정보 열람청구 프로세스: 정보주체의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 열람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 프로세스: 정보주체의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제한사항 확인 및 조치 → 조치 결과 통지

⑮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 통지 및 신고 기한: 72시간(공휴일 등 근무일외의 날 포함) 이내
- 유출 통지: 1건이라도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 유출 신고 기준

구분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동시 신고)
신고 기준	1명 이상	① 1천명 이상 ②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③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해킹)으로 1건 이상
신고 방법	상위기관 경유하여 교육부 신고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기업·공공서비스 - 유출신고 메뉴 이용

⑯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방침 수립

- 업무시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운영·관리 방침 내용 변동 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주요 출입구 안내판 설치
- 안내판 기재 사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위탁 시)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내부결재) 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 포함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Tip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예시

2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 보호, 교사 · 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

세부업무명

1.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Tip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매뉴얼
- 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시간 계획 및 교육 실시
- 스마트폰 이용 자율실천 규칙 제정 · 운영
- 스마트폰 관리 주간 운영(학생의 자기 절제력 향상, 바른 이용 습관 정착)
- 스마트폰 바른 사용 캠페인 및 사이버 안심존 운영과 그린아이넷 안내

②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과정의 교육시수 필수 반영
- 대상 기관: 유치원 및 초 · 중 · 고 · 특수학교 전체
- 교육 대상: 학생
- 교육 횟수: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유치원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 내용: 「지능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 교육 방법
  - 학교교육계획에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반영(교과, 창의적체험활동)
  - 교직원 연수 계획에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반영
  - 전체 학부모설명회 등 시간 활용하여 연수 실시

③ 스마트폰 관리 주간 운영(자율적 선택 운영)

-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과 문제점, 건강한 여가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

④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필터링 소프트웨어 활용

-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는 앱(사이버안심존)
- 컴퓨터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그린아이넷)

세부업무명

2.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실시 및 사후 관리

관련근거

◦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지능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주요내용

①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교원 대상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연수 실시
- 대상 기관: 초 · 중 · 고등학교 전체
- 조사 대상: 학령전환기(초1-학부모, 초4, 중1, 고1) 학생 전체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결과 활용: 학부모 동의 학생에 한해 학교별 위험사용자군 학생 관리 및 상담 치유

② 인터넷·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 학생 관리

- 대상 기관: 초 · 중 · 고 전체
- 추진 방법
  - 학교별 위험사용자군 관리 계획 수립(정보통신윤리교육과 통합한 계획 수립 가능) 및 사후조치 관리
  -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현황 파악
  - 위험사용자군 학생별 멘토(상담교사, 담임교사 등) 지정 및 상담 계획
  - 멘토를 통하여 정기적 상담 실시
  - 학생 상담 · 치유 현황 파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 연말에 치유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연도에 연계하여 상담 실시

③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담당 교직원 연수

- 목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담당자, 관리자 대상
- 시기: 3~12월 연중
- 연수 방법: 경기도교육연수원 및 중앙교육연수원 개설 강좌 원격연수
- 추진 방향
  -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 및 지도방법 제시

3 정보교육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 및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한다.

세부업무명

1. 정보교육

관련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2024년 정보교육 추진계획
◦ 2024년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정보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 내실 있는 정보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 외 활동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 초: 5~6학년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편성 운영
- 중: 정보 과목 최소 34시간 확보하되, 학교 여건 따라 34시간 이상 편성 가능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학교 정보 시수 확대
- 초: (변경전) 17시간 (변경후) 34시간 이상
- 중: (변경전) 34시간 (변경후) 68시간 이상
- 학교 SW교육 내실화 및 교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보 과목 편성 권장
- 고: 일반계·자율고에서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인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Ⅰ '정보과학', 전문 교과Ⅱ '프로그래밍' 등 편성 가능하며, 특성화고는 전문 교과Ⅱ 외에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인 '정보' 편성 가능

• 학교·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신설 선택과목

신설 선택과목명	사용 학년	인정 교과서	
		인정 여부	인정 기관
피지컬 컴퓨팅	중학교 1~3학년	인정 (2018.11.14.)	경상남도교육청
소프트웨어와 생활		인정 (2018.11.29.)	전라남도교육청
두런두런 컴퓨팅		인정 (2018.12.04.)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인정 (2018.12.28.)	충청남도교육청
컴퓨팅과 융합		인정 (2019.08.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앱과 코딩		인정 (2019.12.18.)	경상북도교육청

- 총론: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 거쳐야 함
- 인정 기관 외의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나이스 조회 가능 (장학 - 인정도서 조회 - 도서명 입력 후 조회)

• 정보교과 예산 편성: 학교회계지침의 학교회계예산 과목 내 세부사업으로 추가된 정보교과활동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예산 편성·운영

② 정보교육 문화 확산

• SW교육의 날(10월 10일) 운영 활성화(자율적 운영)
- 온라인 코딩 파티와 연계하여 교내·외 다양한 체험 활동 실시
- 학부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체험 및 활동 중심의 행사 추진

• 경기SW·AI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SW·AI교육 체험 프로그램

4 학교정보보안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하고 허가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세부업무명

1. 정보보안 기본활동

Tip

- 정보보안담당관 변경 지정 기안문 예시

Tip

-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 기안문 예시
- 정보보안 교육 실시 결과 보고 기안문 예시
- 사이버보안진단 실시 결과 보고 기안문 예시
- 재난 방지대책 수립 기안문 예시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주요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 지정·운영**

-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지정: 학교장이 지정하며 미지정 시 부서의 장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
- 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협력 업무
  -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 시행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활동
  - 부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 부서 개별사용자 단말기 보안
  - 부서 내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② **정보보안 감사:**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4년주기)

③ **정보보안 교육**

- 업무시기: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연 1회 이상, 온라인 교육 포함)
- 교육대상: 전교직원
- 결과보고: 교육실시에 대한 증빙자료(교육계획 및 실시결과 - 교육자료, 등록부, 사진, 온라인 이수결과) 내부결재
- 정보보안담당자: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 이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간 1회 이상 교육 이수

④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 운영**

- 업무시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실시(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일지 작성하여 결과 보고(내부결재)

⑤ **재난방지 대책 수립**

세부업무명

2. 정보보안 관리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및 출입관리

- 정보통신실(전산기계실) 및 전산관리실은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
-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표찰 게시
-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동시설(정보통신실 및 전산관리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
- 보호구역 보호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출입통제, 전력관리, 항온·습, 물품 반출·입, 수해방지, 시설자료관리 등
- 상시출입인가자 명부 내부결재 후 출입 통제 대장과 함께 비치 관리
-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 검색 후 출입을 허용
- 출입 통제 대장 비치하여 상시출입인가자 외 인원에 대한 출입 기록 상시 유지

② 개별사용자 단말기 보안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전산장비(노트북 등) 포함 외부 반·출입 통제 실시(반·출입 대장 작성 및 보안교육 철저)
- 단말기 보안대책
  -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 사용자 계정 관리: 로그온 패스워드를 반드시 설정하고 3개월 내 변경
  - 화면보호기 설정
  - 공유폴더 삭제
  -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운용
  -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은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하여 저장 및 중요자료 주기적 백업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및 악성코드 방지
  - 해킹, 악성코드 보안대책 마련
  -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외부저장장치와의 연결 해제 및 인터넷 회선 분리
  - 자동로그인 기능 사용 금지 및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 인터넷 사용 제한
  -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 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 가능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게임·음란·도박 등은 인터넷 이용을 차단

Tip

- 보호구역 상시 출입인가자 기안문 예시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Tip

- 비업무 사이트 차단 및 접근 허용 절차

Tip

■ 학교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 관련 자료

- 기안문 예시
- 학교 홈페이지 운영 계획 예시

③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 운영계획 수립: 학교홈페이지 개편 시(내부결재)
- 게시판 담당자 지정: 게시판 담당자 변경 시, 신규 게시판 생성 시
-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관리자 지정 및 임무(게시판별 담당자 포함) • 게시판 권한 관리 • 메뉴 개설 및 폐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자료 현행화 관리 • 게시판 자료 관리 • 홈페이지 링크(팝업, 배너) 관리 • 웹호스팅 및 서버관리 • 저작권 보호 • 관리자 페이지 접속 로그관리

- 담당별 업무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개인정보 등)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비공개 업무자료(개인정보 등)가 무단으로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각급기관장: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 비공개 업무자료(개인정보 등)가 무단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④ 저장매체 불용처리

-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보안조치 실시
-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삭제 기준

저장 자료 / 저장 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광디스크 (CD · 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 · 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S/W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Tip

■ 저장매체 파기 계획 기안문 예시

- 저장매체 파기 절차
  - 업체의뢰 시: 정보시스템 불용결정 → 파기(완전 삭제) 계획 내부 결재 → 업체의뢰 → 구비서류 준비(보안서약서, 보안 교육, 저장매체 삭제 처리확인서) → 업체 조치 절차 확인 감독
  - 저장 자료 삭제 보유기관 의뢰 시: 정보시스템 불용결정 → 파기(완전 삭제) 계획 내부 결재 → 파쇄 장비 보유기관 협의 → 구비서류 준비(보유기관의 양식에 따름) → 파쇄 장비 보유기관 방문 파기

Tip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용역사업 보안 관리 관련 서식

- 보안서약서 예시
-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교육 예시
- 정보시스템 원격 접속 관리대장 예시
- 출입통제대장 예시
- 자료 인계인수대장 예시
- 보안확약서 예시

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용역사업 보안 관리

- 정보화 사업 계획 시
  -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자체 보안대책 또는 보안성검토 실시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
- 정보화관련 용역사업 계약 시 조치 사항
  - 계약서에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관련 검토사항

• 용역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보안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추가 조치 사항 • 외부인력 제공 자료 보안 대책

- 정보화관련 용역사업 종료 시 조치 사항
  - 용역 결과물 전량 회수, 비인가자에게 제공, 열람 금지
  - 자료 완전 삭제
  - 업체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⑥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세부 할당 현황 등),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관리

⑦ 무선랜 보안

- 각급학교 교육용 무선인터넷 구축 원칙: 각급학교의 경우 업무망(교사망, 교직원망, 행정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무선인터넷 구축·운용
- 교육용 무선인터넷 사용 시 선행조건
  - 업무망(교사망, 교직원망, 행정망)과 반드시 분리
  - 무선인터넷망에서 업무자료를 저장·이용하는 컴퓨터(노트북) 사용금지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시 보안성검토 이행
-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비인가자의 침입 통제대책을 강구(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 정보보안담당자는 보안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⑨ 디지털 복합기 보안

- 복합기를 통해 업무망(교사망)과 학생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정보공시

정보공시는 학교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업무명

1. 정보공시 내용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주요내용

① 학교정보공시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만든 제도
- 학교알리미 사이트: http://www.schoolinfo.go.kr

② 정보공시 수시 및 정시 차수별 항목

- 공시 시기: 1차(4월), 2차(5월), 3차(9월), 4차(11월) 및 수시
  - 1차(4월): 5개 항목, 19개 범위
  - 2차(5월): 8개 항목, 24개 범위
  - 3차(9월): 5개 항목, 9개 범위
  - 4차(11월): 1개 항목, 2개 범위
  - 수시: 4개 항목, 4개 범위
- 공시 항목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학년 · 학급당 학생 수 및 전 · 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학교의 학년별 · 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직위 · 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예산 · 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의 보건관리 ·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초 · 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문의처
  - 정보공시 카페: https://cafe.naver.com/helpmest
  -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

세부업무명

2. 정보공시 시행

관련근거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주요내용

① 학교정보공시 준비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및 항목별 작성자/확인자 지정(내부결재)
- 학교알리미 학부모 홍보(가정통신문)
- 담당자별 업무 내용
  - 공시총괄업무담당자: 정보공시를 전반에 걸쳐 운영하는 담당자
  - 작성자: 항목별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
- 확인자: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담당자

② 정보공시(1차: 4월, 2차: 5월, 3차: 9월, 4차: 11월, 수시) 절차

- 시·도교육청 학교정보공시 정시차수 시행 공문 접수
- 나이스에서 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 지정
- 항목별 입력 지침 안내
- 작성자 자료 입력·마감, 확인자 자료 확인·마감
- 자료 검증 및 총괄담당자 자료 마감
- 공시자료 상신 및 제출
- 시·도교육청 학교별 자료 검증
- 오류의심자료 해당 항목 작성자에게 안내
- 작성자는 정정대장을 통해 자료 수정
- 정정자료 상신 및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③ 학교정보공시 자체 점검

- 연 1회 이상(6월, 11월 권고) 자체 점검 실시
- 공시자료가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학교정보공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

Tip

- 항목별 담당자 지정 내부기안 양식
- 항목별 담당자 지정 내부기안 붙임문서 양식
- 학부모 안내장(학교알리미 홍보) 양식

Tip

- 정보공시 학교 자체 점검표 양식

제23편 체육교육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체육교육</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학교체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
○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체력증진 활동
· 학교운동부 운영 및 개인학생선수 관리
·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 관리</td></tr>
<tr><td rowspan="5">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스포츠클럽</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3. 학교운동부 및 개인학생선수</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4.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체육건강과, 2024. 1.)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체육건강과, 2024. 2.)
○ 202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기본 계획(체육건강과, 2024. 1.)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체육건강과, 2024. 3.)
○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23. 3.)
○ 학생선수 출결관리 매뉴얼 (교육부, 2023. 2.)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td></tr>
</table>

1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은 건강한 학교문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업무명

1. 개요

Tip

■ **학교스포츠클럽이란?**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운영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클럽

Tip

■ **학교스포츠클럽의 구분**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나뉨

Tip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절차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기본 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향**

- 아침 등 틈새시간 활용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일상화 방안 마련
- 리그 거점학교 등 다양한 활동 확대를 통한 모든 학생 참여기회 확대
- 학교체육과 지역 생활체육 활동의 연계를 통한 우수 체육활동 모델 확산

②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절차**

조직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필수)【참고1】 ↓ 지도교사 협의회 구성(필요시)【참고2】 ↓ 스포츠클럽 안내, 학생 의견수렴 및 모집 ↓ 학생 스포츠클럽 조직 및 학생협의회 구성【참고3】 ↓ 학부모지원단 조직(필요시)【참고4】	클럽별 지도교사 및 학교체육소위원회
등록	전체 및 클럽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 ↓ NEIS 등록	클럽별 지도교사 및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장
운영	지도강사 선임(필요시) ↓ 클럽별 활동 전개: 연습, 대회 참여 등 ↓ 활동내역 NEIS 입력(상시 입력)	클럽별 지도교사
평가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평가 결과 반영 방안 제시	클럽별 지도교사 및 학교체육소위원회

세부업무명

2. 조직 및 운영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기본 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체육소위원회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함
  -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체육 관련 교직원(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나이스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학교체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는 학교체육 담당 부장교사가 추진
- 학교체육소위원회 역할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선수 인권보호
  - 스포츠강사 채용 및 심의(정규 교육과정 내 중학교 스포츠강사, 정규 교육과정 외 스포츠강사 등)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실시 후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등 학생 건강 유지·증진에 관련된 사항 논의

② 학생 의견수렴

- 학년 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체육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관련 의견수렴

③ 학생 모집

- 학생 중심 학교 스포츠클럽
  - 학생은 자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의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 중 대표를 정하여 운영
  - 대표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하여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지도교사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를 승낙한 교사가 해당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활동실적 등록, 소속 학생 관리 등의 역할
- 교사 또는 프로그램 중심 학교스포츠클럽
  - 학생들의 수요와 지도교사의 역량 및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설
  -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현황 및 운영계획 안내
  - 희망 학생 신청서 제출 및 가입 절차 안내
  - 담당교사가 연간계획 수립, 활동실적 등록 등 관리

④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수립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운영 조직, 인원, 지도자 등 인적 구성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위한 출결관리 및 실적자료 정리 계획 등
  - 외부강사 채용 계획 등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 시간, 대회출전 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 포함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참여 계획 및 연습 시간, 체육시설 사용 계획 등
  - 참가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유발 및 만족도 제고

Tip

■ **학교체육소위원회란?**

-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구성

Tip

■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의견 수렴**

- 조사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 조사내용
  - 희망하는 종목, 운영시간, 참여 여부, 건의사항 등
- 조사방법
  -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년도에 운영된 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주요 활동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등)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예산 계획 등 제반사항 포함
• 학생 안전 지도 계획 수립

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 등록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초1~고3) 중 체육활동에 취미가 있는 학생
- 학생선수의 경우 등록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요강에 명시된 종목별 참가자격 요건에 따름

• 등록 조건
- 동일학교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만 인정
- 학교 외 조직(사설 스포츠클럽, 학교 간 동호인클럽)은 인정되지 않음
- 최소 등록 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나 학교 규모, 동아리 특성상 10명 이하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클럽 등록 여부 결정

⑥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지도교사
- 학생 활동상황(활동 내용, 활동 시간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을 누가 기록하며, 지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지도 가능
- 해당 학교 교사(스포츠강사 포함) 모두 지도 가능, 외부강사가 지도할 경우 별도의 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제반업무(NEIS 시스템 누가기록 및 생활기록부 작성)를 대행
- NEIS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소속 학생을 지속 관리
- 지도교사의 근무 시간 외 지도는 시간 외 근무로 인정 가능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대회에 참가 학생 인솔 시 출장 처리 가능

※ 단,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불가

• 대회 참가
- 모든 대회는 학교장 결재 후 참가하는 것이 원칙
- 경기 전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운동 실시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지도
- 대회 장소로 이동할 시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종목별 규정 장비 준수(보호 장비 착용, 보호대 휴대, 고글 등)
-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음료수 준비
- 응급처치가 가능한 비상약품 구비
-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를 즐기고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지도교사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비교육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사고
- 활동계획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반드시 포함
- 학교장 및 지도교사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및 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가능

⑦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평가

• 설문조사, 시상

Tip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 유의사항

• NEIS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활동 증빙자료가 있고 학교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만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 학생들의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조장부를 활용하여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서식을 활용하여 활동 근거 유지 필요(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관련 기록으로 대체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부록을 사용하거나, 학교 실정에 맞게 별도 제작, 활용 가능

Tip

■ 학교스포츠클럽의 출결 관리

• 지속적인 출결 관리로 추후 활동실적 근거 자료로 활용

Tip

■ 학교스포츠클럽 시상

• 학교장은 우수 스포츠클럽 및 우수활동 학생에 대해 학교장 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 가능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를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를 도입하여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건강체력 관리 및 사후 처방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세부업무명

1. 학생건강체력평가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Tip

■ 참고자료

- 학생건강체력평가 나이스 매뉴얼

주요내용

① 운영내용

- 계획 수립: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대상: 초4학년(시범), 초5~6학년 및 중, 고등학교 학생(필수)
- 정시평가: 3~5월 중 연 1회 실시

※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전 안내.

- 수시평가: 정시평가 결과 4~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저체력 학생 비율 최소화(수시측정 시기는 7월, 9월, 11월 3회 권장)

※ 수시평가 자료를 정시평가 자료로 반영 가능

- 측정 결과 통계자료를 나이스 상으로 제출
  - 제출자료: 정시평가 자료
- 운영 최소 조건: 학생 안전이 확보된 이후 운영

Tip

■ PAPS 적용 대상 확대

- 2024년 초등 4학년 시범 시행, 2025년 초등 4학년 전면 시행, 초등 3학년 시범 시행 예정

② 절차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정시측정 및 측정 결과(나이스 내 PAPS 결과 출력물) 학생, 학부모 제공

↓

건강체력교실, 학교스포츠클럽(자율체육활동) 운영

↓

수시측정 실시 및 측정 결과 학생, 학부모 제공

↓

통계자료 제출(2024.11.22.까지)

↓

차년도 건강체력교실 계획수립에 환류 및 운영

Tip

■ 평가결과는 나이스에 입력하여 학생 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 평가결과 나이스 출력물 의무 제공

Tip

■ **학생건강체력평가시 확인 사항**

-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지도 실시
- 운동기구, 체육시설 및 교재·교구의 결함 여부 등 사전점검 실시
- 운동 기구 준비, 운반은 지도교사가 직접 임장지도
- 평가 활동 공간 및 주변 위험요소 제거
- 날씨(폭염, 자외선, 황사, 미세먼지 등)을 고려하여 활동 장소 및 시간 선정
- 요양호(보호) 학생 파악 및 보호조치
- 건강 점검 실시 후 실시 가능한 학생만 평가 실시
- 충분한 준비운동 반드시 실시
- 당일 미실시 학생 추후 별도 계획에 의거 건강상태 양호할 경우 실시

Tip

■ **일부 종목만 측정하더라도 학부모가 PAPS에 평가결과 입력을 희망하면 입력해주어야 함**

Tip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해야 하며 우측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③ 측정 종목 및 시기

<필수평가 - 매 학년초 실시>

체력요소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왕복 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합유연성 검사	-팔굽혀펴기(남)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여) -윗몸 말아올리기 -악력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질량지수(BMI)

※ 체력요소별로 1개의 종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선택평가 - 학교장 결정>

검사항목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심박수 측정기 세트 활용	체지방 측정기 활용	자기기입식 기록지 활용	자세평가 보조도구 활용

※ 선택평가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④ 환경제공

-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신체 활동 공간 재구성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

⑤ 결과 보고

- 각 학교는 측정 결과 통계자료를 나이스 상으로 제출(2024.11.22.까지)

⑥ 일부 종목 미측정 시 해당 학생 PAPS 통계 처리 방법

- 처리 방법: 전 종목 측정한 경우에만 PAPS에 평가 결과 입력 후 통계처리
- 목적: PAPS 통계자료의 신뢰도 향상
- 절차
  - PAPS 전 종목 또는 일부 종목 미입력 대상자 및 사유 내부결재
  - 측정할 수 있는 종목 측정 후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PAPS 통계에 잡히지 않도록 함(※ 전 종목 미입력 시 통계에 잡히지 않음)

  ※ 단, 종목 측정 결과는 해당 학생의 학생건강기록부에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함
- 유의사항
  - 일시적으로 전 종목을 측정하지 못한 학생은 추후 수시평가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야 함
  -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의 평가결과는 치료 완료 또는 등교 후 측정하여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야 함
  - 일부 종목 측정 평가 결과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함

세부업무명

2. 건강체력교실

Tip

■ 건강체력교실 운영 대상

- PAPS 측정결과 저체력(4~5등급),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 및 참여 희망자

Tip

■ 건강체력교실 운영 시 유의사항

- 프로그램 운영간 대상 학생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프로그램 운영간 대상 학생이 4~5등급 학생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4~5등급 학생은 프로그램 운영 간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Tip

■ 단위학교 체력증진계획(예시)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운영내용

- 목적: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 방법: 매년 학교별 건강체력 교실 운영 계획 및 수립 추진
  -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운영시기, 담당자, 프로그램 내용, 지도 및 관리 방안
  - 교내 스포츠클럽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 참여 권장
  - 대상 학생의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체지방 분석기 등)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 체육단체·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체력증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예산반영: 건강체력교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 확보
  - 법률에 의거 단위학교별 반드시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필요한 자체 예산 책정 및 확보

② 프로그램 방향

-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5등급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운영 시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되 최대한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친구와 함께 참여해도 무방함)
-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건강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 4~5등급 학생 외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제공
  - 담임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간 협조 방안 마련
  - 학부모와 협조 방안 마련

※ (예시) 4~5등급 학생 대상 월 1회 비만도 변화 확인, 식습관 교육 및 식단 제공 및 개별 상담

- 건강체력교실 1개 학급 기준 대상 학생 10명 이상 운영 권장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외부강사(상담교사, 운동프로그램 제공 강사 등) 활용 방안 마련
  -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권장
  -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종전 2·3급 생활체육지도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등

세부업무명

3. 국민체력100

관련근거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운영개요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서비스
- 대상: 만11세(5, 6학년) 이상
- 방법: 공인된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 후 PAPS에 반영
  - 개인별 동의서 작성 후 제공받는 기관(신청학교)에 제출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 제공받는 기관(신청학교)에서 공문으로 체력인증센터로 제공요청(제3자 동의서 포함)
  - 체력인증센터 법적검토 및 책임자 승인
    (동의서 확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작성/관리)
  - 체력인증센터에서 공단으로 데이터 요청(국민체력100 관리자페이지 전산처리요구)
  - 공단에서 체력인증센터로 데이터 제공
  - 체력인증센터에서 제공받는 기관으로 공문으로 데이터 제공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목적달성 후 파기, 암호화하여 보관 등)를 마련하고, 제공받는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체력인증센터로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안전성 확보 조치(목적달성 후 파기, 암호화하여 보관 등) 후 개인정보를 제공한 체력인증센터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결과를 알림

② 경기도 내 체력인증센터

연번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1	화성	화성국민체육센터	031-278-7548
2	부천	오정레포츠센터	070-7707-5306
3	오산	오산스포츠센터	031-378-9220
4	성남	성남종합스포츠센터	031-739-6717
5	의정부	의정부종합운동장	031-828-2100
6	시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031-498-7338
7	광주	동원대 효암관	031-799-8830
8	고양	고양체육관	031-930-1165
9	포천	영중체육문화센터	031-535-0151
10	안산	한양대ERICA캠퍼스 체육관	031-436-8052
11	양평	물맑은양평체육관	031-772-9775
12	수원	수원체력인증센터	031-249-1485

Tip

■ 학생 PAPS 측정결과(국민체력100 측정) 요청 업무절차

3 학교운동부 및 개인학생선수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합리적인 절차로 체육 특기자를 선발하여 기능 향상에 힘쓰면서 각 선수에 맞는 진로지도를 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주요내용

① 용어의 정의

- 학교운동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항)
  -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
- 학생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항)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학교운동부 지도자(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항)
  -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 (전임지도자, 일반지도자, 기타지도자)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 활동을 하는 학생

②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법령에 의한 포함 사항: 최저학력 보장 노력,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학생선수 (성)폭력 및 안전 예방 교육, 도핑교육
- 관련 법령 외 포함 사항: 훈련계획(전지훈련 포함), 대회참가 계획, 기타훈련 계획, 학교운동부 예산 운영 계획, 학습결손(e-school 활용 계획), 학교장 정담회 실시계획, 대회 참가 시 안전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③ 창단 및 해단

- 창단: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방과후(특기)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사회(체육회 등), 동창회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함
  - 창단계획서: 창단목적, 운동부 지도자 확보, 운동부 예산 확보 방안, 선수 수급 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운동부 전문 체육시설 및 훈련 여건, 정규수업 이수 등의 계획을 수립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창단 요청이 있을 경우 창단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스포츠클럽 창단: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클럽 창단 추진(G-스포츠클럽 등)

Tip

■ 창단 및 해단의 추진 절차

① 창(해)단계획서 수립
↓
② 교육지원청 협의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④ 학교장 결정(내부결재)
↓
⑤ 경기단체 통보 및 교육(지원)청 보고

※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후 진행

• 해단: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해단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단계획서(안)를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해단계획서: 해단사유, 운동부 지도자 처리, 학생선수 진로·진학,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단계획서(안)를 수립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④ **학교운동부 업무흐름도(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탑재시 반영예정)**

1 학교운동부 업무흐름도

절차	학교운동부 관리업무 흐름도	참고
운동부 창단/해단	▪ 창단 및 해단 계획서수립(학교) → 교육지원청 협의 → 학운위 심의(자문) → 학교장 결재 → 경기단체종보/교육(지원)청 보고 → 체육특기학교 지정(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보고	▪ [2월] 운동부지도자 채용(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서식10]	
연간운영 계획수립	▪ [3월] 법령 및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고려하여 계획서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법령 및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P.4 참고) - '법령 및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모두가 운영계획서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수익자 부담금 발생되는 운동부는 반드시 운영계획서 예산 부분에 수익자 부담에 대한 내용(수익자 부담금액, 사용예정 항목, 방법 등) 포함되어야 함. ▪ [3월]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위원회 구성	▪ [3월] 학교체육소위원회 (겸)「학생선수보호위원회,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구성 *위의 3가지 위원회를 겸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규정은 마련되어야 함. 또한 위원회 구성 내부결재 시 겸한다는 내용 명시해야 함. *기타 -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단체종목엔트리위원회 등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 및 개정	▪ [3월] 학생선수 출결과 보충학습에 대한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 [서식3]	
학기초	▪ [학기별 1회] 학부모설명회 및 학교장간담회 실시 - 학부모 교육 실시 [서식7] ▪ [3월]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대상 필수교육 계획 수립(도핑, (성)폭력예방, 인권교육, 안전드림앱 설치 등) ▪ [3월] 학생선수 상담 계획 수립(월1회) [서식8] ▪ [3월] e-school 담당교사 승인요청 및 개설, 학생선수 가입 및 수강 관리	

<table>
<tr>
<td rowspan="2">학기중</td>
<td>대회(훈련)출전</td>
<td>
▪ [참가전] 학생선수 출결처리 및 대회출전 계획 내부결재
▪ [참가전] 학생선수학습권, 인권, 안전 관련 내용 내부결재 포함(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계획 수립)
▪ 대회(훈련) 출전 승인 절차
<table>
<tr><th>1단계</th><th>2단계</th><th>3단계</th><th>4단계</th><th>5단계</th></tr>
<tr><td>공문접수</td><td>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td><td>내부결재, 학교장승인</td><td>담임교사 (나이스처리)</td><td>지도교사 (누적관리)</td></tr>
</table>
※ 대회 출전 참가 기안 시 필수 포함되어야 할 사항
(대회일자, 출석결석인정일수, 참가학생선수, 잔류학생, 잔류학생에 대한 지도계획, 참가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계획, 이동방법, 인솔자, 지도자 근무 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지도자 동의서 등)
※ 지도자의 대회 출전 중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1. 대회 출전 기안 시 세부적인 지도자의 근로 시간 명시
2. 계약서의 근로시간이 대회 출전에 따라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지도자의 동의서 필요
▪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2023)
<table>
<tr><th>학교급</th><th>초</th><th>중</th><th>고</th></tr>
<tr><td>허용일수</td><td>20일</td><td>35일</td><td>50일</td></tr>
</table>
▪ [참가전] 학교운동부 차량(차량임대(렌트)) - 연간계획에 의거 학생체험활동에 준하는 버스임대 계약 후 운영 [인솔자(교직원) 등승, 안전교육 실시]
▪ [참가중] 학교회계 처리 절차 준수 (학교법인카드 사용)
▪ [참가후] 경비집행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 -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수시 공개)
▪ [상시]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확인대장 작성, 관리 (모든 학교운동부 육성교 작성 필수)
</td>
<td></td>
</tr>
<tr>
<td>공통사항</td>
<td>
▪ [상시] 학생선수 출결관리, e-school 수업결손 관리
▪ [5월, 9월, 12월, 수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서한문 발송 [서식8]
▪ (성)폭력 실태조사 - [6월] 전수조사(교육부주관)/ [7월, 12월]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보고
▪ [연2회]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점검
</td>
<td></td>
</tr>
<tr>
<td>학기말</td>
<td colspan="2">
▪ [7월, 12월] 최저학력제 실태 현황 보고 -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및 권업과정 개설 [서식2]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의무 이수화
▪ [7월, 12월] e-school 학습확인서 출력 후 학교장 확인(내부결재)
▪ [7월, 12월] 동·하계강화훈련 계획 수립 및 품의
▪ [10월] 체육특기자 선발 및 진학 업무
▪ [12월]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 [서식13]
</td>
<td></td>
</tr>
</table>

세부업무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코치) 관리

Tip

■ **운동부지도자**

- 전임지도자
  - 교육특별회계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지도자
- 일반지도자
  - 수익자부담경비를 통해 학교에 채용된 지도자
- 기타지도자
  - 시·군 체육회에서 채용지원, 자원봉사 등

Tip

■ **채용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및 각 학교 취업규칙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주요내용

① 용어의 정의

- 담당교사: 학교운동부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대회(훈련)참가, 운영경비 집행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
- 운동부지도자: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보조코치 포함)를 의미

②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성
  -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 강구
  - 학생선수 인성·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강화
  - 학생선수 개인상담 및 훈련 점검표비치
  - 청렴
  - 학생선수 인권보호

③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절차 (신규채용)

공개 채용계획 수립(자격요건,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공개 채용계획 심의(자격요건 등)

↓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심의(의결)

↓

공개 채용계획(자격요건,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

채용 공고(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 등)
(홈페이지 7일 이상 공고)

↓

접수(공고에 구비된 서류(징계확인서, 접수·확인, 체육지도자격 기준 등)

↓

채용 공고 절차에 의한 심사
(자격 기준 등)

↓

채용심사 결과통보(공고문에 의한 통보)

↓

[근로계약 체결]
(계약 서류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매년)
ㅇ 징계확인서(대한체육회, 경기단체)
ㅇ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기본)교육 의무화 이수 안내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채용 결과보고

↓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④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절차 (재계약)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등)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
(평가 결과 : 재계약, 해임 등)
[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운동부지도자 평가 접수
[교육(지원)청 → 학교]

↓

적부심사(근무성적평가, 자격기준, 결격사유 등 확인)

ㅇ 적격자 ⇨ 학교장에게 추천

ㅇ부적격자 ⇨ 신규채용 절차

↓

근로계약 체결(매년 실시)
(계약 서류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매년)
ㅇ 지도자징계사실 확인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ㅇ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보수)교육 의무화(3년) 이수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심의(의결)

↓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⑤ 학교운동부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 재계약 자료로 사용함
- 내용: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 종합적 평가
  -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으로 인권침해 사례 등이 유발(입상기록 평가 지양)
- 방법: 체육부장,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

세부업무명

3.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학생선수 출결관리 매뉴얼

Tip

■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고, 상기 제시된 일수는 의무 허가가 아님

※ 필독 자료: **학생선수 출결관리 매뉴얼**

주요내용

① 학생선수 학사관리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 (출결처리)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 위한 지각·조퇴·결과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출석인정 결석 1일로 간주
-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국가대표 선발 인정' 공문을 근거로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음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 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 처리

-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 현행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 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관리 메뉴와 연동되도록 하여 나이스 기능 활용
  - 담임교사와 경기종목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 구축
  - 기존 학교체육(운동부 관리 등) 관련 나이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
-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 구축·제공

② 최저학력제 운영 방법

- 지필고사 미실시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도달 여부 결정

※ (예시) 교과별 하위영역의 평어를 수치화(예시: 매우 잘함-4점, 잘함-3점, 보통-2점, 미흡-1점)한 후, 교과별 하위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의 50%에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 도달 인정(추후 세부계획 안내)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교과로 대체 가능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 졸업한 학교로 최종학년(기)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요청 시 적극 협조(6학년 2학기)

③ 학습결과 처리

- 학생선수가 과정을 이수하면 e-school, e-학습터 또는 단위학교 학습결과에 대한 학습확인서 및 이수증을 출력 후 학교장 확인

④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 제한

- 적용 대상: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 적용 성적: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 최저학력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단,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⑤ 최저학력제 적용 책무성 강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1항제4호, 제11조 제1항)

- 학기초: 학생선수(개인선수 포함)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 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
- 학기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판단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활용 등)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
- e-school 활용 내실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여건 조성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활용

※ 학부모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학교별 자체 방안 강구하여 운영

※ 학교에서는 학기초 학생선수 파악하여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세부업무명

4. 학생선수교육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주요내용

①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

-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선수 인권교육 내용 반영
-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반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이수 인정함
-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내용	대상	교육 횟수	주관기관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근절 예방 교육	지도자	연 1회 (2시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연 2회	학교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학습권, 인권보호, 진로, 입학비리, 학교회계 등)	지도자, 담당교사, 학부모	연 2회	학교 교육(지원)청
도핑방지교육	학생선수 지도자	연 1회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학생선수	월 1회	학교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 전수조사 1회(정례화)	학생선수	연 2회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선수 안전드림(앱) 설치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교장 간담회 운영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연 2회	학교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학생선수	연중	학교
학교폭력 신고 방법 홍보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② 학교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 역할 포함) 운영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 실천기구로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 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구성은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로 기존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체육소위원회에 포함

Tip

■ 학교체육소위원회 기능

-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세부업무명

5. 대회 출전

Tip

■ 국가대표 대회(훈련) 참가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이 인정하는 국가대표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참가 경우 소속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후 허용 가능 (단,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단위학교로 공문 발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Tip

■ 학생선수 출결상황 관리

-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처리

Tip

■ 학생선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단계)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 2단계)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 화면 출력
- 3단계) 출석인정 클릭하고, 사유에 대회명과 기간 등을 기입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주요내용

① 대회출전 승인 절차

1	대회 공문(훈련계획), 국가대표 대회(훈련) 참가 협조공문 접수
2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인
3	1)대회(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서, 수업일수 확인 등 2)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고등학교)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run-up) 이수 여부 등을 확인 후 대회(훈련) 참가 승인 결정 3)보충학습, 안전계획 등 수립 여부
4	학교장 승인
5	담임교사(나이스 처리)
6	운동부 지도교사(누적 관리)

② 학생선수 나이스 시스템 상의 출결상황 관리

- 성적: 학생선수의 성적처리 및 관리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성적처리
- 출결 처리: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일일출결관리)에 기록

※ NEIS [학교운동부관리] > [학생선수관리] > [학생선수출결관리]메뉴에서 출석인정결석(허용,사용,잔여일수), 출석인정(결석,지작,조퇴,결과시수), 국가대표 사용일수, e-school(수업결손보충내역) 등 조회

③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시 보충학습 기회 제공
-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회출전계획 내부결재 시 보충학습계획 반드시 반영 학교장 결재 후 실시
- 학교장이 수업일수 준수 및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대회 출전 허용(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전국대회 참가계획을 반영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절차 준수

4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체육교구 및 설비의 확보를 통해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체육시설

Tip

■ 학교체육시설이란?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말함
- 일반적으로는 체육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학교시설을 의미함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① 학교체육시설의 이해

- 체육장의 정의
  -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이하 "학교설립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 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함)을 말함
- 체육시설의 정의
  - '체육시설'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②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별 시설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볼장 7. 풋볼장 8. 스케이트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18. 썰매장 19. 씨름장 20. 아이스하키장	21. 야구장 22. 양궁장 23. 역도장 24. 에어로빅장 25. 요트장 26. 육상장 27. 조정장 28. 체력단련장 29. 체육도장 30. 체조장 31. 축구장 32. 카누장 33. 탁구장 34. 테니스장 35. 펜싱장 36. 하키장 37. 핸드볼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9.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그 밖의 시설	운동장 체육관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세부업무명

2. 학교체육시설 관리

Tip

■ 학교체육시설 개방

- 체육과 교육과정(체육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이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 및 주말 스포츠 활동, 학생선수의 훈련 및 운동부 운영, 학교체육행사 등 학교 체육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체육교과협의회 또는 학교체육 소위원회와 협조하여 개방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주요내용

① 학교체육시설 관리 및 개방체계

-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며, 학교 행정실장과 시설 담당 주무관을 중심으로 학교시설 관리 및 개방에 대한 사무를 담당할 부서 또는 시설관리 개방팀(가칭)을 구성할 수 있음
- 시설 사용 및 개방에 관한 업무는 행정실(시설담당 주무관)에서 담당하며, 추진과정에서 학사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관련 부서 및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체육교과협의회와 협조
- '학교시설 사용 및 개방계획'에 개방 원칙, 개방 방법, 지도 및 감독, 개방 시기,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관리 개방팀에서 통합관리 함

세부업무명

3. 체육교구 파악 및 확보

Tip

■ 참고자료

- 고등학교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Tip

■ 체육교구 구입 및 확보

- 관련 기준과 비교하여 학교 기준 재설정
- 물품 관리 요령 숙지
- 교재교구의 수리 요건 발생 → 수리 혹은 불가 판정 → 불용결정조서 작성 → 관리대장 정비 → 학교장 결재 → 불용 처리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① 체육교구 현황 파악

- 체육교구 현황 파악 및 기준안 작성
- 체육교구 및 시설 확충의 기본방향 숙지
  - 체육교구 및 시설은 공인품으로 확보
  - 체육교구 및 시설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소모성 체육교구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 예방 및 운영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수시 교과협의회 개최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을 참고로 교구 기준 설정 숙지 및 학교 예산 상황 파악
- 금년도 구입 목록 및 연도별 확충 계획 수립(장기 계획 포함)

세부업무명

4.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주요내용

① 점검 방법

• 점검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 점검: 매월 1회 단위학교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 수시 점검: 정기 점검 후 미흡사항이 확인되거나 활동 시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점검함

• 점검 방법에 따른 구분
- 육안 검사: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 및 낮은 비율의 확대경을 사용하여 검사
- 기능 검사: 용구 및 기구가 원활히 작동하고 규격대로 기능을 다 하는지 검사

② 점검 내용

구분	점검 항목
운동장	• 운동장 표면(잔디, 흙)의 고른 정도 • 운동 시설 및 용구가 지면에 고정된 정도 • 운동 시설의 변형 및 노후 상태(깨짐, 균열, 미모, 휨, 산화 등) • 운동장 배수 상태 및 배수로 내 이물질 유무 • 운동장 표면의 청결한 상태 유지 여부 • 운동장 재료에 다른 유해 요소(먼지, 납, 환경호르몬 등) 검출 여부
체육관	• 체육관 바닥 상태 • 운동 시설 및 용구의 고정상태와 청결상태 • 시설변형 및 노후 상태 • 체육관 천장 누수 상태 • 체육관의 청소 및 관리상태
기타 (체력 단련장, 무용장, 씨름장 등)	• 체육시설 내부의 각종 설비 또는 기자재의 이상 유무 • 운동 시설 및 용구의 고정 및 작동상태 • 변형 정도와 노후 상태 • 시설 내부의 각종 전기장치의 오작동 여부나 관리 상태 • 시설 출입문의 개폐 상태 및 주요 시설 시건장치 이상 유무

제24편 특수교육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특수교육</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 진로교육법</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업무
· 진로·직업교육 업무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td></tr>
<tr><td rowspan="5">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td><td></td></tr>
<tr><td>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td><td></td></tr>
<tr><td>3. 진로·직업교육</td><td></td></tr>
<tr><td>4.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td></tr>
</table>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하여 2차 장애의 예방 및 장애 영아의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세부업무명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함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과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

-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이 경우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Tip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세부업무명

2.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2조 2항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

- 가족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은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가족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지원인력 제공 서비스: 교육 및 학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원인력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교수학습 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통학지원 서비스: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
- 기숙사 지원 서비스: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지원 방법에 따라 개개인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특수교육 방법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 방법

•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편성·운영, 교사 자율교육과정 운영
-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중도·중복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순회교육: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관, 가정 또는 복지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함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학교장이 결정, 30일 범위 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 가능
- 순회학급의 여건 및 순회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2~3회 이상 권장

Tip

■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위원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한 특수교육 전문기로 구성

- 특수교육전문가: 대학교수, 특수교육 수석교사, 고경력 교사(20년이상),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원,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전문가, 보호자 등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개별화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 -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②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진단서 등 확인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 및 홍보 - 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자료(세 가지 이야기 등) 상시 비치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담임교사, 보호자 교육 필요 •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출결은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평가는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래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단계별 진로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세부업무명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등)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지원(교육지원청 25청)

-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급) 대상 사업 지원
-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담당 진로교육 지원

②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지원(센터 7권역)

-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대상 권역별 진로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내용	수원권역	부천권역	이천권역	구리남양주권역	의정부권역	군포의왕권역	고양권역
지원지역	수원, 평택, 화성, 오산, 안성	부천, 시흥, 광명, 안산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용인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성남	고양, 파주, 김포
관할기관	아름학교	부천상록학교	다원학교	경은학교	송민학교	의왕정음학교	홀트학교

- 유관기관 연계 지원고용 및 현장실습 참여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사업체 취업 정보 안내 및 취업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테 소식지 발송
- 경기도교육청 연계 현장실습(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청 현장실습)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신청(5월)
- 특수교육대상학생 자격증 과정 운영(연중)
- 관련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선발 지원(9월)
-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하반기) 등

주요내용

③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및 미래행 직업교육실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권역

운영교	성남 테크노고	이천 제일고	안양 공고	은행고	안성고	포천일고	수원 정보고	오산 정보고
지원 지역	성남,광주하남, 용인(수지처인)	이천, 여주, 양평	안양, 과천	시흥	안성, 평택	포천, 연천	수원, 용인(기흥)	화성, 오산

- 학생 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직업교육 관련 교사 실기 연수 지원

• 미래형장애학생직업교육실 운영 센터(파주/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

• 해당 기관 활용 계획을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

④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안내(연초)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 진로직업교육 반영

⑤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매뉴얼)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합한 현장실습 매뉴얼 안내

⑥ 매 학년 초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통합·운영도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과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협의

⑦ 매 학년 초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 경기도교육청 현장실습운영계획을 근거로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의 실습 유형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단계·절차에 따른 현장실습 실시

⑧ 현장실습 유형에 따른 단계별 지침 준수

• 현장실습유형(6개) 중 교내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진로·직업교육에 포함하여 수립

• 실습 유형의 단계별 내용(절차, 서류, 사전교육 등) 확인

• 인턴십 현장실습 유형의 대상학생, 전환 시기 준수(고3/전공과 졸업 학년)

• 그 외 유형은 현장실습 운영 계획 지침에 따라 운영

⑨ 매 학년 말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진로 현황 제출

• 경기도교육청 지침 이행 및 직업교육훈현촉진법 준수 여부 실태·점검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현황 집계 조사(11월)

세부업무명

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 교육 다양화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주요내용

①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 지역 내 특화 산업 분야와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일회성 체험보다는 교실수업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다양한 현장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맞춤 진로설계 지원
  - 도내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지원 강화

구 분	관련 기관 및 현황
진로직업 지역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 - 미래형 직업교육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파주, 평택) - 특수교육지원센터 25청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 거점 및 중점 운영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8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6교
관계기관 연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수원, 의정부)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도교육청 및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강화

② 진로 취업 지원 확대 및 다양화

-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진학설명회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다양한 사업체,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취업 전환 지원
- 직무 관련 국가 공인·민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

Tip

■ 도내 관계기관 취업 지원 서비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4개 지사) 지원고용, 일 배움 프로그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운영, 직업상담 및 평가, 서비스 분류 및 매칭,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개발원-시·군·구 장애인복지관)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등 운영, 취업 전(보호고용, 직업훈련)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③ 진로 · 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학교급 진로·직업 교육과정 연계 연수 운영
- 특수교육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진로전담교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연계활동 활성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구회 활동 권장 및 연수 실시
  - 운영 지침 개선 및 인사규정 정비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 보급

④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확대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권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강화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 및 유지 도모
  - 관계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적합 직무 및 유망 직종 개발, 훈련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등 협업
- 학생 특성을 고려한 산업체 연계형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자체별 산업체 현장 발굴
-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⑤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

-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실시 시기 등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 보급을 통해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역량 강화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강조 및 점검

4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국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공동체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

Tip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콘텐츠

- 유치원: 장애이해 동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누리집 · 유튜브 탑재
- 초등: (KBS라디오) 「대한민국 1교시」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중등: KBS TV 장애이해드라마,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Tip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59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주요내용

① 장애이해교육(교육부)

-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2회 실시 계획 반영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수업, 교내외 봉사활동 등 활용
  - 12월 중 2회 이상 실시 실적을 각급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② 사회적 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대상: 모든 기관 교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일정 포함
  - 전문강자(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대면교육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보건복지부: 교육실시 후 2025. 2. 28 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http://www.able-edu.or.kr) 입력 제출

③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2, 제5조의3
-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등)

※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업주(학교 법인 또는 재단 등)가 연수 실시

-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 전문강사 초방 또는 사내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통해 집합·원격·체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보건복지부)

- 근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 대상: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 각급학교 교직원연수 연간계획에 장애인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일정포함
  -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 실시

세부업무명

2.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강화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4조, 제8조 제3항, 제20조, 제21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 및 보호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홍보 및 상시 보호체계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사 상담 실시
- 매월 1회 이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인권보호 지원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매학기 초 정기 간담회 실시 등 협업체계 구축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 시 진술조력 지원

③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성교육 강화

•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대상 폭력예방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통합학급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포함 20시간 확보

세부업무명

3.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주요내용

①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

②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권장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학교별 재난 상황별 취약 요인 분석하고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③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세부업무명

4.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28조

주요내용

①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체제 구축
-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자원 시스템 구축
- 행동지원 전문가 집단(대학교수,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의 자문위원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 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 행동지원의 효율성 도모

② 교육지원청별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 특수학교(급)에 행동중재 방법 및 컨설팅 제공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③ 학교와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을 통한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실시
- 학급차원의 문제행동 지도 역량 강화 및 개별 차원의 행동지원 운영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④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세부업무명

5.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3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건소 등 연계 강화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가능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③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과연령자 및 초등학교 입학연기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세부업무명

6. 방과후 교육·돌봄지원 체계 강화

Tip

■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 '2024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03쪽) 참고
- 순회학급 예비 -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지침 참고

관련근거

◦ 특수교육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 교육기본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주요내용

① 특수교육 치료·방과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방과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통합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지원
- 치료지원 미이용시 교내 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사용 가능
- 미사용금액은 이월하여 집중 사용 가능(방학중 또는 특정시기)
- 장애학생이 다양한 소질 계발 및 특기적성을 위해 예체능 관인학원으로 가맹점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②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25편 보건교육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보건교육</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학교보건법
○ 초·중등교육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 결핵예방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 학교 건강검사 규칙,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보건교육(성교육,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포함)
· 보건실 운영, 요양호학생 관리, 학교 응급환자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학생 건강검사(건강기록부 관리 포함)</td></tr>
<tr><td rowspan="7">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보건교육</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2. 보건실 운영</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3. 요양호 학생 관리</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4. 학교 응급환자 관리</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5. 감염병 예방 및 관리</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6. 학생 건강검사</td><td>- 2024학년도 현행화</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경기도교육청, 2024. 1.)
○ 학교 성교육 표준안(교육부, 2015. 1.)
○ 2023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023. 2.) (변경 예정)
○ 2023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체육건강과, 2023. 3.) (변경 예정)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학생건강과, 2022. 3.)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9.)
○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학생건강과, 2022. 3.)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학생건강과, 2019. 12.)
○ 2023년 국가결핵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2. 12.)
○ 2023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학생건강과, 2023. 2.) (변경 예정)</td></tr>
</table>

1 보건교육

성장단계별 역량중심 보건교육 체계적 실시, 지역(권역)별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통한 보건교육을 활성화한다.

세부업무명

1. 보건교육과정 운영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주요내용

① 기본방향

- 각급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② 추진방향

- 학교 교육과정 내 보건교과 운영 철저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은 최소 1개 학년에서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

③ 체계적 보건교육 실시(「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제15조)

-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 보건수업으로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실 부책임자 지정 응급상황 대비
- 온라인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보건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반영한 역량중심 보건교육과정 재구성(교사교육과정) 수업 실시
- 삶과 연계한 건강문제를 학생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협력수업, 토의·토론, 프로젝트학습 등) 확대

Tip

■ **보건교과서 선정**

- 경기도교육감 인정도서 (나이스 교과용도서 〉 교과용도서관리 〉 인정도서 조회)
- 학교운영위원회 선정 심의
- 교과서 담당자 나이스 주문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 나이스 수업시간표에 보건교사 이름으로 입력(담임)
- 보건교사 수업시 보건실에 담임교사 비상대기 사전 내부결재

Tip

■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기준

- **초등학교:**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다.
- **중학교:**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 초등학교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운영

【초등학교 적용 예시】
- 바른 적용 예: 5학년 17차시 운영 / 6학년 17차시 운영/ 5,6학년 각각 17차시
- 잘못된 적용 예: 5학년 8차시 운영 + 6학년 9차시 운영

- 중학교 1개 학년: 자유학년(학기)제, '보건'과목 선택
- 고등학교 1개 학년: '보건'과목 선택(교양교과군),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강좌 운영,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전공과목 등 활용

※ 참조: 2022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별책 1_4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 보건수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휴교실을 활용한 체험형 운영
-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및 기존 보건교육실 적극 활용

【보건교육실】
- 위치: 보건실 옆 혹은 보건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
- 기능: 보건교육 및 체험중심 보건교육활동
- 공간구성: 1개 반이 수업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구비, 수납공간, 구강교육 및 손씻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시설 설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자재 준비

- 보건교육 내용 중 학생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내실화
  -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보건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권장
- 학교 보건교육 전문적 지원시스템 구축
  -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보건수업 연구와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지원(교과연구회, 교사동아리 등 활용)
  - 보건교육 거점학교, 건강증진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와 수업사례 나눔 및 공유

※ (탑재 위치) 경기교육모아(more.goe.go.kr) '학생중심 교육과정 > 학생맞춤형 수업(초/중) > 보건교육'

-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운영: (경기도 의정부 공유학교 올래캠퍼스 3층)
  - 건강역량 함양 및 생활 속 건강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질 함양을 위한 미래형 체험교육
  - 예방중심·에듀테크 활용 보건교사 의료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연 2회), 학부모교육
  - 건강증진센터 운영모델 정책연구, 보건교육연구회 협력 프로그램 개발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
미래형 건강체험과 학교 보건교육의 플랫폼으로, 스마트 학생건강체험 교육활동, 지역유관기관 건강자원 공유 및 연계시스템 구축, 건강 취약 학생 맞춤형 건강지원, 의료 시뮬레이션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센터

Tip

■ (가칭)건강증진센터 공간 구성

- 스마트건강체험실 (건강이해공간)
- 활동형복합체험실 (가상현실복합공간)
- 의료시뮬레이션실 (가상병원체험공간)
- 교육실 (1인 미디어실, 원격지원실, 강의실)

세부업무명

2. 보건교육 거점학교

관련근거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주요내용

① 기본방향

-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보건교육 거점 역할 수행
-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배움의 관계를 통해 학생중심 보건교육 실천과 연구
- 보건교육 컨설턴트, 수업 멘토 교사 또는 교과연구회 수업지원단 연계를 통해 수업전문성 신장
- 지역 내 학생들의 보건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 마련
- 연구회 활동 기반의 미래형 보건교육정책 연구·개발 지원
- 신규와 저경력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및 보건업무 멘토링 지원

② 추진방향

- 보건교육거점학교 필수 과제
  - 보건교육 관련 권역단위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6회이상, 지원예산 30% 이내, 교원 쌍방향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샘터' 활용 권장)
  - 미래형 보건교육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 활동 참여
    ※ 거점학교 운영 담당자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 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 예정
  - 보건수업 지도안·평가방법 개발·공유, 수업 연구 및 공개
  - 전자담배 및 대마 등 마약류 예방(2차시), 성교육(2차시)를 포함한 17차시 이상 에듀테크 활용 보건수업 지도안 및 자료 개발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모아-학생중심교육과정 누리집 탑재
    https://more.goe.go.kr/edu7/index.do
  - 지역 내 교육경력 3년 이하 신규와 저경력 보건교사 멘토링 지원
  - 보건교육 거점학교 간 연계활동, 운영 성과 나눔회 추진
  - 보건교육거점학교 운영 자체 평가
- 보건교육거점학교 선택 과제
  - 학교(학년) 교육과정에 건강 주제로 교육과정 재구성 실시(교과통합형, 융합형 등)
  - 건강증진학교와 연계한 권역별 보건수업 사례 나눔 행사
  - 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학생 보건교육 기회 확대

【보건교육 거점학교】
학생중심의 보건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보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학교

Tip

■ 【건강증진학교】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

■ **건강증진학교 필수 과제**
-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활동, 건강교육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교원의 건강증진, 학교 운영 역량 강화
-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건강증진학교 선택 과제**
- 건강관련 학생 진로 동아리 활동 또는 자유학년제 운영
- 학생 대상 토요 건강체험교실 운영
-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지원

세부업무명

3. 성교육 운영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학교 성교육 표준안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주요내용

① 기본방향

-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관련 교과 통합, 융합형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의 성 위험상황 대처 역량강화 수업 실시
-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체 교사 대상 성교육 전문성 제고 연수과정 개설·운영

② 추진방향

- 학기 초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반드시 '학교 성교육 계획'을 수립(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
  - 표준안에 근거하여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 건강, 사회와 문화) 내용이 고루 포함되도록 체계적인 성교육과정을 학년별 연간 20시간 이상 계획 수립·추진
- 성교육의 내용 및 체계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 활용
- 2015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교육과정 연결 맵 참고(학생건강정보센터)
- 학교 성교육계획 수립시 학생·학부모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하고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교육 실시(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 관련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활용, 실제로 성교육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 업무분장표에 '성교육'을 명시
- 성교육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교육과정 편성 지양
  (성폭력 예방교육 4시간 이상 포함)
- 표준안에 근거한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자료(지도서, 학생용 워크북)활용
  - 학교 급별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 이용
- 성교육 교사 동아리(2021년) 연구 개발한 등교-원격수업 병행 수업자료 활용
  ※ (탑재 위치) 경기교육모아(more.goe.go.kr) '학생중심 교육과정 > 학생맞춤형 수업(초/중) > 성교육'

Tip

■ 학교 성교육 표준안(전체)
- 학교 성교육 표준안(초)
- 학교 성교육 표준안(중)
- 학교 성교육 표준안(고)

■ 성교육 표준안 연간 지도계획(예시)
- 성교육 표준안 연간 지도계획(초)
- 성교육 표준안 연간 지도계획(중)
- 성교육 표준안 연간 지도계획(고)

■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 초등학교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저학년)
- 초등학교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중학년)
- 초등학교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고학년)
- 중학교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 고등학교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의한 '학교별 실태조사'는 교육청 보고사항(학교 성교육 실시 현황 조사, 연 1회)으로 갈음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별도 조사도 가능
• 중·고등학교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강화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요소를 참고하여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연간 성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에이즈 예방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으나, 교육 시 에이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다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맥락을 검토한 후 실시
•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자료 활용
 - 청소년 AIDS 예방교육 가이드북(중등)
 - 대중매체 바로보기 성교육 지도서

③ 학교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고 양성평등교육의 관점 유지
• 학교 내 성폭력 피해학생이 있을 경우 성교육 시 수업 주제에 따라 피해학생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 수업 기피 등을 허용하고, 수업 참여 시에도 수업내용으로 인해 간접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
• 각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지도
• 담당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
• 외부강사 초빙 또는 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관련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지도안 검토 철저, 성교육 현장 임장 지도 의무 준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청 위탁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강사 활용

Tip

■ 대중매체 바로보기 성교육지도서

• 대중매체 바로보기(초등)
• 대중매체 바로보기(중등)

세부업무명

4. 흡연·음주·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주요내용

① 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내용 반영한 마약류 예방 교육 학교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 유·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이상 의무 편성)

②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흡연·음주·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발달 단계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진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등과 융합하여 학생 주도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실천중심 교육 기회 제공
- 중·고등학교의 음주예방교육 시 교내 주류 반입 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학생의 흡연·음주,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오·남용 문제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생활지도
- 학교장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학교 방문객과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금연 안내 및 준수 지도(흡연부스 설치 금지)
  - 흡연부스 설치 금지, 학교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학생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

③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자료 활용

- http://www.schoolhealth.kr/index.do: 학교보건 > 약물 오·남용 예방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 (초등 저) 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 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 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 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급별 마약 예방교육 자료(총 21종) 활용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 https://www.schoolhealth.kr/"추천자료" 참조)

④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

-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및 잠금장치 등 관리 철저

Tip

■ **교육자료 참고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금연두드림
- 금연길라잡이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세부업무명

5. 흡연예방실천학교운영

관련근거

◦ 2023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변경 예정)

◦ 2023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

주요내용

① 학생주도 및 지역기반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 기본형: 예산 100~300만원 미만
- 심화형: 예산 300~800만원, 특화사업 필수

②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 기반 추진계획 수립

③ 흡연예방실천학교 추진 협의체 구성

④ 당해 연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 학교교육과정 반성 시 병행 실시, 차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

⑤ 보건복지부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입력(계획, 실적)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입력 보고

⑥ 학교 예산 집행 기준

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	비율
교육·활동	·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시 강사료 및 지도수당,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운영비(간식비 및 식비) 및 지도수당 ·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용 모형, 판넬 등 구입비, 자료인쇄·제작·구입비, 평가 및 조사 비용,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비 등 · 흡연여부 측정 관련 도구 구입비 등	90%
운영	· 기자재 수리비, 교육 훈련 참가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체 사업비의 5%이내) 등 기타 흡연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이내

⑦ 흡연학생 지도

- 교내 니코틴 보조제 처방 금지
- 학교 내에서 직접 니코틴 보조제를 처방 또는 구입하여 지급 금지, 금연 홍보 물품을 지급하여 금연하도록 지원
- 일산화탄소측정기 구매·사용 시 국내 허가(인증) 제품 사용
- 교육청에서 발행한 2018 경기흡연예방교육 실천사례집, 2023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을 활용하여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참여대상: 고도 흡연학생이 있는 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⑧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체 학생 대상: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SENSE)
- 흡연학생 대상: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END),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Tip

■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관련 서식

- 흡연예방실천학교 계획서
- 흡연예방실천학교 결과보고서
- 흡연실태조사 설문지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 2018 경기 흡연예방교육 실천 사례집

Tip

■ **흡연예방실천학교 예산 집행기준**

- 교육·활동비는 90% 이상 초과하여 집행 가능
- 범용성 물품 구입 불가
- 지도수당은 일과 전·후, 방과 후, 휴일 등 운영 시 지급 가능
- 흡연예방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예산은 전체예산의 40% 이상 집행불가
- 운영비는 1인당 5,000원으로 회차별 집행가능
- 잔액없이 12월까지 집행 완료

2 보건실 운영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평생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한 학생의 자기건강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세부업무명

1. 보건실 운영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주요내용

① 보건실 설치

- 보건실 면적은 66㎡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적 완화 가능
- 위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채광이 잘 되는 장소
- 냉·난방, 수도, 컴퓨터 시설의 설비가 요구되며 충분한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 준비
- 필요한 설비, 도구, 약품, 재료, 시설 준비
- 경기도 보건실 시설과 기구 용품 기준안 참고하여 보건실 물품확보

② 보건실 운영 기본방침

- 보건실 방문학생 대상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
- 연간계획을 세워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평가를 통해 반성 및 보완하여 다음 해 계획에 반영
- 교직원,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로 학교 보건실 운영의 극대화

③ 통증 증상 관리

- 두통, 복통, 발열, 호흡곤란, 실신, 염좌·탈구·골절, 추락, 치아손상, 눈손상, 머리손상, 절단 등 환자 사정 및 처치

④ 건강관리 및 상담

- 보건실 방문 학생 응급처치 및 통상 증상 처치
- 안정 및 휴식

⑤ 보건교사 부재 시 대책

- 출장, 환자 이송, 연가, 조퇴 등의 사유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 대행자 지정 등 학교자체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
- 보건업무 대행자 지정 시 학교 실정에 맞게 지정 및 업무분장 표시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 실시
- 보건수업시간 보건실 환자관리: 담임교사 비상대기 등 대책 마련

Tip

- 보건일지 서식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서식자료 12쪽 참고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서식 모음

⑥ 약품관리

- 학교 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제조 불가, 일반의약품만 사용
- 의약품 투여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의료행위로 업무 수행
- 의약품 보관은 사용 및 보관 기준을 준수, 안전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잠금장치 마련

⑦ 기록물관리

- 보건실에서 사용되는 기록물 종류
  - 보건일지, 학생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감염병 관리대장, 비품대장
- 보건일지
  - 보건일지는 매일의 업무활동을 기록, 안전사고 및 응급처치에 대한 분쟁 시 근거자료
  - 보건일지는 보건교사(의료인)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한 의료행위(환자의 증상과 처치내용)를 기록한 것으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부합하도록 관리
  - 보건일지에 기록할 내용: 당일 학교의 특별한 사항, 실천 및 특기사항,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의 건강문제, 처치내용, 보건수업 등
  - 보건일지는 매월 통계작성,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비치
  - 보건일지 보존기간: 5년(기록물관리 실무 매뉴얼)
- 학생건강기록부
  -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매체는 5년간 보관
  -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고등학교 미 진학 시 당해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건강상담일지(요양호 학생 상담대장)
  - 요양호 학생 명단 및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건강관리하며, 개인건강 관련 민감정보이므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
- 감염병 관리대장
  - 감염병 발생 시 파일이나 수기 대장으로 작성, 환자 관리 및 통계 활용

Tip

■ **보건실 방문학생 중 학교폭력,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일지 작성**

- 보건실 방문 학생 응급처치 중 학교폭력,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추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처치사항을 자세히 기록,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기록지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 학교폭력,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린다.

3 요양호 학생 관리

요양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 예방을 위해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세부업무명

1. 요양호 학생 관리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주요내용

① 기본방향

-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 개별 면담과 정기 건강상담을 통해 당뇨병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요양호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② 요양호 학생 개념

- 만성질환이 있거나 신체허약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기타 학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요양호 학생 등 건강이상 학생의 교육활동 보장

- 학년 초 전교생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건강이상 학생을 파악하고 요양호 학생 기록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호 학생별 개인 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 실시
- 요양호 학생별 주의사항, 학부모 당부 사항, 유의 관찰 방법, 교사 지도조언 등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건강이상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 적극 보장
- 학생 건강실태 조사 자료는 보건교사가 학생 상담자료로 1년간 활용 후 폐기
- 요양호 학생 명단 변경 사유 발생 시(전입 등) 교직원 연수 실시

④ 요양호 학생 관리 교직원 연수

- 전 교직원에게 요양호학생 명단을 배부하고 학생의 건강상태 및 지도 시 주의사항, 관찰사항 연수
- 요양호 학생명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추가 요양호 학생 발생 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 및 관련교사와 공유

Tip

■ **요양호 학생 교직원연수 참고사항**

- 개인건강민감정보로 보안주의
- 학기초 연수외에 학기말이나 방학중 전출입이 잦으므로 매학기 확인 필요
- 요양호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 전입담당자에게 전입서류 배부 시 건강상태조사서도 같이 배부하도록 사전 안내
- 교직원 연수 시 담임교사 외에 전담교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등 학생교육활동 종사자에게도 연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 교직원 연수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메신저로 하지 않음
- 현장학습, 신체능력검사 시 주의사항 담임교사 연수 실시

Tip

■ 요양호 학생관리 관련 서식
- 요양호학생 관리 계획 기안
- 요양호학생 관리 현황
- 요양호학생 건강상담 기록카드

■ **요양호 학생 상담일지 작성**
- 개인건강민감정보로 보관 주의
- 수기장부나 파일로 작성가능
- 학기초 학생이 선정되면 학생을 별도로 불러서 상담하지 않고 학부모상담, 보건실 방문 시 상담 등 주기적 상담관리 기록 작성
- 요양호 학생 상담기록은 안전사고 사안 발생 시 중요 근거자료

Tip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서식
-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
-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
- 당뇨병 관리물품 관리일지

⑤ 요양호학생 관리
- 정기건강상담, 수시건강상담 및 학교생활 중 주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상담카드에 기록 관리
-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진료에 대한 지도 조언
- 요양호 학생 건강상담일지를 정기적(분기별 또는 학기별)으로 관리

⑥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 강화
- 학교에서는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 현황 파악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 수집,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학교장은 건강증진부를 구성하여 학기당 1회 이상의 회의 개최와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며 학교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질환별 교육훈련 지원 등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건강증진부: 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그 외 학생과 관련된 교직원, 학생과 보호자(원하는 경우)로 구성
- 미리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인슐린, 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한 보관 장소 제공
-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학생 및 학교구성원 전체 대상,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지원,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개선에 관한 필요내용 교육

⑦ 원격수업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눈 건강증진 및 불균형체형예방 건강관리
- 시력이상, 불균형 체형 등 건강문제 학생 조기발견 및 가정연계 교정·치료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보건교육 강화 및 학생성장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학교 교의 위촉 등)
- 눈 건강증진: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방법 등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2021.7.14.)
- 불균형체형예방 건강관리: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 해소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2021.11.2.)

4 학교 응급환자 관리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체계를 확보,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한다.

세부업무명

1. 응급환자 관리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응급의료법
-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

주요내용

① 응급의료관리체계 매뉴얼 숙지 후 업무추진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활용
- 보건실 방문 학생 처치 및 상담 시 담임교사, 학부모와 유기적인 연계 유지

② 포괄적인 학교 응급환자 관리 계획 수립

- 학교는 당해 연도 학교 운영 계획서에 응급환자 관리계획을 수립, 학교 실정을 고려한 총괄책임자, 처치책임자, 이송책임자, 담당자 부재 시 업무 대행자 등 교직원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 명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학교 내 관리체계 조직·운영
- 보건교사, 일반교사에 의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한 응급처치 면책
- 응급처치자는 환자상태 관찰을 위하여 운전을 하지 않음

③ 학기 초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처리요령 교직원 연수 실시

- 참석대상: 학생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

④ 보건실에 적정수준의 시설, 기구 및 의료용품 구입예산 편성·구비

- 응급환자 이송비 등 학교예산 편성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관리,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앙현관에 비치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반드시 출장처리 및 출장명령
- 이송경비가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 학생복지비에서 지출

⑤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check, call, care)

- CHECK: 응급상황 여부 파악하기, 환자상태 파악하기
- CALL: 응급구조 요청하기,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하기
- CARE: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응급처치 시행하기,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기록 및 추후결과 확인
- 응급환자 이송차량 지정
  - 119 이송 원칙,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가능하면 3순위 정도 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대처(승용차 요일제 제외)
  - 응급이송차량은 차량 우측 앞 유리에 '응급이송 차량' 표시

Tip

■ 응급환자관리 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지
-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이송 동의서
- 응급사고 예방과 대처 교직원연수

■ 교직원 응급이송 차량 지정
- 승용차요일제 제외
- 응급이송차량은 안내문 부착
- 응급이송차량은 매년 지정
- 필요시 콜택시 활용 가능
- 응급이송차량 지정은 관리자와 협의하되 보건교사는 제외 (응급처치자는 운전불가)

세부업무명

2. 응급처치교육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주요내용

① 학생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내실화

- 초 5학년: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 초 6학년: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
- 중2학년, 고1학년: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
- 교과(군)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 대상 학년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방법 검토·추진(선택)
- 학생 심폐소생술교육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생 심폐소생술교육 관련 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의2

②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법적 의무교육)

- 전문강사에 의해 이론+실습 4시간 교육 실시
- 매년 3월말까지 심폐소생술교육 등 교직원 안전교육 계획 수립
- 강사: 매년 안전부서 공문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인력풀, 기타기관 활용
- 결과보고: 안전교육 업무 담당자는 등록부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 교직원, 학부모 심폐소생술교육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어린이 이용시설 대면업무 종사자 응급처치교육 관련 근거: 어린이 안전법

③ 응급처치교육(7대안전교육 표준안 내용)

- 내용체계안에 따라 응급처치 목적 및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등의 내용을 학년에 맞게 교육 실시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교육완료 후에는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내부결재) 실시
- 탑재위치: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자료실 > 학교안전교육 7대표준안

④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관련 교육기자재 확보

-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이 심폐소생술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재정적 지원(강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확보)

⑤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및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 지원

- 교육청은 최신 의료 동향 및 응급처치 개발 등 보건의료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을 연계한 보건교사 직무연수 실시
  - 학교는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및 관리유지
  - 학교장은 보건교사가 CPR 의료인제공자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Tip

■ 응급처치교육 계획·내용 및 시간

Tip

■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안전요원 인력풀
-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교육
- 중앙응급처치교육원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 **심폐소생술 교육 시 필요 기자재**

- 실습용 마네킹
-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 기도폐쇄 실습 조끼
- 실습매트, 마우스쉴드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학교 감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안정적 운영, 학교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보호한다.

세부업무명

1. 감염병 예방교육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주요내용

① 사전 예방 강화(평상 시 예방관리)

- 학교보건법 및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준수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세부사항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 학교 내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필요시 즉각 대응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지도서) 활용(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안전 > 감염병 정보 > 자료실 탑재)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 교원 감염병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 의무 이수
-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초·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접종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 및 안내
- 해외 입·출국 학생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외국에서 전입한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시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미접종자 접종 안내, 해외 출국 학생 및 교직원 대상(견학, 봉사활동, 여행 및 선교 등)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 제공, 귀국 후 감염여부 모니터링
- 학생 안전을 위한 필수 방역물품 구비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교육
  - 위기상황 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학교 내 필수 방역물품 예산 편성
  - 손 씻기 향상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반복교육 및 홍보 방안 추진
  - 모든 방역물품은 제품에 표기된 기한까지 사용, 경과 시 폐기

Tip

■ 참고자료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

■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및 지도서

- 초등학교 저학년
- 초등학교 중학년
-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Tip

■ **질병관리청 교육자료 활용**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kdca.go.kr/)
- '주간건강과 질병' 메뉴는 주 단위로 이슈가 되는 질병 특징을 매주 안내하므로 사전 파악에 도움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질병관리청 알림 · 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홍보지 활용
- 질병관리청 알림 · 자료 > 이달의 건강소식 월별로 교육자료 활용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감염병 예방

② 발생 초기 대응강화(확산방지 체계 정비)

- 학교 내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속 · 정확한 보고 체계 정립
  -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발생 시 NEIS보고를 철저히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 안내 및 필요시 신속한 대응(등교중지 포함)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환자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즉시 신고
- 가정과 연계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 강화
  -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준수사항을 포함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안내
  - 감염병 의심증상시 등교 전 의료기관 진료를 먼저 받도록 안내하여 학교 내 감염병 유입 최소화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통제 등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생활지도 안내

③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학교 감염병 선제적 대처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학교장은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병 유행의심 상황 종결 시 까지 모든 교직원이 협력적 역할(업무)수행
  -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공유, 확산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운영
  - 보건당국의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격리조치 정보 또는 학교 역학조사 결과 등 필요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교육지원청 단위 감염병 발생학교 컨설팅 및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보건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외부전문가)' 구성 · 상시 지원 가능 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및 대응체계 강화 모의훈련 실시
  - 감염병 교육계획 시 학생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통하여 교내 감염병 예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염병 대응 훈련 참여 유도
  - 감염병 대책반의 위기 · 대응 모의훈련 정례화(학교 연1회 이상)
  - 학교는 모의훈련 일지 작성(자체보관), 훈련실적 제출
  - 평상시 감염병 유행상황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구분한 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 구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실시한 실적 포함하여 작성
  - 모의훈련 관련 자료(훈련용 워크북, 체크리스트 등) 일체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 감염병정보 > 자료실 탑재

세부업무명

2. 국가위기 상황 대응 및 모의훈련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주요내용

① 국가위기 상황 시 대응

- 해외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 항만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 확산되는 경우(예시: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증 등)
- 국내에서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 발생하는 경우

② 국가 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단계	판단기준	대응
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발생 동향 파악
주의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제한적 전파,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경계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전파	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환자발생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
심각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대응역량 총동원, 범정부적 협조 체계강화, 전국으로 감시 및 대응강화 확대

③ 휴업 및 휴교 검토

- 교내 감염병 유행 시, 교내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장은 교육부의 휴업지침에 따라 자체휴업 고려 가능하나 휴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 후 결정

④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 학교 내 감염병 조기발견, 신속 사후 조치, 유행확산 방지
- 학교 감염병 발생 시 정해진 역할에 맞는 반복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 학교 빈발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대상 기반 모의훈련 연 1회 정례화
  - 실시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토의토론, 시나리오 활용 등
- 모의훈련 내부기안 및 참여일지 등록부 사인, 사후 실시 결과 보고

Tip

■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서식
- 모의훈련 시나리오
-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일지

■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온라인 모의훈련 교육영상 활용**
- 교직원용 영상 1), 2)
- 교원용 영상 1), 2), 3)

세부업무명

3. 결핵의 예방 및 관리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 2023 국가결핵 관리지침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

주요내용

① 결핵예방 및 관리

- 결핵의 감염 경로: 공기를 통한 전파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
- 결핵 환자의 전염 기간: 발병~결핵 진단 후 치료약 복용 후 2주까지
- 결핵의 임상 증상
  -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폐결핵(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 유증상자 발견 및 진단
  - 기침, 각혈 등 결핵증상으로 보건실 방문하여 결핵이 의심될 때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도검사: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 통보받을 때
- 격리판정: 학생의 발견경위를 파악하여 격리 판정(결핵균 양성환자)
  - 격리기간: 항결핵약제 복용 시작 후 균음전환 될 때까지 등교중지
- 결핵 의심, 확진자: 학생 등교중지, 교직원은 병가처리

② 신고 및 보고

- 신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
- 보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유선 및 나이스로 즉시 보고
- 환자명부 작성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중인 학생을 발견했을 때
- 보건소 방문 지도: 위의 2)에 해당되는 학생과,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함께 보건소 방문하도록 지도

③ 상담 및 교육

-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등 상담 및 교육
- 전교생과 교직원 대상 결핵예방 교육
- 학부모 대상으로 결핵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 결핵예방 교육자료 및 활용: 결핵ZERO(https://tbzero.kdca.go.kr/)

Tip

■ **결핵환자 발생 시 보고**

-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 공기전파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교육지원청 신고
- 보고는 업무관리시스템, 나이스로 발생보고

■ 결핵예방관리 관련 서식

- 결핵예방 안내문
- 결핵검진 안내문(고등)
- 결핵환자 명부

④ 결핵 접촉자 관리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접촉자조사 및 검사
• 접촉자 조사의 범위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37쪽 참고)

발생 구분	접촉자 범위	검사
결핵으로 신고된 학생 또는 학급 수업에 들어가는 교직원 1명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학급(반) 학생 (교직원 포함)	- 결핵, 잠복결핵 감염 검사
교직원 또는 학생에 관계 없이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 활동 결핵환자 2명 이상 발생	해당 학교 전원 (교직원 포함)	- 결핵검사(대상자 전체) - 잠복결핵감염검사 (지표환자 밀접접촉자)

※ 접촉자 검진 대상 범위는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월 발견된 환자의 증상기간이 전년도 말부터였다면 과년도 동일학급 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음

⑤ 추후관리

• 추후관리: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등 상담 및 교육
  - 보건소의 흉부 X-선 추가검사 협조
• 종료처리: 관할 보건소장의 완치자 명단 통보 시 환자명부에 기록 후 전자문서로 종료 보고

⑥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 관리사업 전개

•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자체결과 유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검진대상: 모든 교직원
  - 결핵검진: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2022. 7. 1.)전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교직원
• 학생 결핵검사: 고2, 3학년만 실시(흉부간접촬영)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보건소를 통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은 후 입소하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보건소를 통한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여건 확인한 후 안내)
• 교내 결핵환자 발생 시 초기대응 강화를 통한 확산 방지
• 필요시 방역기관(보건소)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Tip

■ 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검사
• 모든 교직원 1회 실시
• 학교회계 예산편성하여 반영
• 신규발령자, 복직자 누락주의
• 검사결과지는 취합하지 않음
• 검사확인서만 취합 결과보고
• 검사결과 양성 시 내과의 상담

6 학생 건강검사

학생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
건강행태 개선, 건강문제 및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교육,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세부업무명

1. 학생 건강검사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 학교건강검사규칙
- 2023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 (변경 예정)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

주요내용

① 학생 건강검사 계획

- 매년 소요예산 및 실시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
- 건강검사의 구분「학교건강검사규칙」제3조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 검사 항목 및 실시 방법 등「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 및 제5조
  - 신체발달상황: 초1~고3 학년 키, 몸무게를 측정, 나이스 입력
  -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를 구조화된 표에 의거 초1~고3 학년 대상 1학기 말까지 실시
  - 건강검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건강검진기본법」상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대상: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구강검진: 초4학년은 경기도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대상 :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별도검사: 시력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사
    - 소변, 시력검사: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결핵검사: 고2·3학년만 실시
- 검사 항목 단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는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조사대상 학생의 건강검사와 검사 결과 제출 기한 준수(3월~9월)
  - 표본학교는 3월~9월에 건강검사 실시,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관련교과 또는 보건교육 시간 활용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내용(검진항목) 및 검진결과에 따른 추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학생 교육(검사 전·후) 실시

Tip

■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 승인기준(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 출장검진 가능)
-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Tip

■ 학생 건강검사 관련 안내문(예시)
- 초1, 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 중등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 초2, 3, 5, 6학년 구강검진 안내문
- 학생신체발달상황검사 및 시력검사 결과 안내문
- 초4 치과주치의사업 안내문
- 학생 건강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안내문

■ 학생 건강검사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② 학생 건강검사 관리

-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 '학생 건강검사 연간계획'에 의거 결과 관리
- 초2 · 3 · 5 · 6학년/중 · 고 2 · 3학년 학생 소변검사, 시력검사
- 건강조사 설문지로 건강이상 학생파악 및 교직원 연수 실시(요양호 학생 관리)
- 학생건강검사 결과 가정통신(가정과 연계 지도)
  - 시력검사 결과 나안시력이 0.7 이하인 경우 안과 검진
  - 소변검사 결과 이상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재검토록 안내
  - 학생 신체발달상황검사 결과 안내 시 비만예방애 대한 안내
  -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병의원 검진 안내
- 이상 학생은 명단작성 후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재검 추진
- 건강 검진기관으로부터 학생건강 검사 결과 통보서 및 구강검사 결과통보서 수령
  -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학생 · 학부모 · 학교장에게 통보여부 확인, 법정양식 준수 여부 확인
- 건강검사 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 · 시행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 요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 · 추진
  - 학생 건강기록부 기록 및 관리 철저
- 구강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구강보건사업 추진
  - 경기도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연계한 구강검진결과 관리
- 건강한 체중관리 능력을 기르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건강검진 실시 후 체중 이상 학생(저체중/경도/중등도/고도)을 선별하여 적정 체중 이상 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지속 관리
  - 학교 내 보건/체육/영양교사의 협업을 통한 건강한 체중관리 교육 실시
  - 건강상담/생활습관교육/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식이요법, 영양상담 등 활용한 종합적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담임교사, 학부모와의 연계 지도 및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세부업무명

2. 건강기록부관리

관련근거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① 건강기록부 입력 방법

- 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사용자 설명서 > 보건(학교) 참고하여 입력
  - 탑재위치: 업무포털 > 나이스지원 > 자료광장 > 사용자설명서 > 보건 검색
- 학기 초 건강기록부관리 인적사항생성 메뉴: 전학년 인적사항생성

② 학생 건강검사 실시 후 결과처리

- 메뉴: 보건 > 건강기록부관리 > 반별등록(항목별등록)에서 각 항목
- 입력시기: 모든 건강검사 전산입력은 가급적 측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임교사가 NEIS에 접속하여 전산입력(전출입자 누락 주의)
- 건강검사 완료 후 보건영역 입력 방법 교사 연수 실시

③ 학년 말 건강기록부 관리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7조(자료의 정비)
-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년말 학생건강기록부의 입력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수정

④ 건강기록부 정정대장 관리(학년말)

- 메뉴: 보건 > 건강기록부정정대장관리 > 정정대장등록
- 정정항목: 인적사항, 취학전·후 예방접종, 신체발달, 건강검진, 신체능력, 건강검진, 별도검사
- 1학년의 경우는 모든 항목 정정대장 등록 없이 바로 입력 가능, 그 이상 학년은 겨울 방학 전에 정정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
- 정정항목 파악: 건강기록부 항목별 입력 상태 조회 후 누락사항은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하고 증빙자료 취합
- 내용입력: 개별(일괄)등록, 이름선택, 해당항목,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등 > 저장
- 정정대장 결재: 반드시 4단 결재(담임-교무-교감-교장)
- 정정대장 조회: 정정결과 확인 후 출력하여 정정대장철에 보관

⑤ 건강기록부 마감(학년말)

- 메뉴: 보건 > 건강기록부관리 > 건강기록부마감
- 마감시기: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시 함께 처리
- 마감방법: 반별마감, 학년별 마감 후 결재요청(담임-교무-교감-교장)

Tip

■ 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사용자 설명서 - 보건(학교)

■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서식

- 학생건강기록부
-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학생건강기록부 정정대장

제26편 학교급식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학교급식</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유아교육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식생활교육지원법(약칭: 식생활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 참여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 상담에 관한 업무
·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 사용 등의 학교급식 운영 업무
· 식중독 발생을 대비한 업무
·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관리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기기 관리와 개선에 관한 업무</td></tr>
<tr><td rowspan="7">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운영</td><td></td></tr>
<tr><td>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td><td></td></tr>
<tr><td>3. NEIS 급식시스템</td><td>- 4세대 나이스로 변경</td></tr>
<tr><td>4.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td><td></td></tr>
<tr><td>5. 학교급식 예산 운용</td><td>- 2024년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로 변경</td></tr>
<tr><td>6. 학교급식 시설 관리</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3학년도 영양·식생활 교육 정책 기본 계획(학생건강과, 2023. 2.)
○ 2024학년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계획(학교급식보건과, 2024. 2.)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학부모시민협력과, 2022. 4.)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매뉴얼(교육부 학생건강총괄과, 2012. 8.)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재무관리과, 2023. 11.)</td></tr>
</table>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수립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주요내용

① 관계자 의견수렴, 급식실태조사,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마련

②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실무 검토
-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나트륨 저감화 계획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별로 별도의 계획수립을 하지 않아도 됨

Tip

■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 초
-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 중
-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 고

세부업무명

2. 안건 제출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0호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심의사항 등)

주요내용

① 학교급식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을 담당자에게 제출

-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 횟수, 급식 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 내 예결산위원회로 갈음 가능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개별학교에서 실제 사용할 식재료 품질기준
-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급식비 이상으로 부담

Tip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 초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 중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 고

Tip

■ **급식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홈페이지 쌍방향 게시판 운영**

- 식품비 사용 비율 게시
-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분석 홈페이지 공개
  - 학교급식 만족도·기호도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표

-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급식 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학교급식 소위원회 활동 등
-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급식 모니터'는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 인력풀' 구성·활용

세부업무명

3. 회의참석 및 결과처리

Tip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주요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따른 학교장 의결 및 시행
③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연 1회 이상)

세부업무명

4. 학교급식 소위원회 내부 규정 수립 및 모집

Tip

■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 학부모 안내장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가능('2023 학교업무 개선 길라잡이)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주요내용

①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급식 소위원회 규정' 제정(구성 대상, 인원 등)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공동 조리교의 경우
  - 내부규정 공동 제정 (장기결석 처리 등)

③ 모집 방법
- 학교운영위원장이 추천
- 학부모 안내장 발송

※ 모집 방법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세부업무명

5.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Tip

- 위원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공동 조리교의 경우
  - 공동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비 조리교 위원 포함
- 위촉장
- 안내장
- ○차 회의 개최 기안문

Tip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가 필요 시 학교급식 관련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시에는 식품 관련 전문가인 영양(교)사가 동행(참여)하도록 개선(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현장 점검 시 건의 사항 ('14.8월)

Tip

- 급식납품업체 방문평가표
- 회의록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주요내용

① 위원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명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학부모 위원
- 학교 구성원 중(교직원, 학부모)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와 학생대표 등(단,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함)

② 위원위촉: 학교운영위원장

③ 간사: 영양(교)사 ('05.12월 국가청렴위 권고)

④ 정기회: 연 1회 이상(학교 자체 규정에 따름)
- ○차 회의 개최 기안문

⑤ 임시회 운영
-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사정족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⑥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 등 학교급식 운영계획(안)에 관하여 실무 검토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배식 등 학교급식 모니터링
-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학교급식 소위원회 규정 제정
- 급식 납품업체 위생 점검 등 업체 현장의 비교평가
  - 급식납품업체 방문평가표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결정 사항 존중
  -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은 연 2회 이상 실시(회의 포함)

※ 공동 조리교의 경우 기타 공동조리 급식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급식일정 동일하게 협의

※ 학부모 급식활동 참여를 학교급식소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⑦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은 주요 내용만 개조식으로 전자문서상으로 작성(협의록 개별 서명은 생략, 결재라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며, 처리 후 협의회 위원에게는 공람 처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건강 지향적인 식사 선택 및 영양 관리를 지도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계획하여 운영한다.

세부업무명

1. 연간계획 수립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시행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 어린이식생활법
- 식생활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주요내용

① 연간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계획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 식생활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식생활 교육지원법」 제26조
- 학생주도 급식활동 및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식품 안전교육 강화
-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② 추진 과정 개요 및 내용
- 학교 교육과정(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식품안전 관리대책 수립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식품과 영양소, 건강한 식품 선택, 영양과 건강, 올바른 식습관, 식품안전, 식품위생, 생태·환경 주제, 학교급식의 이해, 식품화, 요리활동 등

세부업무명

2. 식품안전관리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주요내용

①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리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운영
-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전 공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 알레르기 유발 식품 교실, 식당에 게시

②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상 표시
- 난류, 우유,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식품 등의 표시기준' 참조)

세부업무명

3.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근거

◦ 2023 영양·식생활 교육 정책 기본 계획
◦ 2024학년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계획

주요내용

① 영양·식생활 교육 세부 계획 수립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교육
- 학생자치회 연계 학생주도 급식활동
-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한 생활교육
-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세부업무명

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 수립 및 교육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주요내용

①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 수립(※지침은 최신의 것을 참고할 것)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예시 참고)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 음식물쓰레기 발생 원인별로 전처리 쓰레기(과일 껍질, 다시마, 다시멸치 등), 일반쓰레기(뼈, 조개껍데기 등), 순수 잔반(배식 및 급식 후 남은 잔반)으로 구분·관리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계약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여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 절감 도모

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 가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조리 방법 활용, 기호도를 고려한 식단 작성, 배식량 및 배식 방법 조정 등
- 급식 시간 배식 및 식생활 지도, 영양교육 시간 활용
- 잔반 안 남기기 교육자료 제공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 교육자료 식당 게시, 안내장 발송, 홈페이지 탑재 등
- 매주 1회 이상 "잔반통 없는 날" 운영 및 우수학급 표창
-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은 푸드뱅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잔반량 감소 및 처리 비용 절감 노력
-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 활동 사업으로 정하여 자율적 노력 유도
  - 운영 방법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3 NEIS 급식시스템

NEIS 급식시스템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세부업무명

1. 기초자료 입력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주요내용

① 매 학기 초 및 급식 현황 변경 시 학교 기본정보, 급식 인원, 급식 인력 현황, 학교장 등 수정 입력 (급식인원을 월별로 입력)

② 자체 영양기준량 등록

- 영양기준량 산출 처리를 통한 자체 기준량 등록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결정 사항

③ 출력문서결재자 등록

-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업무 승인하여 관리

④ 학년말 급식 현황 보고

- 급식 학교 및 학생 수 현황, 급식 인력 및 학부모 참여 인원, 급식예산 연간 집행액 현황 등 자료 마감처리 후 교육(지원)청 전송

세부업무명

2. 급식 전 관리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주요내용

① 사용자 식단등록

- 기존 요리가 없는 경우, 나의 요리- 내요리정보에서 등록
- 학교급식 영양 표시제 주간 평균 영양량 준수 여부 확인

② 식재료 품의 목록 작성 → 에듀파인 전송 → eat 계약 및 업체 발주

③ 식재료 검수서 및 조리 방법 출력

- 식품 설명 및 요리 방법 내용 확인 후 보완

④ 학교급식 영양 표시제, 주간식단 출력 후 게시

- 식당 또는 교실, 홈페이지: 급식 제공 전 게시

세부업무명

3. 급식 후 관리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주요내용

① 식재료 검수 처리

② 급식일지 작성

- 검식 기록 작성: 당일 작성(맛, 온도, 조화(영양 및 재료의 균형), 이물, 불쾌한 냄새 조리상태 등)

③ **특기사항/비고**: 급식실시 중 특이사항 및 교육내용 기록

④ **학부모 참여**: 당일 입력 시 연간 누계 활용 가능

세부업무명

4. 기타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주요내용

① CCP 출력(나이스에서 출력 가능)

② 보존식 기록표 출력

③ 식품 코드 전면 개정(2020. 3~)

- 식품 코드 전면개정으로 인해 2020. 3월부터 신규급식 메뉴만 사용

④ 조리법(Recipe) 업로드·다운로드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전체 조리법(Recipe) 관련 자료의 업로드·다운로드 필요한 경우(나의 요리 - 내요리정보- 자료올리기/내려받기 사용)

⑤ 운영평가·위생 안전 점검(학교)

- 교육(지원)청에서 입력한 기존 점검 결과 확인

⑥ 학교급식 개시/변경보고서 작성(학교장 인사이동 시 변경보고서 작성)

⑦ 학교기본정보등록 - 급식 인력 현황 작성(조리실무사 변경 시 재작성)

Tip

■ 인사이동 시 해당 학교 조리법(Recipe)을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인수인계할 것

4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담당자별 임무를 숙지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평상시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식중독 발생 의심 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연수 시행

- 식중독 의심이란 식중독 의심 환자를 구분하는 환자 증세의 기준으로 하루 설사 3회 이상, 복통, 구토, 발열 등 증상이 동반된 유증상자를 말함
- 담임교사가 유증상자 조사 시 학생들의 동요 및 또래 증상으로 환자 수가 과도하게 카운트되지 않도록 연수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의 조사를 금지토록 교육)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식중독 발생 양상과 증상 등 정확히 안내, 학급에서 학생의 구토물 처리·세척·소독, 학생 손 씻기 교육 등 2차 감염 예방 관리(교내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안내장 발송)

② 모니터링 시행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 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 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③ 식중독 모의훈련(비상대책반 구성원, 관계기관)

- 단위학교 식중독 모의훈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하여 식중독 비상대책반 모의 활동 시행(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 함양)
- 관계기관 합동 식중독 모의훈련: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시행

Tip

- 학교 현장 교직원 사전연수 자료
- 교내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안내장
- 단위학교 식중독 모의훈련
- 유관기관 합동 식중독 모의훈련

세부업무명

2. 1단계(발생인지)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 평상시와 달리 보건실 이용 학생 중 동일증세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다수 있을 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의심 → (집단 식중독 발생 인지 시점) 보건실 이용 환자 수 집계 → 학교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보건실은 평소 방문 수준의 학생 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 가검물 채취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도착 시까지 학생들 귀가 보류 (보건소 협의)

②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 (환자 파악팀)

- 증상 호소 학생만 조사한 후 보건실로 보냄

-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조사, 전교생 대상 및 학년·학급 전체 대상의 전수조사 및 교내방송, 전체문자,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 조사 금지
- 환자 발생 분포와 원인을 파악, 반별 집계표를 환자 파악팀에게 제공
- 병원이송 및 결석, 조퇴 학생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사전 파악(개별 역학조사 관련)
- 식중독 증세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보고

③ 최초 환자 수 집계

- 동일증세의 보건실 이용 학생, 조퇴, 결석 학생 수를 합산하여 최초인지 시점 환자 수로 집계
- 담임교사의 1차 조사 결과 정리하여 1~2개 학급만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발견 시(실습, 현장 체험학습, 운동부, 간식, 체육대회, 월요일의 경우 주말 결혼식 참석 등) 환자 발생 보고에 반드시 포함

④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대책반)

- 1차 회의자료 참고

- 대상: 관리자, 부장 교사, 보건 교사,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
- 내용: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인지 최종 판단
- 결과: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으로 최종 결정 시 교육청, 보건소(시·군·구청)에 신고
- 신고 시 내용: 인지 시점의 일시, 최초 환자 수, 유증상자 동일증세 등 현황, 발생 경위, 특이사항 등
- 학교 준비자료: 유증상자(결석생 포함) 현황, 정수기 위치 및 개수, 납품업체 현황, 식단표(관계기관에 제공)

Tip

■ 단위학교 식중독 모의훈련(1차)

세부업무명

3. 2단계(발생 신고)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역학조사 협력팀)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 → 인지 후 즉시 유선으로 담당 교육청 및 시·군·구청(보건소)에 신고 및 보고
- 서면보고: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
- 즉시 신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근거: 「식품위생법 제86조」

Tip

■ 주의: 보건소에 단순문의 시 '식중독 신고'로 오인될 수 있음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세부업무명

4. 3단계(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비상대책반 구성원)

- 총괄 대책: 각 대책팀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 보도에 대처, 치료 및 보상대책 수립, 급식 중단 및 대처 방안 등 (관할 교육청과 역학 조사관 의견 참고)
- 환자 파악팀: 이미 파악한 최초 환자 추이 및 일일 추가 환자 발생 현황 파악
- 환자이송팀: 응급환자 등 발생 시 환자후송, 입원 학생 관리
- 역학조사 협력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보고 및 결과 보고
- 학사대책팀: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② 학교장 주재 급식 중단 조치 결정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잠정 중단
  - 급식 중단 여부는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단, 급식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역학조사반 도착 전에 학교장이 결정)
  - 급식 중단 당일 대용식 구매 및 배식계획 수립 시행
  - 대체 급식 마련(학교운영위원회), 가정통신문 발송(학교알리미 시스템 이용)
  - 학교 내 정수기 사용금지 결정 및 대책 방안 마련
  - 급식 중단 기간의 개인별 도시락 및 음용수 지참,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대책, 끓인 물 제공 등 대책 마련

Tip

-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 가정통신문 발송

세부업무명

5. 4단계(원인〈역학〉조사 - 보건당국)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식중독 원인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 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
- 음용수(정수기) 채수 협조: 층별 정수기 위치 등 안내

② 식중독 역학조사 협조

-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 규모, 증상 파악): 역학조사 협력팀 가동
- 설문조사 및 채변 검사(대변 검체, 직장도말 검체) 협조
- 학생: 발생 규모에 따라 한 장소에 전교생 또는 환자를 집결시켜 일대일 조사 또는 문항별 설명 후 반별 조사, 유증상자 채변 검사 협조(집결 장소 제공)
- 급식실: 영양(교)사 및 조리 종사자 협조
- 외부반입 음식, 학교 주변 판매 식품 등 식중독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Tip

■ 보존식 144시간 보관 준수, 수거 시점으로부터 6일 이내의 보존식만 제공하며, 수거 확인서 징구, 보존식(실제 제공된 식단)과 보존식 기록지 일치 여부 확인
  • 보존식 훼손 금지
■ 보건소 역학조사 설문지

※ 환례정의(case definition)에 필요한 임상 증상 중 '설사'의 정의
  - 24시간 내 3회 이상의 수양변이 있는 경우(세계보건기구 현장 지침) 또는 250g 이상의 무른 변이나 수양변이 있는 경우로 함

③ 학교 협조 사항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보건소와 협의하여 학생 귀가 보류(단,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이송), 학생과 학부모 심리적 안정 도모(상황설명, 치료 내용, 치료비 대책 등을 안내)
• 보건실 방문환자 역학조사 전 환자 약물 투여 금지
• 급식실 현장 보존 및 원인 규명 방해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칼, 도마, 행주, 환경 가검물 등 소독 및 청소금지
• 급식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④ 언론 보도 대처(총괄 대책반, 언론 대응 창구담당자)

• 언론 대응 창구 반드시 단일화
• 가급적 학교관리자로 지정·운영
(여러 교직원이 각각 자료를 제공할 경우 다른 자료제공으로 언론의 불신 초래)
•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제공
• 개인의 추측, 의견 등은 삼가, 관계기관 간 협의된 사항(초기 인원 등) 제공
• 그 외 진행 상황(환자 수, 역학조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
• 관계기관 간 공조 체제 유지하여 정보공유
• 관계기관(교육청, 시·군·구청, 보건소, 식약처 등)의 언론 대응 창구를 확인하고 학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체제 유지
• 전 기관 자료제공 시 관계기관 간 상호 확인하고, 가능한 동일 시점의 동일자로 제공
※ 단,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 다발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언론 대응 일원화(언론사에서 공식자료 요구 시 식약처로 안내)

⑤ 교육청 협조 사항(교육청)

• 공동 조리교의 경우 학교 간 협조 조정 역할 수행
• 집단환자 발생이 세균성 이질 등 제1군 감염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산하지 않도록 설사 환자 감시체계 운영 및 환자 발생 현황 파악
• 식단표, 급식일지,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환자 발생 분포도 및 급식 외 요인(현장체험학습, 외부음식 반입 여부, 매점 판매 식품 등) 등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 협력 및 급식 재개 협의
• 관내 모든 급식학교에 위생관리강화 공문 및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확산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 노력
• 당해 학교 특별 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위탁 급식업체 운영학교 모니터링 관리 등

Tip

■ 언론보도 예문

- 관계기관(학교, 교육청, 역학조사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여 정보 공조 체제 유지(환자 명단, 진행 상황, 언론 대응 등)

⑥ 역학조사 실시: 시·군·구청 및 보건소

- 설문조사 실시
- 채변검사(대변 검체, 직장도말 검체)
- 보존식 수거
- 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 검사
- 환경가검물 채취

세부업무명

6. 5단계(환자 발생 일일 보고)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환자 발생 일일 상황 보고

- 학교는 환자 발생 현황을 발생 익일부터 완치일까지 매일 2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유선, 문자, 팩스 등)
- 1회: 10:00까지
- 2회: 16:00까지
-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이송 및 심리적 안정 도모

Tip

■ 환자발생 일일 상황 보고

세부업무명

7. 6단계(환자 발생 익일 이후)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 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시행으로 청결하게 유지·관리

②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지도 및 가정과 연계 지도
- 급식실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시행
- 유증상자 사용 물품(의자, 책상, 소지품 등) 및 책상, 손잡이 등 소독시행
- 위생 취약분야 위생관리 대책 수립
- 매점에서 위생 취약 제품 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금지
- 정수기 급수 중단 및 끓인 물 제공 등
-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부정, 불량식품 매식 금지 등 생활지도

세부업무명

8. 7단계(조사 후 조치)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학교급식 재개 논의

- 보건소 역학 조사관(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단순 식중독 경우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시
- 세균성 이질 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다고 판단 시
- 위생적 급식환경이 조성되며, 조리 종사자 보균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시
-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에 급식 재개

② 급식 재개 준비 철저

- 급식실 청소 및 식기구 소독과 조리기기 작동점검
- 급식실 및 교내 방역 시행
- 조리 종사자, 납품업체 교육 시행
- HACCP 시스템에 의거 위생·안전관리 철저
- 학교급식 재개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 계약해지 시 급식업체 재선정 방안 강구

③ 식중독 발병 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환자이송팀, 행·재정지원팀)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판명 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보상 청구(증빙자료 구비)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부과된 과태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됨

※ 학교 배상 책임공제 제도에 의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500만원 한도,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공제급여 제외

구분	직영 급식 (학교장, 납품업체 등)	위탁 급식 (위탁 급식업체)
식중독 원인균 검출 (식재료에 의한 원인)	납품업체 보상	위탁 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검출 (조리 부적정 등 취급 소홀, 조리실무사 및 시설 오염 등)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급식업체 보상
식중독 원인균 미검출 (원인 불명)	학교 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자 결정

Tip

■ 학교급식 재개에 따른 가정통신문

Tip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바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②항

④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귀책 사유 있는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제재 조치**(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등)

- 학교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와 계약 시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 품에 의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됨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
- 계약보증금 징구 및 세입 조치
- 학교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식중독 발생) 책임을 물어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 급식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구하고 세입 조치

⑤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 (역학조사 협력팀)**

- 서면보고: 학교로 통보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 보고내용: 발생개요, 급식실시 현황, 주요 조치내용,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 업체 조치, 시사점, 향후 대책 등

※ 역학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조정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는 시·군·구(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가 작성 → 질병관리본부 최종 평가 후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되므로 1개월 이내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

⑥ **교육청 조치**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질병관리본부 평가 결과, 자치단체 행정처분 등 결과 확인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시행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Tip

■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Tip

■ 질병관리본부 평가 결과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

세부업무명

9. 8단계(모니터링)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주요내용

①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② **식중독 예방 교육 시행**

- 교직원과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식중독 예방 교육

Tip

■ 식중독 예방 교육

5 학교급식 예산 운용

학교급식비를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세입·세출 운용)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급식 경비 부담 주체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제8조(경비부담),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주요내용

구 분		부담 주체
급식 시설·설비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 보호자 부담 원칙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설비의 유지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종사자의 인건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세부업무명

2. 학교급식 경비 운영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주요내용

① 학교급식 경비 운영원칙

- 식품비 기준 단가에 의한 계획적인 식단 운영으로 월별 균형 유지
- 급식학교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급식 시설·설비유지비 등 예산편성
- 교직원부담 급식비는 유·초는 4,370원, 중·고는 5,630원 이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 보호자 부담급식비는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이·전용 제한)
-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서는 급식경비를 전액 교육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에게 급식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부족분에 대하여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부담)

② 급식운영비의 예산 사용범위

- 종사자의 인건비
  - 교육공무직(급식종사자)과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등의 비용

Tip

■ 보호자부담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으로 인상 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명확한 근거자료 제공 등으로 인상 필요성 이해 도모

•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 '연료비'는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급식 시설·설비의 유지비'를 제외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조리, 세척에 사용되는 소독제 및 세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비용
  -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편성하되, 되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
• 급식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범위: 급식 시설·설비(기구) 설치 보수, 유지관리비용, 방역비, 보일러 유지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청관제 등),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 보험료,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기검사비, 정수기 유지관리비(급식실이나 식당 내), 소모품 외 급식경비(전화요금, 교육공무직(조리) 연수 및 협의회비, 사무용품비, 조달 수수료, 급식 공개의 날 운영비 등)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

세부업무명

3. 학교급식비 예산운영

관련근거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주요내용

① 연간 급식 일수 결정: 학사일정에 의함
※ 학교별 급식 운영일 수 편차 최소화(시험일, 방학일, 졸업일, 개학일, 운동회 등)

② 예산요구서 작성: 사업담당자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연간 급식비(학교 급식비 및 교직원 급식비) 세입 및 집행 계획수립
  - 세입 계획 시 급식 인원수 적정계상
•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 및 전년도 운영 결과 검토
  - 급식비 중 식품비 운영비 적정비율 유지

③ 예산안 확정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

⑤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 준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⑥ 예산의 집행
• 식품비 집행
  - 계획적인 식단 작성으로 균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 식단 작성 및 시장조사: 영양(교)사
  - 월별 수입 예상액(식품비) 및 지출액 확인
  ※ 월별 수입 예상액 산출 방법: 급식 인원수(학생 수+교직원) × 급식 일수×식품비 단가

Tip

■ 사업담당자별 예산요구서

세부업무명

4.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내용

① 2024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단가

(※ 지침은 가장 최신의 것을 참고할 것) [단위: 명, 원]

구분		학생수 1~50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701~800	801~900	901~1000	1,001 이상
식품비	공립유	3,230	3,200	3,110	3,030	2,940	2,870	2,790	2,710	2,640	2,560	2,500	2,420
	초	4,160	3,910	3,820	3,620	3,520	3,430	3,330	3,230	3,150	3,060	2,970	2,920
	중	4,860	4,610	4,470	4,390	4,310	4,230	4,160	4,070	3,990	3,930	3,850	3,790
	고	4,990	4,930	4,830	4,740	4,650	4,570	4,480	4,390	4,320	4,230	4,160	4,130
	특수 유초	4,110	3,860	3,760	3,570	3,470	3,370	3,280	3,180	3,090	3,010	2,920	2,840
	특수 중고	4,920	4,840	4,730	4,640	4,560	4,470	4,380	4,300	4,220	4,130	4,060	4,040
운영비	공립유	380	380	370	360	350	340	330	320	310	300	300	290
	초	570	570	550	530	510	490	480	460	450	430	420	410
	중	620	620	580	560	530	500	490	470	460	440	430	420
	고	700	700	670	640	620	580	560	540	520	500	480	460
	특수 유초	570	570	550	530	510	490	480	460	450	430	420	410
	특수 중고	630	630	590	570	540	510	500	480	470	450	440	430
지원단가	공립유	3,610	3,580	3,480	3,390	3,290	3,210	3,120	3,030	2,950	2,860	2,800	2,710
	초	4,730	4,480	4,370	4,150	4,030	3,920	3,810	3,690	3,600	3,490	3,390	3,330
	중	5,480	5,230	5,050	4,950	4,840	4,730	4,650	4,540	4,450	4,370	4,280	4,210
	고	5,690	5,630	5,500	5,380	5,270	5,150	5,040	4,930	4,840	4,730	4,640	4,590
	특수 유초	4,680	4,430	4,310	4,100	3,980	3,860	3,760	3,640	3,540	3,440	3,340	3,250
	특수 중고	5,550	5,470	5,320	5,210	5,100	4,980	4,880	4,780	4,690	4,580	4,500	4,470

공립 단설병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식품비, 운영비 지원 / LPG 사용학교 100원 별도 추가 지원
공동조리교 및 비조리교 각급학교 급식학생수 개별 적용

② 학교 급식비 지원범위: 지원일수 범위 내 실제 급식일수 지원

구 분	유		초	중	고	특수
	사립	공립				
지원 일수	203일	190일	190일	185일	185일	187일

-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하여 급식 일수 준수
- 학교급식은 수업 일의 점심시간에 영양 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현장학습일 등에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빵·우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교직원 급식비

- 아래 제안단가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단가 확정

구 분	유·초	중·고	비고
단가(원)	4,370원 이상	5,630원 이상	

④ 학교 급식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학교급식 경비는 학생급식비로만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 경기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 경비는 식품비 우선 전액으로 집행 및 정산
- 식품비/운영비 학생 수 구간별 고정단가 지원, 운영비 잔액 발생 시 식품비 집행 가능(단, 식품비는 운영비로 집행 불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기도교육청 지원금에는 경기도청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대응 비율은 해당연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 참고)

Tip

■ **분기별 월 초(3, 6, 9, 12월) 급식 학생 수를 분기별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 인원수로 결정**

- 단, 분기 중 전체 학생 수 대비 5% 이상 증감 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원수 변경 결정 가능

6 학교급식 시설 관리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기기의 관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 요인으로 시급성과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여 단기·중기·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세부업무명

1. 급식실 시설·설비 기기점검 및 개선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주요내용

① 각 시설·설비별 설치연도 확인 및 점검시행

② 각 기기 및 기구별 구입연도 확인 및 점검시행

- 점검 분야: 건물 내·외부 벽체, 바닥, 천정,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및 보일러, 덤웨이터 등 부대설비, 조리실 내 기기 및 기구 사용 안전 실태 점검

③ 점검 결과 후 안전의 시급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개선 및 교체 노력

④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사안의 시급성, 예산소요액 확인 후 단기·중기·장기 개선 노력

⑤ 소요 예산확보: 예산 규모에 따라 학교 자체 및 교육지원청 예산 신청 등으로 소요 예산확보 방안 강구

-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예산: 학교 자체 시설·설비 개선비 충당
- 5백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 예산 신청: 급식부서 시설개선 예산 또는 현안 사업예산 신청 등 적정예산 확보 방안 강구

⑥ 시설개선 이행: 시설·설비 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등 감독 필요

Tip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부서협조

- 건물 및 시설설비 교육 시설팀 (건축, 설비 담당)
- 기기 및 기구: 관련 제조업체 전문가
- 행정실

세부업무명

2. 급식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주요내용

① 급식실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급식 시설·설비 노후 및 조리환경, 기구 교체 등의 필요 여부
- 급식 인원수와 배식 형태 고려, HACCP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적정면적 여부
- 학교 내 부지확보 가능 여부
- 리모델링, 현대화사업 여부 결정
  - 급식 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 된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설팀, 급식팀 현장 확인 및 협의

② 설계 준비 및 의사결정

- 급식 인원수와 배식 형태 고려, HACCP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급식실 소요 면적 산출 및 사업계획서 수립(학교, 교육지원청 시설팀·급식팀 협의)
- 학교 내 부지확보 및 예산 소요 금액 산출 확보 방안 강구
- 설비기준 제공

③ 설계조정 및 실시

-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 또는 현대화사업 평면도 작업 준비
- 관련 분야 검토 확인
  - 설비기준 1차 확인
  - 평면도 상 나타나지 않는 재질, 규격 등을 체크리스트로 확인
- 급식 시설개선 T/F팀 협의 및 검토
  - 교육지원청 시설팀(건축, 설비), 급식팀, 영양(교)사 4~5명 총 7~8명으로 구성
- 원활한 시공을 위한 합리적인 실시설계 조정(관련 분야 교차 검토 및 시설 변경 시 적합성 검토)
- 학교에서는 급식 기기 및 기구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급식 기기·기구 선정(필요 시 학교 견학 및 설명회 개최)
  - 구매계약
  - 설비 및 기기 평면도 확인: 위치 변경 시 설계 변경 요청

④ 착공 공사 및 완공

- 학교, 교육지원청, 급식팀, 시설팀 협의 및 확인
  - 상세 시공 검토 현장 확인 및 관련 분야 검토 교차 확인
  - 설비 및 기구 평면도 설계 변경 내용 확인
  - 조리실 바닥 경사도(물매) 확인(트렌치 경사도 확인)
  - 맨홀 매립 시 깊이, 경사도 확인
- 공사 공정표 확인
  - 공사 공정에 따라 급식실 설비 공사 및 기기 설치 진행
- 최종점검: 건축 및 시설·설비, 기기 등 확인 및 시험 운전

Tip

■ 기구 선정 시기는 착공 이전에 완료

제27편 교원 인사

업무명	교원 인사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직무대리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 개요	· 교원의 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 계약제교원 · 보직교사 임용 · 휴·복직 · 복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교원 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 업무매뉴얼 내용 구체화(서식 등)
	2. 계약제교원 운영	- 2024년 자료 현행화
	3. 보직교사 임용	
	4. 휴직 및 복직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5. 복무 일반	
	6. 겸임·직무대리·영리업무금지·외부강의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7. 휴가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참고자료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교원인사과, 2023. 4.)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인사과, 2024. 1.)	

1 교원 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교원 인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학교 경영을 실현하고 상호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

세부업무명

1. 교원 인사 조직

Tip

■ 별도의 인사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 발령일자, 소속, 직위, 성명,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기재자 날인, 확인자 날인, 비고

■ 중등교원 임용관련 [서식]
- 인사발령통지서
- 신규교사 선서문
- 보직교사 임명장
- 인사발령통지서
- 사직원
- 서약서
- 의원면직 사유 확인서
- 인사발령통지서(의원면직, 정년퇴직)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주요내용

①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업무분석(업무내용, 업무량, 교직원 수 등)을 기초로 새로운 학년도 업무분장 조직
②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담당 학과/학년 및 학급 결정
③ 전입교사는 학교장 또는 교감 면담 후 전입교사용 업무분장 희망원 작성
④ 전 교직원에게 업무분장 희망원을 받고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학교별 분장 원칙을 토대로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함
- 직무 요건: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 수준, 직무에 필요한 인격 특성, 직무의 조직상 비중, 기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인적 요건: 종별, 경력, 학력, 전공분야, 자격, 연수실적,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통솔 능력,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장애 등

⑤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임용
⑥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재
- 인사기록자료는 나이스(NEIS)로 작성, 유지, 보관함이 원칙
- 나이스(NEIS)로 작성, 유지, 보관된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인사서류로 관리

세부업무명

2.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Tip

■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예시)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설치), 제35조(운영)

주요내용

①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예시
- 위원장(교감), 간사(교무기획부장), 위원(학교별 적정 인원)
- 위원은 보직 여부, 성별, 교육경력 등의 조화와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별 적정 인원으로 구성

② 위원 선출
- 교무회의를 통하여 선출
-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함

③ 회의 운영 일반
- 정기회의는 8월 말(1학기 말)과 2월 중(2학기 말)에 실시
-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구나 위원의 요구 시 소집
-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 사항은 비공개로 관리

2 계약제교원 운영

계약제교원을 적정하게 임용함으로써 결원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세부업무명

1. 계약제교원 운영 일반

Tip

■ 계약제교원 운영 서식 모음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구분
- 계약제교원은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로 구분

② 임용계약
- 표준계약에 의한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 체결
- 모든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 발생을 철저히 방지

③ 임용내용
- 임용상한연령: 만 62세(단, 계약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시간강사 포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가능)
    · 교육과정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정규교원의 총 결원기간이 5일 이내에 채용되는 시간강사는 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 임용권자: 학교장(단, 교육지원청 소속인 교원은 교육장)

④ 임용서류 징구관련 유의사항
- 1차 전형 시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서류 징구 지양
-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활용 가능
  - 신규임용 대기자: 임용후보자 임용구비서류 확인원으로 갈음
  - 퇴직교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구직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구인자는 임용여부가 결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구인자가 정한 기간 중 임용서류를 반환해야 함(서류형태가 파일인 경우에는 삭제 조치)

⑤ 기타
-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계약제교원으로 임용 불가
- 계약제교원 채용에 관한 비위사항 발생 시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교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산학겸임교사 운영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을 따름

세부업무명

2. 기간제교원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임용 사유 및 요건

- 1월 이상의 결원보충을 하려는 경우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려는 경우
  - 정원외기간제에 해당되며 교육청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② 임용자격 및 제한사항

- 임용자격: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제한사항
  - 명예퇴직교원(단, 해당자 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가능함. 해당교 퇴직자인 경우에는 해당자 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채용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동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채용비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던 자는 임용 불가

③ 채용 절차

- 채용 공고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해당 공고 게시. 학교 홈페이지 공고 게시는 금지(공고일 제외 3일 이상 게시 권장)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 공고 생략 시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 신규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
    ※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현재 재직 중인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 서류심사
- 면접(필수) 및 수업 실연(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생략 가능)
- 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및 임용 결정(취업제한대상자 검증 관련 공공기관 재직 경력 여부 확인 및 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 제한 대상 여부 확인 필수)

④ 임용 서류

계약자 본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사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아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임용 기관	• 호봉획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Tip

■ **계약제교원 임용 시 구비 서류 주요 변경 내용(2024. 1월 개정)**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단,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추가된 증빙 자료(2024. 1월 개정)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는 1년 이내 것만 유효(「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신구 대조표**

세부업무명

3. 강사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주요내용

① 임용 사유 및 요건

• 1개월 미만의 결원보충을 하려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을 하려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
- 특수한 교과목의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② 임용 자격

• 정규교사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대학 졸업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채용 절차

•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준용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채용 공고는 생략 가능

• 계약기간이 3주 이내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 및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이 지원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용 가능

④ 임용 서류

계약자 본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강사수당 등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근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함)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임용 기관	• 호봉획정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3 보직교사 임용

보직교사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임용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과 학교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세부업무명

1. 보직교사 임용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운영 목적

-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음

② 배치 기준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수	보직교사수	학급수	보직교사수
3~5	3	3~5	3
6~8	4	6~8	4
9~11	5	9~17	8
12~17	8		
18학급 이상	11	18학급 이상	11
2학급이하의 분교장	1		
-체육중학교 -교감 미배치교 -43학급 이상 복수교감 미배치교	+1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교감 미배치교 -43학급 이상 복수교감 미배치교	+1

③ 세부 운영 방법

- 보직교사의 명칭은 시도교육감이,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함
- 임용 처리 과정 및 절차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학교	- 보직교사 종류 및 업무분장 - 임용대상자 선정·임명 - 결과처리	- 임용대상자 확인·선정 - 인사기안, 결재 - 임명장 교부 - 발령대장, NEIS 등재	- 학교장이 발령대장, NEIS 등재 - 해면자 및 보직변경자 포함

Tip

- 인사기안문 양식
- 보직교사 배치 기준의 학급수에는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 포함
- 경기도교육청은 보직교사 명칭을 '부장교사'로 정함
- 나이스(NEIS)에서는
  - [교원인사 〉 임용발령 〉 임용발령 〉 보직교사]로 처리

4 휴직 및 복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않고 질병치료, 육아, 법률상 의무 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신분을 보장한다.

세부업무명

1. 휴직 제도 개요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주요내용

① 휴직의 구분

- 직권휴직
- 청원휴직

② 휴직의 효력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부득이한 경우라도 30일 이내) 신고하고 복직
-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은 복직신고 후 당연복직

③ 휴직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청원휴직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해외유학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휴직, 동반휴직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 기준은 없으나, 단기간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함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 단위로 운영하여 정원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에 대해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함
- 휴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보고서 제출
-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 실태 파악 및 보고서 관리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
- 2년 이상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에 의거한 연수를 받아야 함

Tip

- 휴복직 관련 각종 양식
- 휴복직 관련 동영상 업무매뉴얼

세부업무명

2. 휴직사유 및 기간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Tip

■ 질병, 육아, 가족돌봄 휴·복직 처리 지침(관련자료)

주요내용

① 직권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 수행	노조 전임자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벗어나게 된 경우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2년 이내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제외(공무상 질병은 산입)	경력평정: 산입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	승급제한 (공무상질병은 인정)	승급인정	승급제한	승급인정	승급인정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수당	공통수당 (봉급과 동일 비율) 기타수당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기타	의사 진단서 (휴직 시) 완쾌진단서 (복직 시) 첨부				경기도교육청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 공문

Tip

■ 질병, 육아, 가족돌봄 휴·복직 처리 지침(관련자료)

② 청원휴직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근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포함)	제7호의3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구, 기관, 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자녀의 양육(입양)에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기간	3년 이내 (학위취득인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기간 (비영리 법인 고용 시 3년 이내)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입양은 6월 이내)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50% 산입	경력평정: 산입 (비상근은 50% 산입)	경력평정: 산입	경력평정: 제외
승급	승급인정	승급인정 (비상근은 50% 인정)	첫째, 둘째는 1년 이내, 셋째 이상 전체기간 인정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봉급의 50%	지급 안함	지급 안함	봉급의 70%(1년 초과 시 50%)
수당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지급 안함	육아휴직수당 지급	정근수당 등 일부 감액 지급
기타	경기도교원 국외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자 선정기준		출산휴가 별도 신청 가능	의사 진단서 (휴직 시) 완쾌진단서 (복직 시) 첨부

종류	연수휴직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근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1회에 한함)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50% 산입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승급제한 (학위취득에 따른 호봉 재획정은 인정)	승급제한	승급제한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수당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기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최초 6개월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상한액: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 공통수당: 교원의 경우 정근수당, 가족수당, 보전수당이 해당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청원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Tip

- **질병, 육아, 가족돌봄 휴·복직 처리 지침(관련자료)**
- **육아휴직수당 관련 법령 일부 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34101호, 시행 2024. 1. 5.)

세부업무명

3. 휴직 및 복직 절차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휴직 및 휴직 연장

휴직종류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육아, 질병, 가족돌봄 휴직	학교	휴직원 접수, 발령보고	휴직원 접수 및 검토, 휴직 발령 기안 및 결재, 교육지원청 보고	본인 작성 및 제출 원칙, 휴직 사유·기간·증빙 서류 적부·날인 여부 확인 및 검토,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
	교육지원청	나이스 휴직 발령, 보고 및 대장기재	공문 접수 및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감 보고, 휴·복직 대장기재	휴직 적정성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시 근거 공문 기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 접수 대장 정리	휴·복직 대장에 등재
그 외 휴직	학교	휴직원 접수, 제출	휴직원 접수 및 검토, 공문 제출(휴직원 첨부)	본인 작성 및 제출 원칙, 휴직 사유·기간·증빙 서류 적부·날인 여부 확인 및 검토
	교육지원청	휴직 발령, 보고 및 대장기재	휴직원 접수 및 검토, 발령기안 및 결재, 인사발령 통지, 교육감 보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휴·복직 대장기재	구비서류의 타당성 검토,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 접수 및 결재 대장 정리	휴·복직 대장에 등재

Tip

■ **임용권자의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 관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유지, 보관
- 교육청 발령 대상자는 복직원 등 일체의 서류를 검토한 후 첨부하여 교육청으로 제출

② 복직

휴직종류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육아, 질병, 가사휴직	학교	복직원 접수 및 복직발령	복직원 접수 및 검토, 복직발령 공문 기안 및 결재	본인작성 및 제출 원칙, 복직사유·증빙성적부·날인여부 확인
	교육지원청	나이스 복직 발령, 보고 및 대장기재	공문접수 및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감 보고, 휴복직 대장 기재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시 근거 공문 기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 및 결재, 대장 정리	휴복직 대장에 등재
그 외 휴직	학교	복직원 접수 및 제출	복직원 접수 및 검토, 공문 제출(복직원 등 서류 첨부)	본인작성 및 제출 원칙, 복직사유·증빙성적부·날인여부 확인
	교육지원청	복직발령	복직원 접수 및 검토, 발령기안 및 결재, 인사발령통지, 결과처리	구비서류의 타당성 검토,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 교육청 발령 대상자는 발령 기안 결재, 대장정리	휴복직 대장에 등재
	학교	발령 알림 공문 접수	경력인정부분 호봉산입	동일 일자로 복직 후 휴직하는 경우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음

5 복무 일반

교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업무명

1. 교원의 임무 및 복무상 의무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6조(성실의무~집단행위의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조의2(친절·공정한 업무 처리~비밀엄수)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교원의 임무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원의 직무상 의무

- 성실 의무: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종의 의무: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
- 직장 이탈 금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불가함
- 친절·공정의 의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 수행해야 함
- 종교중립의 의무: 종교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비밀 엄수의 의무: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함
- 청렴의 의무: 직무 관련하여 직·간접적 사례·증여, 향응 수수 불가함

③ 교원의 신분상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 금지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 외 영리 업무 종사 불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정치 운동의 금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및 가입 불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 행위 금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 약속 행위 금지 등
-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업무를 위한 집단 행위 불가(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로 함)

Tip

■ 교원의 복무상 의무

- 직무상 의무
- 신분상 의무

세부업무명

2. 근무사항 관리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1조(근무시간 등~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근무 사항 관리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기준총량 1일 8시간)
-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개인별 근무상황부(NEIS에 의한 관리 포함)를 통해 복무 관리 철저

② 교원의 근무 시간

정의	내용
출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학교 내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것
지각	정해진 근무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조퇴	정해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종료 시간 이전에 들어오는 것
결근	출장,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는 것

③ 휴업의 효력과 복무

- 휴업의 효력: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 학교장의 휴업 결정: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④ 교원의 방학 등 휴업일 근무

-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교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1조)
- 방학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⑤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 기간 부여
-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Tip

■ **교원의 대학원 수강**

- 학교장 허가를 받는 경우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한 주간 대학원 수학이 가능함(본인의 가용연가일수 초과 금지)
-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모든 학위는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 교원은 학교장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수 있음.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함

Tip

■ **출장**

- 상급자의 명에 의해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 출장명령이 있는 출장일지라도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출강 시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는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세부업무명

3. 공무외 국외여행

Tip

■ **교원의 방학 중 근무**

- 방학 등의 휴업일은 학생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1조)

Tip

■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방법**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필수
    ※ 계획서 양식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 질병의 치료
  - 친지방문
  - 견문목적
  -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 기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이 아니므로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이 불필요하며, 본인의 법정 휴가 일수(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범위 내에서 복무 승인을 받고 실시함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원칙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방학, 학기말 휴업일, 재량휴업일 등)에 실시

②「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③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나이스 상신 ⇨ 확인 및 승인 ⇨ 연수실시

-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 나이스에 복무 및 계획서 상신
  - 근무상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사유 또는 용무: 국외 자율연수
  -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나이스 상신 시 첨부파일에 탑재
-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학교장에게(학교장의 경우, 소속 교육지원청에) 승인받은 후 실시

④ 공무외 국외여행 나이스 상신 방법

- 복무상신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여행기간이 근무상황부에 표기되도록 하고 목적지란에 여행기간(시간 포함) 병기
- 출국시간부터 귀국시간까지 단절 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출발 혹은 귀국일의 시간 설정은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설정
- 정상근무 이후 출국하는 경우 복무는 다음 날 00:00부터, 근무시간 전에 귀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귀국일 전일 24:00까지 복무 상신
- 귀국일이 휴업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귀국일 근무 종료시간까지 복무 상신(기타는 공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상신하지 않도록 유의)

6 겸임·직무대리·영리업무금지·외부강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공무수행 자세와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혁신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세부업무명

1. 겸임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교육공무원 겸임 전제 조건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②「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따른 교원의 겸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음
  -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 교수요원 임용 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함
  -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 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 간
  -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단체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제청해야 함

④ 권한 위임

- 근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 소속 교육공무원의 순회교사 겸임발령: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재위임

Tip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 보직교사의 임용
  - 기간제 교원의 임용
  -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교장·원장 제외)
  -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
  - 소속 교원의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 복직(교장·원장 제외)
  - 소속 교사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원장 제외)

세부업무명

2. 직무대리

관련근거

◦ 직무대리규정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용어의 정의

• 직무대리

- 기관장, 부기관장,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 학교의 경우 기관장은 학교장, 부기관장은 교감으로 봄

• 사고

-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학교장과 교감의 직무대리

• 학교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감이 학교장의 직무대리를 함

• 학교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한 경우에는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해야 함

• 학교장과 교감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순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학교장, 교감의 직무대리를 함

③ 학교장과 교감 외의 직무대리

•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직무대리지정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함

④ 직무대리의 운영

•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음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함

•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

⑤ 위임 규정

• 학교장은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Tip

■ **직무대리규정의 목적**

• 기관장, 부기관장, 그 외 공무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

■ **직무대리 관련 [서식]**

• 직무대리명령서

세부업무명

3. 영리업무금지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함

② 영리업무의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공무원은 다음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③ 겸직 허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교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사무

-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 관할 공립학교 교장 및 원장,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소속 공무원 겸직 허가(교장 제외)

⑤ 유의사항

-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
  - 연간 가용연가(조퇴, 외출 등)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 보수(사례금)를 지급받지 않도록 유의(외부강의 신고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별도 신고)

Tip

■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겸직 관련 [서식]

- 겸직 관련 각종 양식1
  - 겸직허가 내부결재(학교)
  - 겸직허가 신청(학교→지역청)
  - 겸직허가 내부결재(지역청)
  - 겸직허가 시행안(지역청)
  - 겸직허가 신청서(일반)
  - 겸직허가 신청서(외부강의)
  - 겸직허가대장(외부강의)
  - 겸직허가서(별도허가서 필요시)
- 겸직 관련 각종 양식2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 허가 신청서
  -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 심사 체크리스트

세부업무명

4. 외부강의

Tip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국·공립 학교(유치원), 국립대학교, 사·도립대학교 등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의 의미**
-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발표,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행위 포함)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강의·강연·기고
  - 사회자와의 개별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자문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 **외부강의 관련 [서식]**
- 외부강의등 신고서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외부강의 겸직허가 및 신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 교원은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 소속기관장의 외부강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사이버강의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 교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와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 받은 모든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학교장)에게 신고해야 함

② 외부강의 관련 유의사항

- 교원은 외부강의에 대해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소속기관장(학교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 학교장은 교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해야 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허용),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허용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7 휴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세부업무명

1. 휴가 일반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휴가의 종류

-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함

② 휴가 실시의 원칙

- 학교장은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수업결손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일수는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의 기준은 13:00로 함(탄력근무시간 적용 시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 처리
- 연가 및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④ 유의점

-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휴가 중인 교원의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은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연가 사실의 미기록, 신청하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의 묵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Tip

■ **교원 휴가의 개념**

- 학교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교원)은 승인권자(학교장)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받아야 함

■ **교원휴가 관련 증빙 서류**

- 7일 이상 연속 또는 연간 누계 일수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 공가: 소집통지서, 소환장 등
- 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출산 휴가: 진단서
- 포상에 의한 휴가: 표창장 사본
- 명예퇴직: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문
-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유인물

세부업무명

2. 휴가종류별 운영방법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연가

- 연가 사용 기간: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월일수를 적용하되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미산입함
(단, 법정 의무수행 기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함)

- 연가 가산: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실시 일수 1일 미만인 교원과 연가실시 일수 3일 미만인 교원에게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 사용: 학교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에 속한 사유 발생 교원의 요청 시 해당 연가를 승인함
- 다음 재직기간 연가 사용: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다음 재직기간 연가 사용이 가능함(다음 재직기간 전 기간 근무를 전제로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법정의무수행 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등)이 있는 교원의 연가 일수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12(월)}×해당연도 연가 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의해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지각,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함
  - 연가일수 초과 사용 시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는 일할 환수 조치함

Tip

■ 연가의 개념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Tip

■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 사용 가능 사유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배우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배우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자녀의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Tip

■ 병가의 개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Tip

■ 병가 기간 결정

•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학교장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이 질병 치료와 감염위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병가

• 병가일수 계산

- 병가일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60일의 범위에서 승인함
- 공무상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180일 범위에서 승인함(동일 사안 연도 구분 없음)

• 병가의 운영 방법

- 일반병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거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가 처리함. 단, 동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는 최초 제출 진단서 외에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해야 함
- 공무상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함.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사후에 공무상요양이 승인되면 본인 희망 시 이미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 가능함.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 연가,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일반병가·연가는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음. 공무상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 및 연가의 순차적 승인 가능(연가 모두 소진 시 휴직 조치)

③ 공가

• 공가 사유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이 동법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동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연 1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동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 운영 방법
- 공가의 승인대상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등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나 시간을 가산할 수 있음
-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도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날까지 사용 가능
- 행사 참가는 학교장이 소속 직원의 선수, 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Tip

■ 공가 대상이 아닌 사례
- 승진시험 준비기간
-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 접종
- 건강검진 확진검사, 결핵검진 확진검사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 관련한 사진 촬영, 참관 등을 위해 동행하는 경우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으로 공가 규정 정비 내용 (2023. 12. 11. 일부개정)
- 근로 시간 면제자 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
-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 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이 단체협약, 대의원회,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면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

- (참조) 신구문대조표

Tip

■ **경조사휴가 사용 시 유의점**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본인 결혼의 경우 사유 발생일(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Tip

■ **난임치료시술 휴가 기간 및 유의점**

- 휴가일수: 2~4일
- 여성(시술일 당일 필수 포함)
  - 인공수정 시술: 2일
  - 동결보존 배아 이식 체외수정 시술: 3일
  - 난자 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
- 남성: 정자채취일 당일

④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 출산 휴가
  - 임신 또는 출산한 교원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는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휴가기간 확보
- 난임치료시술휴가
  - 교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 여성보건휴가
  - 여성교원의 생리기 월 1회 1일
- 수업휴가
  -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에 따른 연가일수 초과 출석수업 기간
- 재해구호휴가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그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5일 이내, 대규모 재난 피해 교원의 경우 10일 이내)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교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 시간 사용 가능
-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대상자: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2일(16시간) 범위에서 유급휴가 가능함(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1일(8시간) 가산)
  -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고 무급휴가는 일 단위만 사용 가능
- 임신검진휴가
  -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가능

제28편 교원역량개발

업무명	교원역량개발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법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업무 개요	·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연수 및 연구대회 운영 관련 업무 · 자율장학, 교사 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교원능력개발평가	
	2. 교원 연수	- 2024학년도 현행화
	3. 연구대회	- 2024학년도 현행화
	4. 자율장학	- 2024학년도 현행화
	5. 교사 연구년제	- 2024학년도 현행화
	6. 수석교사제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4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2023 교원 역량강화 정책추진 기본 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1.) ○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안)(교원인사과, 2023. 6.) ○ 2024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교육부, 2023. 12.) ○ 2023 교원 직무연수 기본 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1.) ○ 2024 교원 자격연수 기본 계획(교원인사과, 2024. 1.) ○ 2023 경기도 연구대회 운영 기본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2.) ○ 2024 자율장학 운영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4 경기 교사 연구년 추진 계획(교원인사과, 2023. 10.) ○ 2024 수석교사 선발 계획(교원인사과, 2023. 11.)	

1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여 자기 성찰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참여 중심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한다.

세부업무명

1. 교원능력개발평가

Tip

■ 2024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안내
- 2024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 예정으로 교육부 안내 후 시행 및 안내 예정(2024년 상반기 예정)

Tip

■ 2024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대상 제외자
- 2024학년도 2개월 미만 재직 교원(2024.3.1.~2025.2.28.)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파견교사
-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 교원
-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주요내용

① **평가 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2개월 이상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파견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파견교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희망할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 교원, 정년퇴직 예정자, 휴직자 등은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제외 여부 결정 가능

② **평가결과 활용 제외자**
- 학년도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할 교원 중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근무 교원
- 계약제 교원, 당해 학년도 2월 정년퇴직 예정자
  - 평가결과 활용 제외: 평가결과가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학교평가 결과에 반영되나 맞춤형연수 대상에서는 제외

③ **평가 종류 및 평가 참여자**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교사로부터 지도받는(은)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모두 참여
  - 당해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평가 개시일까지 기간 중 2개월 미만 재학생과 재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에서 제외

평가대상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교감	참여하지 않음		소속학교 전체 학부모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 선택적 참여 (필수참여 없음)
교사	초4~초6 학생: 서술형(자기성찰적 의견조사) 문항에 응답	학생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 선택적 참여 (필수참여 없음)	소속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④ **평가 시기:** 매 학년도 9월 ~ 11월

⑤ 평가 내용(영역/요소/지표)

대상자	평가영역	평가요소	지표
교장/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제외)	학교경영 목표 관리 등 8개 지표 (※교감은 6개 지표)
수석교사	교수·연구 활동 지원	수업 지원, 연수·연구 지원	교수·학습 전략지원 등 6개 지표
	학습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교과내용분석 등 8개 지표
	생활지도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개별학생 특성파악 등 6개 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교과내용분석 등 8개 지표
	생활지도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행동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개인학생 특성파악 등 6개 지표

⑥ **평가방법**

- 교육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연수 및 홍보 강화)
- 학생들이 교내 컴퓨터실에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교사의 지도·감독 금지
- 학생 만족도조사 실시 전 사전교육 철저
  - 평가관리자(교감)는 학생들의 욕설, 음란성 글 게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대상 사전교육을 반드시 직접 실시(의무사항)

⑦ **평가 문항 구성 및 문항 수**

- 학생(초4~초6): 자기성찰적 의견조사 3문항 이상으로 구성
- 학부모: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 서술형 2문항 이상 병행
- 평가요소별로 1문항 이상을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하고 평가지표 일부 또는 전부로 만족도조사문항 구성(2개 이상 평가지표 통합 문항 불가)
- 평가영역(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구체적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구조화된 서술형 문항 구성

⑧ **결과활용**: 자기성찰 자료로 활용

⑨ **평가관리기구**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위원수: 3~7인
  - 위원구성: 학부모위원 1인 이상 참여
  - 별도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교내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가능

Tip

■ **평가관리기구**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가 아닌 교내 다른 위원회 활용 시, 학부모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활용 (교내 다른 위원회 활용 여부 및 위원회 선정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학부모 사전 의견수렴 권장)

2 교원 연수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 모형 개발과 새로운 정보의 교환 및 기능 연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세부업무명

1. 교원 직무연수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7조~제39조(연수의 기회균등~연수기관의 설치)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①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

• 핵심역량 기반 성장단계별 연수 운영

- (교사) 예비교사 - 신규교사 - 경력교사 성장단계별 핵심역량 연수체제

예비교사	신규교사	5년 내외 교사	경력교사	심화연수
실습학교 지원 강화로 예비교사 실무역량 개발	연수원-지역청-학교별로 역량개발 다층적 지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경력교사 대상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경력교사 대상 심화·장기연수로 역량 강화

↑ ↑ ↑ ↑

복직예정교사

- (교감·교장) 직무 전환에 따른 성장단계별 핵심역량 연수체제

임용 전 직무연수	경력자 연수(2년 차)	심화연수(2년 이상)
유·초·중 교(원)장 임용 전 유·초·중 교(원)감 임용 전	➡ 교(원)장 역량 강화 직무연수 교(원)감 역량 강화 직무연수	➡ 경력 교장·교감 대상 장기심화연수 운영

• 연수대상별 맞춤형 연수 운영

- 신규교사 직무연수 운영

성장 단계	임용 전 연수	임용 후 연수			
	합격 후	준비기	적응기	발전기	실천기
운영 기관	직속기관 (연수원)	발령 예정교 (단위학교)	경기도 교육연수원	소속기관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구분	의무	학교 자율	의무	의무	권장
시간	40시간	10시간 이상(권장)	15시간	15시간 이상	15시간
방법	혼합형	1:1 실무 멘토링	원격	전문적 학습공동체 (실행학습)	혼합형

- 계약제교원 직무연수

· 계약제교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및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 연수 의무화: 1개월당 3시간 이상(10개월 이상은 30시간 이상)

-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 대상: 연속해서 2년 이상 휴직(육아, 해외동반)한 교원(의무참여)

· 시기: 복직예정일 이전에 실시(상반기 1~2월, 하반기 7~8월)

- 교(원)장, 교(원)감 직무연수
  · 연수원 주관 교감·교장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운영

임용 전 연수	2년 이상 경력자 연수	심화연수
유·초·중 교(원)장 및 유·초·중 교(원)감 임용 전 연수	교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교감 역량강화 직무연수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교원리더십아카데미 (교감과정)

- 법정의무교육 운영: 개별 법령에 의한 교원 대상 의무교육 안내 및 실시

② 지역 기반 연수시스템 구축

• 공동연수과정 운영
- 자격연수: 교(원)장, 교(원)감, 1급정교사 자격연수
- 의무연수: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 성장단계 연수: 교(원)장·교(원)감 역량강화, 미래교육·교육과정 아카데미

• 교육지원청 협업 연수 지원: 지역 교육자원 연계 및 활용 연수 지원

③ 미래형 연수 지원 강화

• 에듀테크 기반 연수 인프라 조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학습자 참여형·설계형 연수 확대: 공모연수, 출퇴근길 연수 등

세부업무명

2. 교원 자격연수

관련근거

◦ 2024년 교원 자격연수 기본계획
◦ 2023년 교원 역량강화 정책추진 기본 계획

주요내용

① 교원 자격연수 개요

교원 자격연수	교(원)장 자격연수	◦ 유치원 원장, 초등 교장, 중등 교장, 특수 교장
	교(원)감 자격연수	◦ 유치원 원감, 초등 교감, 중등 교감, 특수 교감
	수석교사 자격연수	◦ 초등, 중등 수석교사
	정교사(1급) 자격연수	◦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초·중등 정교사(1급) ◦ 전문상담·사서·영양·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
	복수(부)전공 자격연수	◦ 중등 부전공·복수전공 자격연수

3 연구대회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세부업무명

1. 연구대회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2023 경기도 연구대회 운영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연구대회 개념 및 목적

- 개념: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
- 목적:
  -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교육정책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
  -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교육제도 개선, 교육자료 개발 실적의 교육적 활용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 연구 수행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한 결과 공유

② 연구대회 운영

- 연구대회의 종류
  - 전국규모 연구대회, 시도규모 연구대회
- 연구대회 연구실적 인정
  - 일반승진 연구점수 평정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 연구대회
1등급	1.50 점	1.00 점
2등급	1.25 점	0.75 점
3등급	1.00 점	0.50 점
박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그 밖의 학위 1.5점	
석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그 밖의 학위 1점	

- 분류 기준

군	분류기준
1군	연구보고서 중심 연구대회
2군	자료 제작이나 실기·기능 지도 중심 연구대회
3군	2군에 속하지 않은 공인 연구대회

- 운영 방침
  - 학교장은 연구자가 동일군내 중복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
  - 실질적인 연구기간이 6월 이상, 연구대상(학급) 변경 불가
  - 1등급:2등급:3등급 비율은 1:2:3으로 선정(출품수의 40% 이내)

Tip

■ 유의사항

-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출품서약서를 제출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1년에 각 군별 1개 연구대회에 출품할 수 있음
  - 입상 전: 중복 신청한 대회 전체 신청 취소 및 당해년도 연구대회 참가 제한
  - 입상 후: 입상 취소 및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연구대회 참가 제한
  - ※ 3개 학년도: 중복 신청한 학년도 포함
- 1년에 서로 다른 군에 있는 연구대회에 참여하여 2종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우수한 연구 실적만 사용

4 자율장학

학교 자율장학을 통한 책무성 강화 및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기존의 '장학(Supervision)' 관점에서 '동료개발(Staff Development)' 관점으로 장학 활동을 전환하여 집단역량을 신장한다.

세부업무명

1. 학교 자율장학 운영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 2024학년도 자율장학 운영계획

주요내용

① 2024 자율장학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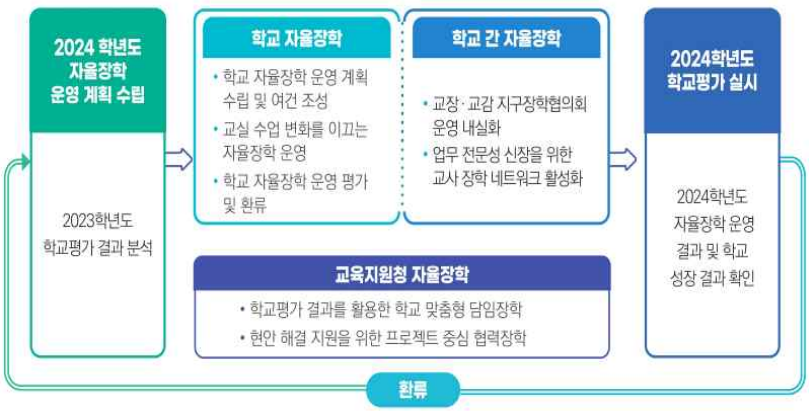

② 운영 방침

• 학교 자율장학
- 2023학년도 학교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교육과정·수업·평가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별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모든 교사, 모든 교과가 참여하는 수업장학 활성화 방안 포함
- 자기장학, 임상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포함), 학교 자체 연수 등을 포함한 학교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간 자율장학
-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 논의 및 지역 교육 의제 발굴, 학교 경영사례 공유 및 지역 공동 과제 해결
·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상향식 정책 제안
·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논의 및 지역교육 발전 방안 모색
- 교사 장학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전문성 신장
· 동일 업무 중심의 네트워크, 수업 연구 중심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제별 구성 및 운영

③ 학교 자율장학 세부 운영 계획

• 학교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전년도 학교평가 결과 분석 → 학교자율과제(또는 중점과제) 선정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학교 및 교원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맞춤형 장학 계획 수립

- 자기장학, 임상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포함), 학교 자체 연수 등

- 자율장학 운영 계획 안에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포함

	직무연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무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서 작성	◦ 형식, 내용 등 학교 자율로 작성	◦ 과정명, 학습공동체명, 주제, 교육과정, 기간, 시간, 인원 등 연수 승인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구성	◦ 인원과 관계없이 학년, 교과, 주제별 등 자율 구성 ◦ 1인이 다수의 공동체 참여 가능	◦ 소속 교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1인이 다수의 공동체 참여는 가능하나 직무연수 학점은 1개 공동체만 인정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전 교직원 참여 원칙, 직무연수 신청은 학교 자율적 결정

• 자율장학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여건 조성

- 협업 및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제 구축 등

•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끄는 자율장학 운영

- 교육과정·수업·평가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장학 활성화

· 수업 전문성 신장과 교원 간 상호 성장 지원을 위한 연간 수업 공개 및 나눔 활성화

- 교사의 성장과 연구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년, 교과 협의회, 학교 안 전문적학공동체 등 수업 연구 모임 활성화

-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장학 활성화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학교 자체 연수 등의 다양한 연수 과정 참여

· 자율장학 참여를 통한 자기 성찰 및 지속적인 자기 계발 계획 수립 및 실천

④ 학교 자율장학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교평가를 통해 자율장학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학년말 교육과정(교육활동) 평가회 등을 통한 학교평가 결과 공유

- 학교평가 결과를 다음 학년도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

5 교사 연구년제

장기 재직교사의 지속적 성장 지원으로 교육연구력 심화 및 교직 효능감을 제고하고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심화를 통한 성장하는 교직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업무명

1. 교사 연구년제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제1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조(결과활용) 제3항
- 2024 경기 교사 연구년 추진 계획

주요내용

① 교사 연구년제 추진 방향 및 개념

- 연수 받는 교원에서 학습하는 교원을 넘어 연구하는 경기 교원
- 교사 연구년 운영을 통한 교사 회복탄력성과 현장교육력 강화
- 개념

교사 연구년제	실행연구
교육실천가인 교사가 현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 주체적으로 심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학교 현장의 고민과 현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점과 실태 파악, 자료수집과 분석, 모니터링, 질적 탐구, 양적 탐구 등 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실행-반성-대안 제시-성찰'의 과정중심 실천적 연구 활동을 통하여 문제 해결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

② 대상, 기간 및 파견기관

- 대상: 공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사
- 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간)
- 파견기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 교사 연구년은 국내 연구 수행을 원칙으로 함

③ 연구내용

- 연구성과가 학교교육력 제고 및 현장 교육 문제 개선에 기여될 수 있는 분야

영역	세부 내용
교육연구 (75명 내외)	◦ 학급, 학교, 지역 기반 현장 밀착형 교육연구 ◦ 교육과정(수업-평가), 기초학력, 생활교육, 진로교육 등
정책연구 (75명 내외)	◦ 정책연구Ⅰ-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실행 및 효과 관련 연구
	◦ 정책연구Ⅱ- 정책부서 연계 현안 주제 연구
교육회복연구 (50명 내외)	◦ 현장중심 교육력 회복을 위한 자율연구 ◦ 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 자율과제 등

Tip

■ 연구영역별 경력 기준

- 교육연구, 정책연구
  - 교육경력 15년 이상
- 교육회복연구
  - 교육경력 25년 이상

※ 영역별 선발인원

- 지원 결과에 따라 총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정책연구Ⅰ,Ⅱ는 선발 시 구분하지 않고 선발기준에 의거 한 영역으로 선발 예정

④ 연구 활동 지원

- 방향: 현장 의견 기반 연구교사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방법: 연구년 사전-중-후 활동 다양화 및 내실화
- 추진 체제

사전활동		중간 연구활동			사후 활동
		분기별 워크숍	개인공동연구 질 제고	연구년 성과 나눔	
영역	오리엔테이션 (2024. 2.)	연구교사 네트워크	개인 주제연구 공동 주제연구	연구년중간보고회 (2024. 8.)	연구성과 선순환
교육, 정책 연구	사전 역량 강화 지원	연구공동체 운영 공모연수 운영	주제별 연구 수행 대학 등 기관연계	중간보고서 제출 (2024. 7.)	현장 교육기부 2025. 1~7. 기부결과 제출
교육 회복 연구		교육회복공동체 연구공동체 참여	자율과제 주제별 연구 수행		교육력 선순환 학생교육 실천 학교리더 활동
영역	직무연수 (2024.3.)	연구교사 워크숍	연구활동 내실화	연구년 학술대회 (2024. 12.)	연구년 멘토-멘티
교육, 정책 연구	연구역량 연수 (30시간)	연구교사 네트워크 주관 2024. 4,6,9,11. (4회)	학술대회 참여 학술지 게재 등 워크숍, 네트워크, 보고회 참석	결과보고서 제출 (2024. 11.)	2025. 1~2. 오리엔테이션 참여 등
교육 회복 연구	교육회복 연수 (15시간)		워크숍, 네트워크, 보고회 참석		
◦ 지역 신규교사 학습공동체 및 지역 교육연구회 지원, 학술대회 참여 및 학회지 게재 등 현장 기여 ◦ 교사 연구년 보고서 및 성과자료 일반화 : 홈페이지((https://more.goe.go.kr/teacher) 탑재					

-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연구교사 1인당 150만원 지원
- 처우: 급여, 호봉, 교육경력 100% 인정

※ 단위학교 결원 보충: 기간제교사 배치

- 연구년 내실화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연구역량 강화 직무연수 지원
-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연수기관 연계 현장밀착형 실행연구 질 제고 지원

파견기관	⇨	연구교사 네트워크	⇨	경기도교육연수/연구기관
연구역량 사전연수 30시간 이상 교육회복 사전연수 15시간 이상		소그룹 학습공동체 운영 연구교사 공모연수 운영		다양한 직무연수 참여 교육 정책연구 참여

⑤ 선발 및 복무

- 전형: 1단계 서류심사 및 2단계 심층면접
- 복무: 1년 연수파견

구 분	근무상황 행정 처리	비 고
교사 연구년제	◦ 연수파견 처리 (「교육공무원법」 제40조 특별연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1항 4호, 4항)	◦ 교육공무원 신분 유지 ◦ 품위유지 등 복무 철저 ◦ 나이스 출장 등록 불가
	◦ 파견 종료 후 1년 의무 복무	◦ 파견 종료 시 즉시 복귀

※ 교사 연구년 수행 불성실자 처리: 현장 복귀 조치 가능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해당 학교로 즉시 복귀

⑥ 기대효과

- 장기 재직교사의 교육연구력 심화 및 교직 효능감 제고를 통한 지속적 성장 실현
- 현장 밀착형 실행연구를 통한 학교 개선 활동 수행 및 적용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사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심화를 통한 성장하는 교직문화 확산

6 수석교사제

'수업 잘하는 교사'의 수업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한다.

세부업무명

1. 수석교사제

Tip

■ 2025학년도 수석교사 선발계획 안내
- 2024. 3. 1. 이후 인재개발국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예정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주요내용

① 수석교사제 운영 개요
- (자격)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 중 심사를 거쳐 선발
- (역할)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신규 및 저경력 교사 교수학습 지원, 자료 개발 및 연구 활동 등
- (우대) 수업시수 1/2 경감, 연구활동비(40만원/월) 지급, 담임 배정 면제
- (선발) 2025. 3. 1.자 임용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 34명 선발
- (재심사) 임기 4년이 만료된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실시

② 지원 자격
-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2025. 3. 1. 기준)
- 경기도내 공·사립학교 재직교사 중 2025. 2. 28.기준 현임교 재직 및 현임교 1년 이상 근무한 자

주체	교육청	단위학교 (학교장)	교육청(교육감): 수석교사선발위원회	
방법	선발안내 (사전공지)	대상자 추천 (수석교사추천위원회)	1차 심사 (서류심사, 동료교원평가)	2차 심사 (역량평가, 심층면접)
	· 지원자격 · 선발인원 · 추천제한 사항 등	· 수석교사추천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	· 추천서, 실적자료 등 제출서류 평가 · 동료교원평가	· 수업역량 · 동료교사지원역량 · 학생지도역량

③ 수석교사 임용 절차 흐름도

수석교사 지원	⇨	1차심사	⇨	2차심사	⇨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	자격연수	⇨	임용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 단위학교의 추천을 받은자		서류심사 및 관계형성 능력평가		역량평가 심층면접		수석교사 임용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		15일, 90시간 이상 자격연수		임용권자가 최종 임용

④ 학교급별 수석교사 선발 인원

구분	유아	초등	중등	특수	합계
2025년 선발인원	0명	17명	17명	0명	34명

⑤ 2024 선발 수석교사 배치 방침

- (초등·중등) 수석교사 미배치 지역 우선 배치
- (초등·중등) 교육수요(신설교, 과대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협력학교, 정책)를 고려한 지역 배치
- (초등·중등) 지역별 학교 수 대비 수석교사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 배치 가능

※ 단, 중등의 경우 지역 내 과목별 전보 가능 인원이 없는 경우 그 외 지역 배치 가능

- (유아) 교육수요(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은 지역,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고려한 지역 배치
- (유아) 선발 인원 중 경기도 내 3국 체제 교육지원청 지역에 우선 배치 후 유치원 수가 많은 교육지원청 지역 배치
- (특수) 특수교사 정원 현황, 특수학교 현황, 교육과정 지원사항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⑥ 임용 및 전보

- 수석교사 전보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따름
- 수석교사 4년 임기 후, 재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종전 직위로 복귀 및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함

Tip

■ 2024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

제29편 기타

<table>
<tr><td>업무명</td><td colspan="2">기타</td></tr>
<tr><td>관련 법규</td><td colspan="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교육기본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초·중등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td></tr>
<tr><td>업무 개요</td><td colspan="2">◦ 교육행정조직
◦ 교직단체의 이해
◦ 교육 관련 법규
◦ 청렴 업무</td></tr>
<tr><td rowspan="5">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td><td>단위 업무</td><td>변경 사항</td></tr>
<tr><td>1. 교육행정조직</td><td></td></tr>
<tr><td>2. 교직단체의 이해</td><td></td></tr>
<tr><td>3. 교육 관련 법규</td><td></td></tr>
<tr><td>4. 청렴 업무</td><td></td></tr>
<tr><td>참고자료</td><td colspan="2">◦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교원정책과, 2023. 3.)</td></tr>
</table>

1 교육행정조직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조직을 이해하고 해당 부서별 업무 추진 내용을 파악하여 단위학교에서 담당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돕는다.

세부업무명

1.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 조직

Tip

- 사무분장표
- 경기도교육청 조직도
- 직속기관 현황

관련근거

- 교육자치법 제30조(보조기관)~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주요내용

① 본청

- 교육감 보조 · 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기획관, 제1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둠
- 제1부교육감
  - 감사관(제1부교육감 보좌), 운영지원과(제1부교육감 보조)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지역교육담당관, 예산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학교공간조성과, 교육정보화과
  - 교육협력국: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급식보건과
- 제2부교육감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 인재개발국: 교육역량정책과, 행정역량정책과, 인재개발지원과

② 직속기관(총 21개 기관)

-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Tip

■ 교육지원청 현황

③ 교육지원청

• 3국 교육지원청(6개)
-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행정국: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개선과, 감사과, 학교신축과(화성오산)
·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행정지원과, 지역교육협력과

• 2국 교육지원청(7개)
- 안양과천, 부천, 안산, 광주하남, 평택, 시흥, 파주
·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학교행정지원과
· 행정국: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개선과, 감사과, 학교신축과(평택)

• 2과 교육지원청(12개)
- 의정부, 광명,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안성, 김포
· 교육과
· 행정과

• 2개 시·군 관할 교육지원청(6개)
-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 교육지원센터를 추가로 둠
· 화성오산: 오산교육지원센터, 화성교육지원센터
· 구리남양주: 구리교육지원센터
· 광주하남: 하남교육지원센터
· 안양과천: 과천교육지원센터
· 군포의왕: 의왕교육지원센터
· 동두천양주: 양주교육지원센터

④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경기도학생수영장: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경기도부천학생수영장, 경기도화성학생수영장
•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 경기도학생체육관: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 경기도학생야영장: 용인학생야영장, 포천학생야영장, 양평학생야영장, 여주학생야영장, 연천학생야영장, 김포학생야영장

2 교직단체의 이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를 통해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세부업무명

1. 교직단체의 이해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 교원노조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노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원지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 협의), 제12조(교섭 · 협의 사항)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① 교직단체 설립의 개요

- 교원단체 설립: 교육기본법 제15조
  - 194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립
- 교원노조 설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99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설립
  - 2006년 자유교원조합 설립
  - 2008년 대한민국교원조합 설립
  - 2018년 경기교사노동조합 설립
  - 2021년 K-EDU교원연합 설립
  - 2023년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설립

※ 각 단체의 정관과 회원가입 절차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교직단체의 이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이해
  - 설립 근거: 교육기본법
  - 가입 대상: 학교장 포함 전 교원
  - 교섭 · 협의 당사자: 교육부장관, 교육감(국 · 공 · 사립 구분 없음)
  - 교섭 대상: 처우 개선, 근무 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 교섭 · 협의 시기: 연2회(1월, 7월), 기타 필요 시 당사자 협의
  - 합의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방안에 관한 합의 과정의 성격
- 교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의 이해
  - 설립 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의 종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K-EDU교원연합 경기지부,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경기지부(이하, 약칭 전교조, 자교조, 대교조, 경기교사노조, K-EDU교원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 가입 대상: 유아 · 초 · 중등교육법 규정의 교원(교 · 원장, 교 · 원감 제외)
  - 단체교섭 당사자: 교육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연합
  - 교섭 대상: 임금 · 근무조건 · 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합의
  - 합의사항: 단체협약으로 채무적, 규범적 효력이 미침

3 교육 관련 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 관련 법규의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학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제 교육활동의 조성, 조장에 기여한다.

세부업무명

1. 교육 관련 법규

관련근거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주요내용

① 교육법규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② 교육법규의 체계

• 헌법 ← 법률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자치법규(조례, 교육규칙) ← 기타(행정규칙, 정관, 학칙 등)

※ 법률 상충 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 사안에 따라 학칙, 학교법인 정관,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지님

③ 교육 관련 법규의 개요

• 헌법: 한 나라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

※ 교육 관련 주요 내용(헌법 제31조)

- 교육의 권리 및 의무, 균등교육, 의무교육, 평생교육
-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조항 명문화

• 법률: 광의의 의미로 '법'과 같은 말로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하나, 협의의 의미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 형식을 말함

※ 예: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직자윤리법, 평생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 명령: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령

- 대통령령: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
- 총리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
- 교육부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관해 제정한 규정

Tip

- 대한민국헌법
- 국가공무원법
- 교육기본법
-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규칙: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등

•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 명령

- 훈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 장기간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
- 예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시달하는 명령
- 지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고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④ 학칙, 정관 및 법령 검색

• 학칙 제정의 근거: 초 · 중등교육법 제8조

• 학교법인 정관의 근거: 사립학교법 제10조

※ 자치법규, 입법예고,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결정례, 고문변호사 등 검색

Tip

■ **교육 관련 주요 법령 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4 청렴 업무

부정청탁 및 각종 직무비위 등 부정·부패 관행 극복, 공익제보 보호, 청렴 의지의 내면화를 통해 공직자로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세부업무명

1. 청탁금지법

관련근거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시행령

Tip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주요내용

① 목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② 부정청탁의 금지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주요 내용
  - 인사,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급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③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④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 각각 그 가액을 합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함.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것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신고 방법: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
• 해당 내용
  -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⑥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 사례금 상한액
  - 교육감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40만원
  -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 원고료, 여비 미포함
  ※ 상한액 기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 초과 금액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함

⑦ 외부강의등의 신고

•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하여야 함. 단,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부강의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 외부강의등' 참조

세부업무명

2.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Tip

■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서식

주요내용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특혜의 배제

③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④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⑥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⑦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 참조

⑧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⑨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청탁금지법」 제10조 참조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⑪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위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⑫ 신고, 확인, 처리
- 위반 여부는 행동강령책임관(공립의 각급학교는 교감(원감))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확인 후 소명자료를 붙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세부업무명

3. 불법찬조금 근절 및 예방

관련근거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주요내용

①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 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 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 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 (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Tip

■ 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 리베이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② 각급학교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실시

- 대상: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 필수 대상: 운동부 담당교사, 운동부 감독 및 코치, 학부모회 회장·총무, 운동부 학부모 회장·총무(필수 대상 누락 시 교육실적 불인정)
- 시기: 연 2회 이상 실시(학부모 연수 시 필수 실시)
- 수수 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철저

③ 안내 및 홍보

- 가정통신문 발송
  - 대상: 전 학부모(운동부 학부모 필수)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기간
  - 내용: 학교 측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사례·유형 등 포함
- 학교장 명의로 SMS 모바일 홍보
  - 대상: 교원 및 학부모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기간
- 학교 홈페이지 홍보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시기
  - 방법: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 게시
  - 내용: 학교장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사례 등 포함
- 공문서 상하단 홍보 문구 삽입

④ 학교 자체 점검 강화

- 청렴 업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 실시 후 자체보관(연중)

⑤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역 및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 학교발전기금 관련 내용, 공개시기는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을 따름

Tip

- 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세부업무명

4. 갑질 근절

Tip

■ 갑질의 유형
- 법령 등 위반
- 사적이익 요구
- 부당한 인사
- 비인격적 대우
- 기관 이기주의
- 업무 불이익
- 부당한 민원응대
- 직장 내 괴롭힘
- 기타

관련근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① 개념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상담
- 각 기관(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가능
- 경기도교육청 갑질 업무 담당자와 전화 상담 가능(031-820-0845)

③ 신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익명, 실명 창구 운영]

※ 갑질 외 사안의 신고 창구
- 학생인권 침해 관련 ☞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 학교폭력 관련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성폭력 관련 ☞ 성폭력전담신고센터
- 공익제보(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공공재정·이해충돌방지법·불법찬조금 위반 등) 관련 ☞ 공익제보센터
- 교원 고충 처리 관련 ☞ 교원인사과
- 일반직 고충 처리 관련 ☞ 지방공무원인사과
- 교육공무직 인사운영 관련 ☞ 노사협력과

④ 처분
- 조사 결과 갑질 행위로 판단된 경우
  - 행정처분 또는 징계
  - 인사상 불이익((비)정기 전보 요구)
  - 행정지도(갑질예방교육, 컨설팅 등)

⑤ 피해자 보호·지원
- 분리조치: 피해자(또는 신고자)가 가해자(또는 피신고자)와 분리를 요구하거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리조치 실시
- 불이익 처우 금지: 갑질 행위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⑥ 교육
- 각 기관(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갑질예방교육 실시

세부업무명

5. 공익제보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Tip

■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지원제도

- 비밀보장(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 내용)
- 불이익조치 금지
- 비실명 대리신고(신분 노출 우려시)
- 책임감면
-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

주요내용

① **공익제보**: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불법찬조금 조성 및 집행 행위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공익제보 의무**

-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경기도교육청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야 함 (공익제보책임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③ **공익제보의 접수 등**

- 누구든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수사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
-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와 함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 공익제보 내용
  -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제보(확인 및 서명·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④ **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센터에 접속 온라인 제보(우편, 방문, 팩스로도 가능)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820-0999

※ 방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세부업무명

6.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 관리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시행령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0장(외부강의)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방법

Tip

■ 외부강의 신고원칙

- 사전신고
-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신고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신고(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음)

Tip

■ 외부강의용 겸직허가 관련 서식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대장

■ 외부강의등 신고서 서식

주요내용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 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의 절차에 따름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와,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③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④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⑤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⑥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 실시

⑦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⑧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서식(겸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용)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각 기관에서는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 · 관리
-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구체적인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참조
    (월 3회 또는 월 6시간)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세부업무명

7. 이해충돌방지법

관련근거

-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Tip

■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주요내용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16개 유형의 직무는 법 제5조 제1항 참고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③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는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④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의 외부활동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⑤ 가족 채용 제한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가족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 소속 고위공직자(교육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포함),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 고위공직자(교육감),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한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최초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 불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다고 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⑦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⑧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미공개 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

학교 업무매뉴얼[중등] [개정 17판]

총 괄

김승호(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기 획

김정란(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현장지원담당사무관)
윤은영(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장학사)

집필·편집

전현진 (상하중학교)	양민선 (하길중학교)
경교선 (동안고등학교)	양진경 (삼일고등학교)
김은경 (대안여자중학교)	유재은 (고양동산고등학교)
김진아 (운양고등학교)	이정아 (광휘고등학교)
박용호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조효진 (매원중학교)
박주연 (솔빛중학교)	한은옥 (하성고등학교)

2024 학교 업무매뉴얼[중등]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경기도교육감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www.goe.go.kr

2024

학교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중등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